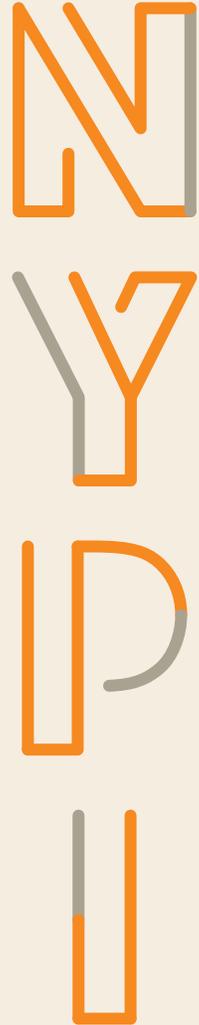


연구보고 20-R09

#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김지연 김승경 임세희 최은영



---

연구보고 20-R09

---

#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

저 자 김지연, 김승경, 임세희, 최은영

연구진 연구책임자\_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임세희(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_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연구보조원\_최수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이 연구는 ‘국가수준의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노력은 이들의 보편적인 권리 영역에 직·간접적이고 다면적인 개선을 도모하여 사회배제를 예방하고 인권 신장에 기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사회배제의 다차원적 영역 가운데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음에 초점을 맞춰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주거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주거권의 의미와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주거권 미보장 상태의 아동가구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2019년 주거실태조사(승인번호 제116031호)를 활용하였으며, 아동이 있는 가구의 과밀, 필수설비미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 최저주거기준미달, 비주택(주택 이외의 거처) 규모를 각각 확인하고 정책의 목표 설정 기준으로 참고하였다. 셋째, 그간 아동·청소년 주거환경의 특성 파악이 주로 2차 자료에만 의존하였다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확률표집으로 선정된 아동·청소년(초·중·고교생)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제한적이거나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넷째, 비주택 가운데 시설거주 청소년의 주거경험과 주거지원 요구를 별도로 조사하였다. 이에 조사시점 현재 대표적인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29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목적에 따라 주거와 관련된 생애경험 등을 확인하고

일반아동·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다면적인 측면에서의 배제 여부를 확인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조사대상 청소년쉼터 60개소를 대상으로 실무자 대상 현황조사를 부가조사로 병행하였으며, 청소년쉼터의 침실기준과 면적기준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후 주거지원을 받은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임대주택 입주과정에서의 경험과 생활의 변화, 주거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추가적인 자립지원 요구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주거복지정책 분야 학계·현장 전문가 12인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전문가 의견조사(AHP)를 실시하여 관련 쟁점과 현안을 파악하였으며 도출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3개 정책과제에 따른 12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먼저 첫 번째 정책과제인 '법률 및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① 「주거기본법」 개정,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③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④ 「아동복지법」 개정, 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정책과제인 '주거권 보장 기반 강화'와 관련하여 ⑦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관리, ⑧ 주거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⑨ 주거빈곤지역 환경개선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세 번째 정책과제인 '제도 및 서비스 확충'과 관련하여 ⑩ 주거급여제도 개선, ⑪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강화, ⑫ 관계기반 주거지원 확대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아동·청소년, 주거권, 적절한 주거, 주거약자, 아동 권리, 사회배제,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최저주거기준미달, 청소년복지시설

## 연구요약

###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국가수준의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노력은 이들의 보편적인 권리 영역에 직·간접적이고 다면적인 개선을 도모하여 사회배제를 예방하고 인권 신장에 기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으며, ‘적절한 주거에서 살 권리’에 초점을 맞춰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주거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아동·청소년의 고유한 권리로서 접근이 미흡했던 주거권 보장을 통한 사회안정·전망 확충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통한 사회배제를 예방하는 정책방안의 근거를 제시하고, 포용국가 아동·청소년정책 및 주거복지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었음.

###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아동·청소년 주거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핵심 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근의 국내·외 연구와 정책 자료를 검토하였음. 이를 통해 기존 주거지원 제도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 및 시설거주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관련 법령과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2차 자료 분석 :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승인번호 제116301호) 원자료를 분석하여, 과밀, 필수설비미달, 구조성능환경미달, 최저주거기준미

달 아동·청소년 가구의 규모를 추정하였음.

- 전문가 의견조사 : 아동·청소년 주거권 관련 쟁점을 유목화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아동·청소년·주거복지정책 분야 학계·현장 전문가 총 12인을 대상으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총 2회 실시하였음.
-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실태조사-(1) 일반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의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2020년 6월~9월에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총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실태조사-(2)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 비주택 거주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비주택 거주 아동·청소년 중 시설 거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모집단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대표적인 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입소자이며, 목표표본수를 300명으로 설정하고 비확률표집의 방법으로 조사대상을 확보하여 2020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2020년 7~8월에 연구진이 실사를 진행하였음.
- 청소년쉼터 실무자 현황조사: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의 부가조사로 전국 청소년쉼터(단기, 중장기) 60개소 실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시설의 주거여건을 평가하고 가정 밖 청소년 주거와 관련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 심층면접조사: 비주택거주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이 이들의 삶 전반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다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설문조사의 한계

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2020년 9월에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후 임대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기타연구방법: 연구 진행 단계별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4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3회), 콜로키움(1회), 정책포럼(1회) 등을 실시하였음.

### 3. 주요결과

#### 1) 선행연구 검토 및 2차 자료 분석

- 2019년 주거실태조사(승인번호 제116031호)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권 비보장 상태의 아동가구의 규모를 추정하였음.
  - (전체 최저주거기준 적용)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 0.7%, 최저주거기준미달 8.0%, 비주택거주 0.7%, 과밀(방수기준 미달) 5.3%, 필수설비기준미달 0.27%
- 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므로 사회권을 넘어 인권으로 인식으로 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세대원이므로 독자적인 주거 선택권이 없음. 그러나 아동·청소년 시기에 주거는 안전·보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장기간 주거권을 침해받는 경험을 한다면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하여 전 생애에 걸쳐 사회배제 상태에 고착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이 차별없고 균등한 주거복지를 향유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주거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실질적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책 대상의 특성을 다면적으로 반영하는 주거정책 개발 및 추진이 요구됨.

- 주요국과 비교할 때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집행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주거권의 개념과 접근관점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청소년 복지 및 통합지원 근거법에 '주거방임', '주거지원을 포함한 통합서비스'를 포함하여 국가의 개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논의에 있어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고, 청소년복지시설 보호종료 아동·청소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으나, 법적근거 마련 및 주택물량과 예산 확보 등 중장기적 정책방향과 목표 설정이 요구됨.

## 2)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실태

- 청소년의 주거환경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교 학생(유효표본 5,914명, 모집단 4,064,25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주거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주택 종류나 집의 위치 비적정: 2.2%(약 8.9만가구 추정)
- 혼자 사용하는 '내 방'을 가지지 못한 경우: 22.2%(약 89만명 추정)
- 8세 이상의 이성 형제자매와 방을 사용하는 경우: 2.3%(9.3만명 추정)
- 필수설비기준미달(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미설치): 3.1% (약 12.5만명 추정)

- 초·중·고교 학생 표본을 적정주거집단과 비적정주거집단으로 구분하여 주거 실태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혼자 사용하는 내 방이 있음: 적정(78.0%) > 비적정(62.7%)
- (내 방이 없는 경우) 함께 방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  
(적정) 2명 72.1%, (비적정) 3명 이상 54.3%

- 8세 이상 이성형제자매와 방을 사용: 비적정(80.0%) > 적정 (65.4%)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불편함: 비적정(11.5%) > 적정(7.3%)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사생활 보장이 되지 않음: 비적정(16.8%) > 적정(11.2%)
- 친구를 집에 데려오기 창피함: 비적정(14.0%) > 적정(6.7%)
- 최근 1년간 지저분하거나 위험한 환경을 개선해주지 않음: 비적정(5.6%) > 적정(1.4%)

●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유효표본 294명)의 주거환경 실태는 다음과 같음.

- 현재 사용 중인 방의 정원: 4인실(40.7%) > 2인실(28.7%) > 3인실(15.7%) 등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이 불편함: 17.9%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이 사생활 보장이 되지 않음: 29.7%
-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책상, 의자, 책꽂이가 없음: 21.8%
- 현재 거주 쉼터 입소 전 거주 장소: 청소년쉼터(33.3%) > 친구집(26.2%) > 자취(20.4%) > 숙박시설(19.0%) 등
- 현재 거주 쉼터 입소 전 가정 밖 생활 기간: 평균 35개월(최소 0개월, 최대 248개월)

- 청소년쉼터에 거주 중인 청소년들은 가정 밖 생활 기간이 평균 35개월에 이르며 쉼터 외에 친구집, 자취, 숙박시설 등의 거주지를 전전하며 불안정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해왔음. 현재 거주 중인 쉼터는 4인~10인의 다인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사생활 보장이 잘 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구가 구비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표 1. 적정주거집단, 비적정주거집단, 시설거주집단의 거주환경 및 심리사회적 환경 차이 비교

	적정주거집단	비적정주거집단	시설거주집단
집의 전반적 상태	(↑)집에 대한 만족도, 동네에 대한 만족도	(↑)곰팡이, 해충, 화재대비시설 미비, 화재 위험 재질 등 문제	(↑)누수, 지붕이나 벽의 붕괴 위험, 환기 어려움, 바깥소음 미차단, 약취, 냉난방이 잘 되지 않음, 외부 침입의 문제 등
동네환경	(↑)공공기관 이용 편리,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리	-	(↑)동네 사람들이 자주 싸우거나 술에 취해 돌아다님
경제적 상태	-	(↑)최근 1년 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병원비, 주거비, 공과금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	
심리 및 정서 상태	-	-	(↑)스트레스, 우울·불안.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건강상태	(↑)숙면 (↓)숙면 방해 경험 비율	(↑)저체중	(↑)과체중, 수면방해 경험 비율. (↓)숙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활동시간	(↑)숙제나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	-	(↑)스마트폰·TV·컴퓨터 이용시간 (↓)운동이나 야외에서의 신체활동 시간
가족관계	-	(↑)학대 피해 경험(생애), 집 위치로 인한 차별 경험	
사회적 관계	-	-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도,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
아동 박탈지수	(↓)결핍응답 비율	-	(↑)결핍응답 비율

\* 주: (↑),(↓)표시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고, 낮음을 나타냄.  
음영처리된 부분은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지 않은 영역임.

● 초·중·고교 학생 표본에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집단을 적정주거집단, 비적정주거집단, 시설거주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비적정주거집단은 학대 경험 및 집 위치로 인한 차별 경험이 많고, 집의 전반적인 상태가 주거환경의 쾌적성 및 화재 대비 시설 등의 측면에서 시설거주집단 보다 취약한 상태였음.
- 비적정주거집단은 적정주거집단에 비해 최근 1년 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병원비, 주거비, 공과금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도모하는 접근이 필요함이 확인됨.
- 시설거주집단은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와 소음, 악취 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취약하여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주거환경에 놓여 있음.
- 시설거주집단은 삶의 만족도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전반이 세 집단 중 가장 취약한 상태였고, 스마트폰·TV·컴퓨터 이용시간이 길고 과체중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 주거환경으로 인한 생활습관의 차이가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생애기간 중 박탈 경험을 비교한 결과, 타 집단에 비해 아동·청소년의 기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들의 퇴소 이후 주거 계획 및 주거 관련 정책 욕구

- 퇴소 이후 자립지원관을 통해 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전월세방을 임대하는 방식을 주로 계획하고 있었으며, 거주지 선택에 있어 주거비 문제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음. 퇴소 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생활비와 주거지 지원이 필요하며,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2년~10년 정도 거주함으로써 낮은 주거비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를 희망함.

- 퇴소 이후 거주지 결정 여부: 결정하였음 82.3%
- 퇴소 이후 거주지: 자립지원관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27.8%) > 전월세방 임대(21.4%) > 원가정복귀(20.1%) 등
- 퇴소 이후 거주지 선택 시 중요한 점: 주거비 수준(58.9%) > 단독 사용 가능 공간 유무(46.1%) > 내부 공간 설비 및 쾌적성(44.0%) > 대중교통, 시장, 병원 등 편의시설 여부(43.2%) 등
- 퇴소 이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여부: 입주를 원함 65.0%
- 퇴소 이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이유: 주거비가 저렴해서(75.0%) > 시설이나 환경이 좋을 것 같아서(10.8%) >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끼리 의지할 수 있어서(7.0%) 등
- 선호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원룸형(86.2%) > 그룹모집형(54.0%) > 다가구형(40.2%) > 기숙사형(12.2%)
- 공공임대주택 거주희망기간: 2~5년(45.0%) > 5~10년(19.6%) > 10년 이상(18.0%) > 2년 미만(17.5%)
- 퇴소 이후 주거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생활비(74.1%) > 주거지(57.8%) > 생활비, 급여 등 돈 관리(39.8%) > 취업연계(28.6%) > 취업관련 교육, 훈련(21.1%) 등

- 청소년쉼터 실무자들은 청소년쉼터의 침실과 면적기준 개선 필요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대상에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을 포함하는 등 시설을 기준으로 한 차별 철폐 등을 제안하였음.
- 청소년쉼터 퇴소 후 주거지원을 받은 청소년들은 임대주택 입주 후 공통적으로 사생활이 보장되는 개인 공간이 있다는 자체에 매우 만족하였고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을 기반으로 자립준비를 해 나가고 있었음. 다만, 쉼터 퇴소 후 3개월 이상 고시원에서 지낸 후 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부여받는 과정에서의 부정적인 주거경험 및 주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입주 이후까지 이어지는 주거와 관련된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를 포함하여 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차별 없이 부여하고, 관계기반의 주거지원 서비스를 확대 및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 3)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방안

-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 주거권 수준 파악 지표는 크게 아동·청소년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와 정부의 의무 확인용 지표로 구분됨.
- 아동·청소년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는 일반아동·청소년의 경우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주거비적절성, 점유의 안정성, 지역사회통합과 참여, 폭력 및 학대, 아동청소년 건강 등 6개의 영역(대분류)으로 구성됨. 시설거주아동·청소년 주거권 수준 지표는 일반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분류에 주거지원 결정 시 보호종료 아동의 의견 표명 및 참여정도 측정을 제안하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가 추가되어 총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됨.
- 정부의 의무 확인용 지표는 주거약자인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주거복지정책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로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주거비 적절성, 점유의 안전성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됨.
- 이들 지표는 각 집단이 주거안정 및 주거지원의 적절성 정도를 확인하고 일부 비교를 통해 격차 확인을 위해 필요함. 일반아동·청소년과 시설거주아동·퇴소청소년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 및 정부 확인용 지표 영역은 표 II와 같음.

표 2. 아동·청소년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 및 정부의 의무확인용 지표(안)

	일반아동·청소년		시설거주 및 보호종료아동·청소년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	1.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1-1. 방수기준 미달	1.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1-1. 방수기준 미달
		1-2. 면적기준 미달		1-2. 면적기준 미달
		1-3.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		1-3.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
		1-4. 필수설비 미달		1-4. 필수설비 미달
	2. 주거비 적절성	2-1. RIR	2. 주거비 적절성	2-1. RIR
	3. 점유의 안전성	3-1. 주택점유형태	3. 점유의 안전성	3-1. 주택점유형태
		3-2. 원하지 않는 이사		
	4.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	4-1. 지역사회 접근성 및 안정성	4.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	4-1. 거주지 차별 경험
		4-2. 차별 경험		4-2. 장애 배려
		4-3. 장애 배려		
5. 폭력 및 학대	5-1. 폭력 피해	5. 시민적 권리와 자유	5-1. 의견표명권	
	5-2. 주거방임	6. 폭력 및 학대	6-1. 폭력 피해 및 목격 경험	
6. 건강	6-1. 정신건강		7. 건강	6-2. 학대 및 방임
	6-2. 신체건강	7-1. 정신건강		
정부 확인용 지표	1.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1-1. 공공임대주택 적절성	1.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1-1. 시설 개선
		1-2. 민간임대주택 적절성		1-2. 공공임대주택 입주
		1-3. 장애아동 주거개량 지원		1-3. 장애아동 주거개량 지원
	2. 주거비 적절성	2-1. 주거급여 규모 및 비율	2. 주거비 적절성	2-1. 주거급여 수급
		2-2. 에너지 바우처		2-2. 에너지 바우처
	3. 점유의 안전성	3-1. 아동가구 긴급주거지원	3. 점유의 안전성	3-1. 주거복지상담

## 4.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방향의 비전을 '모든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 보장'으로 설정하였음.
- '모든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함.

### 1) 아동·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접근 관점 확립

- 주거환경이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은 '주거약자'이며 동시에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는 주거지원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적절한 주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입을 하는 등 아동·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접근 관점을 확립해야 함.

### 2) 실질적 지원과 정책집행력 강화

-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법률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주거지원 제도에서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주거급여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나아가 주거지원 이후 적절한 주거상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거방임 사안으로 다룰 수 있도록 집행력을 강화해야 함.

### 3)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기초 전환 : 주거우선지원(Housing First)

○ 가정에서 이탈한 아동·청소년을 우선 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으로 간주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에 주거지원을 포함한 자립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또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한 제반 주거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청소년복지시설 간 설치기준 및 자립지원 서비스 편차가 해소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주거대안 제공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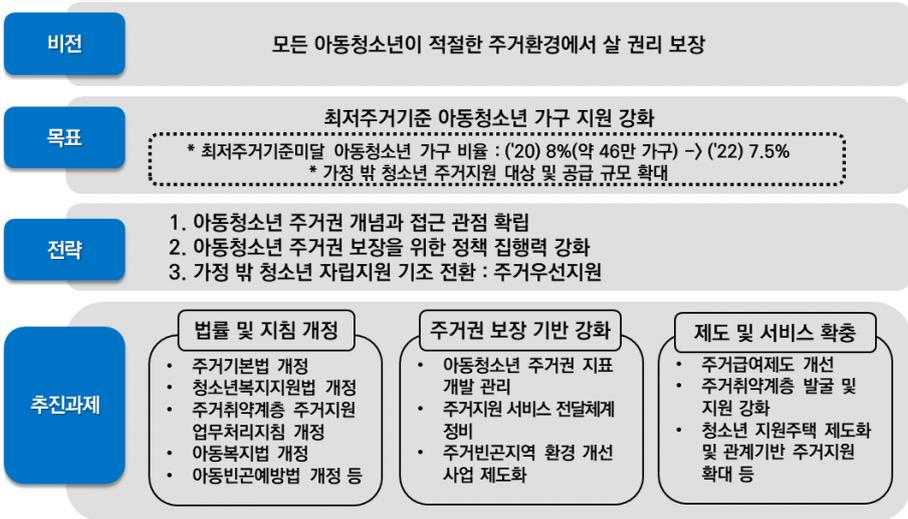


그림 V-1. 아동·청소년의 사회배제 예방을 위한 주거권 보장 정책방향(안)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3개 정책과제에 따른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함.

## 1) 법률 및 지침 개정

### 1-1. 「주거기본법」 개정

- 미성년자의 경우 주거환경을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을 주거복지정책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주거약자로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에서 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거기본법」 상 '주거약자'의 범위에 아동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환경기준을 구체화하여 하기 위해 현행 「주거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을 받은 가구의 주거수준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2.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위기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동법 제31조에서 현재 원 가정에서 이탈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수단이 '시설 입소'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 주거지원을 포함한 자립지원의 세부 내용이 부재함.

- 이에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선언적인 측면에서부터 정책기조의 변화를 도모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지원, 자립지원, 사후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함.
- 나이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지원대상을 시설 퇴소 이후 청소년 뿐 아니라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기능을 확대할 것을 검토해야 하며, 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위기청소년이 주거 불안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주거지원과 연장 보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쉼터 퇴소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신청이 가능하긴 하나,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과 달리 청소년쉼터에 장기 거주하더라도 ‘주거취약계층’의 지위를 얻기 위해 고시원 등에서 3개월 이상을 거주해야 함.
- 이에 ‘아동 주거권 보장 종합대책’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퇴소자에게도 LH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시설 퇴소(예정) 아동·청소년을 ‘주거취약계층’에 포함하여 공공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1-4. 「아동복지법」 개정

-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주거 관련 법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법에도 ‘주거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의 개념에 ‘주거방임’을 포함하여 보호자의 일방적인 선택에 따라 주거환경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대다수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적 지원의 집행력과 효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률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상 물리적 방임에서 주거방임을 분리하거나 판단 기준을 보강하고, ‘주거방임가정 서비스 패키지’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1-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은 아동의 빈곤과 사회배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주거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수준의 개입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동 법에서 빈곤아동을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 전반에 ‘주거’를 포함하고, 위원회 구성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이 요구됨.

### 2) 주거권 보장 기반 강화

#### 2-1.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관리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수준을 파악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설계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관리가 요구됨.
- 아동·청소년 주거권보장을 위한 지표(안)는 ① 아동·청소년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 ② 정부의 의무 확인용 지표로 구분하고 각각 일반아동·청소년용과 시설거주아동·청소년용으로 구분하여 개발·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2-2. 주거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 현재 주거복지서비스는 주거복지 서비스와 자가진단, 공공주택 정보, 임대사업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마이홈포털(온라인),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주거지원 서비스기관인 마이홈센터(주거복지센터), 동법을 근거로 한 주거복지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다만 서울시를 제외하면 시·군·구 단위에 주거복지센터가 모두 설치된 상황이 아니므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편임.
- 이에 시·군·구 단위에 마이홈센터와 같은 주거복지센터를 확충하여 각종 주거 위기가구 지원업무의 거점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주거복지센터 연계 모형과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센터 설치가 어려운 경우 기존의 시·군·구 단위 희망복지지원단 등 취약계층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내에 주거복지사를 확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주거복지사 배치 모형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3. 주거빈곤지역 환경개선사업 제도화

-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개별 주택의 취약성과 지역사회 의 집단적 취약성이 중첩되어 이중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발달이 가중될 수 있는 반면, 아동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은 아동은 취약성을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주거기본법」에서는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거빈곤층 밀집지역이 있는 지자체 대부분

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 하에 중앙정부 차원의 우선적인 재정보조와 지원을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재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재건축부담금, 종합부동산세 등을 재원으로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주거복지 성과가 높은 지자체에 중앙정부의 귀속 부분을 배분하여 주거빈곤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30%) 부분에 주거빈곤 아동가구와 주거빈곤지역 환경개선여부가 평가지표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주거급여는 자가 및 임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가구에만 제공되고 있으나, 비주택거처는 주택이 아니므로 자가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대도시와 차별화되는 농산어촌형 공공임대주택정책을 통해 주거빈곤아동가구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해야 함.

### 3) 제도 및 서비스 확충

#### 3-1. 주거급여제도 개선

- 영국, 미국, 스웨덴 등은 최저주거기준에서 가구원 간의 관계와 연령, 성별, 아동 수 등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가족형 주택수당, 스웨덴은 아동이 있는 가구와 18세 이상 28세 이하 청년을 위한 주거급여제도 등을 통해 아동 주거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또한 영국은 적정주거기준(decent home standard)과 주거위생안전평가체계(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 HHSRS)를 도입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 거주지역만 고려하고 해당 주택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주거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없음.
- 이에 기존의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침실분리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침실 수를 고려하고, 아동이 있는 가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2.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강화

- 앞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취약계층아동가구에 대한 통합서비스에 '주거'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 것을 기반으로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청소년안전망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드림스타트의 인적정보관리의 주거사항을 최저주거기준과 연동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욕구사정 시 산재해 있는 주거관련 항목을 아동주거권의 관점에서 통합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 아동주거권 보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아동주거빈곤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담인력을 확충하여야 함.
- 또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활용하는 위기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에도 주거권 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청소년의 위기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주거 안정' 여부를 중요한 권리이자 지표로 활용해야 함.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 사용하고 있는 주거위기 정보(전세보증금 1억원이하, 월세 30만원 이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자 등)는 지역별 시세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며, 민간임대주택의 체납자가구가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문제를 안고 있음. 이에 주거빈곤아동가구의 발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평균 주거비 차이를 반영하고, 시·군·구 단위의 중위주택 전월세 보증금이 일정 비율 이하인 주거 정보 또는 가구원 수 대비 주거면적 정보를 부가지표로 활용해야 함.

- 다자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아동이 있는 가구의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가산점 부여,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금융지원을 모니터링과 환류를 통해 비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 수준을 강화해야 함.

### 3-3. 관계기반 주거지원 확대 :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

- 가정 밖 위기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은 청소년쉼터 입소 지원이 거의 유일하나, 시설의 순기능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시설은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이라 볼 수 없고 임시적인 주거대안에 불과함. 이에 가정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의 상황과 욕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주거대안이 권리로서 제공되어야 함.
- 또한 시설 중심의 주거지원은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거나, 시설에서의 생활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음. 이에 기존의 시설 중심에서 '주거 우선지원(Housing First)'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서비스 지원을 통해 주거 마련을 준비하는 방식에서 독립 주거를 기반으로 자립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민간 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지원주택(Supportive House)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24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거나, (가칭)지원주택 공급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가칭)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법 등을 신규 제정하는 방안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 한편 미성년자가 주택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민법상 행위능력을 전면 확장하기보다 청소년이 처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개별적으로 행위능력을 심사하고, 주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행위능력을 확장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20-R09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내용	8
1)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	8
2)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안) 개발	9
3)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실태 분석	9
4)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방안 도출	10
3. 연구방법	10
1)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10
2)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실태조사	11
3) 심층면접조사	23
4) 전문가 의견조사(AHP)	24
5) 기타 연구방법 : 추진과제의 정책화 과정	25
4. 연구추진체계	28

## II. 논의의 배경

1. 사회배제 및 주거권의 개념과 관계	31
1) 아동·청소년과 사회배제	31
2)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34
3) 주거권 미보장 아동·청소년 가구 규모 추정	38
2. 아동·청소년 주거권 관련 해외동향과 국내 법제 현황	44
1) 해외 주거복지정책과 동향	44
2) 국내 주요 법제 현황	57
3) 시설거주 및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주거 및 자립지원: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65
3. 소결 및 시사점	79
1) 아동·청소년 우선적 주거권 개념 정립과 법제화	79
2)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중·장기계획 수립	80
3)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표 개발	80
4)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실태조사 추진	81

## III.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실태 분석

1. 조사개요	85
1) 주거실태조사 대상: 일반 청소년	85
2) 주거실태조사 대상: 쉼터 거주 청소년	86
3) 심층면접조사 대상: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87
2. 아동·청소년의 주거실태	89
1) 비적정 주거 청소년 추정	89
2)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	96
3) 주거 관련 생애경험	119
3. 주거환경과 아동·청소년의 사회배제	133
4.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주거 관련 욕구	144
5. 소결 및 시사점	159
1) 아동·청소년가구의 구조성능환경 충족 여부 확인 및 개선	159

2) 아동·청소년의 사회배제 예방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	162
3) 주거방임 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	164
4) 시설거주청소년 대상 주거 프로그램 다양화 .....	165

#### IV.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방안 : 전문가 의견조사

1. 아동·청소년 주거권 영역과 우선순위 도출 .....	169
1) 영역 1 : 아동·청소년 주거권 개념 및 핵심요소 정립 .....	169
2) 영역 2 :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단 확충 .....	177
3) 영역 3 : 시설거주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강화 .....	183
2.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 .....	190
1)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의 의의 .....	190
2)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의 단계 .....	191
3)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의 과정 .....	195
4) 아동·청소년 주거권 최종 지표(안) .....	209
3. 소결 및 시사점 .....	217
1) 아동·청소년 주거권 개념 및 구성 요소 명확화 .....	217
2)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표 개발 .....	218
3) 국가수준의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계획 수립 .....	220
4) 보호종료청소년 주거지원 방안 모색 .....	221

#### V.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1. 제안배경 .....	225
1) 주요 결과 요약 .....	225
2) 정책적 시사점과 추진방향 .....	231
2. 추진과제 .....	238
1) 법률 및 지침 개정 .....	238
2) 주거권 보장 기반 강화 .....	252
3) 제도 및 서비스 확충 .....	262

<b>참고문헌</b> .....	<b>273</b>
<b>부 록</b> .....	<b>291</b>
1. 설문지(초등용) .....	293
2. 설문지(중고교생용) .....	311
3. 설문지(시설거주 아동청소년용) .....	329
<b>Abstract</b> .....	<b>349</b>

## 표 목차

표 I-1. 본 연구 관련 국가정책의제와 주요 현안 .....	7
표 I-2.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 준거틀(안) .....	9
표 I-3. 설문조사 영역별 주요 조사 항목 및 문항개발 근거 .....	14
표 I-4. 설문조사 영역별 주요 조사 항목 및 문항개발 근거: 시설거주 아동·청소년 .....	20
표 I-5. 심층면접조사(FGI) 개요 .....	23
표 I-6. 전문가 의견조사(AHP) 주요 내용 .....	25
표 I-7. 전문가 자문 개요 .....	25
표 I-8.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요 .....	26
표 I-9. 콜로키움 개요 .....	26
표 I-10. 정책포럼 개요 .....	27
표 II-1. 사회배제 및 포용의 개념 .....	33
표 II-2. 주거의 적절성 고려 기준 .....	36
표 II-3. 주거권 미보장 아동·청소년 가구 규모 .....	40
표 II-4. 주거권 미보장 아동·청소년 가구 지역별 규모 .....	41
표 II-5. 주거취약계층 가구 특성별 가구 수 .....	43
표 II-6. 최저주거기준미달 정도 .....	43
표 II-7. 주거권(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요소 .....	46
표 II-8. 방 수 및 방 면적에 따른 수용 허용인원 .....	49
표 II-9. 영국의 거주환경 적합성 평가 기준 .....	51
표 II-10. 영국의 주거위생 및 안전평가 시스템(HHSRS)에 포함된 29개 주택 관련 위험 요소 .....	52
표 II-11. 미국의 최저주거기준 설비 및 구조·성능, 환경기준(요약) · 55	
표 II-12.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의 특성 .....	56
표 II-13. 최저주거기준 :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	58
표 II-14.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공급 현황 .....	61

표 II-15. 공공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거주 아동가구의 최저주거 기준 미달 현황 .....	62
표 II-16. 2020년~2022년 3년간 지원이 시급한 핵심대상 3만 가구 .....	63
표 II-17.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	64
표 II-18. 청소년쉼터와 아동양육시설의 설치기준 비교 .....	67
표 II-19.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아동 대상 자립 및 주거지원 사업 .....	71
표 II-20. 아동·청소년 사회배제 및 주거권 관련 최근 연구 .....	73
표 III-1. 일반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	85
표 III-2.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	86
표 III-3.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	88
표 III-4. 주택의 종류에 따른 적정 주거 여부 .....	89
표 III-5. 집의 위치에 따른 적정 주거 여부 .....	90
표 III-6. 주택의 종류와 집의 위치에 따른 적정 주거 여부 .....	90
표 III-7. 가족구성에 따른 방의 적정 수 보유 여부 .....	92
표 III-8. 8세 이상 이성 형제자매와 함께 방을 사용하는지 여부 .....	92
표 III-9. 집의 내부시설 .....	93
표 III-10. 주택의 설비 .....	94
표 III-11. 필수설비기준 미달 규모 .....	95
표 III-12. 주거환경에 따른 집단 구분 .....	96
표 III-13. 현재 사는 집의 전반적인 상태 .....	97
표 III-14. 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 .....	101
표 III-15.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환경 .....	103
표 III-16. 집과 동네에 대한 만족도 .....	106
표 III-17. 주택의 종류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 .....	107
표 III-18. 집의 위치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 .....	108
표 III-19. 집의 점유형태 .....	108
표 III-20. 전월세 거주자 중 공공임대주택 여부 .....	109
표 III-21. 집의 점유형태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 .....	109
표 III-22. 내 방이 있는지 여부 .....	109
표 III-23. 나와 함께 방을 사용하는 사람 수 .....	110
표 III-24. (사용하는 방이 없는 경우) 주로 잠을 자거나 공부하는 공간 .....	110
표 III-25. 나와 함께 방(공간)을 사용하는 사람 .....	111

표 III-26. (이성의 형제자매와 방을 사용하는 경우) 이성 형제자매의 연령 .....	112
표 III-27. 불편감 및 사생활보장 여부 .....	112
표 III-28.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가구 유무 .....	113
표 III-29. 도시 및 농산어촌지역 간 적정 및 비적정 주거 비율 .....	113
표 III-30. 쉼터 유형별 주택종류 .....	114
표 III-31. 현재 사용 중인 침실의 정원 .....	115
표 III-32. 현재 사용 중인 침실 공유 여부 .....	115
표 III-33.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 방의 정원 대비 사용 인원 .....	116
표 III-34. 불편감 및 사생활보장 여부 .....	117
표 III-35.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가구 유무 .....	118
표 III-36. 쉼터 거주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 .....	118
표 III-37. 이사 경험 여부 .....	119
표 III-38. 이사횟수 .....	119
표 III-39. 집세 부담으로 인한 이사 경험 여부 .....	120
표 III-40. 이사로 인한 전학 경험 여부 .....	120
표 III-41. 이사 결정 시 나의 의견 존중 여부 .....	121
표 III-42. 최근 1년 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경험 .....	122
표 III-43. 집 구조나 환경으로 인한 생각이나 행동 .....	122
표 III-44. 부모와 가족으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생애 .....	123
표 III-45. 부모와 가족으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최근 1년간 .....	124
표 III-46. 주거 관련 경험이 심리·정서에 미치는 영향 .....	125
표 III-47. 쉼터 입소 전 이사 경험 .....	126
표 III-48.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사한 횟수 .....	126
표 III-49. 집세 부담으로 인한 이사 경험 .....	127
표 III-50. 이사로 인한 전학 횟수 .....	128
표 III-51. 이사에 대한 나의 의견 존중 여부 .....	128
표 III-52. 경제적 어려움 경험 .....	129
표 III-53. 집 이외의 다른 곳에서의 거주기간 .....	130
표 III-54. 집의 구조나 환경으로 인한 가출 여부 .....	130
표 III-55. 가출 후 현재 거주 쉼터 입소 전 거주장소 및 기간 .....	131
표 III-56. 쉼터 입소 전 가정 밖 생활기간 .....	131
표 III-57. 주거 관련 경험이 심리·정서에 미치는 영향 .....	132
표 III-58.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신체적·정신적 건강 .....	133
표 III-59. 우울 및 불안, 자아존중감 .....	135

표 III-60. 지난 1년간 결석한 날 .....	135
표 III-61.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정도 .....	136
표 III-62. BMI 범주 .....	137
표 III-63. 숙면여부 .....	137
표 III-64. 집 구조나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여부 .....	138
표 III-65. 활동시간 .....	139
표 III-66. 진로성숙도 .....	139
표 III-67. 학교생활 및 학교생활 만족도 .....	140
표 III-68.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 .....	140
표 III-69. 아동박탈지수 .....	141
표 III-70. 박탈지수 항목별 결핍 응답 비율 .....	142
표 III-71. 퇴소 이후 걱정거리 .....	145
표 III-72. 퇴소 이후 거주지 결정 여부 .....	146
표 III-73. 퇴소 이후 거주지 .....	146
표 III-74. 퇴소 이후 거주지 선택 시 중요한 점 .....	147
표 III-75. 퇴소이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여부 .....	148
표 III-76. 퇴소이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이유 .....	149
표 III-77. 선호하는 공공임대 유형 .....	150
표 III-78. 공공임대주택 거주 희망 기간 .....	150
표 III-79. 타인과의 공간 공유 가능 여부 .....	151
표 III-80. 타인과 공간 공유 가능 이유 .....	151
표 III-81. 타인과의 공간 공유 불가능 이유 .....	152
표 III-82.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피 이유 .....	153
표 III-83. 퇴소 이후 선호하는 주거 상담·지원 방법 .....	153
표 III-84. 퇴소 이후 주거정착을 위한 가장 필요한 지원 .....	154
표 IV-1. 전문가 의견조사(AHP) 분석결과: 주요 영역별 세부추진과제 .....	170
표 IV-2. 전문가 의견조사(AHP) 분석결과: 과제별 주요 내용(1) .....	174
표 IV-3. 전문가 의견조사(AHP) 분석결과: 과제별 주요 내용(2) .....	180
표 IV-4. 전문가 의견조사(AHP) 분석결과: 과제별 주요 내용(3) .....	185
표 IV-5. 정책과제 우선순위(안)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188
표 IV-6. 아동·청소년 주거권 수준 지표(안) 평정 결과(일반아동·청소년) .....	196
표 IV-7. 정부 의무 확인용 지표(안) 평정 결과(일반아동·청소년) .....	201

표 IV-8.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안) 평정 결과(시설거주아동·청소년)	203
표 IV-9. 정부 의무 확인용 지표(안) 평정 결과(시설거주 및 보호종료아동·청소년)	208
표 IV-10.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일반아동·청소년)	210
표 IV-11. 정부 의무 확인용 지표(일반아동·청소년)	212
표 IV-12.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시설거주아동·청소년)	214
표 IV-13. 정부 의무 확인용 지표(시설거주아동·청소년)	216
표 V-1. 주요 분석결과 요약	229
표 V-2. 법률 및 지침 개정 관련 세부추진과제(안)	238
표 V-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우선지원 근거 마련(안)	239
표 V-4. 구조성능환경기준 점검 항목(안) : 아동·청소년의 안전·위생을 중심으로	241
표 V-5. 위기청소년 주거지원 근거 마련(안)	244
표 V-6. 지자체 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 현황(조례 시행일 기준)(1)	245
표 V-7. 지자체 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 현황(2)	246
표 V-8. 지자체 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 현황(3)	247
표 V-9.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249
표 V-10.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에 주거지원 포함(안)	250
표 V-11. 주거방임에 대한 개입근거 마련(안)	250
표 V-12. 아동의 주거빈곤 예방 및 지원 근거 마련(안)	251
표 V-13. 주거권 보장 기반 강화 관련 세부추진과제(안)	252
표 V-14.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안)(일반아동·청소년)	253
표 V-15. 정부 확인용 지표(안)(일반아동·청소년)	254
표 V-16. 주거권 보장 수준 파악용 지표(안)(시설거주 및 보호종료청년)	255
표 V-17. 정부 확인용 지표(안)(시설거주 및 보호종료아동)	256
표 V-18. 재건축부담금 지자체 배분 평가기준 개정	261
표 V-19. 제도 및 서비스 확충 관련 세부추진과제(안)	262
표 V-20. 주거급여와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의 차이	264
표 V-21.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의 2020년 아동 가구 추가 지원 내용	264
표 V-22. 시설과 중간주택, 지원주택 비교	269
표 V-23. 국정과제에 따른 추진과제(안)	272

## 그림 목차

그림 Ⅰ-1. 본 연구의 관점 : 주거권 보장을 통한 사회배제 예방	6
그림 Ⅰ-2. 연구 추진 절차	28
그림 Ⅱ-1. 아동·청소년 주거권 관련 주요 개념	38
그림 Ⅱ-2.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가구의 주거비 부담	42
그림 Ⅲ-1. 비주택 거주 규모 및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 가구 규모 비교	91
그림 Ⅲ-2. 이성 형제자매와 함께 방을 사용하는지 여부	93
그림 Ⅲ-3. 필수설비기준 미달 규모 비교	95
그림 Ⅲ-4. 현재 사는 집의 전반적인 상태(1)	99
그림 Ⅲ-5. 현재 사는 집의 전반적인 상태(2)	100
그림 Ⅲ-6. 현재 사는 집의 전반적인 상태(3)	101
그림 Ⅲ-7.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기타 의견)	102
그림 Ⅲ-8.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환경(1)	104
그림 Ⅲ-9.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환경(2)	105
그림 Ⅲ-10.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환경(3)	106
그림 Ⅲ-11. 집과 동네에 대한 만족도	107
그림 Ⅲ-12. 나와 함께 방(공간)을 사용하는 사람(기타의견)	111
그림 Ⅲ-13. 집 구조나 환경으로 인한 생각이나 행동	123
그림 Ⅲ-14.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신체적·정신적 건강	134
그림 Ⅲ-15. 우울 및 불안, 자아존중감	135
그림 Ⅲ-16. 아동박탈지수 비교	141
그림 Ⅲ-17. 박탈지수 항목별 결핍 응답 비율(1)	143
그림 Ⅲ-18. 박탈지수 항목별 결핍 응답 비율(2)	144
그림 Ⅲ-19. 쉼터 퇴소 후 주거 계획(기타 의견)	147
그림 Ⅲ-20.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가구의 지역사회통합과 참여 수준(1)	161

그림 Ⅲ-21.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가구의 지역사회통합과 참여 수준(2)	161
그림 V-1. 아동·청소년의 사회배제 예방을 위한 주거권 보장 정책방향(안)	232
그림 V-2.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1)	233
그림 V-3.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2)	235
그림 V-4.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3)	237
그림 V-5. 마이홈포털의 주거복지수준 자가진단 예시	257
그림 V-6. 주거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모형(안)	259
그림 V-7. 위기청소년 주거준비 지원과 주거 우선지원 비교	268



# ○ —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4. 연구추진체계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 정부에서 지향하는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는 ‘모든 국민이 빈곤과 같은 소득 뿐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삶의 제반 영역에서 배제되지 않는 통합’을 강조한다. 이에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OECD, ILO 등 국제기구와 EU를 포함한 개별 국가에서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는 ‘사회배제(Social Exclusion)’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배제를 논할 때는 다면적인 영역에서의 권리 박탈 과정과 역동성, 참여와 사회통합, 배제된 집단의 권리 회복을 통한 배제 극복 문제를 함께 다루기 때문에 기존의 빈곤 개념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의 사회배제 경험은 건강한 성인기 이행과 탈 빈곤을 어렵게 하고 전 생애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이에 고용, 주거, 건강·보건, 비행, 사회적 관계 등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진단과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 기존 연구에서도 사회배제의 관점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강영배, 2009; 이중섭, 이용교, 2009; 김연주, 2011; 김소은, 정익중, 정수정, 2016; 배정은, 2016; 신근화, 2017; 이윤정, 2017). 특히, 사회배제는 ‘배제된 자 스스로가 주체’라는 관점을 견지하기 때문에 사회권의 회복 논의와도 맞닿아

1) 이 장은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김승경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있어 '포용사회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방향과 세부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대표적인 지위제로(status zero)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다차원적인 결핍과 박탈을 사회배제의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한 정책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사회권과 함께 인권도 사회배제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사회배제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 영역에서 최근에는 비로소 주목하기 시작한 부분이 바로 '주거권(The Right to Adequate Housing)'이다. 모든 인간은 보편적 권리로 적절히 주거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의 주거권에 대하여 "국가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혹은 보호자를 돕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가져야 하며, 특히 영양과 옷, 주거와 관련된 경우 필요 시 물질적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제27조 제3항)"고 규정하였다.

주거권을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한 것은 '48년 유엔세계인권선언과 '66년 유엔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이 대표적이다. 특히, 유엔아동권리선언(1959)에 이어 유엔헤비타트(UN Habitat, 2015)는 "아동의 건강, 교육, 성장·발달, 전반적인 인권과 복지 수준은 그들이 거주하는 주거의 상태에 달려있고, 노숙(homeless)이나 강제퇴거 등에 따른 적절한 주거로부터의 배제는 건강, 교육,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에서 아동의 인권 신장과 향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UN Habitat, 2015, p.18). 또한 "부적절한 주거 상태가 아동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주거권은 보편적인 권리(universal character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로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제한 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UN Habitat, 2015, p.19).

대한민국은 '91년에 유엔 회원국이 되었고 협약에 비준하여 동 협약들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또한 '15년에는 국내법 가운데 '주거권'을 최초로 명문화한 「주거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주거 문제에 있어서 아동·청

소년은 권리의 주체라기보다 ‘가구원’의 지위만 인정받아 주거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원 가정에서 분리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은 사실상 주거권의 논의대상에서조차 제외되었다.

특히 비적정주거 즉, 주거빈곤 상태가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행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김진희, 이상록, 2012; 임세희, 김선숙, 2016) 아동주거빈곤은 단순히 빈곤이나 복지의 하위 영역이 아닌 별도의 인권 영역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임세희(2019)는 2차 자료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아동의 주거빈곤 기간이 길수록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관련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임세희, 2019, p.7). 또한 이태진(2019)도 “아동의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개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부부중심에서 아동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주택수당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태진, 2019, p.51).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히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10.24., <https://www.molit.go.kr>, 2020.2.2. 인출). 이번 대책은 국가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주거권 보장 주체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정책수단을 강구한 최초의 정부대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청년층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확대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지연, 2019.11.25., 파이낸셜 뉴스, 2020.2.2. 인출).

다만 이번 대책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내 방이 있는 집”을 권리로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주거공간에서 침실분리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등 실증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 ‘비주택’ 범위에 시설거주(out-of-home care services) 하에 있거나 사실상 노숙상태에 있는 가정 밖 아동·청소년이 제외되어 있어 대책의 추진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요구된다(국토교

통부 보도자료, 2019.12.5., <https://www.molit.go.kr>, 2020.2.2. 인출).

한편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인 당사자의 관점에 서도 주거환경을 점검·평가하고, 이러한 주거환경이 성장·발달과 사회배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적인 개입지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적절한 주거환경에 살 권리는 결국 인권이므로 집(원가정)이 아닌 시설에 거주한다고 해서 예외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시설거주 아동·청소년을 논의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가수준의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노력은 이들의 보편적인 권리 영역에 직·간접적이고 다면적인 개선을 도모하여 사회배제를 예방하고 인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한다’는 관점과 전제에서 출발하였다(그림 1-1). 특히 이 연구는 사회배제의 다차원적인 영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에 초점을 맞춰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미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비적정 주거가 이들의 사회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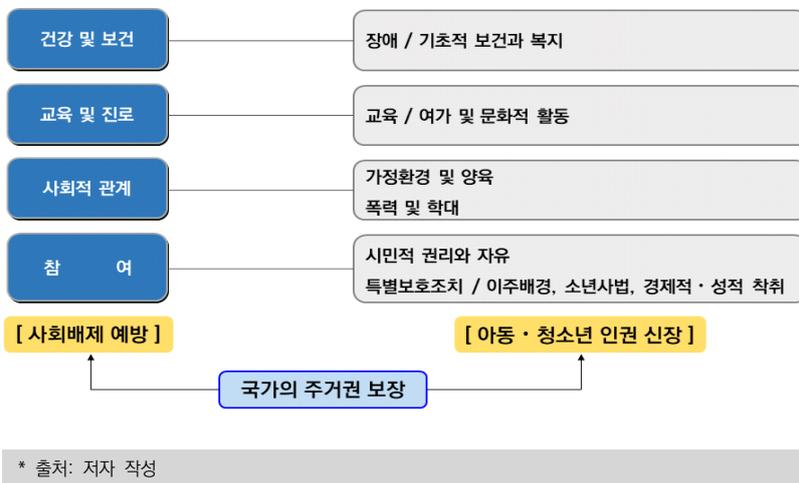


그림 1-1. 본 연구의 관점 : 주거권 보장을 통한 사회배제 예방

이와 함께 이 연구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생활

하거나 (위탁)보호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을 ‘우선 주거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즉, 시설은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거취약계층에 준하여 적절한 주거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들이 아동·청소년 주거권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통한 사회배제를 예방하는 정책추진의 근거(evidence)를 제시하고, 지난 해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 주거권 보장 대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정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빈곤이 아닌 사회배제의 관점을 기반으로, 그간 아동·청소년의 고유한 권리로써 접근이 미흡했던 주거권 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국가정책 의제의 주요내용과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영역(안)의 예시를 요약한 것이 표 I-1이다.

표 I-1. 본 연구 관련 국가정책의제와 주요 현안

국정과제(주관부처) <sup>1)</sup>	주요내용 <sup>1)</sup>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영역(안)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방향] 주거취약계층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 [수단]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가구 지원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 [수단] 주거급여제도 개선 등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국토부)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 [방향]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수단] 지원주택 공급 확대 등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 학대아동 등 공공중심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 [방향] ‘주거방임’ 발굴 및 지원 강화 • [수단] 아동복지법 상 개입 근거 강화 • [수단] 주거방임에 공격개입 강화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생애주기별 위기에서 예방·보호·치료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 [방향]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보장 • [수단] 청소년쉼터 침실기준 등 개선 • [수단] 시설 입소 이외 청소년지원주택 등 주거지원 수단 확대

\* 주: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7). p.78, p.79, p.81, p.86를 재구성함.

연구결과를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정부에 권고한 ‘아동의 주거빈곤 문제를 사정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것’, ‘가정환경 상실 아동에 대하여 탈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과 관련하여 진단 및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 주거권은 성장·발달의 전제가 되는 기본 인권이며, 이들은 주거권 향유에 있어 ‘주거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추진해야 할 합당한 정책수단을 제안함으로써 후속적인 사회·경제·행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며, 학술적인 논의를 보다 활성화할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포용국가 아동·청소년정책에서 주거빈곤 아동·청소년의 사안에 보다 집중하고 이들의 사회배제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미래사회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 2. 연구내용

### 1)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

먼저 아동·청소년 주거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핵심 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근의 국내·외 연구와 정책 자료를 검토하였다. 특히 기존 주거지원 제도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 및 시설거주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관련 법령과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안) 개발

정부에서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확인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영역과 요소를 중심으로 지표(안)를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목적에 따라 사회배제 영역과 배제의 결과, 아동·청소년의 인권 영역, 그리고 사회권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였으며 본 연구의 준거틀을 간략하게 도식화 한 것이 표 I-2이다. 선행연구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와 정부의 의무 확인용 지표로 구분하였고, 각각 일반아동·청소년과 시설거주아동·청소년용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표 I-2.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 준거틀(안)

배제 영역	배제 결과	아동권리 영역	아동·청소년 주거권 배제 결과(예시)	사회권 원칙	
심리	고립	생존권	· 높은 우울·불안, 낮은 자존감, 차별 경험, 높은 스트레스, 낮은 수면의 질, 의미 있는 활동 참여 감소, 매체 의존 증가, 낮은 진로성숙도 · 휴식·놀이·학습 공간 부족, 재해 및 사고 위험 증가, 가족 간 갈등·폭력·학대의 직·간접 피해 경험 증가 · 사생활 미보장, 원 가정에서 아동이 이탈할 위험 증가 등	육구 충족	· 국가 책임(공공성) · 사회보장의 보편성 · 급여의 적정성 · 정책 결정과 서비스 전달과정에 참여 등
사회	낙인	발달권		책임, 연대	
경제	주변화	보호권		법적 규제, 분배정의	
정치	의존	참여권		참여, 평등	

\* 출처: 저자 작성

## 3)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실태 분석

그간 아동·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연구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주로 2차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권의 권리 주체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주거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원 가정에서 분리되

어 시설거주 하에 있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종료아동이 주거권의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들의 주거 관련 경험과 지원 요구를 별도로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주거 및 지역사회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청소년의 비적정주거환경이 사회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 4)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방안 도출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이 주거권의 권리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주거권과 관련된 쟁점 및 현안과 각 영역별 세부추진과제들 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정과제에 따른 추진과제(안)을 제시하였다.

### 3.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아동·청소년의 사회배제 및 주거권의 개념과 핵심요소를 명확히 하고, 국내·외 정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과밀, 필수설비미달, 구조 성능환경미달,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청소년가구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주거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를 근거로 하는 법정조사(승인번호 제116031호)로, 2017년 이후 매년 약 6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표본조사이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6.1., <https://www.molit.go.kr>, 2020.12.8. 인출). 조사항목은 주택 및 주거환경, 주거의식 및 주거계획,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가구에 관한 사항 및 배경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2)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실태조사

### (1) 일반아동·청소년

우리나라 일반아동·청소년의 사회배제 실태 및 주거권 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이들이 지각하는 주거상태가 사회배제와 인권 영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모집단은 2020년 조사시점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이며, 2019년 교육기본통계를 표집틀로 하여 목표표본수를 총 6,000명으로 설정한 후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sup>2)</sup> 조사는 연구진이 개발한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하였으며, '2020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6~9월 중 전문조사업체가 실사를 진행하였다(승인번호 202005-HR-고유-007).<sup>3)</sup>

먼저 주거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주거와 관련한 보고서와 논문은 물론, 각종 실태조사 자료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와 조사표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설문지 초안을 작성한 후,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조사표 검토를 요청하였다. 전문가 검토 의견에 따라 연구진이 설문지를 수정·보완 후, 설문지 문항 및 선택지의 적절성 여부, 난이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에게 2차 조사표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수정·보완된 설문지는 조사전문가가 영역별 문항의 배치,

---

2) 본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도 통합조사(총 5개 과제 참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실사는 전문조사기관이 담당하고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표본설계 보고서를 집필하였다. 이에 모집단의 특성을 포함한 표본설계 및 실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통합조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3) 일반아동·청소년 조사는 학교조사로 이루어졌으며 COVID-19의 여파로 대면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게 수행하였다.

난이도, 문항의 표현 및 어휘의 적절성, 조사 소요시간, 응답로직 등을 검토하였다. 이에 연구진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항의 난이도, 표현 및 어휘의 적절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최종 조사표를 확정하였다.

일반아동·청소년용 조사도구의 경우 초등학생용과 중·고등학생용 등 2종으로 개발되었다. 조사문항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초등학생용의 경우 난이도를 고려하여 일부 문항(문4)의 하위문항을 축소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사영역은 공통적으로 현재 거주 중인 주택 및 동네의 상태, 주거 및 가족 관련 생애 경험, 일상생활 및 심리상태·가치관, 사회인구학적 배경 등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주요 조사내용은 표 I-3과 같다.

#### ① 현재 거주 중인 주택 및 동네의 상태

아동·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종류, 위치, 점유형태,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 주택의 전반적인 구조 및 환경 등을 살펴보았다. 적절한 주거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성별이나 발달단계, 가족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인간의 건강한 발달이 가능한 주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환경이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며 가족의 특성이나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주택의 상태로 인해 청소년들이 친구들로부터 차별이나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안전도, 편의성, 쾌적성과 더불어 동네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구성원 및 환경의 무질서에 대해 조사하였다.

## ② 주거 및 가족 관련 생애 경험

청소년들이 태어나서 현재까지 성장해오는 과정에 경험하는 주거빈곤은 아동·청소년의 부정적인 발달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밀하거나 부적절한 주거 구조는 인적자본 형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제한하거나 왜곡할 수 있고(임세희, 2010, p.381), 아동·청소년은 적절하지 않은 주거로 인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 부터의 폭력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출에 대한 고민이나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잦은 이사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주거 및 가족 관련 생애 경험 영역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사나 전학의 경험 여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부, 주거환경으로 인한 가출 고민 및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와 더불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 부터의 폭력 피해경험이 있는지 등과 더불어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③ 일상생활 및 심리상태, 가치관

아동·청소년의 주거상태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이나 인권의 향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신만의 공간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친구를 집에 데려오지 않는 등 사회적 네트워크의 기회를 줄이면서 심리적인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학업보다는 TV시청이나 인터넷 사용 등과 같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부적절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질병이나 사고 발생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 아토피·천식·비염 여부, 키·몸무게, 충분한 수면 여부 등 건강 및 발달 상태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 우울·불안·자존감, 진로성숙도 등 심리적 상태, 활동시간, 학교생활, 학교생활만족도 등의 일상생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 주택소유에 대한 인식 등의 가치관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니세프 아동박탈지수(Child deprivation

index)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건에 대한 결핍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④ 인구사회학적 배경

인구사회학적 배경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별, 가족구성원, 장애 여부, 부모의 학력, 가정의 경제적 수준, 조사대상 청소년의 이주배경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표 1-3. 설문조사 영역별 주요 조사 항목 및 문항개발 근거

조사영역	조사 항목	일반청소년		문항개발근거
		초등	중·고등	
현재 거주 중인 주택 및 동네의 상태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종류	문1	문1	• 강미나 외(2019) 문항을 수정·보완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종류로 인한 차별경험	문1-1	문1-1	• 김승경, 최정원, 강지명 (2016) 문항 참조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위치	문2	문2	• 최은영 외(2017) 문항을 수정·보완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위치로 인한 차별 경험	문2-1	문2-1	• 연구진 개발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	문3	문3	• 강미나 외(2019) 문항을 수정·보완
	- 공공임대주택 여부	문3-1	문3-1	• 연구진 개발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로 인한 차별경험	문3-2	문3-2	• 김승경 외(2016) 문항 참조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내부시설(구조, 사용하는 사람, 내부시설 설치 여부)	문4	문4	• 강미나 외(2019) 및 김태완 외(2018) 문항 참조 • 단, 초등학교생용의 경우 하위 문항 중 상·하수도 시설 문항의 난이도 문제로 제외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넓이(면적)	문5	문5	• 임세희(2019) 문항을 수정·보완
	• 혼자 사용하는 방이 있는지 여부	문6	문6	• 연구진 개발
	- 방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의 수	문6-1	문6-1	• 연구진 개발
	- 주로 잠 자거나 공부를 하는 곳	문6-1-1	문6-1-1	• 연구진 개발

조사영역	조사 항목	일반청소년		문항개발근거
		초등	중·고등	
	- 방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	문6-2	문6-2	• 연구진 개발
	- 방을 함께 사용하는 이성의 형제 자매가 만8세 이상인지 여부	문6-2-1	문6-2-1	• 연구진 개발
	- 내가 사용하는 방이 충분히 넓은 공간인지 여부	6-3	6-3	• 연구진 개발
	- 내가 사용하는 방이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인지 여부	6-4	6-4	• 임희진, 백혜정, 김동식 (2019) 문항 참조
	•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구 유무	문7	문7	• 연구진 개발
	•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 기간	문8	문8	• 통계청(2015) 2015 인구 주택 총조사: 일반조사표 문항을 수정·보완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반적 상태	문9	문9	• 강미나 외(2019) 및 최은영 외(2017) 문항을 수정·보완
	•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문10	문10	• 연구진 개발
	•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전반적인 환경	문11	문11	•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2019), 최은영 외(2017), 임세희(2019), 김진석(2012) 문항을 참조하여 연구진 개발
	•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문12	문12	• 강미나 외(2019) 문항을 수정·보완
주거 및 가족관련 생애경험	• 이사경험	문13	문13	• 강미나 외(2019) 문항을 수정·보완
	-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사한 횟수	문13-1	문13-1	• 강미나 외(2019) 문항을 수정·보완
	- 집세로 인한, 원하지 않은 이사 여부	문13-2	문13-2	• 최은영 외(2017) 문항을 수정·보완
	- 이사로 인한 전학 횟수	문13-3	문13-3	• 연구진 개발
	- 이사에 대한 나의 의견 존중 여부	문13-4	문13-4	• 연구진 개발
	• 경제적 어려움 경험	문14	문14	• 김태완 외(2018), 최은영 외(2018), 임세희(2019), 한국행정연구원(2020) 문항

조사영역	조사 항목	일반청소년		문항개발근거
		초등	중·고등	
				을 수정·보완
	• 부모로부터의 학대 피해 경험	문15	문15	• 연구진 개발
	•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문16	문16	•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2017) 문항 참조
	•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구조나 환경에 대한 생각	문17	문17	• 연구진 개발
	• 주변사람들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문18	문18	• 김지경, 연보라, 정은진(2018) 문항을 수정·보완
	• 가출 경험	문19	문19	• 김영지 외(2019) 문항을 수정·보완
	- 주거환경으로 인한 가출 경험	문19-1	문19-1	• 연구진 개발
	• 가출에 대한 고민	문20	문20	• 김영지 외(2019) 문항을 수정·보완
- 주거환경으로 인한 가출 고민	문20-1	문20-1	• 연구진 개발	
일상생활 및 심리 상태, 가치관	• 삶에 대한 만족도	문21	문21	• 백혜정 외(2017) 문항 참조
	•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	문22	문22	• 임희진 외(2019) 문항 참조
	• 건강상태(신체적/심리적)	문23	문23	• 백혜정 외(2017) 문항 참조
	• 지난 한 학기 동안 결석일수	문24	문24	• 임세희(2019) 문항 참조
	• 지난 1년 동안 아토피/천식/비염 여부	문25	문25	• 임세희(2019) 문항 참조
	• 키/몸무게	문26	문26	• 연구진 개발
	• 충분한 수면 여부	문27	문27	• 김영지 외(2019) 문항 참조
	- 주거환경에 따른 수면 방해 여부	문27-1	문27-1	• 연구진 개발
	• 우울/불안/자아존중감	문28	문28	• 김영지 외(2019) 문항 사용
	• 진로성숙도	문29	문29	• 백혜정 외(2017) 문항 사용
	• 활동시간	문30	문30	• 백혜정 외(2017) 문항 참조
	• 학교생활	문31	문31	• 김영지 외(2019) 문항 참조
	• 학교생활만족도	문32	문32	• 김영지 외(2019) 문항 참조
	•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	문33	문33	• UN 아동권리협약에 포함된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토대로 문항 개발
	• 주택 보유 의식	문34	문34	• 강미나 외(2019) 문항 참조

조사영역	조사 항목	일반청소년		문항개발근거
		초등	중·고등	
	-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	문34-1	문34-1	
	-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문34-2	문34-2	
	• 아동박탈지수	문35	문35	• 류정희(2019)에서 유니세프 아동박탈지수 문항 수정·보완
인구 사회학적 배경변인	• 성별	문36	문36	• 연구진 개발
	•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과 수	문37	문37	• 연구진 개발
	• 장애 여부	문38	문38	• 연구진 개발
	-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환경 여부	문38-1	문38-1	• 연구진 개발
	• 부모님의 최종학력	문39	문39	• 연구진 개발
	• 가정의 경제적 수준	문40	문40	• 연구진 개발
	• 나/부모님의 출생국가(이주배경)	문41	문41	• 연구진 개발

## (2) 비주택거주 아동·청소년 : 시설거주 아동·청소년

비주택거주 아동·청소년은 실태조사와 2차 자료 분석을 통해서도 주거환경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비주택거주 아동·청소년 가운데 시설거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회의를 거쳐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대표적인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일부 문항에 대하여 일반아동·청소년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표를 설계하였다. 청소년쉼터는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인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달리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기관’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시설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시설 퇴소 시 공적 주거지원도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조사는 연구진이 개발한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하였으며 ‘2020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7~8월 중 연구진이 실

사와 자료수집 일체를 진행하였다(승인번호 202005-HR-고유-007).

조사 모집단은 (단기, 중장기)청소년쉼터 입소자이며 표집틀이 부재하여 목표 표본수를 300명으로 설정하고 비확률표집 방법으로 조사대상을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복지시설 지원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의 협조 하에 해당 시설에 조사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시설별로 조사동의 및 참여 희망 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시설거주 아동·청소년용 조사도구 역시 일반아동·청소년용과 동일하게 문항의 적절성 여부와 조사문항 및 선택지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개발되었다. 시설거주 아동·청소년용 설문지의 경우 대체로 일반아동·청소년용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긴 하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집이 아닌 청소년쉼터(시설)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퇴소 이후의 주거 계획 및 주거와 관련한 요구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설문조사의 영역은 공통적으로 현재 거주 중인 주택과 동네의 상태, 주거 및 가족 관련 생애 경험, 일상생활 및 심리상태·가치관,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아동·청소년용의 경우 퇴소 이후 주거 계획 및 욕구(시설청소년용) 영역이 추가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적인 문항의 흐름과 내용은 일반아동·청소년용 설문지와 유사하나, 차이가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영역별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표 I-4와 같다.

#### ① 현재 거주 중인 주택 및 동네의 상태

시설거주 아동·청소년용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인 곳이 가정이 아닌 청소년쉼터이기 때문에 현재 거주 중인 주택 및 동네의 상태는 쉼터 환경에 준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주거환경이 일반아동·청소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의 환경이 최저주거환경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 ② 주거 및 가족 관련 생애 경험

주거 및 가족 관련 생애 경험은 일반아동·청소년 문항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다만, 일반아동·청소년은 가출경험 및 가출에 대한 고민을 질문한 것에 비해, 시설 거주 아동·청소년은 이미 가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한 기간과 현재 거주 중인 쉼터에서 거주한 기간, 쉼터 입소 전 거주지와 거주기간에 대해 질문하여 가출로 인해 불안정한 거주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 ③ 일상생활 및 심리상태, 가치관

일상생활 및 심리상태, 가치관은 일반아동·청소년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 ④ 퇴소 이후 주거계획 및 욕구

청소년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일반아동·청소년과는 달리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해야 한다. 이에 청소년쉼터 퇴소를 앞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퇴소 이후 생활에 대한 걱정, 퇴소 이후 거주지에 대한 고민,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여부, 타인과의 공간 공유에 대한 생각, 선호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퇴소 이후 선호하는 주거상당·지원방법, 퇴소 이후 주거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쉼터 퇴소 청소년의 주거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 ⑤ 인구사회학적 배경

인구사회학적 배경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별, 가족구성원, 장애 여부, 부모의 학력, 가정의 경제적 수준, 조사대상 청소년의 이주배경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표 1-4. 설문조사 영역별 주요 조사 항목 및 문항개발 근거: 시설거주 아동·청소년

조사영역	조사 항목	시설 거주 청소년	문항개발근거
현재 거주 중 인 주택 의 상태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종류	문1	• 강미나 외(2019) 문항 수정·보완
	• 쉼터에 거주 중인 청소년의 수	문2	• 연구진 개발
	- 쉼터에서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의 수	문2-1	• 연구진 개발
	• 방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의 수	문3	• 연구진 개발
	• 내가 사용하는 방이 충분히 넓은 공간인지 여부	문3-1	• 연구진 개발
	- 내가 사용하는 방이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인지 여부	문3-2	• 임희진 외(2019) 문항 참조
	-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구 유무	문3-3	• 연구진 개발
	• 쉼터 거주로 인한 차별 경험	문4	• 연구진 개발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반적인 상태	문5	• 강미나 외(2019) 및 최은영 외(2017) 문항 수정·보완
현재 주거환경 (동네)	•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문6	• 연구진 개발
	•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전반적인 환경	문7	• 김영지 외(2019), 최은영 외(2017), 임세희(2019), 김진석(2012) 문항 수정·보완
주거 및 가족관련 생애경험	•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문8	• 강미나 외(2019) 문항 수정·보완
	• 이사경험	문9	• 강미나 외(2019) 문항 수정·보완
	-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사한 횟수	문9-1	• 강미나 외(2019) 문항 참조
	- 집세로 인한 원하지 않은 이사 여부	문9-2	• 최은영 외(2017) 문항 참조
	- 이사로 인한 전학 횟수	문9-3	• 연구진 개발
	- 이사에 대한 나의 의견 존중 여부	문9-4	• 연구진 개발
	• 경제적 어려움 경험	문10	• 김태완 외(2018), 최은영 외(2018), 임세희(2019), 한국행정연구원(2020) 문항 수정·보완
	• 부모로부터의 학대 피해 경험	문11	• 연구진 개발
•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문12	• 백혜정 외(2017) 문항 참조	

조사영역	조사 항목	시설 거주 청소년	문항개발근거
	•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구조나 환경에 대한 생각	문13	• 연구진 개발
	• 주변사람들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문14	• 김지경 외(2018) 문항 수정·보완
	•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한 기간	문15	• 연구진 개발
	- 주거환경으로 인한 가출 경험	문15-1	• 연구진 개발
	- 현재 쉼터에 거주한 기간	문15-2	• 연구진 개발
	- 쉼터 입소 전 거주지	문15-3	• 연구진 개발
일상생활 및 심리 상태, 가치관	• 삶에 대한 만족도	문16	• 백혜정 외(2017) 문항 참조
	•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	문17	• 임희진 외(2019) 문항 참조
	• 건강상태(신체적/심리적)	문18	• 백혜정 외(2017) 문항 참조
	• 지난 한 학기 동안 결석일수	문19	• 임세희(2019) 문항 참조
	• 지난 1년 동안 아토피/천식/비염 여부	문20	• 임세희(2019) 문항 참조
	• 키/몸무게	문21	• 연구진 개발
	• 충분한 수면 여부	문22	• 연구진 개발
	- 주거환경으로 인한 수면 방해 여부	문22-1	• 연구진 개발
	• 우울/불안/자아존중감	문23	• 김영지 외(2019) 문항 사용
	• 진로성숙도	문24	• 백혜정 외(2017) 문항 사용
	• 활동시간	문25	• 연구진 개발
	• 학교생활	문26	• 김영지 외(2019) 문항 사용
	• 학교생활만족도	문27	• 김영지 외(2019) 문항 수정·보완
	•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	문28	• UN 아동권리협약에 포함된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토대로 문항 개발
	• 주택 보유 의식	문29	• 강미나 외(2019) 문항 참조
-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	문29-1		
-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문29-2		
	• 아동박탈지수	문30	• 류정희(2019, 겨울호)에서 유니세프 아동박탈지수 문항 수정·보완
퇴소 이후 주거계획	• 퇴소 이후 걱정	문31	• 정선욱, 강현주, 김진숙, 정익중(2018) 문항 정·보완
	• 퇴소 이후 거주지 고려 여부	문32	• 연구진 개발

조사영역	조사 항목	시설 거주 청소년	문항개발근거
및 육구	- 퇴소 이후 거주지	문32-1	• 연구진 개발
	- 퇴소 이후 거주지 선택 시 중요한 점	문32-2	• 연구진 개발
	•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여부	문33	• 임덕영, 이경애, 진미윤, 이의중 (2017) 문항을 수정·보완
	-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이유	문33-1	• 최은영 외(2017) 문항 수정·보완
	- 타인과의 공간 공유 가능 여부	문33-2	• 강미나 외(2019) 문항 수정·보완
	- 타인과의 공간 공유 가능 이유	문33-3	• 최은영 외(2017), 임덕영 외 (2017) 문항 수정·보완
	- 타인과 공간 공유 불가능 이유	문33-4	• 최은영 외(2017), 임덕영 외 (2017) 문항 수정·보완
	- 선호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문33-5	• 연구진 개발
	- 공공임대주택 거주 희망 기간	문33-6	• 연구진 개발
	- 공공임대주택 입주 비희망 이유	문33-7	• 최은영 외(2017) 문항 수정·보완
	• 퇴소 후 선호하는 주거 상담·지원 방법	문34	• 강미나 외(2019) 문항 수정·보완
• 퇴소 이후 주거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내용	문35	• 정선옥 외(2018) 문항 수정·보완	
사회 인구학적 배경변인	• 성별	문36	• 연구진 개발
	• 출생연도	문37	• 연구진 개발
	• 장애 여부	문38	• 연구진 개발
	- 장애를 가진 자신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환경 여부	문38-1	• 연구진 개발
	• 부모님의 최종학력	문39	• 연구진 개발
	• 가정의 경제적 수준	문40	• 연구진 개발
	• 나/부모님의 출생국가(이주배경)	문41	• 연구진 개발

### 3) 심층면접조사<sup>4)</sup>

비주택거주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이 이들의 삶 전반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다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청소년쉼터 퇴소 후 주거가 불안정한 청소년의 주거 및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6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자를 심층면접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연구진이 개발한 반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하였다. 조사표는 '2020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완료하였고(승인번호 202005-HR-고유-007), 9월 중 연구진이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보호종료 후 임대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인식과 주거지원 이후 변화된 부분, 현재 생활과 미래에 대한 생각, 주거지원 서비스 만족도와 지원 요구 등을 파악하여 지원의 효과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심층면접조사의 개요는 표 I-5와 같다.

표 I-5. 심층면접조사(FGI) 개요

주요 요소	내용
조사대상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임대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자(총 8명)
선정방법	연구목적에 따른 유의표집
조사내용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주거지원 후 변화된 부분, 주거지원 서비스 만족도, 주거지원 서비스 추가 요구 등
조사방법	초점집단면접(FGI)
조사시기	2020년 9월
비고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협업 추진

4) 심층면접조사는 연구진이 직접 대면조사하였고 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게 수행하였다.

#### 4) 전문가 의견조사(AHP)

아동·청소년 주거권 관련 쟁점을 유목화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tylytic Hierarchy, AHP)을 활용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연구진이 개발한 조사표를 활용하여 총 2차례에 걸쳐 연구진이 직접 유선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안) 개발을 목적으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델파이조사를 병행하였다.

1차 조사는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주거권의 개념 정의, 주거권 배제 결과에 대한 사례, 국가차원의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의 장기적 목표, 시설거주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및 추진방안,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 확충 방안 등을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안)와 관련하여 연구진이 개발한 지표에 대한 의견과 각 지표별 중요성과 용이성을 평가하였다.

2차 조사는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하여, 1차 조사 대상자 전수를 대상으로 유목화 한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응답내용에 대한 재배치와 조정을 통해 정책영역별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1·2차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는 아동·청소년·주거복지정책 분야 학계·현장 전문가 총 12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진이 개발한 조사표는 ‘2020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완료하였다(202005-HR-고유-007). 전문가 의견조사(AHP)의 개요는 표 I-6과 같다.

표 I -6. 전문가 의견조사(AHP) 주요 내용

주요 요소	내 용
조사대상 전문가	청소년 분야 현장·학계·정책전문가 12명
선정방법	아동·청소년·주거복지정책 분야 전문가 중 연구진이 임의 선정
조사내용	아동·청소년 사회배제 예방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쟁점과 정책과제 도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 분석
조사방법	이메일 활용 온라인 조사
조사시기	1차(5월), 2차(5~6월)
비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완료

5) 기타 연구방법 : 추진과제의 정책화 과정

(1) 전문가 자문<sup>5)</sup>

연구 진행 단계별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특히 연구 내용과 범위 설정, 아동·청소년 주거권 관련 현안 및 쟁점 도출, 조사표 개발과 정책과제 도출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문을 구하였다(표 I -7).

표 I -7. 전문가 자문 개요

횟수	자문영역	자문진
1	연구 내용 및 범위 등 연구 설계	학계, 현장, 정책전문가
2	정책 현안 및 이슈 검토	
3	설문조사 문항(안) 검토	
4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과제 도출	

5) 전문가 자문을 대면으로 진행한 경우 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게 수행하였다.

## (2)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 설계 및 추진과제 개발과정에서 정책담당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을 목적으로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표 I-8).

표 I-8.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요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일시
1차	정책 주요 현안 및 연구 내용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2월 25일
2차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2021년 아동·청소년 주거권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	11월 19일

## (3) 콜로키움<sup>6)</sup>

연구의 설계단계에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주거권과 지표 개발 방향’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콜로키움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는 연구내용에 반영하였고, 아동·청소년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사항목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표 I-9).

표 I-9. 콜로키움 개요

횟수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일시
1회	아동·청소년 주거권과 지표 개발 방향	학계·현장전문가 연구진	4월 7일

6) 콜로키움은 발제자와 토론자, 연구진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등 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예방 수칙 준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게 수행하였다.

(4) 정책포럼 :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 토론회<sup>7)</sup>

본 연구의 일환으로 연구성과 확산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과제(안)의 정책화를 모색하고자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일부 발제하고 지정토론과 일반인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여 결론에 반영하였다. 특히 본 포럼은 ‘세계 주거의 날’<sup>8)</sup>을 맞아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현안을 진단하고 사안의 공론화를 통해 정책적 개입지점을 확인하고자 유관 기관들과 공동 (온라인 생중계)토론회 형태로 개최하였다(표 I-10).

표 I-10. 정책포럼 개요

횟수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일시
1회	“세계 주거의 날 맞이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시 주거복지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하우징랩 공동 주관 및 개최	발표자, 토론자 (온라인 생중계)	10월 5일

7) 정책포럼은 발제자와 토론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실시간 온라인 송출을 하는 등 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게 수행하였다.

8) ‘세계 주거의 날’은 누구나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기 위해 1986년 유엔이 지정한 국제기념일로 매월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다. 토론회는 연구 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연구진이 발제자로 참여하였고, 위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본 보고서의 주요 결과 일부를 사전에 공유하였음을 밝혀둔다.

#### 4. 연구추진체계

연구목적에 따른 주요 연구방법과 추진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I-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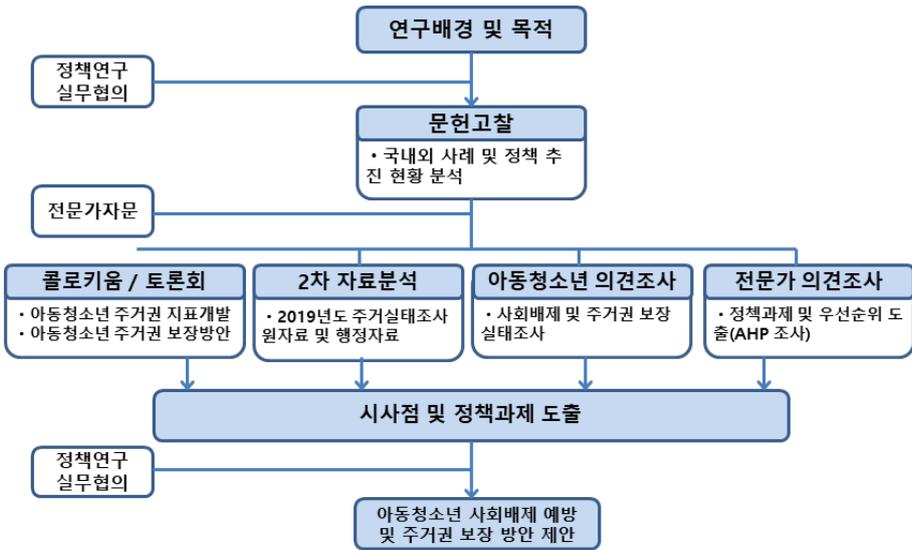


그림 I-2. 연구 추진 절차

## ○ ————— 제 II 장 논의의 배경

- 1. 사회배제 및 주거권의 개념과  
관계
- 2. 아동·청소년 주거권 관련  
해외동향과 국내 법제 현황
- 3. 소결 및 시사점



## 1. 사회배제 및 주거권의 개념과 관계

### 1) 아동·청소년과 사회배제

사회적 배제 즉, 사회배제는 '60년대 프랑스에서 빈곤계층을 칭하는 행정용어로 '배제된 자(the excluded)'를 사용하면서 시작되었고, '80년대 유럽연합(EU)에서 정책지침으로 공식화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사회통합을 위한 이론적 기초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70년대 중반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예전에 없던 대규모의 장기실업과 노숙, 빈곤층이 등장하면서 사회구조적 변화를 통해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신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특히, '75년 시라크 정부하의 사회부장관이었던 레네 르느와르(René Lenoir)가 '배제'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는데, 그는 당시 프랑스 국민의 약 10%가 배제된 자이며 이들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자살 가능자, 노약자, 피학대아동, 비행청소년, 한부모가구, 반사회적 인사, 기타 사회부적응자 등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최선미, 2001, pp.11-12).

이후 '80년대에 접어들어 장기실업과 근로빈곤층(work poor)이 증가하면서 사회배제는 '89년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에서 공식적 용어로 채택되었다. 이후 '97년 영국에서 사회배제단(Social Exclusion Unit, SEU) 출범, 2000년

9) 이 장은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김승경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임세희 교수(서울사이버대학교),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의 원고를 포함하였다.

리스본 정상회담, 2001년 니스(Nice)에서 발표된 국가행동계획, 사회배제TF 등을 통해 서구 유럽 전역에서 복지국가 위기에 생성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공식적 용어로 자리 잡게 된다(강신욱, 김안나, 박능후, 김은희, 유진영, 2005; 조윤화, 이소원, 왕영민, 2019, p.17).<sup>10)</sup>

이와 같이 사회배제는 그간의 빈곤 개념과 달리 개인과 사회구조라는 관계적 이슈를 기반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상황을 권리의 차원에서 해석한다. 또한 배제되는 과정과 결과로서의 상태 모두를 포괄하는 역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필요에 따라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견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한 배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실증적 자료도 부족하다(강영배, 2009, p.10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노숙인 문제를 주택 및 주거정책으로부터의 배제(housing exclusion)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주거와 공간 문제도 사회배제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강영배(2009)도 일본의 사례를 들어 20대 청소년은 ‘주거로부터 배제’되어 있고 동시에 ‘사회참여’로부터도 배제되어 있으며 본인 스스로가 빈곤상태라 여기는 ‘주관적 빈곤’ 정도도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한 바 있다.

같은 자료에서 그는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주거의 상실은 거주할 공간의 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안전 등 생활 전반에 있어 안전망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사회배제 관점에서 청소년의 주거문제를 ‘장(場)’과 ‘관계(network)’ 측면에서 조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강영배, 2009, p.114). 결국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사회배제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에서 비롯되는 현상이자 이러한 요인들의 격차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주거권, 시민권, 노동권, 참여권 등 근대사회에 있어 사회권의 차단과 불평등의 결과로 규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배제를 ‘아동·청소년의 권리 영역 전반에 있어 자원 및 서비스의 부족과 결핍, 다차원적인 불이익(disadvantage)을

---

10) 사회적 배제 개념의 등장배경 및 역사적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Giddens, 1998; 최선미, 2001; 강신욱 외, 2005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포함하여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sup>11)</sup>

결국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있어 사회배제의 관점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사회구조적인 원인 진단, 또는 배제의 과정 및 결과로서 ‘과연 어떤 아동·청소년이 배제 상태에 놓이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표 II-1과 같이 영국의 경우 사회배제를 포용, 연대, 사회통합과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부모의 장기실업 등 빈곤가구나 이주배경의 가구,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 아동·청소년 가구, 약물중독자, 청소년한부모, 시설퇴소 아동·청소년, 비행·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회배제 상태에 놓일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규정하였다(Levitas et al., 2007, pp.1-14.). 한편, 아동·청소년의 거주지역이 사회배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하며, 부모와의 동거가 이들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숨은 노숙(hidden homeless)’ 상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강영배, 2009, p.110)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표 II-1. 사회배제 및 포용의 개념**

개념 및 정의
• 사회배제는 실직, 비숙련, 낮은 임금, 주거빈곤(poor housing), 높은 범죄 환경, 열악한 건강상태, 가족해체 등의 문제가 결합된 지역이나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된 용어
• 사회배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인과 지역을 불이익(disadvantage)의 악순환에 갇힐 때 발생
• 사회배제는 개인 또는 집단이 그 지역 시민의 일원으로서 일상적인(normal)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
• 빈곤은 기회 상실과 연결, 빈곤 개념을 확장하면 사회배제가 내포한 개념과 일치
• 개인과 그들의 지역사회가 양극화되고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해지는 과정
•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통합을 결정하는 사회, 경제, 정치 및 문화 체계 등의 영역에서 단절(shut out)되어 가는 역동적인 과정
• (영국)주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관계, 관습이나 활동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거나 부족한

11) 사회배제를 둘러싼 사회권, 시민권론에 대한 구체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은 관련 문헌들을 참조할 수 있다.

---

## 개념 및 정의

---

상황, 사회배제는 '상태(state)'보다 '과정(process)'이며 이는 빈곤과의 관계 설정 시 주요 기준

-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그 지역 시민의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참여를 원하지만 어려운 상태)
- 충분하지 않은 사회 참여, 사회 통합 및 권력(power) 결여
- 사회배제는 빈곤보다 넓은(broader) 개념으로 물질적인 수단이 부족한 것 뿐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삶과 주류 사회와의 괴리로 효과적인 참여가 어려운 상태
- 포용(social inclusion)은 경제적 요소 뿐 아니라 사회, 심리, 정치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의 개발과 관련된 용어
- 경제, 정치, 사회에서 발생하는 연속적인 분열의 축적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 지역을 권력, 자원, 지배적 가치로부터 분리시키고 열등적인 위치에 놓이게 함.

\* 출처: Levitas et al., 2007, p.21; 조윤화, 이소원, 왕영민, 2019, p.22.

## 2)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안정적인 주거는 인간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이고, 주거권은 인간이 다른 권리를 인정받고 생활해나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한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주거생활 보장',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확보되어야 하고, 적절한 주거가 유지되어야 함이 논의되어 왔다(하성규, 1999, p.7).

세계인권선언(1948)과 UN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도 '적절한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Right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의 일부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였다.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건강할 권리, 사회보장

을 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 투표할 권리,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 다양한 권리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UN Habitat, 2009; 최은영 외, 2018, p.184 재인용)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인권을 향유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최은영 외, 2018, p.184). 그러나 우리사회 대다수 빈민과 사회취약계층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주거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하성규, 1999, p.6). 또한 높은 주거비로 인해 적정한 비용의 주택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하게 되는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이들은 안전을 위협받거나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고 있다.

적절한 주거란 그 구조적인 특성이 거주인의 성별, 발달단계, 가족구조와 연관된 개인과 가구의 의도와 목표에 적합하여 인간의 건강한 발달이 가능한 주거를 말하며, 건강한 인간발달을 위해서는 주거의 물리적 특성 뿐 아니라 비주거부분에 대한 지출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임세희, 2010, p.379). 즉, 주거의 적절성을 고려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최저주거기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국토해양부에서 국민이 적절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최소의 기준이 되는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였으며, 2011년 최소주거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를 상향조정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 구조 및 환경기준 등 주거의 구조적·물리적 적절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주거의 적절성을 고려하는 두 번째 기준은 주거비 과부담 여부이다. 가구의 주거비는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 잔여소득 평가방식, 주관적인 주거비 부담여부 등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로 판단하는 방식은 주거비가 아닌 비주거지출의 정도를 고려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임세희, 2019, p.12) 가구가 일정한 규모와 질(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자가/임차 주택에 거주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소득으로 생계비용(식료품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조달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주거비 과부담을 측정하는 잔여소득 평가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배순석 외, 2013; 임세희, 박경하, 2017, p.36 재인용).

세 번째 기준은 주택의 유형과 점유의 안정성이다. 주택의 유형은 거주공간이 거주에 적합한 주택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주택형태 미달은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여관 등의 거주자, 거리노숙인, 노숙인 쉼터·부랑인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를 의미한다. 점유의 안정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강제로 퇴거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점유형태 미달가구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일세, 무료가구 등을 의미한다.

비주택 거주 가구 및 점유형태 미달가구는 열악한 환경 내에서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거주할 공간이 없는 등의 문제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일정한 처치가 존재할지라도 이들이 정주하고 있는 환경이 불안정하고, 시설이나 설비 등의 문제로 인해 여러 사건,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거빈곤층에 포함하여야 한다(표 II-2).

표 II-2. 주거의 적절성 고려 기준

구분	개념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	물리적, 구조적 부적절	- 면적, 구성원 대비 방 수, 구조 및 설비의 적절성 등 - 성별, 연령별 고려 필요
주거비 과부담	소득 대비 주거비 과다	-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
주택 유형 및 점유형태 미달	비주택 거주 및 강제퇴거 위험군	- 비거주용 건물,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및 각종 보호 시설, 노숙 등 비주택 거주 여부 - (주택구입,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일세, 무료가구 여부

\* 출처: 저자 작성

이렇게 주거의 물리적 조건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주거가 아니거나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소득으로 비주거부분의 지출수준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어려울 때 주거빈곤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임세희, 2010, p.379). 여기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강제로 퇴거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점유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점유형태 미달가구,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이나 판자집 등에서 거주를 하는 주거유형 미달가구 역시 주거빈곤층에 포함된다. 주거문제를 사회적 배제의 주요 영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소득이 낮거나 가용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적절한 주거를 획득하기 어렵고, 열악한 주거는 적절한 고용·건강·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과 연결되어 있어 다차원적인 박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김안나 외, 2008, pp.151-152; 여유진 외, 2017, pp.63-64). 나아가 이러한 적절하지 못한 주거, 즉 과밀하거나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주거는 인간의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임세희, 2015, p.50),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나가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는 기존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내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거주하거나 보호종료(예정)아동·청소년을 주거취약계층에 포함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시설보호는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일각의 견해에 동의하고(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2020) 주거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관련 주요 개념과 관계를 간략하게 도식화 한 것이 그림 II-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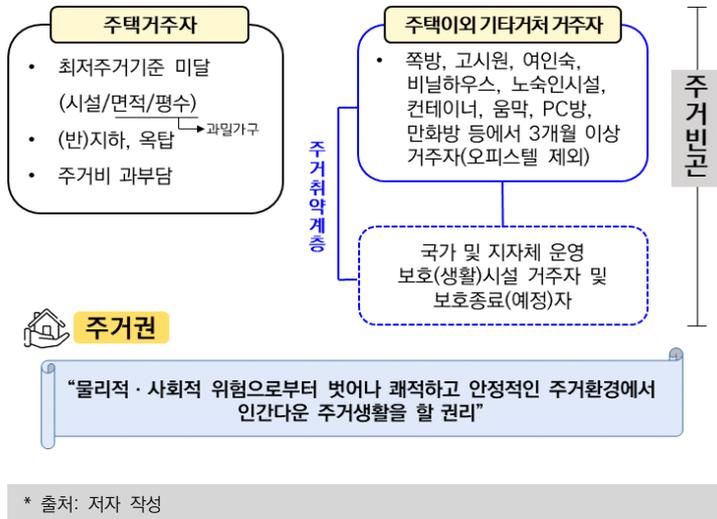


그림 II-1. 아동·청소년 주거권 관련 주요 개념

### 3) 주거권 미보장 아동·청소년 가구 규모 추정

주거권 미보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 가구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권 보장 요소 가운데 구조적·물리적 적합성과 점유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가운데 주거권 미보장 가구 규모를 각각 추정하였다.

먼저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주택이 지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일 경우 환기나 채광 등 구조와 성능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가구의 규모를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아동가구 중 약 0.7%(약 37천가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를 보면,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적용하면 아동가구의 약 3.6%(203천가구)가 이에 해당하며,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면 그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즉, 가구 내 아동 수를 기준으로 보면 약 85만 여명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미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전체 가구 대비 아동가구의 최저주거기준미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며, 그간 아동주거빈곤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도 이해된다.

비주택 즉, 주거의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주택이라 볼 수 없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아동가구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전체 가구 대비 약 2.2%(444천가구), 아동이 있는 가구 대비 약 0.7%(34천가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아동 수를 기준으로 산출해보면 약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밀기준에서 먼저 국토교통부의 기준은 가구원 수만 고려하여 가구원 수 2인 의 경우 방 1개로 산정하며 방과 거실, 부엌을 모두 방으로 산정하는 반면,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할 경우 침실분리기준에 따라 구성원의 관계별로 필요한 방수가 달라지며 거실과 부엌을 방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할 경우 아동가구 중 주거권 미보장 가구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여 면적기준미달은 아동가구 중 약 3.1%(약 179천가구), 방수기준미달은 약 5.3%(약 301천가구)로 추정된다. 특히 두 기준 가운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와 관계없이 아동가구가 전체 가구 보다 과밀 즉, 방수기준미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수설비기준에서 국토교통부의 기준은 전용입식부엌과 전용화장실 유무로 판단하며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 시설' 여부는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최저주거기준에서는 상·하수도 시설 여부를 포함한다는 차이가 있는데, 아동가구 중 약 0.2%에 해당하는 1.1만 가구가 (가족)전용입식부엌이나 (가족)전용화장실도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II-3).

표 II-3. 주거권 미보장 아동·청소년 가구 규모

구분	국도교통부기준		전체 최저주거기준 적용		
	전체가구 중 비율 (%, 천가구)	아동가구 중 비율 (%, 천가구)	전체가구 중 비율 (%, 천가구)	아동가구 중 비율 (%, 천가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	-	-	3.2 <sup>2)</sup> (634)	0.7 <sup>2)</sup> (37)	
최저주거기준미달	5.3 (1,066)	3.6 (203)	8.9 (1,785)	8.0 (459)	
비주택거주 <sup>3)</sup>	2.2 (444)	0.7 (34)	좌동	좌동	
과밀	면적기준미달	3.8 (750)	3.1 (179)	3.8 (756)	3.1 (179)
	방수기준미달	3.9 <sup>4)</sup> (771)	0.3 (52)	3.4 <sup>4)</sup> (197)	0.8 (45)
필수설비기준미달	3.0 <sup>6)</sup> (606)	0.2 <sup>6)</sup> (11)	6.0 <sup>5)</sup> (1191)	2.7 (543)	
			7.5 <sup>5)</sup> (430)	3.1 (179)	
			3.1 <sup>7)</sup> (620)	0.27 <sup>7)</sup> (13)	

\* 출처: 국토교통부, 2020a, 2019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활용, 저자 작성

- \* 주: 1) 모집단 추정을 위한 가중치를 적용한 규모임.  
 2) 지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거주를 포함함.  
 3) 비주택거처(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기숙사 및 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기타를 포함함.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데이터를 통합(merge)하여 분석한 것으로 횡단가중치를 적용함.  
 4) 가구원 수만 고려, 방=방+거실+부엌  
 5) 침실분리기준적용, 방=방  
 6)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 시설' 미적용  
 7)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 시설' 적용

다음으로 주거권 미보장 아동가구의 규모에 있어 도시(동부)와 농산어촌(읍면부) 간 지역 차이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과밀의 경우 동부지역이 7.3%, 읍면부지역이 3.2%로 비율 면에서는 도시지역이 2배 이상 높은 반면 절대적인 규모는 농산어촌지역이 오히려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수기준 미달은 농산어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규모 뿐 아니라 비율 면에서도 약 2배 이상 높은 높았다. 필수설비기준미달가구도 농산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비율 및 가구 수 모두 높았다.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의 경우 도시지역이 농산어촌지역보다 비율과 가구 규모 모두 높았다. 반면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 농산어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가구 수는 적지만 전체 가구 수 대비 비율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농산어촌지역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간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표 II-4).

표 II-4. 주거권 미보장 아동·청소년 가구 지역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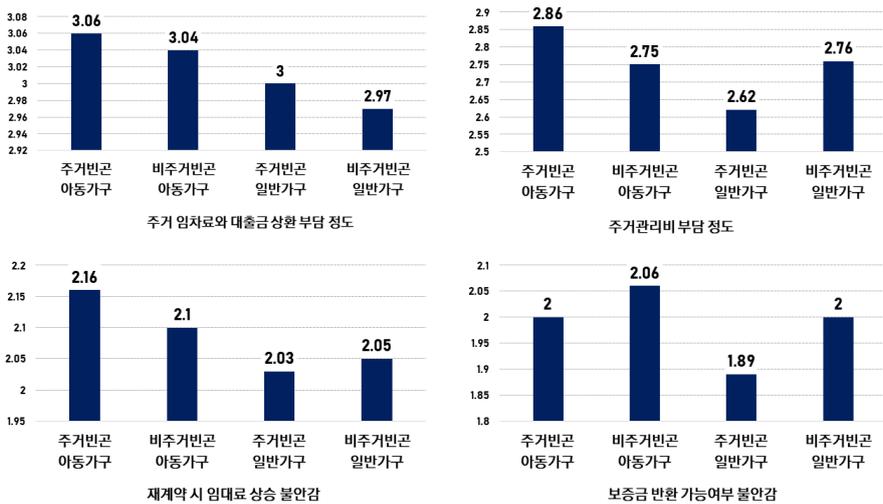
구분		전체 최저주거기준 적용 <sup>2)</sup>			
		동부지역 아동가구		읍면부지역 아동가구	
과밀	면적기준미달	7.3% (351천가구)	3.4% (163천가구)	3.2% <sup>2)</sup> (634천가구)	0.7% <sup>2)</sup> (37천가구)
	방수기준미달		4.8% (230천가구)		8.0% (459천가구)
필수설비기준미달		0.1%(5.5천가구)		0.9%(7.9천가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		0.7%(33천가구)		0.5%(4.1천가구)	
최저주거기준미달		7.7%(372천가구)		9.8%(87천가구)	

\* 출처: 국토교통부, 2020a, 2019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활용, 저자 작성

- \* 주: 1) 모집단 추정을 위한 가중치를 적용한 규모임.  
2) 침실분리기준적용, 방=방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빈곤 여부와 아동이 있는 가구 여부를 기준으로 네 집단 즉, 주거빈곤아동가구, 비주거빈곤아동가구, 주거빈곤일반가구, 비주거빈곤일반가구의 주거비 부담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네 집단 중 주거빈곤아동가구의 주거 임차료와 대출금 상환의 부담 정도 및 주거비 부담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주거비과부담은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즉, RIR(Rent to Income Ratio)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월 소득 가운데 무주택자가 전·월세 등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임대료 부담 비중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이다. RIR 10은 월 100만원의 소득자가 임대료로 월 10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을 말하고, RIR이 높을수록 세입자의 주거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여 임대료 상황 관련 위험도 등 임대주택시장의 특성 파악에 유용한 지수이다.

이에 아동가구의 주거비과부담 정도를 살펴본 결과,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불안감도 주거빈곤아동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고, 주거빈곤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이 있는 가구가 아동이 없는 가구에 비해 불안감이 높았다. 반면,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한 불안감은 비주거빈곤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월세보다 전세 형태가 많아 보증금 규모가 크기 때문일 수 있다. 다만 주거빈곤가구의 경우 아동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 형태가 많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한 불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림 II-2).<sup>12)</sup>



\* 출처: 국토교통부, 2020a, 2019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활용, 저자 작성

- \* 주: 1) 모집단 추정 가중치 적용,  
 2) 1=전혀 부담되지 않음 2=별로 부담되지 않음 3=조금 부담 4=매우 부담  
 3) 4집단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그림 II-2.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가구의 주거비 부담

12) 같은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무주택 임차가구 약 590만 가구 중 '아동·청소년이 2인 이상 있는 가구'는 약 10%(약 57만 가구)로, 이들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미달 또는 주거비과부담 가구는 약 33%(약 18만 가구)이며 이들 가구의 소득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일반가구의 월 평균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약 44%에 달하였다. 즉 아동·청소년이 있는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상당수가 저소득 빈곤가구이므로 보다 현실적인 주거급여와 현물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 상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취약계층 가구 규모를 산출한 강미나 외(2020)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약 2천만 가구 중 약 290만 가구, 아동가구 약 540만 가구 중 약 59만 4천 가구(11%)가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강미나, 차미숙, 김은란, 이재춘, 김정희, 임세희, 함영진, 2020, pp.19~20). 특히 강미나 외(2020)는 주거취약계층 아동가구의 경우 주거비과부담인 경우가 41만 6천 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최저주거기준미달 18만 3천 가구, 비주택거주 1만 4천 가구 순인데(표 II-5),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청소년 가구의 경우 노인·장애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주거취약계층과 비교할 때 면적 및 침실 기준 미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표 II-6).

표 II-5. 주거취약계층 가구 특성별 가구 수

(단위: 천 가구)

구분	가구 수	최저주거 기준미달(A)	주거비과부담 (B) <sup>2)</sup>	(AUB)	비주택 (C) <sup>3)</sup>	(AUBUC)
전체	19,979	1,060	2,000	2,854	456	2,925
아동·청소년 가구 <sup>1)</sup>	5,450	183	416	588	14	594

\* 출처: 강미나 외, 2020, p.19

- \* 주: 1) 아동·청소년 가구는 가구 내 만 17세 이하 구성원이 1명 이상인 가구  
 2) RIR 30% 이상인 가구  
 3)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옴막, 기타)

표 II-6. 최저주거기준미달 정도

(단위: %)

구분	최저주거기준미달	면적 미달	침실 미달	시설 미달
전체	5.3	3.8	0.3	3.0
아동·청소년 가구	3.4	3.0	0.7	0.2
노인·장애인 가구 <sup>1)</sup>	3.9	1.8	0.1	2.8

\* 출처: 강미나 외, 2020, p.20

- \* 주: 1) 노인·장애인 가구는 가구 내 만 65세 이상 구성원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  
 2) 최저주거기준미달 또는 주거비과부담 가구 중 소득 무응답 694가구(표본수 2가구) 제외  
 3) 일반가구의 월평균 소득 : 309.5만원

## 2. 아동·청소년 주거권 관련 해외동향과 국내 법제 현황

### 1) 해외 주거복지정책과 동향

#### (1) 주거권 관련 국제규약

주거권은 1948년 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에 주거와 관련한 권리가 언급되면서 기본적 인권의 일부로 처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주거를 포함한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향유 권리와 사회보장 권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다(김용창, 2013, p.519).

이어 1959년 UN 총회에서는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였다. 특히 아동권리선언에 포함된 9개의 원칙 중 원칙 4에서는 '아동에게는 적절한 영양, 주거, 오락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를 강조하면서 그 일부로 주거에 관한 권리를 적시하였다.

이후 1966년 12월 UN총회에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사회권 규약)을 채택하였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자유권 차원에서 거주이동의 자유와 거주에 대한 불간섭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거주자의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제11조에서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 적절한 식량, 의복, 주거를 포함하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UN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협의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적절한 주거는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품위있게 살 권리로 여겨져야 한다(UN Habitat, 2015, p.3)는 것을 강조하면서 각 당사국이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주거권을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적절한 주거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4.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UNHR 홈페이지 General comment No.4: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2020.2.4. 인출)와 일반논평 7. 강제 퇴거(UNHR 홈페이지 General comment No.7: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orced evictions, 2020.2.4. 인출)에 주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일반논평 4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단순히 주거지를 가질 권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연령, 경제적 지위, 집단이나 소속 또는 지위와 그러한 요소들에 관계없이 적절한 주거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어떤 형태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서 파생된 적절한 주거에 대한 인권은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UNHR 홈페이지 General comment No.4: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2020.2.4.인출)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주거가 외부의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기능만 충족되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기초적 전제요소이며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김희정, 2019, p.167). 일반논평4에서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adequate housing)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표 II-7).

## 표 II-7. 주거권(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요소

- 점유에 대한 법적 안정성(Legal security of tenure):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점유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즉시 시행되어야 함.
- 서비스, 물자, 인프라에 대한 이용 가능성(Availability of services, materials,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주거생활의 안정성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제반자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비용의 적정성(Affordability): 주거 관련 비용이 다른 기초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소득수준의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안됨.
- 거주가능성(habitability): 공간규모가 적절해야 하며, 건강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야 함. 물리적 거주적합성
- 접근성(accessibility): 모든 사람들의 주거접근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접근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접근의 편리성
- 사회적 시설로부터 인접한 위치(location): 생활편익시설에 근접하고 있어야 하며, 건강에 부적합한 주거입지를 지양해야 함. 주거입지의 적합성
- 문화적 적절성(cultural adequacy): 주택이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다양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해야 함.

\* 출처: UNHR 홈페이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일반논평 4. 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General comment No.4: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TreatyID=9&DocTypeID=11](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TreatyID=9&DocTypeID=11) (2020.2.4.인출)

이후 1989년 UN이 아동이 성인과 다른 특별한 이해와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비차별, 아동최우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함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특히 아동권리협약 제16조에서는 사생활,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임의적이거나 비합법적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에서는 아동의 건강할 권리를 규정하면서 아동이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담고 있다. 여기서 건강할 권리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음식, 영양, 주거, 안전, 식수, 위생시설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는 상태 및 환경’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사회경제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뜻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p.151). 또한 제27조 1항에서는 모든 아동이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였고, 특히 3항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영양, 의복, 주거처럼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지원의무를 특별히 언급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p.160).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인권에 관한 여러 조약에서 주거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인권의 실현에 있어서 주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하성규, 1999, p.15). 주택은 인간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을 유지하며, 개인의 인격을 발달시키고 성장해가는 장(場)이기도 하다. 이에 국제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일환으로 주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동이나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주거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하성규, 1999, p.15).

## (2) 주거권 관련 해외동향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주거관련 연구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도입이 상당히 앞서 있다. 외국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은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주택의 전용면적보다는 정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개별 방의 최소한의 규모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천현숙 외, 2011, p.81),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배순석, 2010.3.10., p.19). 여기에서는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해외의 최저주거기준과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① 영국

영국은 주로 주택법(Housing Act)에서 주거와 관련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Development of Environment)의 지침(Ministrial Circular)에 세부적

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1918년 ‘주택기준 권고안’을 시작으로 공동주택의 규모 및 면적, 방의 종류, 설비 수준 등 현대 주거기준의 기초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는데(임세희, 2013, p.354), 1954년 제정된 주택보수임대법(Housing Repairs and Rents Act)은 12개 항목 가운데 한 개 이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부적격 주택으로 간주하였으며, 1985년에 주택법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였다(임세희, 2013, p.354). 이 주택법에서는 정주에 대한 조건들로 ①정주에 적합(안정성, 습도, 채광, 환기 등), ②개인의 편안함, ③기본적인 쾌적성(목욕시설, 세면시설 등), ④과밀 등을 제시하였다(천현숙 외, 2011 p.81).

2000년에는 모든 사회주택이 따뜻하고 방한과 방염이 되며, 현대적 시설을 갖추도록 적정주거기준(Decent Homes Standard)을 도입하였고, 2002년에는 민간임대주택도 이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임세희, 2013, p.354). 나아가 2004년에는 주거위생 및 안전평가시스템(Housing Health & Society Rating System: HHSRS)을 도입하여 매우 구체적인 구조·성능 기준을 마련하였다(배순석, 2010.3.10., p.20).

주택법(Housing Act) 내에는 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면적기준은 과밀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과밀은 최저주거기준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한 거처에서 자는 사람의 수가 방 기준 및 면적 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이강훈, 2019, p.55). 방 수와 방 면적에 따른 수용 허용인원 기준은 표 II-8과 같다.

표 II-8. 방 수 및 방 면적에 따른 수용 허용인원

방 수	수용 허용 인원	방 면적	수용 허용 인원
1개	2	10.2㎡ 혹은 그 이상	2
2개	3	8.4㎡ 이상 102㎡미만	1.5
3개	4	6.5㎡이상 8.4㎡미만	1
4개	7.5	4.6㎡이상 65.㎡미만	0.5
5개 혹은 그 이상	방당 2인	4.6㎡미만	방으로 간주하지 않음

\* 출처: 천현숙 외(2011). 주택공급 선진화 방안 연구. 국토부. p.82 <표 4-1, 4-2>를 재구성

\* 주: 1) 1살 미만의 아이는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음. 1~10세 어린이는 0.5인으로 간주  
2) 방은 최소 4.6㎡이상, 천장높이는 1.5㎡이상 되어야 함.

방 수 기준에 따르면,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은 같은 방을 쓸 수 없으며, 21세 이상은 독립된 방을 주어야 하고, 성별이 같다면 10세에서 20세까지만 같은 방을 쓸 수 있다(임세희, 2014, p.222). 10세 이하인 경우에도 2명만이 같은 방을 쓸 수 있는데, 어느 한 쪽이 10세 미만이라면 같은 성별이라는 전제 하에 2명이 같은 방을 쓰는 것이 허용된다(임세희, 2014, p.222). 다만, 기본적으로 10세를 기준으로 이성 간에 방을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하는데 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의 경우는 8세를 기준으로 한다(홍인옥, 이호, 김윤이, 남원석, 2006, p.37).

즉, 영국의 주택법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같은 방을 쓰거나, 10세 이상이면 성별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방을 쓰거나, 부부가 아닌 사람이 같은 방을 쓰는 경우 과밀로 본다. 최근에는 외부의 개입이 없으면 과밀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주택 거주 가구에 대해 주거선택 및 공간 절약 해결책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력을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Eurofound, 2016; 임세희, 송아영, 2020, p.118 재인용).

또한 1985년에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Housing fitness Standard)을 도입하였으나, 적용대상이 주택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어 2004년 개정 주택법을 도입하면서 주택과 비주택을 모두 최저주거기준 적용대상에 포괄하도록 하였다(이강훈,

2019, p.56). 최저주거기준에서는 인간의 거주에 적절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①유지보수가 가능할 것, ②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③거주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습도를 유지할 것, ④적절한 채광, 온도, 환기를 확보할 것, ⑤위생적인 상수공급체계를 갖출 것, ⑥효과적인 하수처리체계를 갖출 것, ⑦단독 화장실을 갖출 것, ⑧냉·온수 사용이 가능한 목욕시설을 갖출 것, ⑨냉·온수 사용이 가능한 위생적인 조리시설을 갖출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홍인옥 외, 2006, p.37).

이러한 최저주거기준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절한 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기준에 미달한 주택에 대해서는 폐쇄, 철거, 수선 지원, 정부 매입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홍인옥 외, 2006, p.37). 이와 함께 2000년에는 적정주거기준(Decent Homes Standard)을 도입하여 정책지침으로 제시하면서, 거주환경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표 II-9와 같이 4가지 항목을 마련하였다(이강훈, 2019, pp.58-59).

한편 2004년에는 표 II-10과 같이 주거위생 및 안전평가시스템(HHSRS: 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을 도입하여 습도와 곰팡이, 온도 조건(과도한 추위 및 더위), 살생물질, 일산화탄소 생성물, 납, 방사선, 불연소 가스, 휘발성 유기화합물, 과밀, 외부 침입, 빛, 소음, 가정위생(해충 및 쓰레기), 식품안전, 개인위생(위생 및 배수), 상수도, 낙상(계단, 화장실, 평지, 단차가 있는 공간 등), 감전, 화재, 충돌, 균열, 압력 등을 포함하는 29개 주택관련 위험 요소들과 이러한 요소가 각각 현재 또는 미래에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II-10). 특히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인 경우 카테고리1 위험으로, 위험이 덜 심각하거나 덜 긴급한 경우 카테고리2 위험으로 구분하고, 이를 처리하는 최선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Stafford borough council 홈페이지, 2020.12.16.인출).

이와 같이 최저주거기준이 방 수 및 방 면적에 따른 최대 수용 허용 인원만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 비해 주거위생 및 안전평가시스템은 주택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주택법 상 지역주택당국에 HHSRS를 위반한 주거에 대해 개선통지, 금지명령, 위험인식통지, 비상구제조치, 긴급금지명령, 철거명령, 지역정리 등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이강훈, 2019, p.57).

**표 II-9. 영국의 거주환경 적합성 평가 기준**

- 
1. 현행 최저기준 충족
    - HHSRS 기준에서 카테고리 1의 위험을 한 가지 이상 포함하고 있는 주거공간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적절한 수리상태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 건물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 이상이 노후하여 교체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건물 주요 구성요소가 아닌 구성요소 중 둘 이상이 노후하여 교체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건물 주요 구성요소는 이에 결함이 있는 경우 건물의 보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른 구성요소들을 악화시키는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외벽, 지붕, 창문/문, 굴뚝, 중앙난방보일러, 가스난로, 축열히터, 배관, 전기설비가 포함된다.
    - 건물구성요소가 노후하다는 의미는 표준 수명보다 오래된 경우를 의미한다.
  
  3. 적절한 현대적 시설
    - 다음 항목 중 세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 적절한 현대식 부엌(20년 이하)
      - 충분한 공간과 배치를 갖춘 주방
      - 적절한 현대적 욕실(30년 이하)
      - 적절하게 위치한 욕실과 화장실
      - 외부 소음에 대한 적절한 방음(외부 소음이 문제되는 위치의 경우)
      - 아파트 건물 공동영역의 적절한 크기와 배치
  
  4. 적절한 정도의 온열 쾌적성
    - 이 기준은 주택이 효과적인 단열과 효율적인 난방을 하도록 요구한다.
- 

\* 출처: 이강훈(2019). 최저주거기준 현황과 과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주거권 정책 토론회. pp.58-59.

표 II-10. 영국의 주거위생 및 안전평가 시스템(HHSRS)에 포함된 29개 주택 관련 위험 요소

	위험 요소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습기 및 곰팡이	알레르기, 천식, 곰팡이 및 곰팡이 감염으로 인한 독소의 영향
2	과도한 추위	호흡기 질환: 독감, 폐렴 및 기관지염 심혈관 질환: 심장 마비 및 뇌졸중
3	과도한 더위	탈수, 외상, 뇌졸중,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4	석면 및 MMF	석면: 폐 손상 MMF: 피부, 눈 및 폐 손상
5	살생물제(Biocides)	호흡, 피부 접촉 및 화학 물질 삼킴으로 인한 위험
6	일산화탄소 및 연료 연소 생성물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방향 감각 상실, 무의식 및 호흡 문제
7	납	신경장애, 정신 건강 및 혈액 생성 문제를 유발하는 납 중독
8	방사선	방사선 노출(노출량 및 노출 시간 증가)로 인한 폐암,
9	불연 연소 가스	질식
10	휘발성 유기 화합물	알레르기, 눈, 코 및 피부에 대한 자극,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및 졸음
11	과밀	심리적 고통과 정신 장애, 위생 문제, 사고 및 개인 공간 및 사생활 침해 위험 증가
12	외부 침입자	강도 발생에 대한 두려움, 강도로 인한 스트레스 및 괴로움, 침입자에 의한 부상
13	채광	자연광 부족으로 인한 우울증 및 심리적 영향. 눈부심과 부적절한 빛으로 인한 눈의 피로
14	소음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 두통 및 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및 생리적 변화
15	가정 위생(해충 및 쓰레기)	위 및 장 질환, 감염, 천식, 알레르기, 쥐로 인한 질병 및 신체적 위험
16	식품 안전	위장병, 설사, 구토, 배탈 및 탈수
17	개인 위생(위생 및 배수)	위 및 장 질환, 피부 감염 및 우울증
18	상수도	탈수, 피로, 두통, 건성 피부, 방광 감염 및 레지오넬라병

	위험 요소	건강에 미치는 영향
19	욕실과 관련된 낙상	신체적 부상: 배인 상처, 열상, 부기 및 멍.
20	평지에서 낙상	신체적 부상: 타박상, 골절, 머리, 뇌 및 척추 부상
21	계단과 관련된 낙상	신체적 부상: 타박상, 골절, 머리, 뇌 및 척추 부상
22	단차가 있는 곳에서의 낙상	신체적 부상
23	전기적 위험	감전 및 화상
24	화재	화상, 연기로 인해 녹초가 됨 또는 죽음
25	화염, 뜨거운 표면 및 재료	화상, 화상, 영구적인 흉터 및 사망
26	충돌 및 함정	신체의 베임 및 멍과 같은 신체적 부상
27	폭발	육체적 상해, 짓눌림, 멍, 찢림, 골절, 머리, 뇌 및 척추 부상
28	인체공학적 요소(거주지의 기능적 공간 등과 관련된 물리적 긴장의 위협)	긴장 및 염좌 부상
29	구조적 붕괴 및 낙하 요소	신체적 부상

출처: 영국 Stafford borough council 홈페이지  
<https://www.staffordbc.gov.uk/housing-health-and-safety-rating-system-the-29-hazards>  
(인출일 : 2020.10.20.)

## ② 미국

미국은 1800년대 중반 이후 임대주택법과 연방주택법에 불량주택 기준, 채광 및 환기기준, 건축자재 기준을 명시한 것을 시작으로 1949년 주택법에서 ‘모든 미국 가정에 알맞은 집과 거주환경’이라는 개념이 선포되었다(임세희, 2014). 미국의 주거관련기준은 주택품질기준(HQS: Housing Quality Standard), 균등한 물리적 조건 기준(UPCS: Uniform Physical Condition Standard)과 같이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과 Housing Code와 같이 주택의 상태와 과밀여부 등을 판정하는 주거에 대한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UPCS는 HQS가 개정된 것으로 1998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HQS는 1970년 이후 미국의 저소득층 주택정책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바우처와 같은 수요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주거보조금을 지불하는 민간소유 바우처 주택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 도입된 것(천현숙, 2010.12.10., p.91)으로, 주거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Section8)를 받는 주택은 모두 HQS를 충족해야 한다.

주택품질기준(HQS)의 목적은 주거정책 수혜자가 점유할 수 있는 주택이 거주에 적합한 최저 수준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조적인 안전이나 화재발생 방지 등보다는 거주자가 거주하기에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천현숙, 2010.12.10., p.91). 주택품질기준은 위생시설, 취사 및 쓰레기 처리, 공간과 보안, 냉난방 환경, 조명과 전기, 구조와 자재, 실내 공기의 질, 물 공급 등 13가지 요소의 주거 성능에 관한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최은영 외, 2018, p.205; 임세희, 송아영, 2020, p.119 재인용).

Housing Code는 거주자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건물이나 설비의 상태와 공간의 최소 면적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Housing Code는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이자 규제이기 때문에 각 성능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한 명령 또는 조치의 대상이 된다(천현숙, 2010.12.10., pp.95-96).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의 Housing Code는 공간 및 면적 기준, 구조·설비기준, 화재 및 안전기준, 보안기준, 거주에 부적합한 주택의 판단기준, 주택의 청소에 대한 소유자와 임차인의 책임, 기준의 집행 및 지원, 청문회의 실시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천현숙, 2010.12.10., p.96 표를 참조하여 서술).

미국의 최저주거기준 전용면적은 거실, 부엌, 방의 최소 면적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의 면적기준은 천장높이 2.29m 이상(2.13m 이하 거주 불가)이어야 하고, 11.15㎡ 이상의 방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고, 부엌을 제외한 모든 방의 폭은 2.1m 이상, 거실 점 부엌은 3m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방은

6.5㎡이상, 식당 겸 거실은 2인 이상 13.38.㎡(1인 12.08㎡), 2명이 넘을 경우 1명 추가 시 4.6㎡의 면적이 더 필요하다(천현숙 외, 2011. p.83). 모든 주택은 최소한 1개의 거실과 1개의 부엌, 1개의 욕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한 방에서 2명까지 잘 수 있으며, 성별이 다른 아동은 아주 어린 경우가 아니라면 방을 따로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임세희, 2014, p.221).

**표 II-11. 미국의 최저주거기준 설비 및 구조·성능, 환경기준(요약)**

- 화장실, 욕조 혹은 샤워시설을 갖춰야 하며, 부엌과 침실, 부엌과 화장실은 분리되고, 지하실의 벽과 바닥은 방수처리를 해야 함
- 부엌은 수납공간, 음식물 보관시설, 승인된 재질을 사용한 배수가 잘 되는 불침투성의 싱크대를 갖추어야 함(나무 등 침투성의 재질은 인정하지 않음)
- 배관시설은 상하수시설과 연결되어 냉온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온수의 온도는 41~49도를 유지해야 하고, 가구당 30리터의 온수를 확보해야 함
- 거실과 방은 바닥면적의 1/12, 혹은 0.9㎡ 이상의 창문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거실과 방의 창문은 1/20이상이 열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함
- 침실의 창은 채광이 되는 방향으로 나있어야 함
- 환기장치는 1시간에 2회 이상 공기를 정화해야 하나, 화장실, 목욕탕, 세탁실 등에서는 시간당 5회 이상 공기를 정화해야 함

\* 출처: 배순석(2010.3.10.). 최저주거기준 개선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p.19.

미국과 영국은 주거상태를 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민간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주거상태를 평가하고 있으며(이강훈, 2019, p.65). 기준미달가구나 주택이 적발될 경우 입주자는 퇴거조치하고 주택은 개보수 또는 철거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거조치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입주를 우선하는 등 복지차원에서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배순석, 2010.3.10., p.19).

한편,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의 특징을 규명한 영미권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택의 구조·성능·환경과 같은 전반적인 품질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가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 점유 형태, 주거의 안정성 순이었으며, 이 외에 일부 연구에서

과밀과 주거지원도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표 II-12).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들 국가는 주거환경이 아동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분명히 하고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상태를 일련의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은 최소한 아동이 있는 가구가 주거지원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최저주거기준미달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12.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의 특성

연구	특징	주택						지역 사회	기타
		구조 성능 품질	주거 안정성	점유 형태	주거비 부담	과밀	주거 보조	홈 리스	
Barnes et al. (2008)		●		●			●		수리·난방 불량 등
Newman (2008)		●		●	●	●	●	●	
Leventhal & Newman (2010)		●	●	●	●	●	●		주거비 과도 유해물질 영향
Cunningham & MacDonald (2012)		●	●		●			●	
Holupka & Newman (2012)		●			●	●			
Coley et al. (2013)		●	●	●	●			●	양육스트레스 가족관계
AHURI(2014)		●	●	●	●	●		●	유해물질 영향
Clair(2019)		●	●	●	●	●	●	●	

\* 출처: 연구진 작성

## 2) 국내 주요 법제 현황

주거권과 관련한 국내법으로는 「헌법」과 「주거기본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0호 전부개정 1987.10.29.)에서는 제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제16조 주거불가침의 권리를 통해 자유권적 측면에서의 거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35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통해 사회권적 측면에서의 거주권을 보장하고 있다.

동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인격적 생존에 불가결한 모든 것을 포함한 포괄적 권리인 바, 경제적 문화적 생활을 할 권리, 즉, 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는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하성규, 1999, p.22). 이러한 권리는 제34조의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는 조항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주거에 대한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규정들에 ‘주거권’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법 제 37조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주거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1990년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을 비준함에 따라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2020.2.6. 인출)는 조항을 통해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과 주거기본법을 중심

으로 주거권 보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거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2003년 「주택법」(법률 제 6943호, 2003.7.25. 일부개정, 2003.11.30. 시행)에 처음 신설되었다. 「주택법」 제5조의 2와 제5조의 3에서는 최저기준 설정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조항을 두어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04년에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을 포함한 「최저주거기준」(건설교통부공고 제2004-173호, 2004.6.15. 제정)이 마련되어 시행해오다 2011년에 최저주거기준의 주택 면적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최소 주거면적과 주택의 필수적 설비기준(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sup>13)</sup> 등을 규정하고 있다(표 II-13).

표 II-13. 최저주거기준 :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1. 최소주거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sup>1)</sup>	실(방) 구성 <sup>2)</sup>	총 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12)
2	부부	1 DK	26 (20)
3	부부+자녀1	2 DK	36 (29)
4	부부+자녀2	3 DK	43 (37)
5	부부+자녀3	3 DK	46 (41)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49)

13) 동법 제4조에서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②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안 된다. ⑤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최저주거기준 법제처 <https://www.moleg.go.kr> 인출일 : 2020.2.4.).

- \* 주: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  
 3) 비교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①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②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③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④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2. 필수적인 설비: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 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  
 3. 구조 및 환경 기준(모두 충족)  
 ①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함.  
 ②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함.  
 ③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④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됨.  
 ⑤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5.27, 일부개정, 2011.5.27. 시행 재구성 <http://www.law.go.kr/admRullLsInfoP.do?admRulSeq=2000000059613> (인출일: 2020.2.4.)

- \* 주: 1) \*표는 2011년 개정 시 추가된 사항임.  
 2) 총 주거면적의 ( )안 숫자는 2004년 기준임.

이후 2015년에 「주거기본법」(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78호, 2015. 6. 22., 제정]이 제정됨에 따라 주택법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조항이 삭제되었고, 주거기본법에 그 내용이 포함되었다.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주거기본법」 제2조)를 규정하고,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향상, 임대주택공급 등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정하여 주거권의 보장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김희정, 2019, p.163). 또한 동법 제15조 주거비 보조, 제16조 주거약자지원 등과 관련하여 동법 제3조에서 주거비, 주거복지, 주택공급, 주거수준향상, 주택시장 등에 관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보장하고, 동법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법

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2.6. 인출)고 규정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권리가 단순히 자연재해나 외부의 위협에 대한 피난처를 보장하는데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주거를 영위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9년 4월, 동법 개정을 통해 동법 제3조에서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그 대상을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에서 청년층,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 등에까지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2019년 국토교통부 훈령을 통해 발표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2.10. 인출)에서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미혼모, 이주민 등에 대한 임대거부로 인해 이들의 주거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시원이나 여관, PC방, 사우나, 만화방 등에 주거하고 있는 노숙 위험군에 대한 조치도 포함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을 해당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만을 주거지원 필요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등 일부 주거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8조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한 우선적 정책지원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내에 주거비용의 적절성, 점유의 안정성 등에 관한 기준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주요 국가에 비해 최저주거를 위한 기준이 낮고, 구조·성능·환경 기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며 집행력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단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200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기간 중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과 공공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II-14, 표 II-15).

표 II-14.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공급 현황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8말	
실적	453	556	603	836	521	595	610	989	1,070	1,098	1,638	3,905	3,379	
임대 유형	매입	119	313	393	652	314	306	319	510	530	432	545	711	555
	전세	334	243	210	184	207	289	291	479	540	666	1,093	3,194	2,768
	건설													56
입주 대상	쪽방	166	358	371	527	185	172	214	188	279	249	277	459	477
	고시원 여인숙	-	-	24	124	185	266	277	572	533	624	1,073	3,006	2,580
	비닐하우스	287	199	206	180	106	64	35	71	72	68	57	65	72
	노숙인시설	-	-	-	-	32	59	54	115	138	93	102	121	71
	컨테이너/ 움막									18	45	99	189	115
	PC방/ 만화방													-
	지하층													-
	가정폭력 피해자 등												4	35
	최저주거 기준 미달 아동가구											2	11	14
	범죄피해자 (법무부)	-	-	2	5	13	34	30	43	30	19	28	20	15

\* 출처: 국토교통부, 2020b, 내부자료.

표 II-15. 공공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거주 아동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현황

(단위: 가구, %)

공급유형	가구수	면적 미달		방 수 미달		면적 또는 방 수 미달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건설임대	국민임대	16,868	473	2.8	3,016	17.9	3,016	17.9
	(아동 가구)	3,619	369	10.2	2,016	55.7	2,016	55.7
	영구임대	19,993	3,062	15.3	827	4.1	3,062	15.3
	(아동 가구)	1,116	805	72.1	363	32.5	805	72.1
	전체	36,861	3,535	9.6	3,843	10.4	6,078	16.5
	(아동 가구)	4,735	1,174	24.8	2,379	50.2	2,821	59.6
매입임대	전체	9,308	479	5.1	478	5.1	723	7.8
	(아동 가구)	2,319	139	6.0	262	11.3	308	13.3
전세임대	전체	199,097	7,396	3.7	15,601	7.8	19,404	9.7
	(아동 가구)	74,346	4,748	6.4	12,247	16.5	14,276	19.2

\*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 내부자료.

\* 주: 건설임대는 LH공사가 임대하고 있는 수도권 9개 시군구(서울 강서구·노원구, 인천 부평구, 경기 수원 권선구·영통구·장안구·팔달구, 경기 안산 단원구·상록구)의 현황이며, 전세임대는 전국 현황임.

한편,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에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10.24., <https://www.molit.go.kr>, 2020.2.2. 인출).

여기에서는 기존의 로드맵 체계에서 미성년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나 쪽방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 등에 대한 세밀한 지원이 어려워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10.24. <https://www.molit.go.kr>, 2020.2.2. 인출)에 따라 지원이 시급한 핵심대상(다자녀가구, 보호종료아동, 비주택 가구 등)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금융지원, 이주 및 정착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도 무주택·저소득 등 지원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16. 2020년~2022년 3년간 지원이 시급한 핵심대상 3만 가구

다자녀가구	1.1만	• 무주택저소득 유자녀 가구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2자녀 이상가구 중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
보호종료아동 등	0.6만	• 보호종료아동(年 2,600명)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기숙사, 가정복귀 등 제외) 및 시설 소관부처가 추천한 홀로서기 청소년
비주택가구	1.3만	• 비주택 거주 무주택·저소득 가구 중 쪽방보다 좁은 곳(6.6㎡ 이하)에서 3년 이상 거주 및 공공임대 이주희망 가구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10.24.).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발걸음 내딛다. p.2.  
<https://www.molit.go.kr> (인출일: 2020.2.2.)

특히,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기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자립생활관 등 다양한 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청소년 중 기숙사, 가정복귀 등을 제외한 경우로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주거지원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이 필요한 아동 추천 시 관계기관이 즉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차질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다 촘촘한 주거안전망 보장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표 II-17). 이에 대책이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대상의 범위(선정기준 포함)를 명확하게 하고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후속적인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주거권 논의 대상 범위는 「민법」상 미성년자와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거나 보호종료(예정)자로 하였다. 즉, 성인기에 접어든 일반 20대 청년층 대상 주거권 논의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다소 구별된다는 판단 하에 연구범위에서는 제외하되,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청년층 주거복지정책과의 연계방안을 포함하였다.

표 II-17.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대상	다자녀가구	보호종료아동	비주택가구
규모	1.1만 가구	6천명	1.3만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 자녀수에 따른 적합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대상: 2자녀 이상 가구 - 지원단가 인상을 통해 2룸 이상 주거면적 46~85㎡ 규모의 주택 공급	지원대상 확대 - 현행 연 1천호(전세)에서 연 2천호(매입, 건설임대까지 다양화) 수준으로 확대 - 아동복지시설 외 청소년쉼터·자립생활관 퇴소아동·청소년도 지원	공공임대 우선지원 확대 - 현행 연 2천호(매입·전세)에서 연 4천호(영구·국민임대까지 다양화) 수준으로 확대 맞춤설계 - 무장애 설계, 안심센서, 옥상텃밭 설치 - 냉장고, 에어컨 등 빌트인
금융지원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강화 - 대출한도 인상 - 전세임대 용자	전세임대 용자 - 만20세까지 무이자 - 보호종료 후 5년까지 금리 50% 감면	노후고시원 전용대출 신설 전세임대용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이주 및 정착 지원	아이돌봄시설 설치 확대 - 다자녀 매입 임대주택에 아이돌봄시설 설치 지역사회 연계 돌봄 제공 - 여가부·복지부 협업형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제공	생활집기 빌트인 - 냉장고, 책상 등 필수생활집기 제공 임대료·보증금 지원, 방문상담, 취업알선	이주지원 - 무보증금제도 확대, 서민금융재단 지원 - 생활가전, 이사비, 생필품 지원 - 서류작성, 이사절차 등 현장지원 정착지원 - 자활·돌봄서비스, 주거복지사 방문 상담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10.24.)의 그림(p.9)을 표로 재구성.  
<https://www.molit.go.kr> (인출일: 2020.2.2.)

### 3) 시설거주 및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주거 및 자립지원: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쉼터는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을 통해 범죄 및 비행 예방, 의식주 등의 생활보호,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한 사회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여성가족부, 2020, p.468)하는 기관으로, 부모(혹은 보호자)의 방임이나 학대, 가정의 빈곤 문제 등을 피해 가출한 청소년들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혹은 보호자)의 방임이나 학대, 가정의 빈곤 문제 등을 피해 가출한 청소년들로,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가정 밖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과 유사하지만, 가정에서 벗어날 것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비행청소년', '우범소년'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왔다. 그러나 가정의 문제 혹은 가정의 부적절한 환경으로 인해 가정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은 '주거 불안'이라는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각종 범죄의 가해·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히 비행청소년이나 우범소년이라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 주거지원의 우선 정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정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은 노숙인과 다를 바 없는 주거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보호수단은 청소년쉼터와 같은 시설입소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쉼터에 거주 중인 청소년들의 주거권 실태 파악을 위해 본 절에서는 현행 법령에 의거, 가정을 벗어난 청소년에 대한 국가수준의 보호수단인 청소년쉼터의 주거환경과 퇴소 후 자립 및 주거지원에 대해 검토하였다.

### ① 청소년보호시설(청소년쉼터)의 주거환경

청소년쉼터의 설치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3의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 법령 내에는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이나 자립지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쉼터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이외에 상가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상가건물의 경우 청소년들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각종 소음과 환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숙식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환경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비록 단기거주에 목적을 둔 쉼터일 경우라도 청소년들이 최장 9개월까지 거주가 가능함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주거환경으로서의 적절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쉼터의 시설공간 기준에서는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이 11㎡ 이상이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총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침실은 물론, 단체활동실, 화장실, 복도, 다락,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등 모든 공간의 면적이 포함될 수 있어 1인당 연면적을 규정하는 것을 입소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단체활동실은 최대 15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사 복지시설인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입소 아동의 연령이나 성별 등을 고려하여 각 공간의 면적이나, 입소아동 수에 대비한 설비의 개수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청소년쉼터의 경우 시설공간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므로 아동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요구된다(표 II-18).

또한 청소년쉼터의 침실기준은 채광이나 환기, 냉난방이 가능한 공간으로 규정할 뿐 인실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1인실부터 10인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미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대경험 등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쉼터가 대개 다인 1실로 구성되어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의 사생활 보장이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국가인권위원회, 2017.1.24., p.12)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의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에 침실 당 적정 인원 배치 및 일상생활에 관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국가인권위원회, 2017.1.24., p.2)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2020)에서 발간하는 청소년사업안내에 청소년쉼터의 침실 내 정원을 ‘단기 1실 당 3인 이하, 중장기 1실 당 2인 이하’로 하도록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뿐,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강제적인 시정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후기 청소년기 즉, 청년기의 특성 상 ‘내 공간이 없는 상태’는 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갈등, 폭력 등에 노출되기 쉽고 단체생활을 위한 규율과 생활지도로 인해 주거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 이탈이 만연(김지연, 2020a, p.42)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사생활 보호 및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주거환경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II-18. 청소년쉼터와 아동양육시설의 설치기준 비교

청소년쉼터(단기, 중장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목적	보호대상 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조치 하기 전 일시보호하거나 가정복귀, 입양, 가정위탁이 어려운 아동을 보호 및 양육.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	설치기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나목 및 2. 시설별 기준

청소년쉼터(단기, 중장기)		아동양육시설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 단독건물, 연립주택, 상가건물, 아파트 등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
-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 이상 - 침실: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 - 조리실·식당: 채광 및 환기 가능, 위생적인 취사·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의 구비 - 화장실·목욕실: 남·여용 구분 설치, 수세식 화장실 세면·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 - 세탁·건조장: 세탁 및 건조용 설비 - 상담실: 칸막이 또는 방음장치를 설치하여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한 공간 - 단체활동실: 최대 15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 - 사무실, 숙직실 -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재예방, 보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 설치·구비	시설공간	- 30인 이상 시설은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수·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모두 구비 - 30인 미만 시설은 별표2의 제1호나목에 따라 일부 시설을 겸용 또는 생략 가능 -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아동 1명당 6.6㎡ 이상 - 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 - 침실: 침실 1개 당 정원 3명 이하 - 화장실: 변기 수는 아동 5명당 1개 이상 설치 - 66㎡ 이상의 강당 또는 오락실(오락용구 비치) - 도서실(열람석과 도서류 비치) - 16.5㎡ 이상의 심리검사·치료실 - 기타 조리실·식당, 세탁·건조장, 사무실, 숙직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등은 쉼터와 동일
침실 내 정원: 단기 1실 당 3인 이하, 중장기 1실 당 2인 이하(국가인권위 권고 '17.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근거하여 '17.2.4.이후 설치되는 단기·중장기쉼터는 노유자시설로 용도 설정	기타	-

\*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 사업안내. pp.468-496 재구성  
 보건복지부(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 2. pp.150-152 재구성

또한 청소년쉼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근거하여 2017년 2월 이후 설치되는 단기·중장기쉼터의 경우 노유자시설(노인·아동·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관련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로 설정되어 특정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은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형태가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었으나, 청소년쉼터는 별도의 소방시설 설치가 가능한 건물형태 혹은 점유형태 등에 대한 고려없이 일괄적으로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유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적용에서의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전반에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유사 복지시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소음과 위생, 사생활 보장 등 쉼터의 주거환경에 대한 강화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지연, 2020b, p.37). 청소년쉼터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의 입지조건이나 설치기준, 현실적인 주거환경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나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이 단순히 개별 시설과 운영법인의 역량으로는 해결할 사안이 아니므로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청소년쉼터의 입지조건과 건물형태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충족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지연, 2020b, pp.35-36).

## ② 시설(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 및 주거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

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며 그 기능 중 일부로 '주거 및 자립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법령 내에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간 청소년쉼터에서 퇴소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 및 주거지원 서비스가 미비하였으나, 2019년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에 따라 청소년쉼터 및 자립생활관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과 달리 청소년쉼터 등 유사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는 등 아동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온 점을 보완한 조치이다. 여기에는 전세임대 뿐만 아니라 매입임대, 건설임대 등 지원방식을 확대하여 지원 물량을 확대하고 공공전세임대 용자에 대한 우대금리 신설, 주거지원과 사례관리를 결합하여 부동산 계약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시 공공임대 입주 후 상담, 취업알선 등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10.24.).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 이외에도 청소년쉼터 및 자립생활관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된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들의 기준이 쉼터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및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청소년쉼터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청소년들은 여전히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쉼터 등의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 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현행 청소년쉼터의 시스템에서는 쉼터에서의 총 거주기간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과는 달리 쉼터 거주 청소년들은 쉼터 거주와 노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거취약기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가정의 불안정한 주거환경을 벗어나 시설 거주를 선택하였던 청소년들을 일정 기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열악하고

부적절한 주거환경으로 내보내는 것은 청소년의 거주권을 적절히 보장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분명 ‘시설’은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주거대안이 아니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퇴소한 아동·청소년은 노숙인의 상태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주거취약계층’(김지연, 2020a, p.42)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현행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상 주거지원사업 대상에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를 포함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사회복지시설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청소년쉼터 퇴소 이후 임대주택 지원 시 거주시설의 종류나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주거 불안정 상태와 위기 정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등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전반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운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지연, 2020a, pp.41-42).

표 II-19.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아동 대상 자립 및 주거지원 사업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수당(월 30만원, 2021년부터 지원 예정,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에 한함)</li> </ul>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지원</li> <li>-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li> <li>- 후원자 연계 및 후원금 관리</li> <li>- 아동의 건강한 심신 보존 및 치료</li> <li>-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1인당 5,000천원 이상 지급 권고)</li> <li>- 자립준비프로그램 운영</li> <li>- 보호종료 예정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자립정착금 아동 1인당 5,000천원 이상 지급)</li> </ul>
<p>청년전세임대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li> </ul> <p>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해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li> </ul>	주거지원	<p>청년임대주택(1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 만 20세 이상 무이자 지원, 만 21세 이상 이자(연1~2%)를 부담하되,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지원대상자는 대출이자 50% 감면. 2년단위 계약,</li> </ul>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아동
	최장 6년 거주 가능(재계약 자격기준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1인가구기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가능 주택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상동. 국민주택규모(85㎡)이하인 주택(1인 단독세대는 60㎡) -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40% 수준. 가전제품 등 비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으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대 6년)

\* 출처: 저자 작성

또한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퇴소 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과는 달리 자립지원금이나 디딤씨앗통장, 자립수당 등의 생활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 개선 권고 결정문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 지원 등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국가인권위원회 2017.1.24., p.13)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제공되는 전세주택 지원 등의 주거지원 제도를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도 적용(국가인권위원회 2017.1.24., p.2)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청소년 쉼터 퇴소자들은 여전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되어 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를 신청하거나, 긴급지원서비스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정도의 지원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비록 「아동복지법」 상 시설 퇴소 및 위탁보호 종료 아동에게만 지원되던 자립수당(월30만원)이 내년 1월부터 청소년쉼터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청소년에게도 지원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주거 및 자립지원 전반에 차별적 요소가 잔존하고 있다(김지연, 2020a, p.41).

또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2019.10.24.)」을 통해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들에게 주거지원과 사례관리를 결합하여 이주과정에 냉장고, 책상

등 필수 생활집기와 학습시설 빌트인 시설을 제공하고, 주택물색도우미가 부동산 계약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정착지원을 위해서는 필요시 공공임대 입주 후에도 상담, 취업알선 등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빠른 사회정착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에게 지원되는 ‘관계기반’의 보호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생활 필수집기 등의 물품 지원, 전문사례관리사를 통한 월 1회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자립정보 제공, 진학·취업훈련 등 자원발굴 및 연계 등)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자립과정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어 보다 지속적이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관계기반’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표 II-19).

나아가 현재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대체로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24세까지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립준비도와는 별개로 연령을 근거로 지원을 중단하게 될 경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조례 등을 근거로 지원이 가능한 상한 연령을 설정하고,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시점에 청소년들의 주거비 부담 가능 여부, 자립여건, 자립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아동·청소년의 사회배제 및 주거권과 관련된 최근의 주요 연구 현황을 요약한 것이 아래 표 II-20이다.

표 II-20. 아동·청소년 사회배제 및 주거권 관련 최근 연구

연구자 (년도)	연구대상	연구 방법 (조사 규모)	주제어	주요내용 및 제언
임세희 (2019)	한국복지패널 1, 4, 7차 년도 참여 고등학생	2차자료 분석 (477명)	주거권, 아동 주거빈곤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주거빈곤가구 규모 파악</li> <li>• 주거빈곤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관련 지표에 부정적 영향</li> <li>• 아동 기본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행</li> </ul>

연구자 (년도)	연구대상	연구 방법 (조사 규모)	주제어	주요내용 및 제언
			주거비 과부담, 주거빈곤정책, 아동발달	모니터링,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아동주거빈곤가구 포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집행력과 강제성 제고</li> </ul>
임세희 외 (2018)	한국복지패널 1, 4, 7차년도 참여 고등학생	2차자료 분석 (521명), 면접 조사 (10사례)	과밀가구, 필수설비미달가구,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가구, 소득대비 주거비 과부담, 주거비 제외 잔여소득 과부담, 생존권 박탈경험 발달권, 보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빈곤이 아동의 일상생활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 확인</li> <li>• 주거기본법에 아동에 대한 지원 명시</li> <li>•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다양화 필요</li> <li>•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급여 상향조정 및 우선권 부여 필요</li> <li>• 주거관리비 절감대책 마련 필요</li> <li>•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및 최저주거기준의 구속력 강화 필요</li> </ul>
김성경, 정민아, 김희성, 이경혜 (2019)	아동복지 현장 실무자	포커스 그룹 면접 (11명)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주택의 구성요소 탐색</li> <li>•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출발 준비'로 강점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 필요</li> <li>• 퇴소 청소년 욕구 반영 공간 마련 필요</li> <li>• 완전한 자립을 위한 금전관리, 자존감을 바탕으로 자립에 성공, 일에 대한 지속성을 통한 자립 유지 지원 필요</li> </ul>
주영선, 정익중 (2019)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참여 중학생	2차자료 분석 (356명)	주거빈곤, 지역빈곤, 청소년 비행, 양육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의 이중 위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파악</li> <li>• 주거와 지역사회가 이중으로 빈곤할수록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청소년 비행 증가</li> <li>• 주거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이 열악할수록 주거와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부모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li> <li>• 소득 관점의 빈곤의 정의를 주거와 지역사회 관점으로 확대 필요</li> </ul>

연구자 (년도)	연구대상	연구 방법 (조사 규모)	주제어	주요내용 및 제언
박금령, 최병호 (2019)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 참여 가구원 (성인)	2차자료 분석 (12,026명)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주거취약계층, 주관적 건강수준, 삶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취약계층의 주관적 건강수준과 삶의 만족도 확인</li> <li>낮은 교육수준, 이혼·별거·사별 상태, 저소득층 중 주거취약계층의 비중 증가</li> <li>주거의 물리적 환경과 건강, 삶의 만족 간 밀접한 관계</li> <li>낙후되거나 불량한 주거환경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보수를 위한 지원 필요</li> </ul>
최은영 외 (2018)	비주택 거주 일반가구와 외국인가구	설문 조사 (2087가구), 심층 면접 조사	비주택 주거, 인권, 주거전략, 비적정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주거안정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li> <li>비주택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주거권 이외의 인권침해 발생(생명권, 건강권, 사생활보호의 권리,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침해 및 사회적 배제,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 등)</li> <li>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거전략 수립 및 이에 대한 효력을 부여하는 입법, 인권 실현을 위한 법률과 조례 제·개정 필요</li> <li>비적정 주거에 대한 기준 법제화 필요</li> </ul>
강미나 외 (2019)	일반가구 및 특성가구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	설문 조사 (6만 가구 내외)	자가점유율, 보유율, RIR,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인당 주거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 주거실태조사 분석</li> <li>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감소(17년 5.9%→18년 5.7%)</li> <li>1인당 주거면적 소폭 증가(17년 31.2㎡→ 31.7㎡)</li> <li>월소득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 감소 (17년 17%→18년 15.5%)</li> <li>청년가구의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비중 감소(3.1→2.4%)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10.5→9.4%) 감소</li> </ul>
임세희, 박경하 (2017)	2014년 주거실태조사 -개별가구특성	2차자료 분석 (2만 가구 내외)	주거빈곤, 주거복지, 최저주거기준, 중복주거빈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저주거기준의 각 하위기준미달에 따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욕구 차이 확인</li> <li>소득이 동일할 경우 주거비 과부담</li> </ul>

연구자 (년도)	연구대상	연구 방법 (조사 규모)	주제어	주요내용 및 제언
			주거비과부담	<p>가구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가구일 수 있으므로 주거비 과부담가구에 대한 정책적 개입 시 소득 통제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우선적 개입, 비자가가구의 주거빈곤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 필요</li> </ul>
임세희, 김선숙 (2016)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부가조사 완료 고등학생	2차자료 분석 (512명)	주관적 행복감, 주거빈곤,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 과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파악</li> <li>• 최저주거기준미달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관계에 부정적이며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li> <li>• 주거복지에 있어 아동가구에 대한 우선권 설정 필요</li> </ul>
고주애 (2016)	-	선행 연구 고찰	아동 주거빈곤, 주거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 파악</li> <li>•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한 주택지원, 특히 가정해체의 우려가 높은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li> <li>•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한 아동주거정책 수립 및 실천 필요</li> </ul>
우경연 (2016)	인재양성사업 지원대상 초,중,고등학생	사례 분석 (12명)	사회적 배제, 아동의 참여, 사회적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극복개입방안 모색</li> <li>• 가족해체·다양한 형태의 가정 증가 등으로 인한 아동복지 문제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적 성격의 복지서비스 강화, 사례관리시스템, 맞춤형 서비스 필요</li> <li>• 경제활동이 어렵고 가구소득이 낮은 여성가구주 가구 및 소년소녀가정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보완 필요</li> </ul>

연구자 (년도)	연구대상	연구 방법 (조사 규모)	주제어	주요내용 및 제언
김소은, 정익중, 정수정 (2016)	2015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조사 참여 초 중 고등학교	2차자료 분석 (7,535명)	사회적 배제, 빈곤, 빈곤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사회적 배제 실태 및 영향요인 확인</li> <li>•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부모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맞벌이 가정인 경우, 한부모·조손·재혼가정인 경우에 전반적 사회적 배제의 위험 증가</li> <li>• 남아는 비행이나 가족·친구 관계 관련 지표에서, 여아는 신체활동이나 자살충동, 학업스트레스 관련 지표에서 사회적 배제 경험 위험도 증가</li> <li>• 기존의 빈곤가구의 소득지원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학교급을 고려한 전문적 지원 프로그램 필요</li> <li>• 성별을 고려하여 비행이나 또래관계에 대한 남학생에 대한 지원방안과 함께 신체활동이나 자살충동,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여학생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지원 고려 필요</li> <li>• 사회적으로 배제된 아동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의 평가기준 틀을 마련, 사회적 배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li> </ul>
임세희 (2015)	2014년 주거실태조사 -개별가구특성	2차자료 분석 (2만 가구 내외)	최저주거기준, 결정요인, 지역, 공공임대주택, 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결정요인 분석</li> <li>• 가구주가 남성, 고학력, 비수급가구, 비장애가구, 자가가구 기준미달 주택에 거주할 확률 감소. 단, 아동수가 많으면 확률 증가</li> <li>• 지역의 평균 월세가 높을 경우 개별가구의 기준미달주거 확률 증가</li> <li>• 최저주거기준미달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증가 요구</li> <li>• 최저주거기준을 미충족한 주택의 경우 월세 규정 별도 산정 및 관리 필요</li> <li>• 기초보장급여 대상 가구의 자산축적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li> </ul>

연구자 (년도)	연구대상	연구 방법 (조사 규모)	주제어	주요내용 및 제언
Clair (2019)	아동	선행연구 고찰	Child well-being, Well-becoming, Housing, Home,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주거경험(주거안정성, 주거이동성, 그리고 주거의 질)을 참고로 거주와 아동의 삶(행복) 간의 관계 탐색</li> <li>•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동들에게 아동의 삶에서 거주역할은 삶의 과정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li> <li>• 임대주택 아동들은 자가소유주택의 아동들에 비해 주관적 행복일 낮게 보고할 가능성이 있음.</li> <li>• 숙제를 할 공간과 지역공원에 대한 접근 또한 아동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li> </ul>
Main & Brads haw (2014)	2012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Survey (성인)	설문조사 자료 분석	poverty, social exclusion, quality of life, participation, resour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활동의 소유/향유 비율, 주관적 빈곤, 빈곤의 특성(가족유형, 아동의 나이, 인종, 점유안정성), 삶의 질(건강과 행복, 생활환경, 범죄 및 위험요소) 등에 대한 분석</li> <li>• 거주지의 설비 문제와 이웃 문제 모두 빈곤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li> <li>• 빈곤과 박탈, 그리고 사회적 배제 간의 연관성은 매우 강력하며, 아동과 사회적 배제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li> </ul>
Houston (2011)	-	선행 연구 고찰	poverty, social exclusion, public poli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의, 빈곤의 원인, 초기 아동기 개입, 복지 및 고용 정책 등에 대한 탐색</li> <li>• 대부분의 빈곤연구는 개인의 사회적 배제 혹은 포용에 대한 인식을 거의 포함하지 않음.</li> <li>• 사회적 배제로서의 빈곤의 개념 도입은 아동들을 위한 목표를 인적 자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와 행복의 보장으로 이끌 것임.</li> </ul>

### 3. 소결 및 시사점

#### 1) 아동·청소년 우선적 주거권 개념 정립과 법제화

사회권으로서 주거권은 그간 국제사회에서 ‘적절한 주거’라는 개념이 정책대상  
에 관계없이 통용되었고 아동·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제 주거권  
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므로 사회권을 넘어 인권으로 인식으로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15년에 「주거기본법」을 제정·시행하여 노인·장애인과  
같은 주거약자를 선별적으로 맞춤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접근이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주거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가구주가 아닌 세대원이므로 독자적인 주거 선택권이  
없고, 이 시기에 주거는 안전·보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거권은 다른 고유한  
권리를 보장하는 전제 요소이자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에 아동·청소년기에 장기간  
주거권을 침해 받는 경험을 한다면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하여 전 생애에 걸쳐  
사회배제 상태에 고착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현재 주거와 관련하여 주거빈곤,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취약계층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는데, 주거 문제를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들을 ‘주거약자’로 규정하고 우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행연구와 국내·외 정책사례를 참고할 때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주거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강제퇴거 위험이 없고, 주거비가 다른 기초 수요의  
충족을 저해할 정도가 아닌 적정 수준을 유지하며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발달  
에 적합한 공간과 환경을 확보하고 사회서비스 및 인프라 접근이 용이’한 정도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성장·발달에 적합한 최소주거기준을 충족하는지(과밀·지하·비주택  
거주 문제 등), 사생활 보호와 주거지 주변의 안전은 어떠한지, 차별이나 장애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을 주거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책대상의 특성을 다면적으로 반영하는 주거정책 개발 및 추진이 요구된다.

## 2)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중·장기계획 수립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은 시민(civic child)으로서 차별 없고 균등한 주거복지를 향유하는 것이므로 아동시민권의 핵심권리로 다루어져야 한다. 지난 해 10월에 발표된 관계부처합동의 아동주거권 보장 대책은 분명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주거정책과 지역사회개발정책이 분리되어 있고, 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다자녀가구가 아닌 ‘아동이 있는 가구’로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정책방향과 목표를 수립한 후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 주거권 논의에서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이주지원 등을 강구하고, 무엇보다 보호종료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고 주택 물량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단발적인 정책보다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제와 서비스를 정비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 전략이 주효할 것이다.

## 3)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표 개발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개념과 구성요소를 명확히 한다면 국가수준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개입 지점이 분명해진다. 즉,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수준을 파악하

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요소를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부모(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대다수 일반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보호·생활하는 비주택거주 아동·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주거환경이 인권보호와 발달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자료 확보 및 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지표체계(안) 개발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과밀'을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규정하여 21세 이상은 반드시 독립적인 방을 사용해야 하고, 동일성별이면서 동시에 한 명이 10세 이하인 경우에는 10~20세까지 같은 방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과밀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주택법 상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품질기준을 두고 있는데, 공간과 보안, 냉·난방환경, 조명과 전기, 위생시설, 취사 및 쓰레기 처리, 구조와 자재, 실내 공기의 질, 물 공급, 납성분 페인트, 접근성, 입지와 지역사회, 위생상태, 화재경보 등 13가지에 달한다(최은영 외, 2018, p.205; 임세희, 송아영, 2020, p.119 재인용).

우리나라도 「헌법」, 「주택법」, 「주거기본법」과 하위법령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주거기준은 선언적인 기능을 넘어 강행규정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 또한 구조성능환경기준은 측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기준조차 부재하다. 그러나 주택의 전반적인 품질은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적절성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즉,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상태나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한 지표를 개발·관리할 필요가 있다.

#### 4)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실태조사 추진

현재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법정 실태조사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주거

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거나 주거권 미보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부재하다. 즉, 앞에서 언급한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를 생산·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조차 부족하다. 이에 주거권 보장을 통해 이들의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근거기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에 주거빈곤 아동·청소년의 실태조사 근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 주거권 대책에서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이주지원 등 지원내용과 정책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실태와 지원요구에 대한 조사는 「아동복지법」 상 시설과 위탁보호종료아동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사실상 ‘비주택’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시설거주아동·청소년이 주거와 관련하여 일반아동·청소년에 비해 어떤 차별과 격차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원 가정을 이탈하여 시설보호 하에 있거나 보호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법에 각각 근거를 마련하거나 특별법을 활용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 ○ — 제Ⅲ장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실태 분석

- 1. 조사개요
- 2. 아동·청소년의 주거실태
- 3. 주거환경과 아동청소년의  
사회배제
- 4.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주거 관련 욕구
- 5. 소결 및 시사점



### 1. 조사개요

#### 1) 주거실태조사 대상: 일반 청소년

청소년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5,914부의 설문지가 취합되었다. 조사대상의 성별은 남자 51.9%, 여자 48.1%였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 33.4%, 중학생 31.9%, 고등학생 34.7%였다.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규모는 특별/광역시 40.9%, 중소도시 49.1%, 읍·면·도서벽지 10.0%였다.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중'이 50.8%로 가장 많고, '중상' 31.2%, '상' 14.2%, '중하' 2.0%, '하'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92.6%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3.3%가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II-1).

표 III-1. 일반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단위: %)

구분	항목	백분율	구분	항목	백분율
성별	남자	51.9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하	0.4
	여자	48.1		중하	2.0
	합계	100.0		중	50.8
교급	초등학생	33.4		중상	31.2

14) 이 장은 김승경 선임연구위원, 김지연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구분	항목	백분율
	중학생	31.9
	고등학생	34.7
	합계	100.0
지역규모	특별/광역시	40.9
	중소도시	49.1
	읍·면·도서벽지	10.0
	합계	100.0

구분	항목	백분율
	상	14.2
	무응답	1.4
	합계	100.0
장애유무 (본인 및 가족)	장애 있음	3.3
	장애 없음	92.6
	무응답	4.1
	합계	100.0

## 2) 주거실태조사 대상: 쉼터 거주 청소년

청소년쉼터에 거주 중인 청소년들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단기·중장기 쉼터 60개소에 거주 중인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8월에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94부의 설문지가 취합되었다.

조사대상의 성별은 여자 54.4%, 남자 45.6%였고, 거주 중인 쉼터의 유형은 단기 71.1%, 중장기 28.9%였다. 나이는 16~18세가 51.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9~24세(32.3%), 13~15세(15.0%)의 순이었다. 학력은 학교(초, 중, 고, 대학)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66.6%,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이 20.7%,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10.2%였다. 청소년쉼터 입소 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중’인 경우가 52.6%로 가장 많고, ‘중하’ 23.4%, ‘하’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중위층 이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 여부에 대해서는 장애가 없는 경우가 88.1%, 장애가 있는 경우가 5.4%였다(표 III-2).

표 III-2.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단위: %)

구분	항목	백분율	구분	항목	백분율
성별	남자	45.6	쉼터유형	단기	71.1
	여자	54.4		중장기	28.9
	합계	100.0		합계	100.0
나이	19세~24세	32.3	학력	초등학교 재학	2.0
	16세~18세	51.0		중학교 재학	15.3
	13세~15세	15.0		고등학교 재학	40.5

구분	항목	백분율
	11~12세	1.4
	무응답	0.3
	합계	10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하	12.4
	중하	23.4
	중	52.6
	중상	7.9
	상	3.8
	합계	100.0

구분	항목	백분율
	고졸	20.7
	대학 재학	8.8
	학업중단	10.2
	무응답	2.4
	합계	100.0
장애유무 (본인)	장애 있음	5.4
	장애 없음	88.1
	무응답	6.5
	합계	100.0

### 3) 심층면접조사 대상: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자립지원을 받은 청소년들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에는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후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총 8명이 참여하였으며, 연령이 20~24세에 해당하는 남성 5명, 여성 3명이었다. 면접에 앞서 모든 참여자에게 설명문을 배부하였으며, 내용은 익명성을 보장하고 녹음 및 내용에 대한 전사 후 보고서에 인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면접과정과 면접 후 녹음내용에 대해 삭제를 원할 시 언제든지 가능함을 고지하였다.

모든 참여자에게 심층면접에 대한 참여 동의를 받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의 주거환경, 주거지원을 받아 입주한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주거지원을 받은 이후 삶의 변화, 향후 보완되어야 할 주거지원 서비스의 내용 등에 대해 90~120분 내외의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의 참여자 현황은 표 III-3과 같고, 주요 내용은 '2절 아동·청소년의 주거실태' 결과와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표 III-3.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구분	A	B	C	D	E	F	G	H
성별	여	여	남	남	남	남	여	남
연령	21세	22세	22세	24세	24세	24세	20세	24세
직업	취업준비	취업준비	취업준비	취업	취업준비	취업준비	학생	학생
가정 밖 생활기간	17세부터	18세부터	9세부터	18세부터	15세부터	18세부터	17세부터	8세부터
시설입소 경험	청소년쉼터, 고시텔,	청소년쉼터, 고시텔, 병원 간호부장 연계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상담복지센터 추천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중장기쉼터, 고시원, 자립지원관	중장기쉼터, 일시쉼터, 고시텔, 자립지원관	양육시설,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
지원주택 거주기간	임대주택 6개월	행복주택 6개월	임대주택 6개월	임대주택 18개월	임대주택 3개월	임대주택 8개월	임대주택 3개월	임대주택 4개월
지원주택에 대한 만족도	8점	1점	8점	8점	8점	5점	7~8점	0점
자립지원관 지원여부	지원없음	생필품 지원	생필품 지원	생필품 지원, 의료비 지원	생필품 지원	생필품 지원	생필품 지원	생필품 지원
수급자 여부	기초생활 수급자	비해당	기초생활 수급자	비해당	비해당	의료급여	생계·의료·주거 급여	생계·의료·주거 급여

\* 출처: 저자작성

## 2. 아동·청소년의 주거실태<sup>15)</sup>

### 1) 비적정 주거 청소년 추정<sup>16)</sup>

(1) 주택의 종류와 위치에 따른 비적정 주거: 구조성능환경

조사대상 청소년 중 97.8%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0.3%는 쪽방, 고시원, 상가, 공장, 여관 등 주택이 아닌 건물과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컨테이너 등 주택이 아닌 임시구조물을 포함하는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4,063,251명<sup>17)</sup> 중 3,973,859명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12,190명이 주택이 아닌 건물이나 임시구조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표 III-4).

표 III-4. 주택의 종류에 따른 적정 주거 여부

(단위: %)

	주택 (적정)			비주택(비적정)		기타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택이 아닌 건물	주택이 아닌 임시구조물	기타	무응답
백분율	6.7	14.4	76.7	0.2	0.1	0.1	1.8
	97.8			0.3		1.9	

15) 유의도 수준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p<.05, \*\*p<.01, \*\*\*p<.001

백분율을 표기한 표에서 중복응답을 제외한 각 항목별 합은 100.0%임.

16) 본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및 청소년쉼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소년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은 제외하고, 여기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주거적정성을 파악하여 비적정주거 상태에 놓인 청소년의 수를 추정해보고자 초, 중, 고등학생 5,914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7) 본 조사의 모집단은 2020년 4월 교육통계DB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 수는 4,063,251명이며 각 학교급 별 학생 수는 초등학교 1,357,865명(33.4%), 중학교 1,294,359명(31.9%), 고등학교 1,411,027명(34.7%)임.

전체 조사대상자 중 95.7%는 지상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지하 혹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1.0%, 옥상(옥탑)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1.0%로 나타나 지하나 옥상 등 적정하지 않은 주거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4,063,251명 중 3,888,531명은 지상층에 거주하고 있으나, 81,265명은 반지하나 옥상 등 적정하지 않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표 III-5).

표 III-5. 집의 위치에 따른 적정 주거 여부

(단위: %)

	적정 주거	비적정 주거		무응답
	지상	반지하	옥상(옥탑)	
백분율	95.7	1.0	1.0	2.3
	95.7	2.0		2.3

주택의 종류와 집의 위치를 모두 고려하여 적정 주거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응답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기타 및 무응답을 제외하고 전체 초, 중, 고등학생의 94.8%에 해당하는 3,851,962명은 적정 주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2.2%에 해당하는 89,392명은 집의 종류나 위치 중 어느 한쪽이라도 비적정 주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표 III-6). 한편, 본 조사 표본에서 비주택 거주는 전체의 0.3%로, '18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아동가구의 비주택 거주 비율(0.7%) 보다 절반 이상 낮고, 구조성능환경미달은 전체의 2.2%로, '19년 주거실태조사 아동가구의 구조성능환경미달 비율(0.7%) 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그림 III-1).

표 III-6. 주택의 종류와 집의 위치에 따른 적정 주거 여부

(단위: %)

	적정 (주택 & 지상)	비적정		기타	무응답
		비주택 or 반지하, 옥상	비주택 & 반지하, 옥상		
백분율	94.8	2.2	0.0	0.1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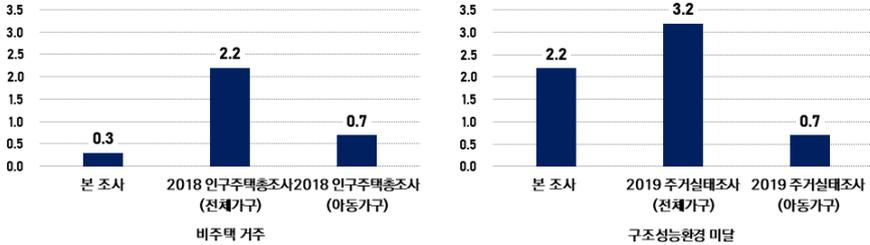


그림 III-1. 비주택 거주 규모 및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 가구 규모 비교

## (2) 가족구성에 따른 방의 적정 여부

가족구성<sup>18)</sup>에 따라 방의 개수가 적정한지 확인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방의 개수를 산출하였다. 국토부의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5.27, 일부개정, 2011.5.27. 시행)은 용도별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해 ①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②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③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④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등의 침실분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별 분리와 형제자매 간 성별 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가족에게 필요한 방을 조부모 세대, 부모세대, 나와 동성 형제자매, 이성형제자매, 기타 가족 등 총 5개로 구분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방 개수와 가족구성에 따라 필요한 방의 최소 개수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방의 개수가 가족구성에 비해 적절하거나 충분한 경우는 전체의 72.1%였으나, 방의 개수가 부족한 경우도 2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이성형제자매 간 분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족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III-7).

18) 본래 가족구성원 수와 성별, 세대를 고려하여 최저주거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아닌, 자신의 가족 전체 인원을 기재한 경우가 있어 세대와 성별을 고려한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이에 가족구성에 따른 방의 개수는 제외하고 주택의 종류와 위치로 적정 주거와 비적정 주거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I-7. 가족구성에 따른 방의 적정 수 보유 여부

(단위: %)

	부족	적정	충분	무응답
백분율	24.3	32.1	40.0	3.6

조사대상 청소년 중 혼자 사용할 수 있는 방을 가지지 못한 경우는 전체의 22.0%(893,915명)였고, 이들 중 이성의 형제자매와 함께 방을 사용하는 경우는 16.6%(148,390명)였고, 이들 중 함께 방을 사용하는 이성의 형제자매가 만 8세 이상인 경우는 63.2%(93,782명)로 나타났다. 즉, 모집단 청소년(4,063,251명) 중 약 2.3%에 해당하는 약 93,782명의 청소년이 8세 이상인 이성의 형제자매와 함께 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성의 부모나 8세 미만의 이성 형제자매<sup>19)</sup>와 함께 방을 사용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성별에 따른 방의 분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는 이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다(표 III-8, 그림 III-2).

표 III-8. 8세 이상 이성 형제자매와 함께 방을 사용하는지 여부

(단위: %)

	내 방 있음	내 방 없음	무응답		
내방이 있는지 여부 (백분율)	77.1	22.0	0.9		
	아버지	어머니	동성 형제자매	이성 형제자매	기타
함께 방을 사용하는 사람 (백분율)	16.3	25.9	63.2	16.6	4.7
	만 8세 이상		만 8세 미만		무응답
함께 방을 사용하는 이성 형제자매의 나이(백분율)	63.2		33.9		2.8

19) 연령에 관계없이 이성의 형제자매와 함께 방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 조사대상의 약 3.7%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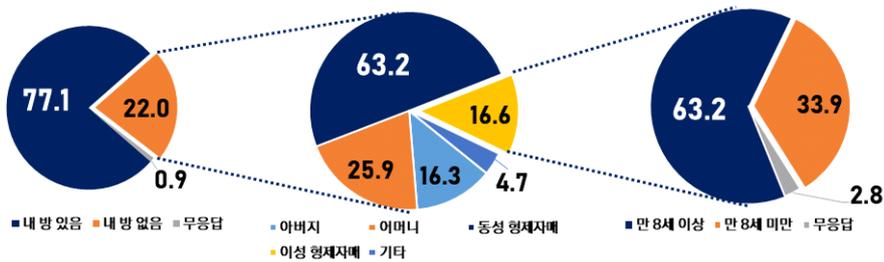


그림 III-2. 이성 형제자매와 함께 방을 사용하는지 여부

(3) 내부 시설 및 설비: 필수설비기준

집의 내부 시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가정 내에 부엌, 방, 거실이 설치되어 있고, 모든 가정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의 내부에 부엌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0.3% 있었고, 부엌을 다른 가족과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은 모든 가정 내부에 설치되어 있긴 하나, 다른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비율이 1.2%에 달하였고, 거실은 내부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0.1%였으나 다른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II-9).

표 III-9. 집의 내부시설

(단위: %)

	내부시설의 개수				사용하는 사람		
	없음	1개	2개 이상	무응답	우리 가족만	다른 가족과	무응답
부엌	0.3	95.1	1.0	3.7	94.0	0.7	5.2
화장실	0.0	27.7	68.5	3.7	93.4	1.2	5.4
방	0.1	0.8	95.5	3.6	93.3	0.8	5.9
거실	0.1	94.4	1.8	3.8	92.6	1.3	6.1

주택의 내부 설비를 살펴보면, 방의 냉방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설비는 전체 조사대상의 90%이상 가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엌의 싱크대와 온수시설, 화장실의 욕조나 샤워기, 온수시설 등은 95% 이상의 가구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가정이 1.8%, 방에 보일러 등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정이 2.0%에 달하였으며, 냉방시설은 거실의 경우 3.6%, 방의 경우 11.7%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수도미설치는 0.4%, 하수시설미설치는 0.8% 수준이었다(표 III-10).

표 III-10. 주택의 설비

(단위: %)

구분	설비	설치되어있음	설치되지 않음	무응답
부엌	싱크대(입식부엌)	95.9	0.1	4.0
	온수시설	95.5	0.6	3.9
화장실	양변기(수세식)	93.9	1.8	4.3
	욕조나 샤워기	95.7	0.5	3.8
	온수시설	95.8	0.3	3.9
방	보일러 등 난방시설	94.0	2.0	4.0
	에어컨 등 냉방시설	83.7	11.7	4.6
거실	보일러 등 난방시설	94.3	1.4	4.3
	에어컨 등 냉방시설	92.2	3.6	4.2
기타 <sup>20)</sup>	상수도시설	89.7	0.4	9.9
	하수시설	88.9	0.8	10.3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5.27, 일부개정, 2011.5.27. 시행)(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0년 2월 4일 인출)에서 필수적인 설비를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용 부엌, 전용 화장실 여부와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설치여부를 통해 산출한 결과,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초, 중, 고등학생 4,063,251명 중 3.1%에 해당하는 125,961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을 포함하여 필수설비기준에 미달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중, 고등학생 2,705,386명 중 2.8%

20) 상·하수도 시설은 중, 고등학생들에게만 조사하였다.

에 해당하는 75,750명이었다. 이에 비해 비적정주거 상태에 있는 청소년 중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적정 주거집단 초, 중, 고등학생의 12.4%, 상·하수도 시설을 포함한 필수설비기준미달 비율은 비적정 주거집단 중·고등학생의 12.3%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필수설비기준미달 비율이 매우 높았다(표 III-11). 한편, 이러한 결과는 '19년 주거실태 조사의 아동가구 보다 높고, 전체 가구 대비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그림 III-3).

표 III-11. 필수설비기준 미달 규모

(단위: %)

구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sup>21)</sup>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 포함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sup>22)</sup>		
		모두 있음	없음	무응답	모두 있음	없음	무응답
전체	백분율	89.8	3.1	7.1	85.6	2.8	11.5
비적정주거	백분율	71.2	12.4	16.3	65.5	12.3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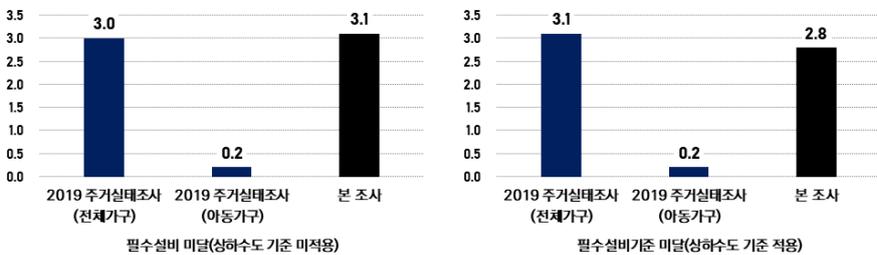


그림 III-3. 필수설비기준 미달 규모 비교 (단위: %)

21) 전용부엌, 입식부엌(싱크대), 전용화장실, 수세식양변기, 욕조나 샤워기(또는 온수) 설치 여부로 산출하였다.  
 22) 상, 하수도 시설은 중, 고등학생 대상 조사에만 포함되어 중, 고등학생 대상 응답 결과로 산출. 전용부엌, 입식부엌(싱크대), 전용화장실, 수세식양변기, 욕조나 샤워기(또는 온수) 설치 여부에 상하수도 시설 설비 여부를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 2)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sup>23)</sup>

### (1) 적정 및 비적정주거, 청소년쉼터거주 청소년의 주거환경 비교

청소년들의 주거환경을 비교하기 위해 적정주거집단, 비적정주거집단과 함께 청소년쉼터거주집단을 포함하여 3개 집단의 주거환경을 살펴보았다. 적정주거집단과 비적정주거집단은 앞서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실태조사에서 주택의 종류와 위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여기에 청소년쉼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집단을 추가하여 청소년들의 주거환경을 비교하였다(표 III-12).

표 III-12. 주거환경에 따른 집단 구분

(단위: %)

	적정주거집단 (주택 & 지상)	비적정주거집단 (비주택 or 지하, 옥상)	쉼터거주집단
백분율	94.8	2.2	4.9

\* 청소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초, 중, 고등학생과 쉼터거주집단의 dataset을 통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초, 중,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표 III-6]과는 차이가 있음.

#### 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상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시설)의 상태는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비적정주거집단과 쉼터거주집단이 적정주거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쉼터는 물이 새거나 잠김, 지붕이나 벽이 무너질 위험, 환기가 되지 않음, 바깥 소음이 차단되지 않음, 악취가 남, 냉난방이 잘 되지 않음, 외부침입 가능성 등의 주택의 안전성과 쾌적성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적정주거집단 역시 안전성과 쾌적성의 측면에서 열악한 특성을 보였는데, 곰팡이 핀 곳이 있음, 해충이 있음, 화재대비시

23) 여기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종류나 위치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초, 중, 고등학생 5,742사례와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294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중복응답을 제외한 각 항목별 합은 100.0%이다.

설 미비, 화재 위험 재질 등 주택의 쾌적성 항목에서 쉼터보다 유의미하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거주자들이 곰팡이나 해충으로 인한 건강문제, 화재의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쉼터와 비적정주거집단은 공통적으로 햇빛이 들지 않아 어둡고, 화재 시 소방차 출동이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3, 그림 III-4, 그림 III-5, 그림 III-6).

표 III-13. 현재 사는 집의 전반적인 상태

(단위: 점, 4점 만점)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비고
자연재해 위험	적정	1.25	.513	.213	
	비적정	1.27	.577		
	쉼터	1.24	.509		
	전체	1.25	.514		
비가 오면 새거나 잠김	적정	1.13	.419	48.517***	쉼터)비적정)적정
	비적정	1.28	.597		
	쉼터	1.37	.688		
	전체	1.15	.444		
지붕이나 벽이 무너질 위험	적정	1.09	.314	30.647***	쉼터)비적정)적정
	비적정	1.16	.384		
	쉼터	1.24	.529		
	전체	1.10	.331		
햇빛이 들지 않아 어두움	적정	1.16	.433	41.631***	비적정, 쉼터)적정
	비적정	1.40	.627		
	쉼터	1.36	.654		
	전체	1.18	.454		
환기가 되지 않아 답답함	적정	1.14	.403	123.407***	쉼터)비적정)적정
	비적정	1.39	.702		
	쉼터	1.52	.774		
	전체	1.16	.446		
충간소음이 심하게 들림	적정	1.72	.858	1.097	
	비적정	1.78	.954		
	쉼터	1.79	.976		
	전체	1.73	.866		
바깥소음이 차단되지 않음	적정	1.92	.920	31.732***	쉼터)비적정)적정
	비적정	2.16	1.028		
	쉼터	2.34	1.038		
	전체	1.95	.933		
곰팡이 핀 곳이 있음	적정	1.57	.806	17.997***	비적정)적정, 쉼터
	비적정	2.00	1.002		
	쉼터	1.57	.806		
	전체	1.58	.813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비고
개미, 바퀴벌레 등 해충이 있음	적정	1.50	.771	53.820***	비적정>쉽터>적정
	비적정	2.00	1.007		
	쉽터	1.85	.936		
	전체	1.52	.793		
약취가 남	적정	1.16	.412	56.414***	쉽터>비적정>적정
	비적정	1.32	.564		
	쉽터	1.41	.700		
	전체	1.17	.438		
냉난방이 잘 되지 않음	적정	1.19	.471	54.386***	쉽터>비적정>적정
	비적정	1.33	.591		
	쉽터	1.48	.670		
	전체	1.21	.489		
소방차 출동이 어려움	적정	1.37	.664	26.143***	비적정, 쉽터>적정
	비적정	1.62	.833		
	쉽터	1.61	.823		
	전체	1.39	.680		
화재대비시설 미비	적정	1.43	.798	14.123***	비적정>쉽터, 적정
	비적정	1.80	1.021		
	쉽터	1.47	.904		
	전체	1.44	.811		
화재 위험 재질	적정	1.36	.587	9.345***	비적정>쉽터, 적정
	비적정	1.58	.757		
	쉽터	1.40	.603		
	전체	1.37	.593		
외부침입 가능 정도	적정	1.31	.588	10.534***	쉽터>비적정, 적정
	비적정	1.37	.610		
	쉽터	1.47	.730		
	전체	1.32	.597		
주택의 안전성 (평균)	적정	1.27	.367	26.439***	비적정, 쉽터>적정
	비적정	1.44	.422		
	쉽터	1.40	.468		
	전체	1.28	.375		
주택의 쾌적성 (평균)	적정	1.42	.404	67.699***	쉽터, 비적정>적정
	비적정	1.66	.537		
	쉽터	1.67	.545		
	전체	1.44	.420		
주택의 전반적인 상태 (평균)	적정	1.35	.352	57.600***	비적정, 쉽터>적정
	비적정	1.56	.447		
	쉽터	1.54	.467		
	전체	1.36	.364		

\* 주: 1) 각 항목은 점수가 높을수록 열악함을 의미함.

주택의 안전성, 쾌적성, 전반적인 상태는 점수가 높을수록 열악함을 의미함.

2) † p<.1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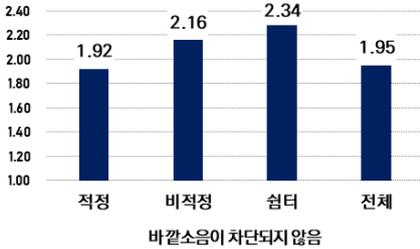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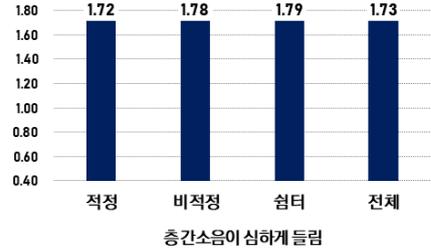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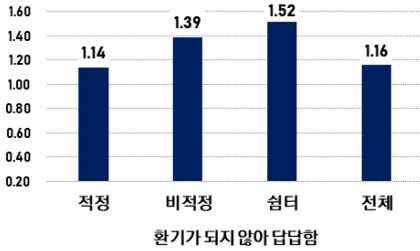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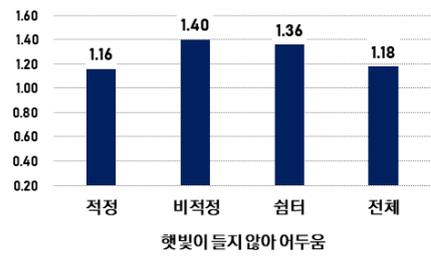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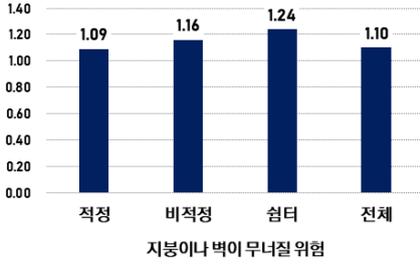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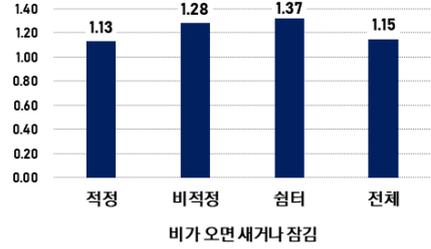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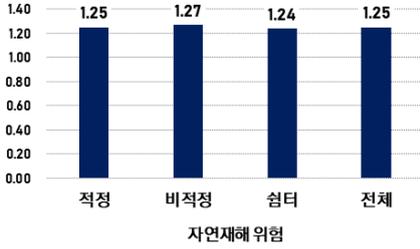


그림 III-4. 현재 사는 집의 전반적인 상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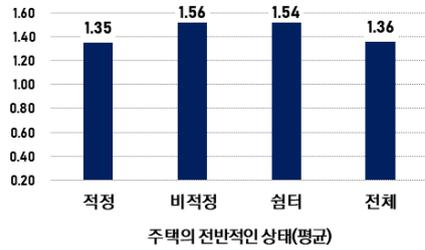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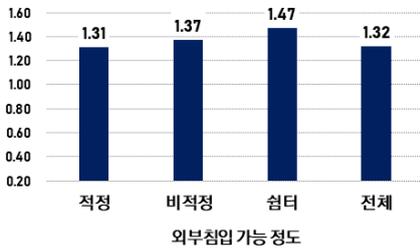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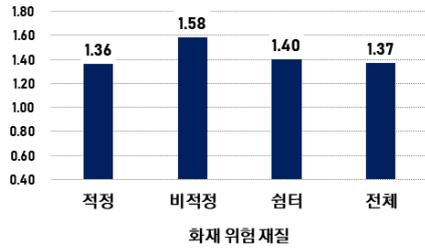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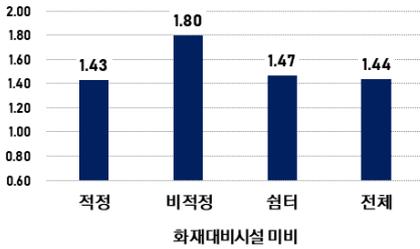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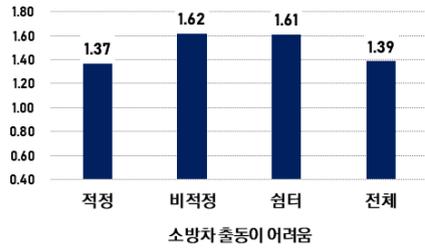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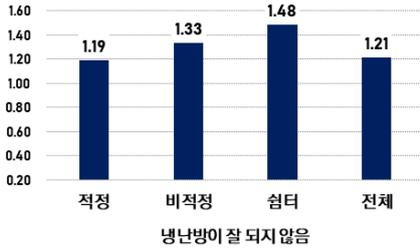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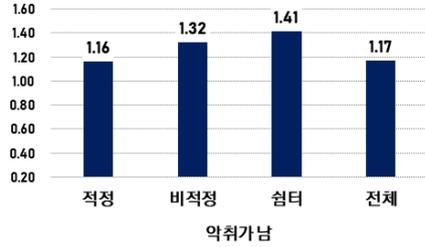


그림 III-5. 현재 사는 집의 전반적인 상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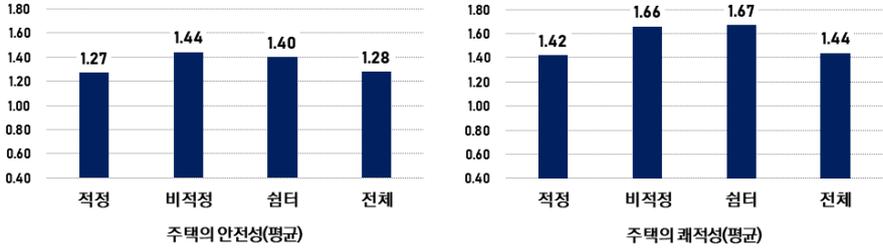


그림 III-6. 현재 사는 집의 전반적인 상태(3)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가장 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적정주거집단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비적정주거집단, 쉼터주거집단의 순이었다. 가장 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는 적정주거와 비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은 비위생적인 공간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쉼터 청소년들은 내 방이 없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표 III-14, 그림 III-8, 그림 III-9, 그림 III-10).

표 III-14. 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

(단위: %)

	넓고 위험한 공간	비위생적인 공간 (곰팡이, 해충 등)	비좁은 공간	내 방이 없는 것	냉난방 시설	기타	없음	소음 (바깥, 층간 소음 등)	$\chi^2$
적정	1.6	9.0	3.5	6.6	1.5	2.1	73.5	2.2	190233*
비적정	.8	22.1	5.3	9.2	0.0	0.0	62.6	0.0	
쉼터	1.4	4.9	6.3	14.7	4.5	10.8	57.3	0.0	
합계	1.6	9.1	3.7	7.0	1.6	2.5	72.5	2.1	

\* 주: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적정-비적정주거집단은 화재에 대비한 시설, 소화기, 청소, 인테리어, 엘리베이터, 가스레인지, 화장실, 집 문 등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이웃 간의 갈등, 주변시설 개발,

부실공사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비해 쉽터는 비가 새는 것(누수), 에어컨, 냉장고, 보안, 소음, 개인 방 등의 의견이 있었다(그림 III-7).



그림 III-7.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기타 의견)

②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환경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환경의 안전성과 쾌적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적정주거집단과 비적정주거집단은 쉽터주거집단에 비해 교육환경이나 여가를 보낼 장소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은 다른 집단의 청소년들에 비해 동네에서 공공기관 등의 이용이 편리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쉽터 거주 청소년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동네에서 사람들이 자주 싸우거나 술에 취해 돌아다닌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쉽터(특히 단기쉽터)의 경우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하철역 주변이나 유흥가가 있는 지역의 상가 등에 위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 있다(표 III-15).

표 III-15.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환경

(단위: 점, 4점 만점)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비고
범죄로부터 안전함	적정	3.37	.698	.323	
	비적정	3.33	.716		
	실택	3.35	.732		
	합계	3.37	.700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함	적정	3.21	.723	1.403	
	비적정	3.15	.754		
	실택	3.27	.735		
	합계	3.21	.724		
주차가 잘되어 있어 이동이 편함	적정	3.11	.869	.055	
	비적정	3.11	.821		
	실택	3.10	.876		
	합계	3.11	.868		
청소 및 쓰레기 처리가 잘되어 쾌적함	적정	3.24	.752	4.684**	적정, 실택)비적정
	비적정	3.04	.768		
	실택	3.24	.789		
	합계	3.24	.754		
공공기관 등의 이용이 편리함	적정	3.51	.677	7.942***	적정)비적정, 실택
	비적정	3.46	.730		
	실택	3.35	.746		
	합계	3.50	.682		
교육환경이 양호함	적정	3.46	.673	10.642***	적정, 비적정)실택
	비적정	3.41	.718		
	실택	3.28	.742		
	합계	3.45	.679		
여가를 보낼 장소가 충분함	적정	3.25	.830	10.181***	적정, 비적정)실택
	비적정	3.26	.789		
	실택	3.02	.922		
	합계	3.24	.835		
어둡거나 후미져서 위험해 보이는 곳이 없음	적정	2.98	.889	.671	
	비적정	2.89	.963		
	실택	3.00	.931		
	합계	2.98	.892		
빈 집 등 방치된 곳이 없음	적정	3.29	.840	2.133	
	비적정	3.16	.873		
	실택	3.24	.795		
	합계	3.29	.838		
장애를 가진 사람이 생활하기 편함	적정	3.04	.790	11.341***	적정)실택, 비적정
	비적정	2.82	.860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비고
	쉽터	2.87	.921		
	합계	3.03	.800		
동네의 안전 및 쾌적성 (평균)	적정	3.25	0.56	3.913*	
	비적정	3.17	0.55		
	쉽터	3.17	0.62		
	합계	3.25	0.56		
동네 사람들이 자주 싸움	적정	1.56	.788	17.274***	쉽터)적정,비적정
	비적정	1.48	.669		
	쉽터	1.83	.932		
	합계	1.57	.796		
동네 사람들이 자주 술에 취해 돌아다님	적정	1.66	.858	14.223***	쉽터)적정, 비적정
	비적정	1.57	.705		
	쉽터	1.92	.966		
	합계	1.67	.863		
동네 사람들의 관계 (평균)	적정	1.61	0.75	18.689***	쉽터)적정, 비적정
	비적정	1.53	0.61		
	쉽터	1.88	0.89		
	합계	1.62	0.76		

\* 주: † p<.1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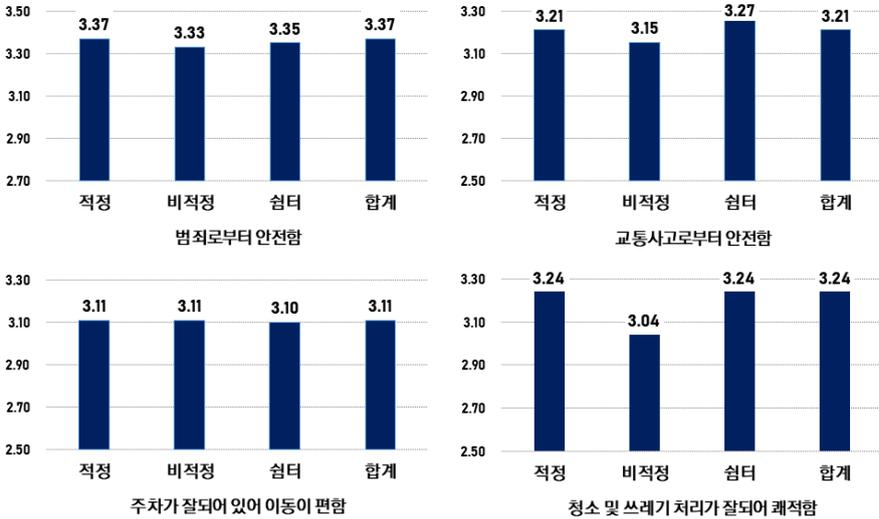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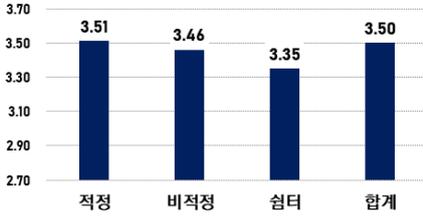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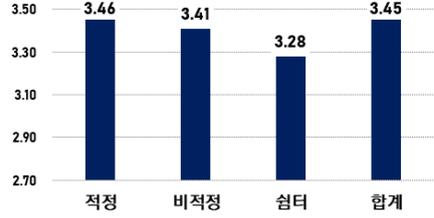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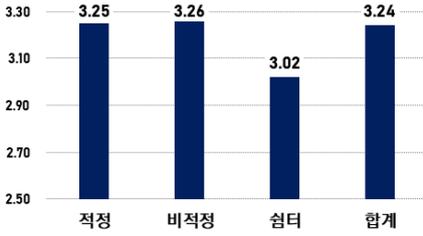
그림 III-8.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환경(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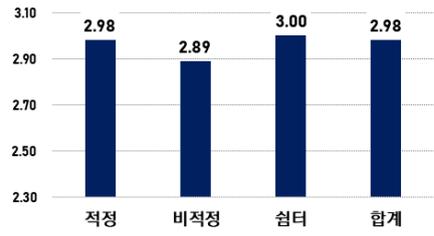
공공기관 등의 이용이 편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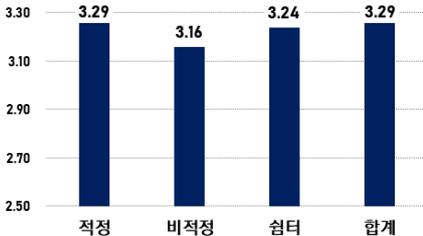
교육환경이 양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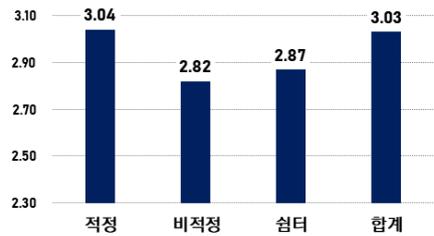
여가를 보낼 장소가 충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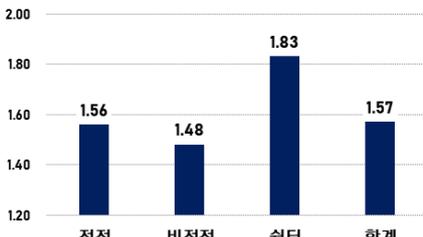
어둡거나 후미져서 위험해 보이는 곳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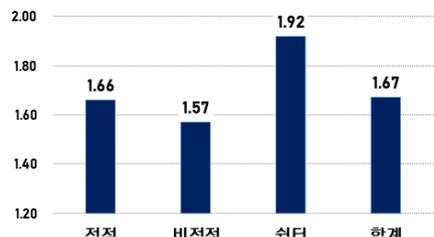
빈 집 등 방치된 곳이 없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생활하기 편함



동네 사람들이 자주 싸움



동네 사람들이 자주 술에 취해 돌아다님

그림 III-9.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환경(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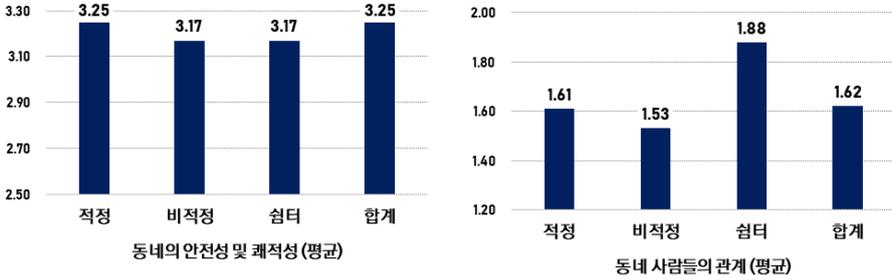


그림 III-10.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환경(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도는 적정주거집단이 가장 높고, 쉽터주거집단, 비적정주거집단 순이며, 적정주거집단의 집에 대한 만족도는 비적정주거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동네에 대한 만족도는 적정주거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비적정주거집단, 쉽터주거집단 순이며, 적정주거집단의 집에 대한 만족도는 쉽터주거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III-16, 그림 III-11).

표 III-16. 집과 동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10점 만점)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비고
집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적정	8.04	2.22	6.668**	적정)비적정
	비적정	7.47	2.31		
	쉽터	7.66	2.27		
	합계	8.01	2.22		
동네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적정	7.86	2.40	14.178***	적정)쉽터
	비적정	7.43	2.43		
	쉽터	7.07	2.56		
	합계	7.81	2.42		

\* 주: † p<.1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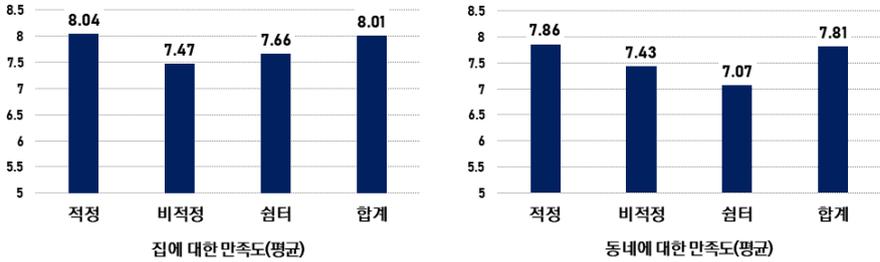


그림 III-11. 집과 동네에 대한 만족도

(2) 걱정-비적정주거집단 청소년의 주거실태

① 주거 관련 차별경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로 인해 차별받은 경험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서 응답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비적정주거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닌 건물이나 임시구조물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오히려 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III-17).

표 III-17. 주택의 종류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chi^2$
단독주택	0.5	99.5	16.357**
다세대주택	1.3	98.7	
아파트	0.3	99.7	
주택 아닌 건물	0.0	100.0	
임시 구조물	0.0	100.0	
전체	0.5	99.5	

\* 주: † p<.10, \*p<.05, \*\*p<.01, \*\*\*p<.00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위치로 인해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반지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III-18).

표 III-18. 집의 위치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

(단위: %)

	예	아니오	$\chi^2$
지상	0.3	99.7	43.331***
반지하/지하	4.8	95.2	
옥상/옥탑	0.0	100.0	
전체	0.3	99.7	

\* 주: † p<.10, \*p<.05, \*\*p<.01, \*\*\*p<.001

적정주거집단과 비적정주거집단 청소년들의 집의 점유형태를 살펴본 결과, 적정 및 비적정주거집단의 경우 자가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적정주거집단에서는 전세가, 비적정주거집단에서는 월세 및 일세가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9).

표 III-19. 집의 점유형태

(단위: %)

	자가	전세	월세 및 일세	사용료 없음	모름	$\chi^2$
적정주거	49.1	12.3	7.0	0.3	31.2	47.242***
비적정주거	24.3	7.0	13.9	1.7	53.0	
전체	48.5	12.2	7.2	0.4	31.7	

\* 주: † p<.10, \*p<.05, \*\*p<.01, \*\*\*p<.001

집의 점유형태가 전세 혹은 월세(및 일세) 등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적정주거집단의 전월세 거주자 중 12.2%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적정주거집단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없었다. 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정확한 차이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표 III-20).

표 III-20. 전월세 거주자 중 공공임대주택 여부

(단위: %)

	예	아니오	모름	합계	$\chi^2$
적정주거	12.2	40.7	47.0	100.0	8.536*
비적정주거	0.0	22.7	77.3	100.0	
전체	12.0	40.3	47.7	100.0	

\* 주: † p<.10, \*p<.05, \*\*p<.01, \*\*\*p<.00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로 인해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 중 0.3%는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은 차별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다(표 III-21).

표 III-21. 집의 점유형태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

(단위: %)

	예	아니오	합계	$\chi^2$
적정주거	0.3	99.7	100.0	.064
비적정주거	0.0	100.0	100.0	
전체	0.3	99.7	100.0	

\* 주: † p<.10, \*p<.05, \*\*p<.01, \*\*\*p<.001

② 내가 사용하는 방(공간) 여부

조사대상 청소년들 중 나 혼자 사용하는 내 방이 있는지에 대해 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 중 78.0%, 비적정주거집단 청소년의 62.7%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적정주거집단 청소년들이 비적정주거집단 청소년들에 비해 자기 방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2).

표 III-22. 내 방이 있는지 여부

(단위: %)

	내 방 있음	내 방 없음	$\chi^2$
적정주거	78.0	22.0	16.536***
비적정주거	62.7	37.3	
전체	77.6	22.4	

\* 주: † p<.10, \*p<.05, \*\*p<.01, \*\*\*p<.001

나 혼자 사용하는 방이 없는 경우, 내가 주로 사용하는 방은 몇 명이 함께 사용하는지에 대해 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2명이라고 응답한 반면, 비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의 경우는 2~3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5명 이상 함께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비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이 방을 함께 사용하는 인원이 적정주거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로 사용하는 방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비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에 비해 적정주거집단이 1.0%p 높았다(표 III-23).

표 III-23. 나와 함께 방을 사용하는 사람 수

(단위: %)

	2명	3명	4명	5명 이상	방 없음	$\chi^2$
적정주거	72.1	14.5	6.6	1.4	5.3	34.988***
비적정주거	45.7	30.4	8.7	10.9	4.3	
전체	71.2	15.1	6.7	1.7	5.3	

\* 주: † p<.10, \*p<.05, \*\*p<.01, \*\*\*p<.001

사용하는 방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주로 잠을 자거나 공부를 하는 공간은 대부분 거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비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은 모두 거실에서 주로 잠을 자거나 공부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은 거실을 주로 사용하지만, 부엌이나 기타 공간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표 III-24).

표 III-24. (사용하는 방이 없는 경우) 주로 잠을 자거나 공부하는 공간

(단위: %)

	거실	부엌	기타	$\chi^2$
적정주거	90.5	1.6	7.9	.210
비적정주거	100.0	0.0	0.0	
전체	90.8	1.5	7.7	

\* 주: † p<.10, \*p<.05, \*\*p<.01, \*\*\*p<.001

나 혼자 사용하는 방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주로 방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은 동성의 형제자매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은 주로



표 III-26. (이성의 형제자매와 방을 사용하는 경우) 이성 형제자매의 연령 (단위: %)

	8세 이상	8세 미만	$\chi^2$
적정주거	65.4	34.6	.459
비적정주거	80.0	20.0	
전체	65.8	34.2	

\* 주: † p<.10, \*p<.05, \*\*p<.01, \*\*\*p<.001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이나 공간이 잠을 자거나 공부하기에 충분히 넓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7.3%)에 비해 비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11.5%)에게서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생활이 보장되는지 여부 역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11.2%)에 비해 비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16.8%)에게서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표 III-27).

표 III-27. 불편감 및 사생활보장 여부 (단위: %)

구 분	불편함 여부			사생활 보장 여부		
	불편하지 않음	불편함	$\chi^2$	보장됨	보장안됨	$\chi^2$
적정주거	92.7	7.3	3.252	88.8	11.2	3.951
비적정주거	88.5	11.5		83.2	16.8	
전체	92.6	7.4		88.6	11.4	

\* 주: † p<.10, \*p<.05, \*\*p<.01, \*\*\*p<.001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가구가 있는지에 대해 옷장·수납장은 94% 내외, 책상·의자·책꽂이 등은 98% 내외의 청소년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침대는 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89.9%)에 비해 비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83.6%)에게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III-28).

표 III-28.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가구 유무

(단위: %)

	침대			옷장·수납장			책상·의자·책꽂이		
	있음	없음	$\chi^2$	있음	없음	$\chi^2$	있음	없음	$\chi^2$
적정주거	89.9	10.1	5.353*	94.2	5.8	.044	97.6	2.4	.410
비적정주거	83.6	16.4		93.8	6.2		98.4	1.6	
전체	89.7	10.3		94.2	5.8		97.6	2.4	

\* 주: † p<.10,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대도시(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읍면부지역) 지역 간 방수와 필수설비에 국한하여 주거환경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본 조사 표본에서 도시지역이 농산어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정주거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적정주거집단의 경우에는 방수 부족, 상·하수도를 제외한 필수설비미달, 상·하수도를 포함한 필수설비 미달도 도시지역이 농산어촌지역보다 현저히 높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세 지역 간의 방수 부족 및 필수설비미달 문제는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농산어촌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표 III-29).

표 III-29. 도시 및 농산어촌지역 간 적정 및 비적정 주거 비율

(단위: %)

	대도시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읍면부)	$\chi^2$
적정주거	41.0	48.8	10.2	1.069
비적정주거	45.5	45.5	9.1	
방수(부족)	39.6	54.2	6.2	3.699
필수설비(기준미달)	56.2	43.8	0.0	1.674
필수설비(기준미달) 상하수도 포함	55.0	45.0	0.0	1.878
방수(부족)	39.1	50.1	10.8	8.687*
필수설비(기준미달)	35.0	47.6	16.5	8.102*
필수설비(기준미달) 상하수도 포함	35.9	49.5	6.4	5.817†

\* 주: † p<.10, \*p<.05, \*\*p<.01, \*\*\*p<.001

### (3)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의 주거환경

#### ① 쉼터의 주택 종류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쉼터의 경우 상가건물에 위치한 경우가 52.7%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25.2%, 다세대주택, 다가구단독주택, 연립주택 22.1% 순이었다. 청소년쉼터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기쉼터는 주택이 아닌 건물이 57.4%로 가장 많았고, 중장기쉼터는 다세대주택 등 연립주택이 47.0%로 가장 많았지만, 주택이 아닌 건물도 4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0). 대부분 단기쉼터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상가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가건물은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반면, 환기나 소음 등에 취약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단기쉼터는 단기간 보호를 목적으로 하나 지침상 9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고, 청소년이 입소와 퇴소를 반복할 경우 사실상 입소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생활시설로서 적합한 건물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표 III-30. 쉼터 유형별 주택종류

(단위: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단독주택, 연립주택	주택이 아닌 건물 (상가건물등)	$\chi^2$
단기	30.6	12.0	57.4	45.226***
중장기	11.8	47.0	41.2	
전체	25.2	22.1	52.7	

\* 주: † p<.10, \*p<.05, \*\*p<.01, \*\*\*p<.001

#### ② 현재 사용 중인 침실의 정원

청소년쉼터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은 1인실부터 10인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단기쉼터의 경우 청소년들이 4인실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69.8%, 중장기쉼터는 3인실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31.0%에 달하고 있어 여전히 3인실

이상의 다인실이 상당수다(표 III-31). 이는 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있어 시설 간 편차가 매우 크고, 다인실의 경우 관계에서 다양한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쉼터의 침실기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sup>24)</sup>

표 III-31. 현재 사용 중인 침실의 정원

(단위: %)

구 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8인실	10인실	$\chi^2$
단기	1.5	12.9	15.9	53.0	8.9	5.9	1.5	0.5	94.488**
중장기	2.4	66.7	15.5	11.9	3.6	0.0	0.0	0.0	
전체	1.7	28.7	15.7	40.7	7.3	4.2	1.0	0.3	

\* 주: † p<.10, \*p<.05, \*\*p<.01, \*\*\*p<.001

### ③ 침실 공유 여부

청소년쉼터에서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과 침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82.9%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장기쉼터(75.3%)에 비해 단기쉼터(86.0%) 거주 청소년들에게서 다른 사람과 방을 함께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III-32).

표 III-32. 현재 사용 중인 침실 공유 여부

(단위: %)

	혼자 사용함	함께 사용함	$\chi^2$
단기	14.0	86.0	4.858*
중장기	24.7	75.3	
전체	17.1	82.9	

\* 주: † p<.10, \*p<.05, \*\*p<.01, \*\*\*p<.001

24)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쉼터가 대개 다인 1실로 구성되어 있어 가정밖 청소년의 사생활 보장이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에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며, 청소년쉼터 시설이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침실 당 정원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아동복지시설과 같이 침실기준으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그 외에 번기 및 세면기 사위키 수 등 쉼터 생활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17.1.24., p.12)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침실 내 정원을 단기 1실당 3인 이하, 중장기 쉼터의 경우 1실당 2인 이하로 권고(여성가족부, 2020, p.496)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설치기준)에서 침실의 인실 기준이 부재하다.

다른 사람과 방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방의 정원 대비 사용인원을 살펴본 결과 평균 0.79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의 정원에 비해 사용인원의 수가 적은 것을 볼 수 있었다(표 III-33). 그러나 이는 올해 COVID-19상황으로 인해 청소년쉼터가 거주청소년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새로운 청소년의 쉼터입소를 받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사용인원의 비율이 낮다고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값이 1.33명에 이를 정도로 방의 정원에 비해 많은 수의 청소년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원 대비 적절하게 사용인원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33.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 방의 정원 대비 사용 인원

(단위: 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40	1.33	.79	.21

심층면접에서 청소년쉼터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역시 대부분 3~6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방을 사용했다고 하여 여성가족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침실 내 인원수에 대한 권고가 무색함을 보여주고 있다.

“(쉼터에서는) 그냥 큰 방에 한 여섯 명 쓰고, 작은 방에 세 명 정도 쓰는 그런 구조로 있었어요. 주택에... (중략) 거기 그냥 침대, 2단 침대 여섯 개, 여덟 개 놓고 그냥 주르르 자는 거죠.” (F, 24세, 남)

“한 방에는 네 명. 2층 침대가 보통 두 개씩 있었어요.” (A, 21세, 여)

쉼터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 중 82.1%는 자신이 사용하는 방에 대해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70.3%는 사생활이 보장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전반적으로 중장기쉼터에 비해 단기쉼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거주에 대한 편리성과 사생활보장의 측면에서 단기쉼터 거주 청소년들이 중장기쉼터 거주 청소년들에 비해 다소 불편감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표 III-34).

표 III-34. 불편감 및 사생활보장 여부

(단위: %)

구 분	불편함 여부			사생활 보장 여부		
	불편하지 않음	불편함	$\chi^2$	보장됨	보장안됨	$\chi^2$
단기쉼터	80.7	19.3	1.033	66.0	34.0	6.378*
중장기쉼터	85.7	14.3		81.0	19.0	
전체	82.1	17.9		70.3	29.7	

\* 주: † p<.10, \*p<.05, \*\*p<.01, \*\*\*p<.001

쉼터에서의 생활에 대해 같은 처지에 있는 청소년끼리 의지도 되고, 의식주도 해결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양한 청소년들이 모여 있으면서 발생하게 되는 또래들과의 관계 문제나 선생님과의 관계,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쉼터에 있었을 때 장점 먼저... 일단 어우러져 사니까 재밌었어요. 의지도 되고... 같은 처지니까 의지도 되고 재미없는 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중략) 쉼터에 있으면 제일 좋은 게 의식주.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주시니까.” (H, 24세, 남)

“아무래도 애들이랑 진짜 잘 지내는데 선생님이랑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부딪치나?) 그러니까 제 말투라던가, 제 말투가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닌데 되게 선생님들이 다 예민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청소년기여서 욕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나가다가 들으셨다 그러면서 왜 욕했어? 거기에 대해서 말해봐라. 돈도 제 맘대로 못 쓰니까 다 제지하고 알바 못 하게 하고.” (G, 20세, 여)

“제가 쉼터에서 무슨 일을 겪었냐면 쉼터라는 곳이 일단은 청소년 범죄 그 교, 교도.. 거기서 보호관찰로 오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흥기 난동도 되게 많고 심지어 임신부까지 있는 경우도 많은데 한 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임신부였던 언니랑 싸워가지고 그 교도소에서 보호관찰로 온 애가 목 조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 번 있는데 아니라 되게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A, 21세, 여)

“쉼터 자체는 이제 청소년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사춘기라도.. 뭐 때문에 부딪치는 경우도 많고 서로 이제 개별 공간이 없다보니까. 학업에도 도움이 별로 되지도 않고.” (B, 22세, 여)

“어렸을 때 쉼터... 저기 어디야... 대부분 다. 그 때 친구가 가출을 해가지고 잘 데가 없는 걸 들어가 가지고... 거기는 또 화장실도 CCTV 있고, 방안에 CCTV 있고...” (D, 24세, 남)

④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가구 유무

청소년컴퓨터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구가 있는지에 대해 침대는 87.4%, 옷장·사물함 등 수납장은 97.6%, 책상·의자·책꽂이는 78.2%가 구비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침대나 수납장은 컴퓨터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중장기 컴퓨터에 비해 단기컴퓨터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의자·책꽂이가 유의미하게 적다고 인식하여 독서나 학습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III-35).

표 III-35.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가구 유무

(단위:%)

	침대			옷장·수납장·사물함			책상·의자·책꽂이		
	있음	없음	$\chi^2$	있음	없음	$\chi^2$	있음	없음	$\chi^2$
단기	86.1	13.9	.951	97.6	2.4	.001	74.3	25.7	6.481*
중장기	90.4	9.6		97.6	2.4		88.0	12.0	
전체	87.4	12.6		97.6	2.4		78.2	21.8	

\* 주: † p<.10, \*p<.05, \*\*p<.01, \*\*\*p<.001

⑤ 청소년컴퓨터 거주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

청소년컴퓨터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컴퓨터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8.2%가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II-36).

표 III-36 컴퓨터 거주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

(단위: %)

	예	아니오
백분율	8.2	91.8

### 3) 주거 관련 생애경험

주거와 관련한 생애경험을 분석함에 있어 생애경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현재의 주거상태가 아니라 주거와 관련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어 걱정-비걱정 주거집단과 쉼터거주집단 청소년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 (1) 걱정-비걱정주거 청소년의 주거 관련 생애경험

##### ① 이사 경험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걱정주거집단의 경우 이사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이사 경험이 없는 비율이 모두 높았다. 이에 비해 비걱정주거집단은 이사를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걱정주거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높았다(표 III-37).

표 III-37. 이사 경험 여부

(단위: %)

	있음	없음	모름	$\chi^2$
걱정주거	83.7	12.3	4.0	8.898*
비걱정주거	81.1	9.8	9.1	
전체	83.6	12.2	4.1	

\* 주: † p<.10, \*p<.05, \*\*p<.01, \*\*\*p<.001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사를 해본 적이 있는 청소년들이 경험한 이사 횟수는 1~3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걱정주거집단과 비걱정주거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표 III-38).

표 III-38. 이사횟수

(단위: %)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chi^2$
걱정주거	26.4	23.5	23.5	12.8	13.8	10.522
비걱정주거	25.2	24.3	27.1	10.3	13.1	
전체	26.4	23.6	23.6	12.7	13.7	

\* 주: † p<.10, \*p<.05, \*\*p<.01, \*\*\*p<.001

이사 횟수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이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월세나 전세금과 같은 집세 부담으로 인해 이사를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적정주거집단(64.9%)이 비적정주거집단(46.7%) 청소년에 비해 응답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이러한 경험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적정주거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표 III-39).

표 III-39. 집세 부담으로 인한 이사 경험 여부

(단위: %)

	있음	없음	모름	$\chi^2$
적정주거	3.5	64.9	31.6	15.908***
비적정주거	3.7	46.7	49.5	
전체	3.5	64.5	32.0	

\* 주: † p<.10, \*p<.05, \*\*p<.01, \*\*\*p<.001

이사 때문에 전학을 한 경험은 적정주거집단과 비적정주거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학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비적정주거집단의 전학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표 III-40).

표 III-40. 이사로 인한 전학 경험 여부

(단위: %)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chi^2$
적정주거	64.1	25.5	6.5	3.8	.849
비적정주거	61.7	25.2	8.4	4.7	
전체	64.1	25.5	6.6	3.9	

\* 주: † p<.10, \*p<.05, \*\*p<.01, \*\*\*p<.001

이사 갈 지역이나 집을 결정할 때 부모 또는 보호자가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적정주거집단과 비적정주거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 중 78.4%(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가 나의 의견을 존중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비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은 64.4%만이 존중받았다고 응답하였다(표 III-41). 즉, 이사경험 비율은 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높긴 하나, 집세로 인한 이사경험은 비적정주거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이

사로 인한 전학 경험 역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비적정주거집단에서 전학경험의 횟수가 많은 청소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III-41. 이사 결정 시 나의 의견 존중 여부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적정주거	6.4	15.3	47.5	30.9	12.113**
비적정주거	10.6	25.0	35.6	28.8	
전체	6.5	15.5	47.2	30.8	

\* 주: † p<.10, \*p<.05, \*\*p<.01, \*\*\*p<.001

### ② 경제적 어려움 경험

최근 1년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가족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비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에게서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긴 하였으나, 이를 차치하더라도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지 못한 적이 있다’,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주거비를 걱정한 적이 있다’ 등의 항목에서 모두 비적정주거집단 청소년들의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지 못한 적이 있다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적정주거집단의 경우 적정주거집단에 비해 주거비를 걱정한다는 항목에서 2.6배 이상,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항목에서 3.8배 이상 높게 나타나 비적정주거집단이 주거비와 의료비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III-42).

표 III-42. 최근 1년 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경험

(단위: %)

항목	구분	있음	없음	모름	$\chi^2$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음	적정주거	.6	95.8	3.6	11.638**
	비적정주거	2.3	90.0	7.7	
	전체	.7	95.7	3.7	
돈이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한 적이 있음	적정주거	.8	97.5	1.7	4.426
	비적정주거	1.5	94.6	3.8	
	전체	.8	97.5	1.7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음	적정주거	2.2	85.2	12.7	8.221*
	비적정주거	3.1	76.2	20.8	
	전체	2.2	85.0	12.8	
주거비를 걱정한 적이 있음	적정주거	6.9	77.1	15.9	27.173***
	비적정주거	18.5	63.1	18.5	
	전체	7.2	76.8	16.0	

\* 주: † p<.10, \*p<.05, \*\*p<.01, \*\*\*p<.001

집의 구조나 환경으로 인해 비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 ‘친구를 집에 데려오기 창피하다’, ‘가족과 다툼이 잦다’는 항목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적정주거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를 집에 데려오기 창피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비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에게서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III-43, 그림 III-13).

표 III-43. 집 구조나 환경으로 인한 생각이나 행동

(단위: %)

항목	구분	있음	없음	$\chi^2$
공부에 방해가 됨	적정주거	13.2	86.8	.059
	비적정주거	14.0	86.0	
	전체	13.2	86.8	
친구를 집에 데려오기 창피함	적정주거	6.7	93.3	10.447**
	비적정주거	14.0	86.0	
	전체	6.8	93.2	
가족과 다툼이 잦음	적정주거	8.5	91.5	3.420
	비적정주거	13.2	86.8	
	전체	8.7	91.3	

\* 주: † p<.1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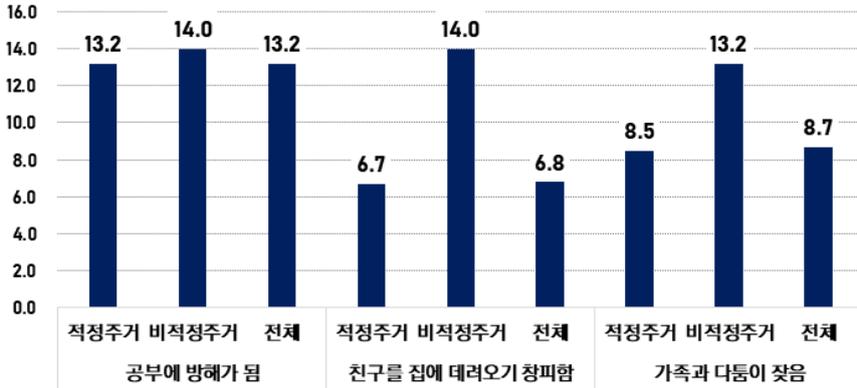


그림 III-13. 집 구조나 환경으로 인한 생각이나 행동

③ 부모나 가족으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은 주거환경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생애경험에서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지저분하거나 위험한 환경을 개선해주지 않았다’ 등과 같이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방임 항목과 ‘손, 발이나 단단한 물건으로 때렸다’ 등의 신체적 폭력 항목에서 비적정주거집단의 경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III-44).

표 III-44. 부모와 가족으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생애

(단위: %)

항목	구분	없음	있음	$\chi^2$
혼자 두면 안되는 경우에도 혼자 있게 함	적정	94.0	6.0	3.355
	비적정	90.0	10.0	
	전체	93.9	6.1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않음	적정	94.3	5.7	9.682**
	비적정	87.5	12.5	
	전체	94.1	5.9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음	적정	97.5	2.5	4.715*
	비적정	94.3	5.7	
	전체	97.4	2.6	

항목	구분	없음	있음	$\chi^2$
지저분하거나 위험한 환경을 개선해주지 않음	적정	98.8	1.2	8.224*
	비적정	95.8	4.2	
	전체	98.7	1.3	
욕이나 저주하는 말을 함	적정	89.7	10.3	.237
	비적정	88.3	11.7	
	전체	89.7	10.3	
손, 발이나 단단한 물건으로 때림	적정	84.7	15.3	4.639*
	비적정	77.5	22.5	
	전체	84.5	15.5	
서로 큰소리로 위협하고 신체적 폭력을 가함	적정	92.2	7.8	1.539
	비적정	89.2	10.8	
	전체	92.2	7.8	

\* 주: † p<.10, \*p<.05, \*\*p<.01, \*\*\*p<.001

폭력에 관한 생애경험과 마찬가지로 최근 1년간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은 모든 방임 항목(혼자 있게 함, 끼니를 챙겨주지 않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음, 지저분하거나 위험한 환경을 개선해주지 않음)과 욕이나 저주하는 말을 하는 언어폭력, 가족들끼리 큰소리로 위협하고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동의 경험비율이 비적정주거집단에서 더 높았다. 특히 모든 방임항목에서 비적정주거집단의 피해경험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열악한 주거환경 내에서 적절한 보호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비적정주거집단에 대한 환경 개선 및 방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표 III-45).

표 III-45. 부모와 가족으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최근 1년간

(단위: %)

항목	구분	없음	1년 1~2회	2~3개월 1~2회	한 달 1~2회	1주일 1회 이상	$\chi^2$
혼자 두면 안되는 경우에도 혼자 있게 함	적정	94.9	2.9	0.5	0.6	1.1	15.985**
	비적정	87.4	5.7	1.1	3.4	2.3	
	전체	94.8	3.0	0.5	0.6	1.1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않음	적정	93.2	2.5	1.0	1.7	1.6	16.612**
	비적정	87.1	4.3	5.4	1.1	2.2	
	전체	93.0	2.6	1.2	1.6	1.6	

항목	구분	없음	1년 1~2회	2~3개월 1~2회	한 달 1~2회	1주일 1회 이상	$\chi^2$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음	적정	97.8	1.5	0.5	0.1	0.2	20.786***
	비적정	93.2	3.4	2.3	1.1	0.0	
	전체	97.7	1.5	0.5	0.1	0.2	
지저분하거나 위험한 환경을 개선해주지 않음	적정	98.6	0.8	0.3	0.1	0.2	27.825***
	비적정	94.4	3.3	0.0	2.2	0.0	
	전체	98.5	0.8	0.3	0.2	0.2	
욕이나 저주하는 말을 함	적정	87.4	6.5	2.3	1.9	1.9	14.985**
	비적정	87.8	1.1	3.3	6.7	1.1	
	전체	87.4	6.4	2.3	2.0	1.9	
손, 발이나 단단한 물건으로 때림	적정	88.5	8.0	2.0	0.8	0.7	9.488
	비적정	83.5	8.8	4.4	3.3	0.0	
	전체	88.3	8.0	2.0	0.9	0.7	
서로 큰소리로 위협하고 신체적 폭력을 가함	적정	92.7	4.9	1.4	0.6	0.3	10.081*
	비적정	90.3	4.3	1.1	3.2	1.1	
	전체	92.7	4.9	1.4	0.7	0.4	

\* 주: † p<.10, \*p<.05, \*\*p<.01, \*\*\*p<.001

한편, 본 조사 표본에서 주거와 관련된 경험이 심리·정서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애기간 중 박탈경험이 없고( $t=-9.567$ ,  $p<.001$ ), 평소 숙면을 취할수록( $t=-8.716$ ,  $p<.001$ ), 내가 사용하는 방(공간)이 내 사생활을 보장한다고 인식할수록( $t=-5.588$ ,  $p<.001$ ), 우리 집과 우리 동네에 만족할수록( $t=-5.362$ ,  $p<.001$ ), 그리고 가족의 생활형편이 양호하다고 인식할수록( $t=-6.233$ ,  $p<.001$ ) 우울·불안은 낮고 자존감은 높은 양상을 보였다(표 III-46).

표 III-46. 주거 관련 경험이 심리·정서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beta$		
(상수)	3.580	.085		42.086	.000
박탈경험 <sup>1)</sup>	-.066	.007	-.211	-9.567	.000
숙면여부(예=1, 아니오=0)	-.257	.029	-.182	-8.716	.000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beta$		
경제수준(① ~ ⑩) <sup>2)</sup>	-.055	.009	-.135	-6.233	.000
사생활보장여부(예=1, 아니오=0)	-.233	.042	-.118	-5.588	.000
주거환경 만족도(① ~ ⑩) <sup>3)</sup>	-.013	.002	-.110	-5.362	.000

\* 주: † p<.10, \*p<.05, \*\*p<.01, \*\*\*p<.001

1) 더미 변수로 합계를 투입함(① 박탈 있음, ② 박탈 없음).

2) ① 매우 못 산다 ~ ⑩ 매우 잘 산다

3)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⑩ 매우 그렇다

## (2) 쉼터 거주 청소년의 생애경험

### ① 쉼터에 오기 전 이사경험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 전 이사를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쉼터 거주 청소년의 74.8%는 이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II-47).

표 III-47. 쉼터 입소 전 이사 경험

(단위: %)

	이사진 적 있음	이사진 적 없음	모르겠음	쉼터 오기 전 시설에서 거주	합계
백분율	74.8	16.6	5.5	3.1	100.0

이사진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이사 횟수는 1회부터 20회까지 다양하였는데, 대체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이사진 횟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III-48).

표 III-48.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사진 횟수

(단위: 회)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하	5.8	3.6	1.00	16.00	3.281*
중하	4.7	3.8	1.00	20.00	1)2,3)4,5
중	4.0	2.8	1.00	16.00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중상	3.3	1.6	1.00	7.00	
상	2.7	1.3	1.00	5.00	
전체	4.3	3.1	1.00	20.00	

\* 주: † p<.10, \*p<.05, \*\*p<.01, \*\*\*p<.001

이사를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 중 월세나 전세금 등 집세 부담으로 이사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의 19.4%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9. 집세 부담으로 인한 이사 경험

(단위: %)

	있다	없다	모르겠다	$\chi^2$
하	44.8	24.1	31.0	33.773***
중하	31.3	20.8	47.9	
중	11.6	39.3	49.1	
중상	4.8	66.7	28.6	
상	0.0	42.9	57.1	
전체	19.4	35.9	44.7	

\* 주: † p<.10, \*p<.05, \*\*p<.01, \*\*\*p<.001

이사로 인해 전학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62.3%의 청소년이 전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사로 인해 3회 이상 전학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1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3회 이상으로 전학을 한 횟수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전학 횟수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III-50).

표 III-50 이사로 인한 전학 횟수

(단위: %)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chi^2$
하	27.6	20.7	24.1	27.6	17.555
중하	46.8	17.0	12.8	23.4	
중	36.9	28.8	18.0	16.2	
중상	28.6	52.4	14.3	4.8	
상	57.1	28.6	14.3	0.0	
전체	37.7	27.4	17.2	17.7	

\* 주: † p<.10, \*p<.05, \*\*p<.01, \*\*\*p<.001

부모님(보호자)이 이사 갈 지역을 결정할 때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하였는지에 대해 경제적 수준이 낮은(하, 중하, 중, 중상) 청소년들의 경우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반면, 경제적 수준이 높은(상) 청소년들의 경우 의견을 존중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긴 하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III-51).

표 III-51. 이사에 대한 나의 의견 존중 여부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하	46.4	35.7	14.3	3.6	14.220
중하	31.3	37.5	22.9	8.3	
중	25.2	26.1	38.7	9.9	
중상	28.6	23.8	42.9	4.8	
상	28.6	14.3	42.9	14.3	
전체	29.8	29.3	32.6	8.4	

\* 주: † p<.10, \*p<.05, \*\*p<.01, \*\*\*p<.001

## ② 경제적 어려움 경험

청소년신편터 거주 청소년 중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출 전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6.4%,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9.9%,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경우는 28.5%, 월세, 전세금, 주택대출금, 공과금 등 주거비를 걱정한 적이 있는 경우는 3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반적으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III-52).

표 III-52. 경제적 어려움 경험

(단위: %)

		예	아니오	모르겠다	무응답	$\chi^2$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하	45.7	42.9	11.4	-	35.760***
	중하	18.5	61.5	20.0	-	
	중	9.5	76.9	13.6	-	
	중상	8.7	91.3	0.0	-	
	상	20.0	70.0	10.0	-	
	전체	16.4	70.0	13.6	-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지 못한 경험	하	54.3	34.3	11.4	0.0	47.093***
	중하	26.2	63.1	10.8	0.0	
	중	10.8	83.1	5.4	.7	
	중상	8.7	91.3	0.0	0.0	
	상	20.0	80.0	0.0	0.0	
	전체	19.9	73.0	6.8	.4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하	60.0	28.6	11.4	0.0	35.295***
	중하	33.8	47.7	18.5	0.0	
	중	22.3	60.8	16.2	.7	
	중상	8.7	91.3	0.0	0.0	
	상	20.0	70.0	10.0	0.0	
	전체	28.5	56.6	14.6	.4	
주거비를 걱정한 경험	하	71.4	22.9	5.7	0.0	53.319***
	중하	52.3	26.2	21.5	0.0	
	중	27.0	52.0	20.3	.7	
	중상	0.0	82.6	17.4	0.0	
	상	20.0	70.0	10.0	0.0	
	전체	35.9	45.6	18.1	.4	

\* 주: † p<.10, \*p<.05, \*\*p<.01, \*\*\*p<.001

### ③ 집 이외의 다른 곳에서의 거주 경험

부모님이 계신 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한 기간은 1년 이상~2년 이하가 13.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1년 이하 8.2%, 2년 이상~3년 이하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이 56.1%로 나왔는데 이는 가출기간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된다(표 III-53).

표 III-53. 집 이외의 다른 곳에서의 거주기간

(단위: %)

	1개월 미만	1년 이하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 이상	무응답
백분율	1.7	8.2	13.6	7.5	4.4	3.1	5.4	56.1

집의 구조나 환경이 가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었는지 알아본 결과, 쉼터 거주 청소년 중 26.2%는 살던 집의 구조나 환경이 집을 나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수준이 낮은(중하, 하) 가정의 청소년들은 집의 구조나 환경으로 인해 가출했다는 응답이 약 38%에 육박하였다. 반면 경제수준이 높은(중상, 상) 가정의 청소년들은 약 18%내외에 머무르고 있어 공간이 비좁아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거나 생활하기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 청소년기 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표 III-54).

표 III-54. 집의 구조나 환경으로 인한 가출 여부

(단위: %)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없음 (가출아님)	무응답	$\chi^2$
하	25.0	22.2	22.2	16.7	11.1	2.8	34.434*
중하	14.7	27.9	29.4	8.8	17.4	1.5	
중	34.2	28.9	14.5	5.3	14.5	2.6	
중상	30.4	43.5	8.7	8.7	8.7	0.0	
상	63.6	0.0	0.0	18.2	18.2	0.0	
전체	29.3	27.9	17.9	8.3	14.5	2.1	

\* 주: † p<.10, \*p<.05, \*\*p<.01, \*\*\*p<.001

가출 이후 현재 거주 중인 쉼터에 입소하기 전까지 청소년들이 거주한 곳을 살펴보면, 청소년쉼터가 3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친구집(26.2%), 자취(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적인 거주지가 아닌 PC방, 찜질방 등에서 노숙을 한 경우도 17.0%에 이르고, 여관이나 모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우도 1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출 이후 청소년들이 매우 불안정

한 거주 상태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이 각 거주시설별로 거주한 기간을 살펴보면, 그룹홈이나 양육시설의 경우 최소 1개월 미만부터 최대 240개월(20년)에 이르기까지 평균 28.8개월로 가장 오래 이용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은 최소 1개월 미만부터 최대 48개월(4년)가량 머물렀으며, 평균 8.8개월 정도 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숙을 한 경우는 최장 8개월,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우는 최장 12개월(1년)가량 머무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으며, 노숙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은 평균 1개월 이상 노숙을 하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5).

즉, 현재 거주하고 있는 쉼터에 입소하기 전 가정 밖 생활기간은 평균 35개월에 달하는데, 단기쉼터(평균 36.31개월)가 중장기쉼터(평균 32.28개월) 보다 약 4개월 이상 더 길었다. 가정 밖 생활기간이 240개월에 달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단기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표 III-56). 이러한 결과는 쉼터를 입소 기간에 따라 구분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단기 또는 중장기쉼터 여부보다 청소년 개인의 주거불안 정도에 따라 주거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55. 가출 후 현재 거주 쉼터 입소 전 거주장소 및 기간

(단위: %, 개월)

	노숙	숙박 시설	친구집	청소년 쉼터	그룹홈, 양육 시설	노숙인 시설	자취	기타
백분율(%)	17.0	19.0	26.2	33.3	17.7	9.9	20.4	13.9
평균(개월)	1.2	1.1	2.0	8.8	28.8	0.0	5.7	4.3
표준편차	1.7	2.0	2.7	11.1	57.4	0.2	14.1	11.9
최소값	0.0	0.0	0.0	0.0	0.0	0.0	0.0	0.0
최대값	8.0	12.0	14.0	48.0	240.0	1.0	96.0	72.0

표 III-56. 쉼터 입소 전 가정 밖 생활기간

(단위: 개월)

	평균	최대	최소	편차
단기쉼터	36.31	248	0	49.78
중장기쉼터	32.28	108	2	23.30
전체	35.00	248	0	42.92

한편, 본 조사 표본에서 청소년쉼터 청소년의 심리·정서(우울·불안,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학생보다 남학생( $t=4.511, p<.001$ ), 현재 생활하는 쉼터에서 숙면을 취하는 경우( $t=2.997, p<.01$ ), 쉼터에서 사생활보장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 $t=2.143, p<.05$ ), 생애기간 중 박탈 경험이 적을수록( $t=2.143, p<.05$ ) 심리·정서가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III-57).

표 III-57. 주거 관련 경험이 심리·정서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beta$		
(상수)	2.915	.458		6.370	.000
쉼터유형(단기=1, 중장기=0)	-.049	.112	-.030	-.435	.664
성별(남=1, 여=0)	-.438	.097	-.300	-4.511	.000
차별경험유무(예=1, 아니오=0)	.295	.177	.108	1.660	.099
생애기간 이사 횟수	.010	.015	.044	.660	.510
가정 밖 기간(개월)	.000	.002	-.013	-.203	.839
숙면여부(예=1, 아니오=0)	-.145	.048	-.197	-2.997	.003
주거환경만족도	.044	.021	.141	2.106	.037
박탈경험(예=1, 아니오=0)	-.008	.024	-.023	-.328	.743
재학유무(재학=1, 비재학=0)	-.042	.019	-.149	-2.143	.033
사생활보장여부(예=1, 아니오=0)	-.286	.154	-.121	-1.853	.065

### 3. 주거환경과 아동·청소년의 사회배제

본 절에서는 청소년들의 현재 주거환경에 따른 청소년의 신체, 심리적 발달 및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배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적정주거집단과 비적정주거집단, 쉼터주거집단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 (1)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건강상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건강상태가 주거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와 정신적 건강은 비적정주거집단과 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이 쉼터주거 청소년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은 적정주거집단과 비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이 쉼터주거 청소년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에 비해 스트레스는 쉼터주거 청소년들이 적정 및 비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쉼터주거 청소년들이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삶의 만족도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하였다(표 III-58, 그림 III-14). 반면, 적정주거집단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정신적 건강이 비적정주거집단 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주거환경 이외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I-58.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신체적·정신적 건강

(단위: 점, 10점 만점)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비고
삶의 만족도	적정	7.75	2.119	72.584***	비적정, 적정)쉼터
	비적정	7.85	2.041		
	쉼터	6.22	2.362		
	합계	7.68	2.155		
스트레스	적정	5.68	2.513	24.968***	쉼터)적정, 비적정
	비적정	5.48	2.451		
	쉼터	6.72	2.280		
	합계	5.72	2.511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비고
신체적 건강	적정	7.78	2.075	39.720***	적정, 비적정) 쉽터
	비적정	7.65	2.095		
	쉽터	6.66	2.335		
	합계	7.72	2.102		
정신적 건강	적정	7.69	2.223	96.217***	비적정, 적정) 쉽터
	비적정	7.73	2.129		
	쉽터	5.84	2.514		
	합계	7.60	2.271		

\* 주: † p<.1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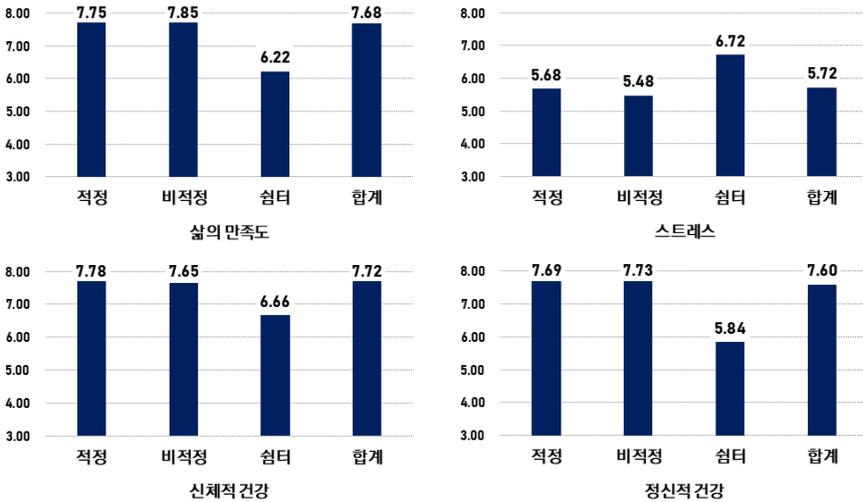


그림 III-14.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신체적·정신적 건강

주거환경에 따른 청소년들의 심리상태를 살펴본 결과, 쉽터거주집단이 비적정 및 적정주거집단에 비해 우울 및 불안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적정 및 비적정주거집단이 쉽터거주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II-59, 그림 III-15).

표 III-59. 우울 및 불안, 자아존중감

(단위: 점, 4점 만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비고
우울 및 불안	적정	1.79	0.851	111.560***	쉽터)비적정, 적정
	비적정	1.83	0.798		
	쉽터	2.55	0.986		
	합계	1.83	0.873		
자아존중감	적정	2.97	0.737	61.092***	적정, 비적정)쉽터
	비적정	2.90	0.647		
	쉽터	2.48	0.757		
	합계	2.94	0.744		

\* 주: † p<.1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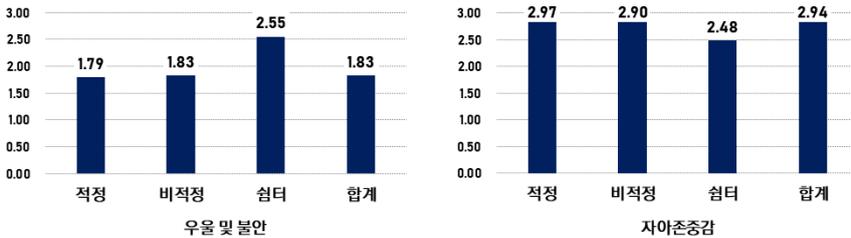


그림 III-15. 우울 및 불안, 자아존중감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학교에 결석한 날을 살펴보면, 결석이 없는 경우는 적정 주거집단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적정주거집단, 쉽터주거집단의 순이었다(표 III-60). 또한 비적정주거집단과 쉽터주거집단의 경우 결석일수가 많아질수록 응답률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60. 지난 1년간 결석한 날

(단위: %)

	0일 (없음)	1일	2일	3일 이상	잘 모르겠음	학교에 다니다 않음	$\chi^2$
적정	53.7	10.5	5.7	8.4	21.7	0.0	1245.890***
비적정	40.8	6.2	10.0	10.8	32.3	0.0	
쉽터	33.3	3.4	4.4	18.4	20.1	20.4	
전체	52.4	10.1	5.7	9.0	21.9	1.0	

\* 주: † p<.10, \*p<.05, \*\*p<.01, \*\*\*p<.001

주거환경에 따른 건강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정도를 살펴보았다. 주거환경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비적정주거 집단의 청소년들에게서 아토피 피부염과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증상이 심하다(심한 편임+매우 심했음)고 응답한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천식은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에 비해 증상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낮은 편이긴 하나 쉼터거주집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증상이 심하다(심한 편임+매우 심했음)고 응답한 비율도 가장 높았다(표 III-61).

앞서 비적정주거집단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곰팡이 핀 곳이 있거나 해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바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청소년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II-61.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정도

(단위: %)

항목	구분	전혀없음	있음			$\chi^2$
			약간 있었음	심한 편이었음	매우 심했음	
아토피 피부염	적정	78.0	22.0	16.3	4.4	11.354
	비적정	71.5	28.5	18.5	8.5	
	쉼터	75.3	24.7	16.1	5.8	
	합계	77.7	22.3	16.4	4.6	
천식	적정	93.9	6.1	4.9	0.9	3.485
	비적정	94.6	5.4	3.9	1.6	
	쉼터	93.0	7.0	5.2	1.0	
	합계	93.9	6.1	4.9	1.0	
알레르기 비염	적정	59.9	40.1	24.5	11.1	10.805
	비적정	59.1	40.9	24.2	9.8	
	쉼터	67.1	32.9	18.0	9.0	
	합계	60.3	39.7	24.2	10.9	

\* 주: † p<.10, \*p<.05, \*\*p<.01, \*\*\*p<.001

키와 몸무게의 비율로 비만도를 판단하는 BMI(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sup>25)</sup>는 주거환경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적정주거집단의 경우 정상체

25) BMI=몸무게(kg)/키(m<sup>2</sup>), 저체중은 18.5미만, 평균체중은 18.5~23, 과체중은 23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중에 해당하는 비율(50%)이 과반으로 세 집단 중 가장 높았다. 반면, 비적정주거집단의 경우에는 정상체중 비율(38.9%)이 세 집단 중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저체중(32.7%), 과체중(28.3%)의 순이었다. 쉼터거주집단도 정상체중의 비율이 43.8%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과체중(44.2%)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62).

표 III-62. BMI 범주

(단위: %)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chi^2$
적정	26.9	50.0	23.1	81.821***
비적정	32.7	38.9	28.3	
쉼터	12.0	43.8	44.2	
전체	26.3	49.5	24.2	

\* 주: † p<.10, \*p<.05, \*\*p<.01, \*\*\*p<.001

평소에 잠을 충분히 자는지 역시 거주환경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적정주거집단의 경우 충분히 잔다는 응답이 70.6%에 달하였으나, 비적정주거집단은 60.6%, 쉼터거주집단은 58.1%에 불과하였다(표 III-63). 이는 쉼터의 주거 환경이 적정주거 및 비적정주거 환경에 비해 바깥 소음이 차단되지 않고, 냉난방이 잘 되지 않고, 환기가 되지 않는 등 유의미하게 쾌적성이 낮은 환경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표 III-63. 숙면여부

(단위: %)

	충분히 잠	충분히 못잠	$\chi^2$
적정	70.6	29.4	25.845***
비적정	60.6	39.4	
쉼터	58.1	41.9	
전체	69.8	30.2	

\* 주: † p<.10, \*p<.05, \*\*p<.01, \*\*\*p<.001

밤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중 집의 구조나 소음으로 인해 수면에 방해가 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가끔+자주+항상 있음)고 응답한 비율은 쉼터거주집단 청소년이 75.8%로 가장 높았고, 그 정도에 있어서도

자주 혹은 항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걱정 및 비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적절한 주거환경 여부가 청소년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표 III-64).

표 III-64. 집 구조나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여부

(단위: %)

	없음	있음				$\chi^2$
			가끔 있음	자주 있음	항상 있음	
걱정	62.1	37.9	30.0	6.0	1.8	88.938***
비걱정	49.1	50.9	39.6	5.7	5.7	
쉼터	24.2	75.8	50.0	16.7	9.2	
전체	59.2	40.8	31.6	6.7	2.4	

\* 주: † p<.10, \*p<.05, \*\*p<.01, \*\*\*p<.001

청소년들의 활동시간 역시 주거환경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숙제나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은 쉼터나 비적정주거집단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비해 걱정주거집단의 청소년이 길었고, 스마트폰이나 TV, 컴퓨터 등의 매체 이용 시간은 쉼터주거집단에게서 유의미하게 길었다. 이에 비해 운동이나 야외에서의 신체활동시간은 비걱정 및 걱정주거집단이 쉼터주거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다시 말해 걱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은 숙제나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과 신체활동시간은 많은 반면 매체이용시간은 유의미하게 적었고, 비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은 신체활동시간은 많은 반면 책을 읽거나 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은 적었다. 이에 비해 쉼터주거 청소년들은 매체이용시간은 많은 반면 책을 읽거나 신체활동시간은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BMI와도 연관지어 볼 수 있는데, 쉼터주거 청소년들에게서 과체중의 비율이 높은 것은 신체활동시간이 짧고 매체이용시간이 길기 때문이고, 비적정주거집단에게서 저체중의 비율이 높은 것은 매체이용시간이나 책을 읽는 시간이 짧은 것에 비해 신체활동시간이 유의미하게 길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표 III-65).

표 III-65. 활동시간

(단위: 시간)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비고
숙제나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	적정	3.27	2.59	20.427***	적정)쉽터, 비적정
	비적정	2.33	2.12		
	쉽터	2.43	3.27		
	합계	3.21	2.63		
스마트폰, TV, 컴퓨터 이용 시간	적정	3.59	2.45	97.027***	쉽터)비적정, 적정
	비적정	4.02	3.19		
	쉽터	5.74	4.22		
	합계	3.70	2.62		
운동이나 야외에서의 신체활동 시간	적정	1.45	1.46	4.944**	비적정, 적정)쉽터
	비적정	1.59	1.26		
	쉽터	1.18	1.58		
	합계	1.44	1.46		

\* 주: † p<.10, \*p<.05, \*\*p<.01, \*\*\*p<.001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 역시 주거환경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적정 및 비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은 쉽터거주 청소년들에 비해 분명한 인생목표를 가지고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쉽터거주청소년이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특성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표 III-66).

표 III-66. 진로성숙도

(단위: 점, 4점 만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비고
적정	3.12	0.66	8.870***	적정, 비적정)쉽터
비적정	3.08	0.62		
쉽터	2.95	0.73		
합계	3.11	0.67		

\* 주: † p<.10, \*p<.05, \*\*p<.01, \*\*\*p<.001

주거환경에 따른 학교생활을 살펴본 결과, 적정 및 비적정 주거집단의 학교생활 및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쉽터거주집단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III-67).

표 III-67. 학교생활 및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점, 4점 만점, 10점 만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비고
학교생활 (4점)	적정	3.32	0.54	89.634***	적정,비적정)쉽터
	비적정	3.25	0.54		
	쉽터	2.89	0.71		
	합계	3.30	0.55		
학교생활 만족도 (10점)	적정	7.52	2.099	95.177***	적정,비적정)쉽터
	비적정	7.41	2.171		
	쉽터	5.66	2.721		
	합계	7.41	2.178		

\* 주: † p<.10, \*p<.05, \*\*p<.01, \*\*\*p<.001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 보호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받고 여가·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권리, 국가와 지역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해 청소년들은 대부분 그런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적정 및 비적정주거집단의 청소년들이 쉽터주 청소년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권리보장이 잘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II-68).

표 III-68.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

(단위: 점, 4점 만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비고
적정	3.73	0.46	79.307***	적정,비적정)쉽터
비적정	3.50	0.71		
쉽터	3.41	0.59		
합계	3.71	0.48		

\* 주: † p<.10, \*p<.05, \*\*p<.01, \*\*\*p<.001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을 통해 삶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유니세프에서 개발한 아동박탈지수는 1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결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로 산출한다. 적정주거집단 청소년 중 52.0%가 결핍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비적정주거집단의 경우 64.9%, 쉽터주집단은 90.0%가 결핍이 있다고 응답하여 비적정거주 및 쉽터주집단의 박탈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III-69, 그림 III-16).

표 III-69. 아동박탈지수

(단위: %)

	결핍없음 (결핍응답 2개 미만)	결핍있음 <sup>26)</sup> (결핍응답 2개 이상)	$\chi^2$
적정	48.0	52.0	167.081***
비적정	35.1	64.9	
쉽터	10.0	90.0	
전체	45.8	54.2 <sup>27)</sup>	

\* 주: † p<.1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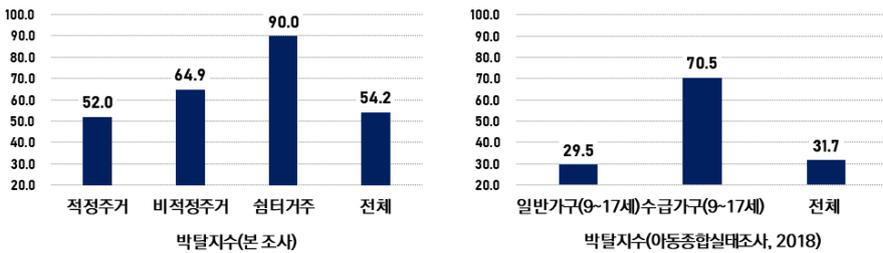


그림 III-16. 아동박탈지수 비교

박탈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각 항목에 결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주거환경별로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쉽터거주집단의 결핍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는 항목에서는 비적정주거집단의 결핍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에 적어도 한번은 고기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는 항목은 비적정주거집단의 결핍 응답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적정주거집단, 쉽터거주집단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III-70).

쉽터거주집단을 제외하고 적정주거집단과 비적정주거집단의 결핍 응답 비율을 비교해보면, ‘나이와 수준에 맞는 책을 가지고 있다’,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나 현장학습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26) 총 1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결핍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7) 2018년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9)에서 9~17세 아동의 결핍지수는 31.7%로 보고한 바 있다.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놀거나 밥을 먹을 수 있다’, ‘생일파티나 가족행사를 할 수 있다’ 등의 항목에서 비적정주거집단의 결핍 응답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II-70, 그림 III-17, 그림 III-18).

표 III-70. 박탈지수 항목별 결핍 응답 비율

(단위: %)

	적정	비적정	쉼터	전체	$\chi^2$	$\chi^2$ (28)
나는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	32.1	36.4	<b>52.7</b>	33.2	54.206***	1.077
나는 하루에 적어도 한번은 고기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	12.2	<b>14.3</b>	11.6	12.2	.646	.517
나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23.3	23.5	<b>33.7</b>	23.8	16.644***	.003
나는 내 나이와 수준에 맞는 책을 가지고 있다	15.2	29.3	<b>40.5</b>	16.8	143.028***	19.676***
나는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	19.2	22.6	<b>75.5</b>	22.0	517.000***	.962
나는 정기적으로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40.3	42.1	<b>67.9</b>	41.7	87.487***	.179
나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내 장난감이나 게임 등을 가지고 있다	9.6	10.5	<b>44.4</b>	11.3	336.858***	.137
나는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나 현장학습 참가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4.5	12.2	<b>34.5</b>	6.2	439.229***	16.774***
우리 집에는 학교 숙제나 독서를 위한 충분히 넓고 적당한 책장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12.9	17.6	<b>18.2</b>	13.2	9.003†	2.513
우리 집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0.9	1.5	<b>2.7</b>	1.0	8.825†	.450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3.2	<b>10.7</b>	9.9	3.7	54.493***	22.405***
나는 두 켤레 이상의 신발이 있고, 그 중 한 켤레는 모든 계절에 신을 수 있다	3.5	5.3	<b>17.1</b>	4.2	126.568***	1.186
나는 내가 원하면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놀거나 밥을 먹을 수 있다	16.2	30.8	<b>60.6</b>	18.6	375.183***	20.318***
나는 내가 원하면 생일파티나 가족행사를 할 수 있다	14.5	23.3	<b>45.2</b>	16.2	197.663***	8.011**

\* 주: † p<.10, \*p<.05, \*\*p<.01, \*\*\*p<.001

28) 쉼터주거집단을 제외하고 적정주거집단과 비적정주거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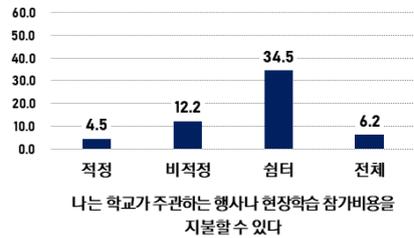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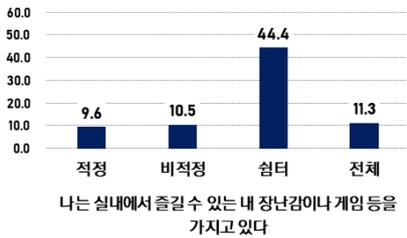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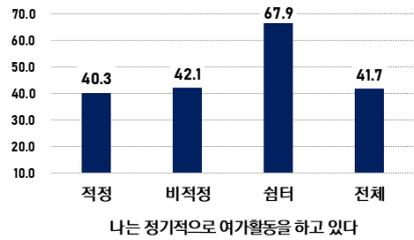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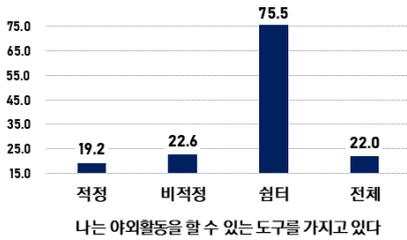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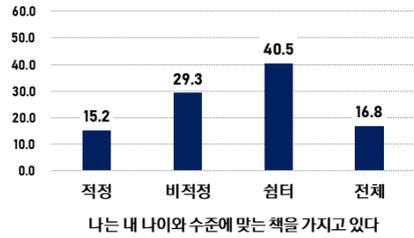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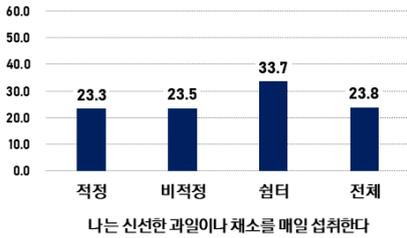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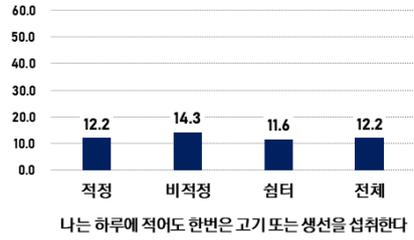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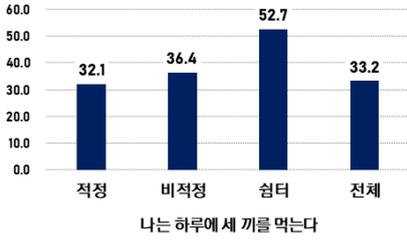


그림 III-17. 박탈지수 항목별 결핍 응답 비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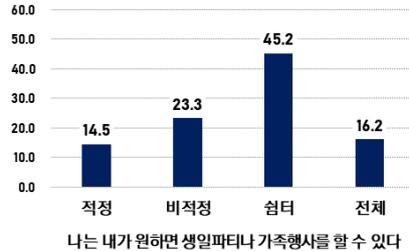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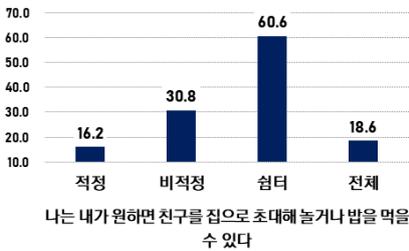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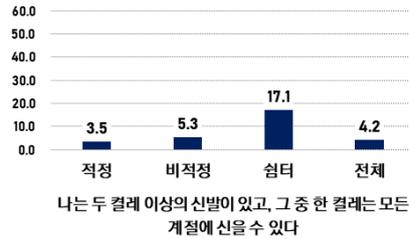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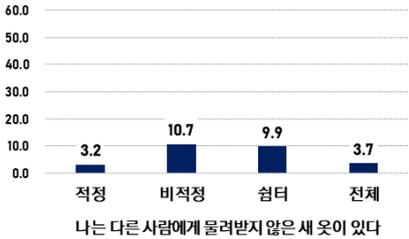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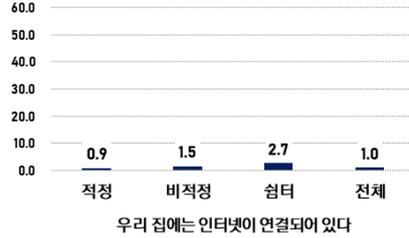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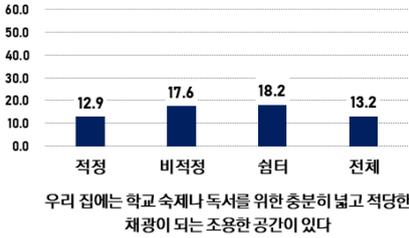


그림 III-18. 박탈지수 항목별 결핍 응답 비율(2)

#### 4. 청소년실험 퇴소 청소년의 주거 관련 욕구

##### (1) 퇴소 이후 걱정거리

실험 퇴소 이후 가장 걱정이 되는 점에 대해 47.6%는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이 부족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을 포함하여 거주할 집과 관련된 문제(46.6%), 취업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자격 부족(3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이 부족한 것과 임대보

증금, 임대료를 포함하여 거주할 집과 관련된 문제 모두 금전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쉼터 퇴소 이후 청소년들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응답은 쉼터 유형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단기쉼터 거주 청소년은 생활비, 학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의 부족을, 중장기쉼터 거주 청소년들은 거주할 집과 관련된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쉼터 거주 청소년들에 비해 중장기쉼터 거주 청소년들의 경우 연령이 다소 높고(중장기쉼터 평균연령 18.14세, 단기쉼터 평균연령 17.36세)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일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퇴소 후 부모나 가족과의 관계, 진로 및 직업, 자립, 채무 등이 걱정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표 III-71).

표 III-71. 퇴소 이후 걱정거리

(단위: %, 중복응답)

	지식, 정보, 기술, 자격 부족	인간 관계 어려움	거주할 집 관련 문제	일상 생활 기술 부족	지역 자원, 정보 부족	도움 받을 곳 부족	문리 방법, 지식 부족	사회적 편견	돈의 부족	삼적 부담	기타
단기	30.9	12.1	40.1	6.8	5.3	7.2	13.5	4.3	46.9	17.9	11.1
중장기	28.2	9.4	62.4	7.1	3.5	7.1	9.4	3.5	49.4	15.3	3.5
전체	30.1	11.3	46.6	6.8	4.8	7.2	12.3	4.1	47.6	17.1	8.9

## (2) 퇴소 이후 거주지

### ① 퇴소 이후 거주지 결정 여부

쉼터에서 퇴소한 이후 거주할 곳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82.3%의 청소년들이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중장기쉼터 거주 청소년들(89.4%)이 단기쉼터 청소년들(79.4%)에 비해 거주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표 III-72).

표 III-72. 퇴소 이후 거주지 결정 여부

(단위: %)

	예	아니오	무응답	$\chi^2$
단기	79.4	18.7	1.9	4.158
중장기	89.4	9.4	1.2	
전체	82.3	16.0	1.7	

\* 주: † p<.10, \*p<.05, \*\*p<.01, \*\*\*p<.001

② 퇴소 이후 거주지

퇴소 이후에 어디서 거주할지 생각해본 청소년들 중 27.8%는 자립지원관을 통해 임대주택에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1.4%는 개인적으로 전월세방을 임대하여 거주할 계획을, 20.1%는 원가정으로 복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표 III-73). 이러한 계획은 쉼터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자립지원관을 통해 임대주택에 입주하겠다는 의견 다음으로 중장기쉼터 거주 청소년은 개인적으로 전월세방을 임대하여 거주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에 비해 단기쉼터 거주 청소년은 원가정으로 복귀하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가타 의견으로는 쉼터 퇴소 후 다른 쉼터나 그룹홈으로 가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학교나 군대, 기숙사, 쉐어하우스, 누나 집 등의 의견이 있었다(그림 III-19).

표 III-73. 퇴소 이후 거주지

(단위: %)

	자립지원 관통해 임대주택 에 입주	전월세 방 임대	친구나 친척집 거주	원가정 복귀	미정	기타	$\chi^2$
단기	24.7	17.9	3.7	21.6	19.1	13.0	11.938*
중장기	34.7	29.2	1.4	16.7	15.3	2.8	
전체	27.8	21.4	3.0	20.1	17.9	9.8	

\* 주: † p<.10, \*p<.05, \*\*p<.01, \*\*\*p<.001



그림 III-19. 쉼터 퇴소 후 주거 계획(기타 의견)

③ 퇴소 이후 거주지 선택 시 중요한 점

쉼터 퇴소 이후 어디서 거주할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 청소년들이 퇴소 이후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으로는 임대료, 관리비 등 주거비 수준이 58.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 46.1%, 내부 공간 설비 및 쾌적성 44.0%. 대중교통, 시장, 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는지 여부 4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74).

표 III-74. 퇴소 이후 거주지 선택 시 중요한 점

(단위: %, 중복응답)

	단독사용 가능공간 유무	주거비 수준	의지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	거주지 이동 자유 정도	내부 공간 설비 및 쾌적성	주변환경 안정성	학교 (상업)의 거리	편의 시설 여부	기타
백분율	46.1	58.9	27.8	10.4	44.0	28.2	35.7	43.2	2.9

④ 퇴소 이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여부

퇴소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생긴다면 입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65.0%의 청소년들은 입주할 의사가 응답하였고, 8.5%의 청소년들은 입주할 의사가 없고, 25.2%의 청소년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단기쉼터 청소년(60.3%)에 비해 중장기쉼터 청소년(76.5%)이 더 많았다(표 III-75).

표 III-75. 퇴소이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여부

(단위: %)

	있다	없다	잘모르겠다	무응답	$\chi^2$
단기	60.3	9.6	28.2	1.9	7.717
중장기	76.5	5.9	17.6	0.0	
전체	65.0	8.5	25.2	1.4	

\* 주: † p<.10, \*p<.05, \*\*p<.01, \*\*\*p<.001

그러나 쉼터 퇴소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길 원하더라도 쉼터 거주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고시원 등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여 주거취약계층임을 입증해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고시원에서 생활했던 청소년들은 자립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 좋게 후원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이 기간 동안 고시원 월세를 부담하기 위해 과도하게 생활비를 아껴야 하거나, 쉼터와 같은 기관의 지원을 적절하게 받지 어려운 상황으로 건강이나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지원 공백상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근데 시설이 관찮을수록 벽지도 새 걸로 다 도배를 하고 이런 곳이었는데 가격이 50만원인 거예요. 고시텔이... LH 신청을 하려면 고시원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돈을 내면서까지 계속 여기서 살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거기에 또 . 제가 총무님이라고. 고시텔에 총무님이라고 부르던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그러니까 쉼터 자립관에서 애들 지원받으러 이 고시텔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보육원에 되게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 분이 제가 월세를 내주는 게 최대가 한 달에 내주는 게 얼마... 35만원이거든요 35만원인데. 그 남은 돈을 자신이 내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운 좋게 그 분 도움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총 그래서 고시텔에서 6개월을 살았어요.” (A, 21세, 여)

“침터로 다시 와 가지고 또 있다가 그때도 상태가 좀 안 좋았고.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또 나오고 싶으니까 그런데 집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고시원을 갔어요. 이제 고시원에서 한 10일 생활해보니까 어... 그게 고시원이 진짜 사람 살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러가지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다시 집으로 왔다가 이제 막 진짜 좀 힘들었거든요. 라면만 3개월 먹고 과장 하나도 안 하고 그 정도로 되니까 사람이 막 기절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F, 24세, 남)

“(고시텔 사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이 아예 없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없다고 돈 없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원이 아예 없었어요. 그 중간에... 임대 주택 들어가기 전에 6개월 정도 사는 기간이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그 사는 기간에는 아예 지원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중략) 지원이 아예 없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없다고 돈 없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원이 아예 없었어요. (중략) 그것도 저희가 뭐 서류 다 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혼자 사는 기간에 혼자 있는 어떻게 보면 침터에서 살다 나온 친구들은 처음 혼자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아프거나 아플 때가 제일... 그렇더라고요. 한 번은 위급력이 와 가지고 토를 8번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피가 그러가지고 응급실에 막 택시 타고 갔는데 그때가 제일 서럽더라고요. 의료 쪽으로는 다른 걸 뭐... 의료는 꼭 좀 필요하다고.” (B, 22세, 여)

⑤ 퇴소 이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이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생각이 있는 청소년들은 공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주거비가 저렴해서(75.8%)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시설이나 환경이 현재 살고 있는 곳보다 좋을 것 같아서(10.8%),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모여 있으면 서로 의지가 될 것 같아서(7.0%)의 순이었다(표 III-76).

표 III-76. 퇴소이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이유

(단위: %)

	주거비가 저렴해서	잡은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시설이나 환경이 좋을 것 같아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의지	기타
백분율	75.8	2.7	10.8	7.0	3.8

침터 퇴소 이후 임대주택에 입주한 청소년들은 대체로 월 8~20만원 정도의 저렴한 주거비(월세, 공과금 포함)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주거공간에 대한 만족과 더불어 사생활이 보장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엄청 다르죠. 쉼터에서는 억압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집은 진짜 자유롭고 무엇보다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중략) 네, 쉼터는 막 통금도 있고 이래저래 규칙들이 되게 많은데 집은 그런 통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G, 20세, 여)

“집이 좀 오래되긴 했어요. 저도 진짜 집 이제 딱 토지 뭐 그런 거 보니까 아파트 지어진지가 한 저희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저희 보다 나이가 한 10살 더 많아요. (중략) 근데도 저는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 정도. 누수 이런 것도, 그런 거 일절 없고. (중략) 물도 잘 나오고 곰팡이 이제 살아가면서 제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도 있고.” (E, 24세, 남)

### ⑥ 선호하는 공공임대 유형

퇴소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주로 선호하는 유형은 방, 거실, 주방이 하나로 이어진 형태의 집을 혼자 사용하는 원룸형이 86.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방이 1개 있는 집을 형제자매 혹은 친구 2명이 사용하는 그룹모집형이 54.0%, 방이 2~3개 있는 집을 2~3명이 함께 사용하는 다가구형이 40.2% 순이었다(표 III-77).

표 III-77. 선호하는 공공임대 유형

(단위: %, 중복응답)

	원룸형	그룹모집형	다가구형	기숙사형
백분율	86.2	54.0	40.2	12.2

### ⑦ 공공임대주택 거주 희망 기간

퇴소 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생각이 있는 청소년들의 임대주택 거주 희망 기간은 2년 이상 5년 미만이 45.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19.6%), 10년 이상(18.0%) 등의 순으로 나타나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할 것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III-78).

표 III-78. 공공임대주택 거주 희망 기간

(단위: %)

	2년 미만	2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백분율	17.5	45.0	19.6	18.0

⑧ 타인과의 공간 공유 가능 여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방은 80.4%, 거실은 77.1%의 청소년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화장실은 58.1%, 방은 26.1%의 청소년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표 III-79).

표 III-79. 타인과의 공간 공유 가능 여부

(단위: %)

	방		주방		거실		화장실 및 욕실	
	사용 가능	사용 불가	사용 가능	사용 불가	사용 가능	사용 불가	사용 가능	사용 불가
백분율	26.1	73.9	80.4	19.6	77.1	22.9	58.1	41.9

방, 주방, 거실, 화장실 중 어느 하나라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타인과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46.6%는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20.6%),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12.2%), 가사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11.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80. 타인과 공간 공유 가능 이유

(단위: %)

	주거비 부담 경감	가사 부담 경감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	더 넓은 공용공간 활용	가구와 가전제품 구비	위급상황시 도움 가능	기타
백분율	46.6	11.5	20.6	0.8	1.5	12.2	6.9

기타 의견으로는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등의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상관없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청소년은 홀로 살면서 외로움 때문에 힘든 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저는 일단 외로움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같이 있을 때는 꼴보기 싫었는데 막상 집에 가고 나니까 뭔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갈 때 아무도 없으니까. 적절한 곳에서 혼자 밥 먹고 하는데 되게 슬픈 거예요, 막. 밥 먹으면서 TV보는데 하나도 재미없고. 그러니까 그런 외로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F, 24세, 남)

이에 비해 다른 사람과 방, 주방, 거실, 화장실 등 어떤 공간도 공유할 수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어서 공유할 수 없다는 경우가 32.3%로 가장 많았고, 공용공간을 나눠 쓰면 불편하니까 25.8%,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81). 단기주택의 경우 사생활 침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주요 이유인 반면, 중장기주택 거주 청소년들의 경우 공용 공간이 불편하다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나 주택 유형에 따라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의견과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표 III-81. 타인과의 공간 공유 불가능 이유

(단위: %)

	사생활 침해	나눠쓰면 불편함	독립생활 어려움	공용비용 부담 어려움	관계 스트레스	기타
백분율	32.3	25.8	12.9	3.2	16.1	9.7

⑨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피 이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그 이유로 내 집을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16.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주택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응답 내용 상 다소의 차이가 있었는데, 내 집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응답 외에 중장기주택 거주 청소년들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에 비해, 단기주택 거주 청소년들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내 마음대로 거주지를 옮겨다니고 싶고, 주변에 친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친구를 따라 잦은 거주지 이동을 하는 단기쉼터 청소년들의 특징이 퇴소 후 계획에도 일부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III-82).

표 III-82.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피 이유

(단위: %)

	안 좋은 인식	주거비 감당 어려움	거주지 이동 원함	주변에 친한 사람이 별로 없음	내 집 마련예정	기타	$\chi^2$
단기	0.0	15.0	10.0	10.0	20.0	45.0	5.085
중장기	20.0	20.0	0.0	0.0	20.0	40.0	
전체	4.0	16.0	8.0	8.0	20.0	44.0	

\* 주: † p<.10, \*p<.05, \*\*p<.01, \*\*\*p<.001

#### ⑩ 퇴소 이후 선호하는 주거 상담·지원 방법

퇴소 이후 어떤 방법으로 주거에 관한 상담이나 지원을 받길 원하는지에 대해 쉼터 거주 청소년들은 주거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20.8%)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화(19.4%), 상담사가 우리집이나 직장에 방문하는 방법,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방법(각 17.6%)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집에 갈 예정이거나 부모님을 통해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나, 쉼터나 쉼터 선생님을 통해 상담이나 지원을 받길 원한다는 응답도 있었고, 지원만 해준다면 어떤 방법이든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표 III-83).

표 III-83. 퇴소 이후 선호하는 주거 상담·지원 방법

(단위: %)

	주거복지 센터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상담사가 우리집, 직장 방문	인터넷, 스마트폰 앱 이용	전화	상담이나 지원받을 생각 없음	기타
백분율	20.8	10.9	17.6	17.6	19.4	7.7	6.0

⑪ 퇴소 이후 주거정착을 위한 가장 필요한 지원

청소년쉼터 퇴소 이후 주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 생활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 지원(57.8%), 생활비 급여 등 돈 관리(39.8%), 취업연계(2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의 순위나 비율에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중장기쉼터 거주 청소년들은 쉼터 퇴소자들 간의 지지모임(5.9%)을, 단기쉼터 거주 청소년들은 자립지원담당자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6.7%)를 더 필요로 하고 있어 자립 준비도나 자립을 앞두고 있는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84).

표 III-84. 퇴소 이후 주거정착을 위한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중복응답)

	주거지	생활비	심리상담	취업관련 교육,훈련	취업연계	의료비
단기	53.1	72.7	12.9	19.6	28.7	22.5
중장기	69.4	77.6	10.6	24.7	28.2	17.6
합계	57.8	74.1	12.2	21.1	28.6	21.1
	생활비 등 돈관리	일상생활 관리	퇴소자 지지모임	자립지원서비스 정보	지속적 네트워크	기타
단기	40.2	22.0	3.3	8.1	6.7	3.8
중장기	38.8	12.9	5.9	11.8	2.4	0.0
합계	39.8	19.4	4.1	9.2	5.4	2.7

쉼터에서 퇴소한 이후 임대주택에 입주하기로 결정한 청소년들은 그 과정에서 주거지원센터나 쉼터 등에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임대주택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집을 고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원하는 집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고시원과 같은 취약한 환경에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고시원 거주에 필요한 월세 지원까지 종료될 경우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고시원에 거주한다고 해도 마음에 드는 임대주택이 언제 매물로 나올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매물을 계속 기다리지 못하거나 입주 전에 주택의

하자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하다보니 입주 이후 발견하게 되는 다양한 주택의 하자나 주변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청소년들이 감내해야 하는 불편으로 돌아오게 되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략) 전화해주시는 분들(LH주거지원센터)도 너무 좀 그런, 세부적인 것들도 안 알려 주시고, 주소도 처음에 뭐 어디다 알아봐라... 계속 일처리를 미루셔가지고 서로... 그래서 엄청 헤매다가 간 거거든요.” (B, 22세, 여)

“사실 싸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저도 진짜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일단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도 집이 나올 때까지 연락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이 존재하잖아요. 그 기간이 빠르면 3개월이라고 하시고 동사무소에서. 길면 5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오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 (A, 21세, 여)

“저는 많이 알아보고 싶은데 세 개밖에 안 주시니까 주소를. 그 중에서 알아봐야 되니까 세 개를 받고 나서 더 알아보려면 더 기다려야 돼요. 한두 달 기간을 이렇게 또...(중략) 고시텔 계약 다 끝나고 그러니까. 고시텔 계약이 끝나서 자립지원관에서 월세 지원도 몇 달만 지원해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월세 지원도 끝나고 했으니까 고시텔에 40만원을 내야 되니까 40만원이 이제 공과금이 추가하면 거의 50만 원 가까이. 50만원을 내가 쓰는 거니까 빨리 가야되는 거예요. 빨리 나가면 주택을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일주일 급하게 급하게 하다보니까.” (B, 22세, 여)

쉼터에서 퇴소한 이후 임대주택에 입주하기로 결정한 청소년들은 그 과정에서 주거지원센터나 쉼터 등에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임대주택의 매물이 많지 않아 다양하게 매물을 탐색할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고시원 거주에 필요한 월세 지원도 종료되는데 임대주택도 별로 없다보니 성급하게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고, 입주 전 주택의 하자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하다보니 입주 이후 발견하게 되는 다양한 하자는 고스란히 청소년들이 감내하고 있었다.

또한 임대주택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성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에 입주한 청소년들은 성인의 도움을 적절하게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단순히 쉼터 선생님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LH주거지원센터 역시 매물의 주소 이외의

다른 정보를 전혀 제공해주지 않은 채 세부적인 정보는 다른 기관이나 부서를 통해 알아보라는 말만 반복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선생님들도 다 바쁘시다 이렇게 말 하시고 그냥 어... 내가 서류 줄 거니까 니가 동사무소 가서 서류 이거 내고 신청하면 돼. 그러면 거기서 연락이 올거야.” (A, 21세, 여)

“주소를 주는데. 뭐 세 개 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집을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데로 알아보고 싶었는데...” (B, 22세, 여)

쉼터 퇴소 이후 임대주택에 입소한 청소년들에게는 초기정착금 부담도 큰 문제였다.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 중 1명은 풀옵션이 갖추어진 신축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하였고, 2명은 자립지원관을 통해 초기정착금을 지원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나머지는 집기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최소한의 가구와 가전제품에 150~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 그간 저축한 종자돈을 다 소진하거나 카드사용으로 빚을 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만 원은 들어요...(중략) 신용카드 이런 거 안 쓰고 체크카드 이런 것만 탁 써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모은 돈에서 (집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세탁기, 전자렌지... 그런데 이게 그냥 혼자 사니까 필요한 것만 조금만 사고 다음에 돈을 벌어서 넓는데 가게 되면 그 때 사자 해도 하나씩 늘어나더라 구요. 이게 한 3백(만원) 정도 훅 나가버리니까...” (A, 21세, 여) ” (A, 21세, 여)

“저는 최소로 했는데 150(만원).” (B, 22세, 여)

“TV는 자립관에서 주고. 세탁기랑 컴퓨터랑(구매했어요)...” (D, 24세, 남)

“(자립지원관에서 50만 원을 지원받았고) 저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돈이, 모았던 돈이 좀 있어가지고 침대랑 뭐, 냉장고라던지 제가 다 해서 갖거든요.” (E, 24세, 남)

쉼터 퇴소 이후 임대주택에 입소한 청소년들은 쉼터 퇴소 이후 국가에서 자립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연령에 대해 대체로 24세 전후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청소년들은 연령 제한을 두더라도 너무 많은 지원은 수혜자들을 지원에 익숙해지고 나태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자립이 이루어질 경우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저 같으면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만 좀. (중략) 개인이 필요할 때까지 이런 건 아니고 재산 딱 한 4천만 원 그 정도까지. (중략) 이게 나이 기준을 너무 늘어 놓으면 이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D, 24세, 남)

“나이로 해서 이제 스물 네 살까지 이제... 반드시 아니고 그 중간에 여유가 된다 (하면은 좀 빠져나갈 수 있게...)” (B, 22세, 여)

“스물다섯. 중반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리 잡는데까지 인생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는 데까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표본이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학교 다 다니고 했는데... (중략) 스물 다섯 살에서 스물 여섯 넘어가는 그 시간 그 시절까지. 그런데 제 개인 취향이긴 한데 너무 또 많이 해주면 그게 또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가지고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E, 24세, 남)

“저는 딱 나이를 정해놓기보다는... 그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고정 수익이 생길 때까지는 지원해주는 게 어떨까.” (G, 20세, 여)

“저는 지원 시점은 잘 모르겠고요. 어.. 그 사람의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건강과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교육이나 뭐 지원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3년. (언제부터?) 스무 살부터. 이게 기간이 좀 애매. 정하긴 좀 애매한게... 음.. 일단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은 국가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지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자립을 하는 시기에 단순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물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처음 자립을 시작하는 시점에 실패하지 않도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무엇보다도 자립을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 식의 교육보다는 주택 선택 시 점검사항과 같이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르쳐주고, 자립 이전에 다양한 매물을 함께 볼 수 있는 경험을 해보는 등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냥 예의상 이렇게 잘 지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괜찮아 잘못된 게 없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서 서로 관계해주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저희는 어른이 없다보니까.” (B, 22세, 여)

“어... 아무리 못나고 진짜 미운 짓 많이 해도 진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딱 진짜 한 명의 어른만 옆에 있어주면 진짜 그게 힘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F, 24세, 남)

“심리상담. 가정에서 잘 보살핌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아픈 친구들이 많아요. 혼자 고립되는 친구들도 많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고립되어 연락이 안된다 그러면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시거든요. (중략) 연락이 안되면 끊어버리고. 그게 주기적으로 아예 끊어버리는데, 그게 조금 더 심리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좀 더 자주 돼주면 좋겠어요. (중략) 상담교육이라던가 그런게 길어지거나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는게...” (B, 22세, 여)

“교육지원. (중략) 대학교를 안 나온 상태기 때문에 더 어필할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자격증이라던가. (중략) 자격증 하나 취득하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공부를 해야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다보니까.” (B, 22세, 여)

“또 단순 금전 지원보다는 어, 사회생활하기 원활하기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사소통 뭐 그런 훈련이나 진로 같은 거를..” (H, 24세, 남)

“(쉼터에서) 교육받잖아요? 교육상태에서 듣는다고 잘 전달되지도 않고. 직접 자립에 대한 것, 집보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C, 22세, 남)

“이사 갈 때 체크리스트. 많이 당하니까 사람들이... (중략) 일단 사람이 많은 거를 한꺼번에 생각할 수 없으니까 적어가지고... 채광, 송풍, 누수, 수압, 배수, 파손, 후드 방충, 계기판 점검... 이런 것 쪽 나열해서 써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중략) 나중에 저 이사갈 때 이사가면 완성이 될 거니까 자립지원관에 공유하려고.” (F, 24세, 남)

“그리고 이제, LH 들어가면서 그 주거지원비 뭐라고 해야되지? 가구 이런걸 살 수 있으니까... 초기 정착금 그런 게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E, 24세, 남)

## 5. 소결 및 시사점

### 1) 아동·청소년가구의 구조성능환경 충족 여부 확인 및 개선

먼저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생의 약 2.2%에 해당하는 약 8.9만 가구는 주택의 종류나 집의 위치가 비적정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의 약 0.7%, 약 3.7만 가구가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 가구인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많은 규모이다. 이는 본 조사에서는 주택의 종류나 위치 어느 한쪽이 비적정이면 비적정한 상태를 파악하여 측정된 항목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조사 표본의 1/4에 해당하는 24.3%의 가구가 가족구성에 비해 방수가 부족하였고,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2.3%에 해당하는 9.3만 여 명의 아동·청소년이 8세 이상인 이성의 형제자매와 같은 방을 사용하여 적절한 침실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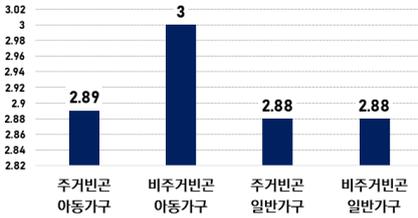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시설을 제외한 주택 내부의 필수설비가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3.1% 수준이었는데, 이는 초, 중, 고교생 가운데 약 12.5만 명에 해당한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서 필수설비미달가구가 전체 아동가구의 약 0.2%(1.3천 가구)인 것과 비교하면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본 연구가 학교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한 가구 당 여러 명의 아동·청소년이 표집되었을 가능성, 18세 이상의 재학생이 표집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입식부엌과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의 필수설비에 있어 '전용' 여부 판단에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인식이 개입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큰 격차다. 이와 같은 격차의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주거실태조사의 과소추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중 비적정 주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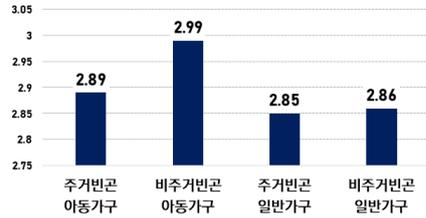
거나 필수설비미달에 해당하는 규모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감소해 나가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력을 강화해야 하고, 임대주택 공급 시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침실 분리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한편 ‘지역사회통합 및 참여’와 관련하여 본 조사의 항목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2019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이 있는 일반가구는 상업시설, 의료시설, 공공기관, 문화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교육환경에의 접근용이성과 주변도로 보행안전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일관성 있게 가장 높았다. 이는 아동이 있는 (일반)가구는 주거지 선택 시 주택의 품질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환경의 쾌적성 여부에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가구도 마찬가지였는데, 주거빈곤아동가구도 문화시설 이외 상업시설, 의료시설, 공공기관의 접근용이성이 아동이 없는 일반가구나 주거빈곤가구에 비해 높았다. 따라서 아동이 있는 개별 가구의 품질개선뿐 아니라 주택 공급 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프라의 접근용이성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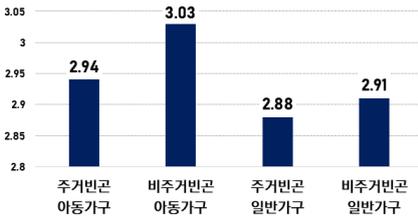
반면 치안 및 범죄 등 방범상태는 일반가구가 가장 양호하였고, 그 다음은 아동이 있는 일반가구, 주거빈곤아동가구, 주거빈곤일반가구 순이었다. 즉, 아동 유무와 관계없이 주거빈곤가구는 치안 및 범죄 등 방범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주거빈곤가구의 범죄피해예방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III-20, 그림 III-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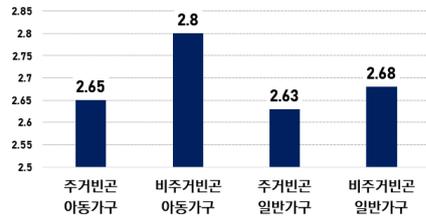
상업시설 접근용이성(시장/대형마트/백화점 등)



의료시설 접근용이성(병원/의료복지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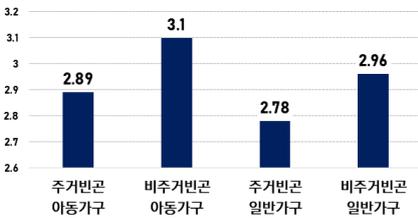
공공기관 접근용이성(시청/읍면동사무소/경찰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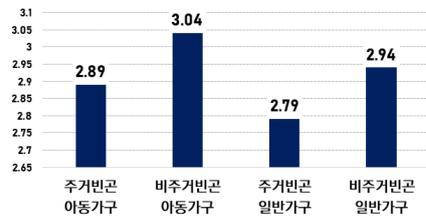
문화시설 접근용이성(극장/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

\* 출처: 국토교통부(2020a). 2019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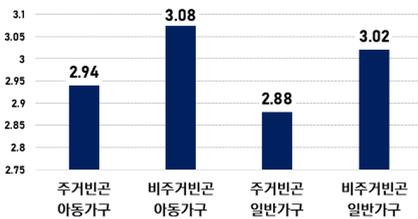
그림 III-20.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가구의 지역사회통합과 참여 수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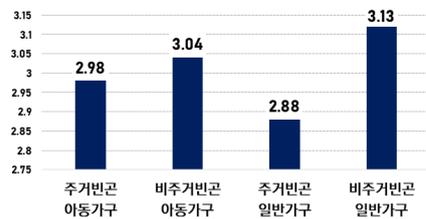
도시공원 및 녹지접근용이성(놀이터/공원/녹지/수변 등)



교육환경(학교/학원 및 미취학아동을 위한 시설/서비스 등)



주변도로 보행 안전



치안 및 범죄 등 방범상태

\* 출처: 국토교통부(2020a). 2019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21.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가구의 지역사회통합과 참여 수준(2)

## 2) 아동·청소년의 사회배제 예방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본 조사 표본의 청소년을 주거환경에 따라 적정주거집단, 비적정주거집단, 시설거주집단으로 구분하여 발달을 포함한 사회배제 수준을 비교하였다. 먼저 현재 거주하는 집의 상태를 보면, 청소년쉼터는 침수나 붕괴위험, 환기와 소음, 악취, 냉방과 난방, 잠금장치 등 외부침입 차단 면에서 세 집단 중 가장 취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청소년쉼터의 설치 및 시설 환경개선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다음으로 비적정주거의 경우 채광, 곰팡이(습도), 해충,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구조, 화재대비시설 미비, 화재 위험 측면에서 시설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지하(지하)에 거주하는 경우 집 위치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경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적정주거 하에 있는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취약가구 밀집지역의 지역사회환경 개선 노력이 동시에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적정주거집단의 경우 집과 동네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비적정주거집단보다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집단 가운데 주택의 안전성과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비적정주거집단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주택의 쾌적성은 시설거주집단에서 가장 긍정적이었다. 즉, 주택의 개별 요소에 객관적인 평가와 달리 주관적인 평가가 극명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좋게 평가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의지에서 일부 기인한 결과로 이해된다. 또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는 아동·청소년의 주관적인 판단보다 객관적인 요소를 통해 측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 수준에서 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이 사회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적정

주거집단과 비적정주거집단, 시설거주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10점 기준). 먼저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은 비적정주거집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적정주거집단, 시설거주집단 순이었다. 반면 스트레스 정도는 시설거주집단이 가장 취약하였고 비적정주거집단이 가장 양호하였다. 비적정주거집단의 경우 적정주거집단에 비해 부모의 지도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스트레스 정도가 낮고, 결과적으로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는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울 및 불안 역시 시설거주집단이 가장 높았고 적정주거집단이 가장 낮았다. 반대로 자아존중감은 적정주거집단이 가장 높았고 시설거주집단이 가장 낮았다. 신체적 건강과 평소 숙면을 취하는 정도는 적정주거집단이 가장 양호하고 시설거주집단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거주집단은 삶의 만족도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전반에서 세 집단 중 가장 취약한 상태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집 구조나 소음으로 인해 수면에 방해를 받은 적이 없다 응답은 적정주거집단이 62.1%인데 반해 비적정주거집단은 49.1%, 시설거주집단은 24.2%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본 조사 표본에서 세 집단 간의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1년 간 학교 결석 일수의 경우 결석이 없다는 응답은 적정주거집단이 가장 많았고 시설거주집단의 경우 학업중단(20.5%)을 포함하여 3일 이상 결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생활(4점 기준)과 학교생활 만족도(10점 기준), 진로성숙도 역시 적정주거집단이 가장 높았고, 시설거주집단이 가장 낮았다.

아동·청소년들의 활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하루 중 집 안에서 숙제·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은 적정주거집단, 스마트폰·TV·컴퓨터 이용시간은 시설거주집단, 집 안이 아닌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은 비적정주거집단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세 집단 간 BMI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비적정주거집단은 저체중, 시설거주집단은 과체중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 주거환경으로 인한 생활습관의 차이가 아동·청소년의 건강에도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생애기간 중 박탈 경험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적정주거집단에 비해 비적정주거집단, 시설거주집단 순으로 아동·청소년의 기본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아동박탈지수 1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결핍을 경험한 비율도 동일하였다. 특히 시설거주집단의 경우 14개 항목 중 2개 이상 경험한 비율이 조사대상자 10명 중 9명에 달하여 전체 평균(53.2%)을 크게 웃돌았다.

이상의 결과는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 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당연한 처사일 뿐 아니라 바람직한 성인지 이행을 지원하여 생애에 걸쳐 사회배제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해야 할 당위성을 일부 확보하는 실증적인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3) 주거방임 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본 조사 표본에서 비적정주거 환경에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현재 주거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공통적인 문제로는 ‘비위생적인 공간’을 지적하였다. 특히 비적정주거집단의 아동·청소년이 적정주거집단보다 이러한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주택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의 전반적인 품질과 달리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심한 악취나 개미와 바퀴벌레 등 해충과 그 사체 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는 명백히 ‘주거방임’에 해당한다. 주거방임은 보호자의 생활습관 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개입을 해도 해결되기 쉽지 않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아동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와 같이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아동최우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보호자가 적절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도록 공권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 법령과 제도에서 주거지원을 받았음에도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않거나 주거상향을 하지 않고 주거방임 상태를 유지하는 보호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 4) 시설거주청소년 대상 주거 프로그램 다양화

본 조사 표본에서 시설거주집단의 경우 걱정주거집단 및 비걱정주거집단과 비교할 때 생애 주거 관련 경험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세 집단 가운데 삶의 만족도, 정신건강, 스트레스 정도, 우울 및 불안, 자존감, 평소 숙면을 취하는 정도, 지난 1년 간 결석 일수, 학교생활, 진로성숙도 지표에서 취약성이 가장 두드러졌다. 또한 생애기간 중 의·식·주를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기본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거나 여러 부분에서 박탈을 경험한 비율도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거주 아동·청소년은 시설 입소 이전부터 주거불안을 포함하여 다면적인 위기와 박탈을 경험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현재 시설환경도 성장·발달에 적합한 환경이라 볼 수 없음을 시사한다. 물론 본 연구는 비확률표집 방식으로 청소년쉼터 입소자 일부만을 조사하여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배제 실태에 있어 세 집단 간의 차이가 일관성 있고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시설거주 아동·청소년은 우선 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약자임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시설환경 개선과 병행하여,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보다 시설 형태를 벗어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 제Ⅳ장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방안: 전문가 의견조사

- 1. 아동·청소년 주거권 영역과 우선순위 도출
- 2.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
- 3. 소결 및 시사점



# 4

##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방안: 전문가 의견조사<sup>29)</sup>

이 장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추진과제의 우선순위와 지표(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일련의 연구 절차를 통해 국가수준의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의 일환으로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지표(안)와 의무적 확인을 목적으로 한 지표(안)를 개발하였다.

### 1. 아동·청소년 주거권 영역과 우선순위 도출

아동·청소년 주거권의 영역과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총 2회에 걸쳐 전문가 의견조사(AHP)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개방형으로 구성하여 제기된 내용을 분석하여 유목화한 후 2차 조사에서 각 과제의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파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개 정책영역에 따른 7개 정책과제와 14개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표 IV-1).

#### 1) 영역 1 : 아동·청소년 주거권 개념 및 핵심요소 정립

‘아동·청소년 주거권 개념 및 핵심요소 정립’ 영역은 말 그대로 아동·청소년 주거

29) 이 장의 1절, 3절은 김지연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고, 2절은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임세희 교수(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집필하였다.

권의 개념과 이들의 성장·발달·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의 요소부터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주거권에 있어 접근관점을 확립하고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아동·청소년의 일반적인 권리에 비추어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영역에는 2개 정책과제와 4개 세부추진과제가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IV-1).

(1) 정책과제 1 : 아동·청소년 주거권 개념 정립

표 IV-1. 전문가 의견조사(AHP) 분석결과: 주요 영역별 세부추진과제

영역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1. 아동 청소년 주거권 개념 및 핵심요소 정립	1.1. 아동청소년 주거권 개념 정립	1.1.1. 보편적·차별적 주거권 개념 정립 1.1.2. 아동청소년 주거권 접근관점 확립
	1.2.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핵심요소 도출	1.2.1. 최저주거 및 적정주거 기준 재설정 1.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반영
2. 아동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단 확충	2.1.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 및 관리	2.1.1.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 개발·관리 2.1.2. 정부의 의무 확인용 지표 개발·관리
	2.2. 법제 및 전달체계 정비	2.2.1.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2.2.2. 주거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및 제도 내실화
	2.3.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2.3.1. 대상 맞춤형 통합적 주거지원 강화 2.3.2. 최저주거기준미달 지원범위 확대
3. 시설 거주 아동 청소년 주거권 보장 강화	3.1. 대안양육시설의 주거여건 개선	3.1.1. 시설 기준 정비 3.1.2. 시설 입지 및 환경 기준 정비
	3.2. 보호종료아동청소년 주거지원 확대	3.2.1. 대상자 중심의 주거지원 서비스 확충 3.2.2. 주거우선지원 기반의 자립지원 강화

\* 출처: 저자 작성

‘아동·청소년 주거권 개념 및 핵심요소 정립’ 영역의 첫 번째 정책과제는 ‘아동·청소년 주거권 개념 정립(1.1.)’이며, 2개의 세부추진과제가 도출되었다. 먼저 ‘보편적·차별적 주거권 개념 정립(1.1.1.)’과 관련해서는 주거권을 정책대상별로 달리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적절한 주거환경이 아동·청소년의 생존·발달 등 기본적인 권리 전반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에 비해 그간 이들은 독자적인 주거권이 없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은 세대주(보호자)와 분리하여 정의하기 어렵고 UN 사회권 규약 등에서 명시한 적절한 주거의 기본조건을 충족하되,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적합한 최소주거기준을 철저히 충족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주거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함께 보편적 주거권 요소 이외 아동의 사생활 보장,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지 않는 지역사회 통합, 적정 주거 보장을 위한 국가개입 가능성 확보 등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자립을 위한 주요 환경으로서 주거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은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실현하는 전제로 구조적·물리적 적합성, 비용 적정성, 점유 안정성, 지역사회 통합 및 참여와 같은 기본 요소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주거권 미보장 상태로 규정하여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주거권 접근관점 확립(1.1.2.)’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발달 및 자립과 관련된 주거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최저주거기준미달에서 벗어나는 것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며, 아동·청소년의 인권 관점에서 주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맥락에서 미성년자가 시설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주거권의 배제 상태이므로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에게 주거공간이 제공되었다고 해서 주거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거권 보장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자립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표 IV-2).

## (2) 정책과제 2 :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핵심요소 도출

‘아동·청소년 주거권 개념 및 핵심요소 정립’ 영역의 두 번째 정책과제는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핵심요소 도출(1.2.)’이다. 여기에는 2개의 세부추진과제를 포함한다. 먼저, ‘최저주거 및 적정주거 기준 재설정(1.2.1)’은 현행 「주거기본법」 상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고, 특히 침실분리기준을 강화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원 가정이 아닌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은 제2의 주거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입지기준과 개인 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기준을 재검토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반영(1.2.2)’은 적절한 주거에서 살 권리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본권이며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낙인과 고립 등 생애 전반에서 배제를 유발하므로, 아동기에 적용되는 사회권 영역의 대표 지표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기에는 주거지원에 있어 도시와 농산어촌 등 지역격차 해소와 아동·청소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낙인의 소지를 해소하는 등 주거권 실태를 파악하고 주거지원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한다(표 IV-2).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가 제출한 유엔아동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아동 주거빈곤과 가출아동 문제에 대한 조치와 대응’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요구와 생활수준(기초보건 및 복지 영역)에 있어 ‘아동의 주거빈곤 문제를 사정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것’을 권고 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pp.197-198, pp.412-413).<sup>30)</sup>

30)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정부는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주거빈곤 밀집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주거빈곤층을 위해 주거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고,

이상에서 언급한 ‘아동·청소년 주거권 개념 및 핵심요소 정립’ 영역의 두 가지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도출된 의견 일부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표 IV-2이다.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해 준다. 한편,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최초 2년간 임대료를 무료로 지원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외, 2019, p.198).

표 IV-2. 전문가 의견조사(AHP) 분석결과: 과제별 주요 내용(1)

① 영역	② 정책과제	③ 세부과제	④ 주요 내용 요약(1차 전문가 의견조사)
1. 아동 청소년 주거권 개념 및 핵심요소 정립	1.1. 아동청소년 주거권 개념 정립	1.1.1 보편적·차별적 주거권 개념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개념 정의가 필요함. 사회배제 예방과 같은 협의·최소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사회 구성원 누구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주거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확장적 개념 정의가 요구됨.</li> <li>- 아동청소년 주거권은 1959년 아동권리선리 원칙4,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6조 제1항, 제3항과 관련되며 발달권의 주요 부분임. 대상특성 상 보편적 주거권과 차별화되는 권리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즉, 주거권 개념에 주거빈곤(최저 주거기준, 주거과부담) 이 외 아동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주거 관련 스트레스 등)이 성장·발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함.</li> <li>-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4의 '적절한 주거' 구성요소 보장(점유 안정성, 적절한 주거기반시설 및 서비스, 경제적 적절성, 최저기준 확보, 접근 가능성, 적절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li> <li>- 보편적 주거권 4가지 요소(주거의 물리적 적합성, 주거비 적정성, 주거 안정성, 지역사회통합) 이 외 ① 개인 공간 보장, ②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지 않는 지역사회 통합 강조, ③ 가출, 퇴거,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에서 성인 보호자의 보호와 조력이 수반되는 적정 주거 보장, ④ 보호자가 주거권 보장 노력을 기울리 할 경우 국가개입 가능성 확보 필요</li> <li>- 아동발달에 적합한 최소주거기준의 철저한 충족, 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 공간 필수 마련(이성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 독립 공간),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지, 통학 및 이동에 있어 안전 보장(주거지 주변의 안전)</li> <li>- 아동의 건강·심리·사회적 발달을 보장하는 주거환경과 조건, 강제 퇴소로부터의 보호, 부모(보호자)가 주거환경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하고 공급할 책임과 국가가 이를 감독할 책임이 포함되어야 함.</li> <li>- 주거권은 대상이 누구든 정의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양질의 적절한 상태에서 거주할 권리,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으로 위협받지 않는 상태가 중요함. 대다수 아동청소년은 세대원이므로 독자적 주거권이 없고 '성장과</li> </ul>

① 영역	② 정책과제	③ 세부과제	④ 주요 내용 요약(1차 전문가 의견조사)
		1.1.2 아동청소년 주거권 접근관점 확립	<p>자립을 저해하지 않는 주거환경(과밀 거주, 지하 거주, 비주택 거주 등) 조성'이 중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와의 거주 및 보호자의 주거권 보장 문제가 고려되어야 함.</li> <li>-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통해 발달 및 자립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정책의 장기 목표일 것임. 그런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확인하고 접근관점과 적절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함.</li> <li>- 아동청소년이 시설에 거주하는 것 자체를 주거권 배제 상태로 규정해야 함. 즉, 시설 제공(입소)을 주거지원 일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주거권과 시설에서의 권리는 구분해서 별도로 접근해야 할 사안임.</li> <li>- (보호종료)아동청소년에게 주거공간이 제공되었다고 해서 주거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일정수준의 지속성,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거주지 이전을 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진 존재라는 점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li> <li>- 특히 (보호종료)아동청소년에게 주거문제는 자립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성공적인 자립이 가능한 환경적 요소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예, 보호종료아동이 2천명이니 빈집 2천 호 확보라는 접근은 지양해야 함).</li> <li>- 주거 부분에서 '보호(protective) 관점'을 견지해야 함. 보호는 발달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을 포함함. 적절한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주거 관련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주거에 대한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면서 보호(서비스)가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li> <li>- 최저주거기준미달에서 벗어나는 것은 필요조건에 불과하고, 아동의 주거조건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족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이 요구됨. 또한 투자 관점이 아닌 현재 경험하는 빈곤 문제해결에 초점을 뒀야 함. 다만 주거불평등으로 인한 배제를 예방 관점을 견지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함.</li> </ul>
1.2. 아동청소년	1.2.1 최저주거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주거기준의 침실분리기준을 강화해야 함. 특히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경우 개인 공간 확보를 위한 기준을 재설정하고 예산배정 노력이 요구됨.</li> </ul>

① 영역	② 정책과제	③ 세부과제	④ 주요 내용 요약(1차 전문가 의견조사)
	<p>의 성장·발달·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핵심요소 도출</p>	<p>적정주거 기준 재설정</p> <p>1.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가구에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지 및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입지 규정이 필요함.</li> <li>- 제도 통합으로 나가기 위한 기준 재설정이 필요함.</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 및 지역환경의 최소 물리적 조건은 성인과 유사하나, 아동에게만 적용되는 사회권 영역 반영 필요 (생존권) 최소한도의 물리적 조건(과밀 및 프라이버시, 필수설비, 구조성능환경), 강제퇴거 금지(자유권) (발달권)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활공간 변화(놀이, 학습, 휴식 공간 등 / 연령 구분 이슈에 대한 검토 필요) (보호권) 국가와 지자체는 주거빈곤 발굴 및 집행 책임, 보호자는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및 보호의무 부과 (참여권) 당사자의 의견 수렴, 스스로 신고·상담 접근이 가능한 창구 마련 및 모니터링(학교 및 주거복지센터) (주거불평등 해소 노력) 도시와 농산어촌 등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국적·문화적 차이 존중 및 차별금지, 장애아동청소년 주거지원 등 아동청소년의 다양성 존중, 낙인 해소 등을 위한 인권 실태 모니터링 강화</li> </ul>

## 2) 영역 2 :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단 확충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단 확충’ 영역은 모든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주거에서 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집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와 정부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지표를 각각 개발·관리하고, 주거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 개선 등 추진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영역에서는 3개 정책과제와 6개 세부추진과제가 도출되었다.

### (1) 정책과제 3 :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 및 관리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단 확충’ 영역의 첫 번째 정책과제는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 및 관리(2.1.)’이다. 여기에는 2개의 세부추진과제를 포함한다. 먼저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 개발·관리(2.1.1)’는 정부차원에서 모든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기에는 최저주거기준 상의 침실분리기준 포함 및 면적기준 충족 여부, (반)지하·옥탑·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주거비 적정성 등의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주거로 인한 차별 경험과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이 배제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도 포함할 것인지 등 일부 의견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 지표의 세부 내용은 2절에서 별도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정부의 의무 확인용 지표 개발·관리(2.1.2)’는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지표를 개발·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위 두 세부추진과제의 정책대상은 일반아동·청소년과 시설거주 아동·청소년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표 IV-3). 정부의 의무 확인용

지표의 세부 내용 역시 지표의 중요성과 자료 확보 및 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 2절에 제시하였다(표 IV-3).

#### (2) 정책과제 4: 법제 및 전달체계 정비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단 확충’ 영역의 두 번째 정책과제는 ‘법제 및 전달체계 정비(2.2.)’다. 여기에는 2개 세부추진과제를 포함한다. 먼저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2.2.1)’에는 「주거기본법」과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주거지원을 받은 후에도 주거상향을 하지 않는 보호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으로 ‘주거지원 전달체계 정비 및 제도 내실화(2.2.2)’는 시·군·구 단위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거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주거지원제도의 내실화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아동이 있는 가구’로 확대하고 현행 주거급여제도에서 가구원 수뿐 아니라 아동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적정 ‘방 수’를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제도 자체는 충분하기 때문에 신규 제도를 개발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수한 정책대상의 수요와 욕구에 부응하여 주거지원 시 자격기준을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또 다른 배제와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보다 통합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표 IV-3).

#### (5) 정책과제 5 :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단 확충’ 영역의 세 번째 정책과제는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2.3)’다. 여기에는 2개 세부추진과

제를 포함한다. 먼저 ‘대상 맞춤형 통합적 주거지원 강화(2.3.1)’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되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나 일반 가구,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등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배제는 다양한 기회로부터의 박탈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권 원칙을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개발정책과 주거정책의 분절성을 해소해 나가면서 주거지원 과정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부모의 자립 생활, 재정관리를 포함한 양육여건에 대한 점검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최저주거기준미달 지원범위 확대(2.3.2)’는 현행 제도 내에서 최저주거기준미달 상황에서 생활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구, 시설거주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비주택이 아닌 최저주거기준미달(면적 미달, 구조성능환경미달, 반지하, 옥탑 등) 가구에 대한 지원범위와 지원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미성년자가 시설에 거주하는 상황을 최저주거기준 미달 즉, 주거권이 배제된 상태로 규정하여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단 확충’ 영역의 두 가지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도출된 의견 일부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표 IV-3이다.

표 IV-3. 전문가 의견조사(AHP) 분석결과: 과제별 주요 내용(2)

① 영역	② 정책과제	③ 세부과제	④ 주요 내용 요약(1차 전문가 의견조사)
2.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 장을 위한 정책 수단 확충	2.1.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 및 관리	2.1.1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 개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주거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지표를 개발·관리해야 함.</li> <li>- 정책대상은 일반아동청소년과 시설거주 아동청소년 모두 포함</li> <li>- (지표의 세부내용(안)은 II장 참조 / 별도 개발 필요)</li> </ul>
		2.1.2 정부의 의무 확인용 지표 개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확인할 지표를 개발·관리해야 함.</li> <li>- 정책대상은 일반아동청소년과 시설거주 아동청소년 모두 포함</li> <li>- (지표의 세부내용(안)은 II장 참조 / 별도 개발 필요)</li> </ul>
	2.2. 법제 및 전달 체계 정비	2.2.1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보호자)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거지원으로 주거상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직장, 교육 등) 없이 극심한 주거빈곤 상황에 아동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경우(예, 쪽방거주, 비닐하우스 거주 등 비주택 거주)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방지 규정에 포함</li> <li>- 주거불평등 경험은 사회적 관계(네트워크)와 사회자본 영역에서 발달을 저해(예측)</li> <li>- 시설아동청소년의 경우 나이제한(만18세 이하)으로 보호종료 전 LH 지원 신청이 불가하여 보호종료 시점에 안정된 주거지 결정이 불가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li> <li>- 아동주거권 미보장은 성인주거권 미보장과의 관련이 있으며 이는 법적 규제(비강제)가 없고 평등의 문제임. (주거)차별금지법 또는 개별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주거권 미보장 시 처벌 규정 등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필요</li> <li>- 주거권을 권리로 규정하고, 미충족 시 절차 보장(권리구제 절차 마련 등), 예산 책정 의무 준수 등</li> </ul>

① 영역	② 정책과제	③ 세부과제	④ 주요 내용 요약(1차 전문가 의견조사)
		2.2.2 주거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및 제도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공급은 국토부 담당, LH가 지원, 서비스는 복지부, 지자체가 담당하여 부처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이슈</li> <li>- 아동이 위기상황에서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주거를 탐색하고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이 동시에 가능한 시군구 단위의 전문 인력 배치(주거복지센터의 시군구 단위 설치 및 아동청소년가구에 대한 필수 사례관리 등)</li> <li>- 주거정책에서 세대주에 귀속된 존재에서 벗어나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과 같이 주거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금융지원 등 지원 확대하는 장기적 목표 마련 필요</li> <li>- 현행 다자녀가구, 비주택가구 대상 정책은 아동청소년 주거 문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다자녀가구 유형을 아동가구 유형으로 변경 검토 필요(2자녀 이상에 한정하지 않고 아동을 양육하는 주거빈곤 가구가 정책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li> <li>- 제도는 비교적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각 제도의 내실화가 요구됨.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수 욕구에 따른 자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나열되면 잔여화를 촉진하고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당사자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음. 어떤 계층에서 얼마나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제기되며 제도 통합으로 나가기 위해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성도 검토해야 함.</li> <li>-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아동이 있는 가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도 필요함.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고, 전세임대주택보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함. 영구임대, 국민임대 주택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높아 이들에 대한 주거상황이 시급함.</li> </ul>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	2.3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	2.3.1 대상 맞춤형 통합적 주거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유자녀가구,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국가 및 지자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저소득·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지원 강화</li> <li>- 경제적·정치적 배제 등 아동청소년이 권리로부터 배제, 문화 및 여가 등 기회로부터의 박탈 경험은 주변화를 초래하므로 (주거권 배제의 결과 및 사회권 원칙과 관련하여) 고민 필요</li> </ul>

① 영역	② 정책과제	③ 세부과제	④ 주요 내용 요약(1차 전문가 의견조사)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개발정책과 주거정책의 분절 문제를 해결,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자기부담금 5%를 마련하지 못해 이를 포기하는 가구가 상당수 있으므로 무보증금 임대주택 확대 고려 필요</li> <li>- 주거상향을 위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주거이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공급량 확대, 자활, 돌봄지원,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확충(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이사 비용, 물품 지원 또는 연계 등 촘촘한 서비스 포함)</li> <li>-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공공임대주택 지원과정에서 부모의 자립생활, 재정관리능력, 양육여건 평가를 위한 심층 상담 및 교육 필요(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의 핵심은 부모의 역량임)</li> <li>- 매입 리모델링 사업(매입 후 다자녀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추진</li> <li>- 미국 MTO(Moving to Opportunities) 프로그램 등 참고 필요</li> </ul>
		2.3.2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원범 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확대됨('18.3). 아동주거빈곤가구 중 저소득가구 범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있고 이들을 정책대상에 포함하는 논의가 필요함.</li> <li>- 현행 제도 내에서 최저주거기준미달상황에서 생활하는 모든 아동을 포괄하지 못함. 최저주거기준미달인 1자녀아동 가구, 보호종료 전 보호대상아동 및 비주택이 아닌 최저주거기준미달(면적미달, 구조환경성능미달, 반지하, 옥탑 등)에 대한 지원범위와 내용 확대 필요</li> <li>- 아동청소년이 시설에 거주하는 것 자체를 주거권 배제 상태로 규정해야 함.</li> </ul>

### 3) 영역 3 : 시설거주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강화

‘시설거주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강화’ 영역은 원 가정에서 분리되어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시설이 집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주거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영역에서는 2개 정책과제와 4개 세부추진과제가 도출되었다.

#### (1) 정책과제 6 : 대안양육시설의 주거여건 개선

‘시설거주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강화’의 첫 번째 정책과제는 ‘대안양육시설의 주거여건 개선(3.1.)’이다. 여기에는 2개 세부추진과제를 포함한다. 먼저 ‘시설 기준 정비(3.1.1.)’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아동·청소년그룹홈), 청소년쉼터와 같은 생활시설은 원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청소년에게 ‘집’이므로 주거환경의 관점에서 사생활보장과 같은 요소가 고려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시설입소는 주거지원의 일환이 아니므로 시설에서의 권리와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대한민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가능한 한 모든 아동들이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위탁가정의 질을 향상 및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 시설 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외, 2019, p.411). 이는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접근과 함께 정부차원에서 가정 외 보호체계 내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탈 시설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시설 입지 및 환경 기준 정비(3.1.2)’는 시설의 입지 및 환경이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일부 청소년쉼터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상가 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도 있는데, 아동·청소년이 장기간 거주하는 공간임을 고려할 때 과연 적합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한다.

## (2) 정책과제 7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확대<sup>31)</sup>

‘시설거주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강화’의 두 번째 정책과제는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확대(3.2)’다. 여기에는 2개 세부추진과제를 포함한다. 먼저 ‘대상자 중심의 주거지원 서비스 확충(3.2.1)’은 ‘보호종료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시 주거공간만 제공하는 것만으로 주거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독립적 생계유지가 쉽지 않은 미성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공급 시 사례관리를 결합한 지원주택(supportive house)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주거우선지원 기반의 자립지원 강화(3.2.2)’은 보호종료청년에 대한 주거안정을 기반으로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성인기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미성년자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주거권이 배제된 상태이므로 이들을 주거 우선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연속적인 주거안정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앞에서 언급한 탈 시설화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패러다임을 주거 우선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시설거주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강화’ 영역의 두 가지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도출된 의견 일부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표 IV-4이다.

---

31) 18세에 달하면 보호가 종료되지만 연장보호가 가능하고,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거지원 대상 보호종료아동 대다수가 「민법」상 성인이므로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청소년, 보호종료청년 등의 용어를 혼용하였다.

표 IV-4. 전문가 의견조사(AHP) 분석결과: 과제별 주요 내용(3)

① 영역	② 정책과제	③ 세부과제	④ 주요내용 요약(1차 전문가 의견조사)
3. 시설거주 아동 청소년 주거권 보장 강화	3.1 대안양육 시설의 주거여건 개선	3.1.1 시설 기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아동청소년이 시설에 거주하는 것 자체를 주거권 배제 상태로 규정해야 할 문제임. 즉, 가정 외 보호체계 아동청소년에게 시설을 제공(입소)하는 것이 주거지원 일환으로 접근되어서는 안 되며, 아동청소년의 주거권과 시설에서의 권리는 구분해서 별도로 접근해야 할 사안임.</li> <li>- '아동이 있는 가정'이 아닌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은 여러 측면에서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음. 현행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특성과 연계하여 주거환경 측면에서 시설의 기준 정비가 요구됨.</li> </ul>
		3.1.2 시설 입지 및 환경 기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과 하위법령) 시설의 입지 및 환경이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 측면에서 볼 때 적합하지 점검이 필요함. 이를 기반으로 시설 입지와 환경 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임.</li> <li>- (일시 및 단기)청소년쉼터 상당수가 상가 건물 내에 위치해 있거나, 민원 문제와 청소년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주택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입지 및 환경 조건에서 아동청소년이 장기간(최장 몇 년) 거주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li> </ul>
	3.2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확대	3.2.1 대상자 중심의 주거지원 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한 다수의 취약아동은 주거지 선정 과정에서 적극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력자를 필요로 함. LH가 주택물색도움미 제도를 도입했으나 극소수이고, 광역시도 단위의 자립전담요원을 확충해야 함.</li> <li>- 보호종료아동이 최초 주거지 선정 과정 뿐 아니라 이주 과정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속적 지원 필요</li> <li>- 기존 주거취약계층에 시설거주아동을 포함하기보다 주거빈곤아동 범주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li> <li>-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비체계적이고, 기존 정책이 대응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시 이 범주에 포함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법이라 볼 수 없음.</li> <li>- 주거취약계층에 시설거주아동이 제외된 것은 입법미비로 판단하며 노숙 위험이 높고, 노숙인시설의 노숙인이 주거취약계층에 포함되는데 보호종료(예정)아동이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함.</li> </ul>

① 영역	② 정책과제	③ 세부과제	④ 주요내용 요약(1차 전문가 의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방향에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가 주요 내용임. 보호종료(예정)아동도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방향에 부합하므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18세 아동은 독립적 생계유지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과 병행하여 사례관리가 필요하고 쉼어하우스나 기숙사 형태의 공급도 고려해야 함.</li> </ul>
		3.2.2 주거우선지원 기반의 자립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종료 후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주거안정 기반을 제공하고, 연령대별로 이용가능 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해 자립 시까지 끊이지 않는 주거 사다리 지원 필요</li> <li>- 시설 입소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주거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대안이 최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함(중장기쉼터, 소년원 퇴소 후 자립생활관 거주 청소년 포함). 주무부처가 달라도 지자체 수준에서 통합지원이 필요하고 포용국가 아동정책 내 아동보호팀 보호전담요원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 필요</li> <li>-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정착금(500만원)으로 주거보증금, 이사비, 가구비 등을 모두 마련해야 하므로 민간임대시장에서 적정주거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li> <li>- 청년기가 연장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소 20대(29세까지)는 사례관리를 포함한 주거지원과 자립지원을 통해 성인기 이행을 적극 지원해야 함.</li> </ul>

다음으로 정책추진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14개 세부추진과제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우선순위는 총 3개 영역 간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국지적 우선순위(L)와 전체 추진과제 간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복합적 우선순위(G)에 대하여 우선순위 벡터 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든 항목의 응답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이하 C.I.)가 0.1미만으로,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응답이 신뢰도를 확보하였음을 의미한다.

먼저 총 3개 영역 간의 중요도는 1영역 ‘아동·청소년 주거권 개념 및 핵심요소 정립’, 2영역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단 확충’, 3영역 ‘시설거주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강화’ 순이었다. 다음으로 총 7개 정책과제 간의 복합적 우선순위는 ‘아동·청소년 주거권 개념 정립(1.1.)’,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핵심요소 도출(1.2.)’, ‘법제 및 전달체계 정비(2.2.)’ 등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총 14개 세부추진과제 간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 1순위 과제는 1영역의 ‘아동·청소년 주거권 접근관점 확립(1.1.2.)’이었다. 그 다음으로 2순위부터 4순위까지 모두 1영역 정책과제가 차지하였는데, 2순위는 ‘(보편적·차별적)주거권 개념 정립(1.1.1.)’, 3순위는 ‘최저주거 및 적정주거 기준 재설정(1.2.1.)’, 4순위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반영(1.2.2)’ 등의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을 위해 개념과 접근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추진과제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모든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행 최저주거 및 적정주거 기준을 재검토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 이를 포함하여 국가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파악되었다. 반면 미성년자의 시설입소는 주거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시설 입지 및 환경 기준 정비는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3개 영역별 7개 정책과제와 14개 세부추진과제 간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제시한 것이 표 IV-5이다.

표 IV-5. 정책과제 우선순위(안)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① 영역	② 정책과제	L	G	③ 세부과제	L	G	순위
1. 아동·청소년 주거권 개념 및 핵심요소 정립	1.1. 아동청소년 주거권 개념 정립	0.669	0.401	1.1.1. (보편적·차별적)주거권 개념 정립	0.405	0.162	2
				1.1.2. 아동청소년 주거권 접근관점 확립	0.595	0.238	1
	1.2.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핵심요소 도출	0.331	0.198	1.2.1. 최저주거 및 적정주거 기준 재설정	0.61	0.121	3
				1.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반영	0.39	0.077	4
2.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단 확충	2.1.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 및 관리	0.193	0.054	2.1.1.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 개발·관리	0.544	0.030	12
				2.1.2. 정부의 의무 확인용 지표 개발·관리	0.456	0.025	13
	2.2. 법제 및 전달체계 정비	0.464	0.131	2.2.1.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0.488	0.064	6
				2.2.2. 주거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및 제도 내실화	0.512	0.067	5
	2.3.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0.343	0.097	2.3.1. 대상 맞춤형 통합적 주거지원 강화	0.633	0.061	7
				2.3.2. 최저주거기준미달 지원범위 확대	0.367	0.035	9

① 영역	② 정책과제	L	G	③ 세부과제	L	G	순위
3. 시설거주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강화	3.1. 대안양육시설의 주거여건 개선	0.431	0.051	3.1.1. (복지시설의)시설 기준 정비	0.611	0.031	11
				3.1.2.. (복지시설의)시설 입지 및 환경 기준 정비	0.389	0.020	14
	3.2. 보호종료아동청소년 주거지원 확대	0.569	0.068	3.2.1. 대상자 중심의 주거지원 서비스 확충	0.468	0.032	10
				3.2.2. 주거우선지원 기반의 자립지원 강화	0.532	0.036	8

\*주: 1) 모든 항목의 CI지수는 0.1 미만으로 나타남. 일치성지수(CI: Consistency index)는 응답의 신뢰성을 의미하는 지수로 0.1미만이면 일관성이 있다고 봄.  
2) L: Local(해당 항목이 지니고 있는 가중치), G: Global(상위계층의 합에 중위와 하위계층의 값을 종합한 가중치)

## 2.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

### 1)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의 의의

주거권은 아동·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이며 건강한 발달의 필수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의 상태나 수준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미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수준을 파악하고 둘째,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설계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주거권 지표(안)를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지표 개발 또는 지표 작성 과정은 목표설정, 이론적 프레임워크 구축, 지표 선정 및 검토, 결과 종합, 보고서 작성 및 활용, 관리 및 보완 등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통계청 통계개발원, 2019, p.33). 즉, 지표 개발은 지표를 선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관리·보완하는 절차를 포함하나, 본 연구는 정책지표(policy indicator) 선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책지표는 “정책적 가치 및 소망성에 비추어 정책 문제를 정의하고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지표”로, 정책 과정에 기여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이민호, 이광희, 윤수재, 류현숙, 윤광석, 2012, p.xi; p.15). 이와 함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인권 이행 정도의 측정을 위해 제시한 구조(structure), 과정(process), 성과(outcomes)를 함께 고려하였다(김영지 외, 2019, p.44).<sup>32)</sup> 요컨대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은 아동·청소년 주거권이라는 인권을 이행하고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

---

32) 구조지표(structural indicators)는 인권 증진에 필요한 기본적·제도적 메커니즘과 국내법, 국제기준 등에, 과정지표(process indicators)는 프로그램, 예산배분, 구체적 개입 등의 조치에, 성과지표(outcomes indicators)는 인권 이행 정도, 권리 향유 정도 파악 등에 초점을 둔다(천정웅, 2018, pp.35-36).

## 2)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의 단계

### (1) 측정 목표

지표 개발은 측정 목표 즉, 측정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적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주거가 ‘거주하기에 적절한 상태’일 때 주거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주거의 적절성 여부는 주거의 구조적·물리적 특성(주거시설과 주거규모), 주거비용, 점유안정성, 지역사회환경 등 하위 차원의 속성에 따라 달라진다.

정책 대상인 아동·청소년은 개별 법률에서 연령 기준을 달리 정의하나, 이 연구에서는 「아동복지법」을 준용하여 만 18세 미만의 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시설 거주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후 5년을 사후관리 기간으로 두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에서 만 24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성인에 해당하는 청년을 포괄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여성가족부, 2020). 다만 일반가정과 시설의 주거 상황이 다르므로 일반아동·청소년과 시설거주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지표를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 (2) 이론적 프레임워크

아동·청소년 주거권과 같이 다원적인 측면을 가진 사회현상은 복수의 지표 즉, 지표 체계 구성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측정 목적과 방향, 가치를 포함한 이론적인 틀 제공, 지표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일정한 기준과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이론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해당 영역이 작동하는 구조 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레임워크를 확정하는 등의 단계를 거친다(통계청

통계개발원, 2019, p.37).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이 연구에서는 파악하고자 하는 사안을 하위분야별로 세분화한 후 분야별로 지표를 선정하는 주제 접근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에 먼저 1991년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General Comment No.4: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의 적절한 주거의 7가지 요소<sup>33)</sup>, Center for Child Right(in India)의 2008년 주거권 보장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아동의 범주<sup>34)</sup>, 장애인 주거권 지표(이호선, 정지웅, 고아라, 임수경, 2017)<sup>35)</sup>,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체계 및 아동·청소년 인권지표(김영지 외, 2019)<sup>36)</sup>, 주거빈곤과 아동발달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임세희 외, 2018, 임세

33) 첫째, 점유기간 보장(Security of tenure)으로 강제적인 퇴거, 괴롭힘과 다른 위협으로부터 임차인을 위한 법적인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 물질, 시설, 인프라의 활용(Availability of services, materials,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으로 거주자가 안전한 마실 물, 적절한 상하수도, 요리·난방·채광, 음식 저장과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없다면 적절한 주거라고 할 수 없다. 셋째 주거비용의 적절성(Affordability)으로 주거관련 비용이 거주자의 다른 인권을 즐기는 것을 손상시키거나 위협하는 정도이어서는 안된다. 넷째, 거주적합성(Habitability), 즉 물리적 안정성이나 적절한 공간은 물론 추위, 습기, 열기, 비, 바람이나 기타 건강에 위해가 되는 요소와 구조적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주거여야 한다. 다섯째,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으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조건에 관계 없이 접근하기 용이한 주거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주거입지(Location)가 적절해야 한다. 즉 학교,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사회적 시설로부터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일곱째, 문화적 적합성(Cultural adequacy)으로 주택의 건설방식에 있어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을 존중해야 한다.

34) Center for Child Rights(in india) (2008)은 인권위반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의 범주로 1.홀리스 아동, 2. 강제퇴거의 희생 아동, 3. 자연재해로 집을 잃거나 적절하게 사회복귀가 되지 않은 아동, 4. 텐트나 이동 가능한 주택에 사는 아동, 5. 과밀한 주거 혹은 기숙사(domitory)에 사는 아동, 6. 전기, 상하수도과 같은 필수설비가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는 주거에 사는 아동, 7. 학교, 식품품 가게나 의료기관과 먼 거리에 주거가 있는 아동, 8. 학교, 의료기관에 갈 적절한 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에 사는 아동, 9. 장애아동의 특별한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주거와 지역사회에 사는 장애아동, 10. 폭력적인 환경 혹은 폭력과 방임이 있는 집에서 사는 아동, 11. 돌봄시설의 부재로 인해 부모의 일터에 같이 가서 위험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동, 12. 적절한 주거의 권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돌봄시설에 있는 아동, 13. 적절한 주거의 권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숙사나 호텔에 사는 아동, 14. 적절한 주거의 권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년원에 사는 아동을 열거하고 있다.

35) 장애인 주거권 지표는 주거권 수준 확인용 지표와 정부의 의무 확인용 지표 2개를 제시하고 있다. 주거권 수준 확인용 지표는 '자유권 침해 및 점유의 안정성', '물리적 적합성', '경제적 부담 가능성',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주거환경 적합성'의 5가지 영역의 세부 영역을 정하고, 세부 영역별 지표와 정의 및 산식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의무 확인용 지표는 '장애차별', '자유권 침해·점유의 안정성', '물리적 적합성', '경제적 부담', '접근성·정당한 편의 제공', '주거환경', '참여'의 7가지 영역의 세부 영역을 정하고, 세부 영역별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이호선 외, 2017).

36) 김영지 외(2019)의 2019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서 대분류는 다음의 7가지를 설정하였다.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3. 폭력 및 학대, 4.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5. 장애·기초 보전 및 복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7. 특별 보호조치. 7개의 대분류에 대해 24개 중분류, 54개

희 외, 2019)<sup>37)</sup>등을 검토하여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일관된 측정  
을 위한 신뢰도(reliability)로, 객관성을 확보한 주요 행정통계의 활용 가능 여부  
를 고려하였다. 세 번째로 변화 상황을 빠르게 반영하기 위한 신속한(rapidity)  
자료 확보의 용이성, 네 번째로 정책 분석 가능성(analysis possibility)을 고려하  
였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이라는 목적과 관련하여 정책이나 현황의  
시계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지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흘러도 일관성 있게 중요한 지표인지, 지속가능발  
전목표(SDGs)와 부합한지 등 지속성(sustainability)을 염두에 두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는 ‘아동·청소년 주거권 수준 파악 지표’와  
‘정부 의무 확인용 지표’ 등 두 가지 지표 체계로 구성하였다. 전자의 경우 대분류  
(영역)로 ① 주거의 구조적·물리적 적합성, ② 주거비 적절성, ③ 점유의 안정성,  
④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 ⑤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⑥ 시민적 권리와 자유,  
⑦ 아동청소년 건강, ⑧ 아동청소년 학업 및 진로, ⑨ 아동청소년 사회적 관계,  
⑩ 아동청소년 특별조치를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대분류별로 중분류, 중분류별로  
지표를 제안하고 해당 지표의 조작적 정의와 자료원을 적시하였다. 대분류 ①  
~ ④는 서비스 공급과정에서 투입되는 자원, 인력, 전달체계 등 구조지표 또는  
과정지표, 대분류 ⑤ ~ ⑩은 성과지표에 해당한다.

후자의 대분류는 ① 주거의 구조적·물리적 적합성, ② 주거비 적절성, ③ 점유의  
안정성, ④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를 설정하고, 각각 중분류와 지표를 제안하였다.  
다. 이 과정에서 후술한 전문가 조사(1, 2차) 결과를 참고하였다.

---

지표(소분류), 119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설정하였다.

37) 임세희 외(2018)은 주거빈곤으로 아동의 4대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 제한된다고 하면서  
주거빈곤과 아동의 권리지표로 ‘식품미보장’, ‘요리활동 감소’, ‘사고 및 재해(혹서기, 혹한기 포함) 발생  
위험 증가’, ‘질병발생 위험 증가’, ‘스트레스 증가 및 부정적 정신건강’, ‘불규칙한 수면 및 수면 방해’,  
‘교육비의 감소’, ‘부정적 양육행동, 가족갈등의 증가, 교육참여 감소’, ‘공부하고 놀 공간의 부족’, ‘TV나  
인터넷 사용의 증가’, ‘또래 또는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어려움, 학교 적응 감소’ ‘아동의 재능과  
능력, 개성을 최대한 실현하는 교육 목적 달성의 어려움’, ‘학대나 성적 착취의 가능성 증가’, ‘원가정에서  
살 수 없는 경우의 증가’, ‘아동 노동의 증가’, ‘사생활 보호 어려움’, ‘여러 참여활동의 제한’을 제시하였다.

### (3) 지표 선정 및 검토

지표는 직접지표와 간접(proxy)지표, 객관지표와 주관지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통계청 통계개발원, 2019, pp.49-50), 이 연구에서는 지표 개발 목적에 따라 직접지표, 객관지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아동·청소년 주거권이라는 주제의 특성 상 사람들의 의견과 평가를 활용하는 주관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지표 선정 과정에서도 먼저 정책의 목적에 적합한지, 시계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쉬운 지표인지를 고려하였다. 둘째, 현재 통용되는 개념과 표준, 분류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지, 통계적으로 타당하고 신뢰도가 높은지를 고려하였다. 셋째, 측정가능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측정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지표 간의 관계가 일관성 있고 상호보완적인지를 고려하였다.

이와 함께 이론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타당한 지표를 효율적으로 선정하고 정책 대상이나 다양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용이한 상향식(bottom-up) 방식을 활용하였다. 즉,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개발된 지표를 전문가 집단에 제공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차례 검토하여 최종안을 도출하는 방식을 통해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 (4) 결과 종합

지표의 결과는 지표나열방식(Dashboard or Set of indicators)과 종합지수방식(Composite indicators) 등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전자는 작성한 모든 지표를 나열하여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변화 정도를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으나 종합지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는데는 용이하다. 반면 후자는 용어 그대로 개별 지표를 하나의 값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통계청 통계개발원, 2019, p.61). 그런데 주거권의 경우 각 요소가 정책 변화에

따라 상반된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의 점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거권 지표를 종합지수 형태로 제시할 경우 주거정책의 변화에 따라 각 하위 요소가 어떤 상호작용과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정보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지표나열방식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 3)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의 과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는 일반아동·청소년과 시설 거주아동·청소년으로 정책대상을 구분하고,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와 정부의 의무 확인용 지표를 구분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진이 1차 개발한 지표(안)에 대하여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전문가 의견조사(AHP) 시 델파이방식으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1·2차 조사 모두 지표의 중요성(해당 지표가 타당하고 적절하며 일관성 있게 중요한 정도)과 용이성(해당 지표의 자료 확보, 활용·비교가 용이한 정도)을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음~매우 중요 혹은 전혀 용이하지 않음~매우 용이)에 표시하도록 하고 대분류, 중분류, 지표 등 전반에 대한 추가 의견을 기술하도록 요청하였다. 타당도의 평정은 내용타당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활용하여, 응답자 수에 따른 CVR 최소값을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각 항목에 따라 응답자의 수는 11명(.59), 10명(.62), 9명(.78)이었다. 또한 각 항목 별로 조사대상자의 50% 이상이 응답한 경우 내용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100%가 타당하다고 응답한 경우 CVR값은 1, 50%인 경우 0, 50% 미만인 경우 음수로 표기하였다. 각 지표(안)에 대한 평정 결과는 표 IV-6부터 표 IV-9와 같다.

표 IV-6. 아동·청소년 주거권 수준 지표(안) 평정 결과(일반아동·청소년)

대분류	중분류	지표	조작적 정의 및 자료원	CVR	
				중요성	용이성
1.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1-1. 방수기준	1-1-1. 최저주거기준상의 침실분리기준 충족여부	아동의 연령, 성별, 가족원간의 관계를 고려한 침실기준미달 거주 아동 비율(단, 침실+거실만 방으로 봄(부엌 제외, oecd비교 가능성 제고)) / 주거실태조사 활용	0.818	0.6
		1-1-2. 조용히 잠자고 공부할 공간 확보 정도	방이 아닌 곳에서 자는 아동의 비율, 세대가 다른 가족원과 함께 방을 쓰는 아동(초3이상)의 비율,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방을 쓰는 아동(초3이상)의 비율, 3명 이상이 한 방을 쓰는 아동(초3이상)의 비율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636	0
	1-2. 면적기준	1-2-1. 최저주거기준상의 면적 기준	가구원당 전용면적 미달 주거거주 아동 비율 / 주거실태조사 활용	1	0.8
	1-3. 구조성능 환경기준	1-3-1. 자연재해위험, 냉난방, 곰팡이, 쥐나 바퀴벌레, 채광, 환기 기준 미달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부정적 항목에 (매우)그렇다 응답 비율)	1	0.2
		1-3-2. 지하(반지하), 옥탑 거주 아동	본 연구의 조사결과 및 주거실태조사 활용(지하(반지하) 혹은 옥탑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비율)	0.818	0.818
		1-3-3.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거주 아동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거주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 본 연구의 조사결과, 주거실태조사 활용	1	0.8

대분류	중분류	지표	조작적 정의 및 자료원	CVR	
				중요성	용이성
		1-3-4. 장애아동 거주 적합성 여부	장애아동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응답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	-0.2
	1-4. 필수설비 미달 기준	1-4-1. 최저주거기준상의 필수설비기준 미달 아동가구	전용수세식화장실, 전용목욕실, 전용입식부엌, 상하수도 중 하나라도 없다고 응답한 아동 비율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아동청소년의 이해도를 고려한 질문 및 문장 구성)	0.818	0.455
2. 주거비 적절성	2-1. RIR	2-1-1. 중위소득 아동가구의 월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	주거실태조사 활용	0.4	0.8
	2-2. 잔여소득 주거비 과부담	2-2-1. 주거비 제외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아동가구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 기준선 활용 / 주거실태조사 활용	0.6	0
	2-3. 박탈 경험	2-3-1. 의료, 식품, 공과금, 주거비 등 사회경제적 박탈지수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2	-0.2
		2-3-2. UNICEF 아동박탈지수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091	-0.091
3. 점유의 안정성	3-1. 주택점유 형태	3-1-1. 아동가구의 주택점유형태(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등)	아동가구의 자가비율, 전세비율 등 / 본 연구의 조사결과, 주거실태조사 활용	0.8	1

대분류	중분류	지표	조작적 정의 및 자료원	CVR	
				중요성	용이성
3-2. 이동 횡수	3-2-1. 소유형태 혹은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원하지 않은 이사 경험 여부	3-2-1. 소유형태 혹은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원하지 않은 이사 경험 여부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8	0
		3-2-2. 총 이사 횡수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	0.4
		3-2-3. 이사로 인한 전학 횡수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6	0.2
4. 지역 사회 통합과 참여	4-1. 지역사회 안정	4-1-1. 지역사회 효능감	각 문항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인식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6	-0.4
		4-1-2. 지역사회 무질서	각 문항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인식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4	-0.4
		4-1-3. 지역사회 만족감	동네 만족감 및 계속 거주 의사 정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2	-0.2
	4-2. 지역사회 자원	4-2-1. 교통, 의료, 상업 시설 등 접근성, 놀 장소, 주차, 청소 및 쓰레기 등	각 문항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인식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8	-0.4
	4-3. 거주지 차별 경험	4-3-1. 주거위치, 점유형태 등에 따른 차별 경험	각 문항에 대한 아동의 경험에 대한 질문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	-0.4
4-4. 장애 배려	4-4-1. 지역사회(주거지 주변)가 장애아동이 거주하기에 적합한지 여부	지역사회 환경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장애아동의 주관적 인식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	-0.2	
5. 인권 일반 및	5-1. 인권 일반	5-1-1. 인권에 대한 인식	인권 의식 및 태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	-0.6

대분류	중분류	지표	조작적 정의 및 자료원	CVR	
				중요성	용이성
일반 원칙					
6. 시민적 권리와 자유	6-1. 의견 표명권	6-1-1. 주거 결정 시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주거 선택 혹은 주거지 선택에 있어 아동의 참여 정도(의사결정시 부모의 태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	-0.6
7. 아동 청소년 건강	7-1. 신체건강	7-1-1. 수면방해	집 외부 소음과 빛, 집 구조와 생활환경(함께 사는 사람)으로 인한 수면방해 경험 정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8	-0.2
		7-1-2. 아토피, 천식 등	곰팡이, 채광 불량 등에 대해 (매우)그렇다 응답 대비 아토피, 천식 경험 정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	0.8
		7-1-3. 주관적 건강 인식	주관적 신체건강 인식(10점 척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6	0.4
		7-1-4. 비만	과밀 경험 대비 아동청소년의 BMI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2	0
	7-2. 정신건강	7-2-1. 행복감	주관적 생활 만족도, 인생에 대한 만족감(10점 척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2	0.2
		7-2-2. 우울감	우울 정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455	0.4
		7-2-3. 스트레스	주관적 스트레스 인식정도(10점 척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455	0.4
		7-2-4. 가출경험, 가출생각	집의 구조와 환경이 가출경험과 가출생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인식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6	0.4
8. 아동	8-1. 학업 및	8-1-1. 숙제나 공부시간	하루 중 숙제나 공부하는 시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2	0.2
		8-1-2. 스마트폰 등 매체 이용시간	하루 중 스마트폰, TV, 인터넷 이용시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4	0.2

대분류	중분류	지표	조작적 정의 및 자료원	CVR	
				중요성	용이성
청소년 학업 및 진로	여가 활동	8-1-3. 운동장, 놀이터, 공원을 활용한 신체활동 시간	하루 중 운동이나 야외 신체활동시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6	0.2
	8-2. 진로	8-2-1. 진로성숙도	인생목표, 직업선택과 직업획득가능성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인식 / 본 연구의 조사 결과 활용	-0.4	-0.2
9. 아동 청소년 사회적 관계	9-1. 가족관계	9-1-1. 가족관계 만족도	부모나 가족구성원 관계 만족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2	0.2
	9-2. 교우관계	9-2-1. 친한 친구 9-2-2. 학교생활 만족도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2 -0.6	0 0
10. 아동 청소년 특별 조치	10-1. 학대 및 방임	10-1-1. 학대 및 방임 피해 경험	최저주거기준미달 여부와 부모의 학대 및 방임 정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	-0.2
	10-2. 폭력 피해	10-2-1. 폭력 피해 및 목격 경험	거주지 차별 경험과 폭력 피해 경험 정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	0.111

\* 주: 지표 중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른 CVR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음영처리함.

표 IV-7. 정부 의무 확인용 지표(안) 평정 결과(일반아동·청소년)

대분류	중분류	지표	CVR	
			중요성	용이성
1.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1-1. 공공임대주택	1-1-1.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아동가구에 대해 보급된 공공임대주택 비율	0.636	0.6
		1-1-2. 공공임대주택 거주 아동가구의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	1	0.2
	1-2. 민간임대주택	1-2-1. 신규주택 건축 혹은 임대주택에 대한 건축법 위반에 대한 제재(예, 불법 쪼개기 등) 혹은 구조환경기준 충족 제도 정비 여부	1	-0.6
		1-3. 장애아동 주거개량 지원	1-3-1. 장애아동을 위한 필요설비 제공 가구 비율 / 장애아동을 위한 필요설비 제공 예산	1
2. 주거비 적절성	2-1. 주거급여	2-1-1. GDP대비 주거급여예산	0	1
		2-1-2. 주거급여 아동가구 혜택 비율	0.636	1
	2-2. 에너지 바우처	2-2-1. 에너지 바우처의 아동가구 혜택	0.2	0.8
3. 점유의 안정성	3-1. 주거복지상담	3-1-1. 아동가구 주거복지상담 이용 비율	-0.2	-0.4
		3-1-2. 아동가구 주거복지 사례관리 비율	-0.2	-0.2
	3-2. 전월세 상한제	3-2-1. 급격한 주거비 상황에 대한 규제 정도(예, 전월세 상한제)	0.4	-0.4
	3-3. 아동가구 긴급 주거 지원	3-3-1. 자연재난 혹은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아동가구를 위한 예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 아동가구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	0.8	0.2

대분류	중분류	지표	CVR	
			중요성	용이성
	3-4. 퇴거 위기 아동가구	3-4-1. 퇴거 위기에 처하여 공공기관(주거복지센터, 읍면동 등)에 의뢰된 아동가구의 수	0.4	-0.2
4.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	4-1. 공공임대주택의 인식 개선	4-1-1. 공공임대주택 social mix 정책 정도	0	-0.6
		4-1-2. 공공임대주택 단지 관리	-0.2	-0.6
	4-2. 주거빈곤밀집지역 환경개선	4-2-1. 주거빈곤밀집지역 환경 개선 예산 정도 (공용주차장, 도로정비 등)	0	-0.2
	4-3. 아동청소년 공간 확보	4-3-1. 아동청소년 신체활동, 문화활동 공간 예산 정도	-0.4	-0.4
	4-4. 농산어촌 아동·청소년 교통 지원	4-4-1. 농산어촌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교통 편 제공 / 농어촌 아동·청소년 교통비 지원	0.2	-0.4

\* 주: 지표 중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른 CVR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음영처리함.

표 IV-8.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안) 평정 결과(시설거주아동·청소년)

대분류	중분류	지표(*보호종료아동·청소년만 해당)	조작적 정의 및 자료원	CVR	
				중요성	용이성
1.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1-1. 방수기준	1-1-1. 침실당 인원 수	침실당 인원 현행 3명에서 2명 이하로 줄이도록 유도 / 시설평가 조사 활용	1	1
		1-1-2. 조용히 잠자고 공부할 공간 확보 정도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	1
		1-1-3. 개인 물건 비치	전용 책걸상 존재 여부, 전용 옷장과 서랍장 존재 여부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	0.8
	1-2. 면적기준	1-2-1. 아동수 대비 전용면적 비율	아동 1인당 아동 전용 공간 면적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	1
	1-3. 구조성능 환경기준	1-3-1. 자연재해위험, 냉난방, 곰팡이, 쥐나 바퀴벌레, 채광, 환기 기준 미달	부정적 항목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	0.4
		1-3-2. 지하(반지하), 옥탑 거주 아동	지하(반지하) 혹은 옥탑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	0.45 5
		1-3-3.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거주 아동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아동 (혹은 거주한 경험이 있는)의 비율 / 본 연구의 조사결과, 주거실태조사 활용	1	0.27 3
		1-3-4. 장애아동 거주 적합성 여부	장애아동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응답	0.81	0.4

대분류	중분류	지표(*보호종료아동·청소년만 해당)	조작적 정의 및 자료원	CVR	
				중요성	용이성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8	
	1-4. 필수설비 미달기준	1-4-1. 최저주거기준상의 필수설비기준미달 아동가구	전용수세식화장실, 적용목욕실, 전용입식부엌, 상하수도 중 하나라도 없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	0.4
	2-1. RIR	2-1-1. 월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	0.4
2. 주거비 적절성	2-2. 잔여소득 주거비 과부담	2-2-1. 주거비 제외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아동가구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 기준선 활용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818	0
	2-3. 박탈경험	2-3-1. 의료, 식품, 공과금, 주거비 등 사회경제적 박탈지수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2	0
		2-3-2. UNICEF 아동박탈지수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2	0
3. 점유의 안정성	3-1. 주택점유 형태	3-1-1. 아동가구의 주택점유형태(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등)	아동가구의 자가비율, 전세비율 등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6	0.8
	3-2. 이동 횟수	3-2-1. 소유형태 혹은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원하지 않은 이사 경험 여부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2	0.4

대분류	중분류	지표(*보호종료아동·청소년만 해당)	조작적 정의 및 자료원	CVR	
				중요성	용이성
		3-2-2. 총 이사 횟수(시설 이동 횟수)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2	0.4
		3-2-3. 이사로 인한 전학 횟수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4	0.2
4.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	4-1. 지역사회 안정	4-1-1. 지역사회 효능감	각 문항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인식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4	-0.4
		4-1-2. 지역사회 무질서	각 문항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인식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4	-0.4
		4-1-3. 지역사회 만족감	동네 만족감 및 계속 거주 의사 정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	0
	4-2. 지역사회 지원	4-2-1. 교통, 의료, 상업 시설 등 접근성, 놀 장소 주차, 청소 및 쓰레기 등	각 문항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인식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	0
	4-3. 거주지 차별 경험	4-3-1. 주거위치, 점유형태, 시설거주에 따른 차별 경험	각 문항에 대한 아동의 경험에 대한 질문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	0.2
	4-4. 장애인배려	4-4-1. 지역사회(주거지 주변)가 장애아동이 거주하기에 적합한지 여부	지역사회 환경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장애아동의 주관적 인식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	-0.2
5. 인권 일반 및 일반 원칙	5-1. 인권 일반	5-1-1. 인권에 대한 인식	인권 의식 및 태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6	-0.2

대분류	중분류	지표(*보호종료아동·청소년만 해당)	조작적 정의 및 자료원	CVR		
				중요성	용이성	
6. 시민적 권리와 자유	6-1. 의견 표명권	6-1-1. 선택 가능한 시설 정보 제공 여부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4	0.2	
		6-1-2.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주거 지원 결정 참여 경험 여부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818	0.4	
7. 아동 청소년 건강	7-1. 신체 건강	7-1-1. 수면방해	집 외부 소음과 빛, 집 구조와 생활환경(함께 사는 사람)으로 인한 수면방해 경험 정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	0.4	
		7-1-2. 아토피, 천식 등	곰팡이, 채광 불량 등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 대비 아토피, 천식 경험 정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	0.6	
		7-1-3. 주관적 건강 인식	주관적 신체건강 인식(10점 척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6	0.6	
		7-1-4. 비만	과밀 경험 대비 아동청소년의 BMI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	0.4	
	7-2. 정신 건강	7-2-1. 행복감	주관적 생활 만족도, 인생에 대한 만족감, 각 10점 척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2	0.2	
		7-2-2. 우울감	우울 정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2	0.2	
		7-2-3. 스트레스	주관적 스트레스 인식정도(10점 척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2	0.2	
		7-2-4. 가출경험, 가출생각	집의 구조와 환경이 가출경험과 가출생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인식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6	0.4	
	8.	8-1.	8-1-1. 숙제나 공부시간	하루 중 숙제나 공부하는 시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2	0.2

대분류	중분류	지표(*보호종료아동·청소년만 해당)	조작적 정의 및 자료원	CVR	
				중요성	용이성
아동 청소년 학업 및 진로	학업 및 여가 활동	8-1-2. 스마트폰 등 매체 이용시간	하루 중 스마트폰, TV, 인터넷 이용시간 / 본 연구의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2	0.4
		8-1-3. 운동장, 놀이터, 공원을 활용한 신체 활동시간	하루 중 운동이나 야외 신체활동 시간 / 본 연구의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	0.2
	8-2. 진로	8-2-1. 진로성숙도	인생목표, 직업선택과 직업획득가능성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인식 / 본 연구의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4	-0.2
9. 아동청소년 사회적 관계	9-1. 관계	9-1-1. 시설 구성원 만족도	시설 구성원 관계 만족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6	0.2
	9-2. 교우 관계	9-2-1. 친한 친구	시설에 친구를 초대하여 논 경험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2	0.2
		9-2-2. 학교생활 만족도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2	0.2
10. 아동 청소년 특별조치	10-1. 학대 및 방임	10-1-1. 보호자나 구성원의 학대 및 방임	시설 보호자의 구성원의 학대 및 방임 정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	0.2
	10-2. 폭력 피해	10-2-1.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피해 등 경험	거주지 차별 경험과 폭력 피해 경험 정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0.8	0

\* 주: 지표 중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른 CVR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음영처리함.

표 IV-9. 정부 의무 확인용 지표(안) 평정 결과(시설거주 및 보호종료아동·청소년)

대분류	중분류	지표	CVR	
			중요성	용이성
1.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1-1. 시설 개선	1-1-1. 침실 당 인원 수를 줄이기 위한 시설 증축 혹은 개량 지원 예산	1	0.2
		1-1-2. 1인당 아동 전용 면적 증가를 위한 예산	1	0.2
		1-1-3. 아동 개인 물건 비치(전용 책걸상, 전용 옷장 및 서랍장)을 위한 예산	1	0.2
	1-2. 공공임대주택	1-2-1.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보호종료아동에게 보급된 공공임대주택 비율	0.8	0.333
	1-3. 장애아동 주거개량 지원	1-3-1. 장애아동을 위한 필요설비 제공 시설 비용 / 장애아동을 위한 필요설비 제공 예산	1	0
2. 주거비 적절성	2-1. 주거급여	2-1-1. 주거급여 보호종료아동 혜택 비율	0.818	0.6
	2-2. 에너지바우처	2-2-1. 에너지 바우처의 보호종료아동 혜택	0.8	0.2
3. 점유의 안정성	3-1. 주거복지상담	3-1-1. 원가정 이탈 아동 시설 정보 제공 제도적 보장 여부	0.636	0.333
		3-1-2. 보호종료(예정) 아동 주거복지 상담 이용 비율	0.636	0
		3-1-3. 보호종료(예정) 아동 주거복지 사례관리 비율	0.636	0
	3-2. 전월세상한제	3-2-1. 급격한 주거비 상향에 대한 규제 정도(예, 전월세 상한제)	0	-0.2
	3-3. 보증금 마련 지원제도	3-3-1. 보호종료(예정) 아동 주거보증금 마련 지원제도(예, 자립정착지원금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0.818	0.4
4.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	4-1. 주거 인식 개선	4-1-1. 아동양육 및 보호시설(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주택)의 외관이 아동양육 및 보호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0.4	-0.6
	4-2. 지역사회 위치 개선	4-2-1. 아동양육 및 보호시설(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주택)의 지역사회 중심부 위치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0.2	-0.6

\* 주: 지표 중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른 CVR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음영처리함.

#### 4) 아동·청소년 주거권 최종 지표(안)

앞에서 제시한 평정 결과를 참고하여 아동·청소년 주거권 최종 지표(안)는 ‘아동·청소년 주거권 수준 파악 지표’와 ‘정부 의무 확인용 지표’ 두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일반아동·청소년과 시설거주아동·청소년 지표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먼저 일반아동·청소년을 위한 ‘아동·청소년 주거권 수준 파악 지표’와 ‘정부 의무 확인용 지표’의 최종안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 ① 일반아동·청소년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

보호자와 함께 개별 가구에서 살아가는 일반아동·청소년의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 체계는 최종적으로 6개 대분류(영역), 13개 중분류, 18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지표의 조작적 정의와 자료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10과 같다. 6개 대분류는 ①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② 주거비 적절성, ③ 점유의 안정성, ④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 ⑤ 폭력 및 학대, ⑥ (아동·청소년)건강 등이다. 13개 중분류는 방수 기준미달, 면적기준미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 필수설비기준미달, RIR, 주택점유형태, 원하지 않는 이사, 지역사회 접근성 및 안정성, 거주지 차별 경험, 장애배려, 신체건강, 폭력 피해, 학대 및 방임 등이다.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효과는 주거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이라 볼 수 있는 건강 중 신체건강을 선정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조사 과정에서 주거빈곤 아동·청소년의 폭력 및 학대경험의 경우 신속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위기아동·청소년 발굴을 위한 주요 항목이라는 의견이 있어 지표에 포함하였다.

표 IV-10.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일반아동·청소년)

대분류	중분류	지표	조작적 정의 및 자료원	
1.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1-1. 방수 기준 미달	1-1-1. 최저주거기준 상의 침실분리 기준 충족여부	아동의 연령, 성별, 가족원간의 관계 고려한 침실기준 미달 아동 비율(단, 침실+거실만 방으로 봄(부엌 제외, oecd비교 가능성 제외)) / 주거실태조사 활용	
		1-1-2. 조용히 잠자고 공부할 공간 확보 정도	방이 아닌 곳에서 자는 아동의 비율, 세대가 다른 가족원과 함께 방을 쓰는 아동(초3 이상)의 비율,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방을 쓰는 아동(초3이상)의 비율, 3명 이상이 한 방을 쓰는 아동(초3이상)의 비율 / 본 연구의 조사결과, 주거실태조사 활용	
	1-2. 면적 기준 미달	1-2-1. 최저주거기준 상의 면적 기준	가구원당 전용면적 미달 아동 비율 / 본 연구의 조사결과, 주거실태조사 활용	
	1-3. 구조 성능 환경 기준 미달	1-3-1. 자연재해위험, 냉난방, 곰팡이, 쥐나 바퀴벌레, 채광, 환기 기준 미달	해당 질문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아동 비율 /본 연구의 조사결과, 주거실태조사 활용	
		1-3-2. 지하(반지하), 옥탑 거주 아동	지하(반지하) 혹은 옥탑에 거주하는 아동 비율 /본 연구의 조사결과, 주거실태조사 활용	
		1-3-3. 고시원, 여관, 비닐 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거주 아동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 본 연구의 조사결과, 주거실태조사 활용	
		1-3-4. 장애아동 거주 적합성 여부	장애아동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환경에 대한 장애아동의 주관적 인식의 평균값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4. 필수설비 미달	1-4-1. 최저주거기준 상의 필수설비 기준 미달 아동가구	전용수세식화장실, 전용목욕실, 전용입식부엌, 상하수도 중 하나라도 없다고 응답한 아동 비율 / 본 연구의 조사결과, 주거실태조사 활용	
	2. 주거비	2-1. RIR	2-1-1. 아동가구의 월 소득대비 주거비	주거실태조사 활용

대분류	중분류	지표	조작적 정의 및 자료원
적절성		부담 30% 이상 인 가구 비율	
3. 점유의 안정성	3-1. 주택점 유형태	3-1-1. 아동가구의 주 택점유형태(자 가, 전세, 보증 금 있는 월세 등)	아동가구의 자가비율, 전월세비율 / 본 연구의 조사결과, 주거실태조사 활용
	3-2. 원하지 않는 이사	3-2-1. 소유형태 혹은 주거비 상승으 로 인한 원하지 않은 이사 경험 여부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4. 지역 사회 통합과 참여	4-1. 지역 사회 접근성 및 안정성	4-1-1. 교통, 의료, 상 업 시설, 놀이 터 공원, 주차, 청소 및 쓰레기 등	각 문항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인식의 평균값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4-2. 거주지 차별 경험	4-2-1. 주거위치, 점유 형태 등에 따 른 차별 경험	각 문항에 대한 아동의 경험 중 차별경험있음 비율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4-3. 장애 배려	4-3-1. 지역사회(주거 지 주변)가 장 애아동이 거주 하기에 적합한 지 여부	지역사회 환경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지에 대 한 장애아동의 주관적 인식의 평균값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5. 아동청 소년 폭력 및 학대	5-1. 폭력 피해	5-1-1. 폭력 피해 및 목격 경험	주거빈곤 아동의 폭력(신체적, 언어적, 성적) 피 해 및 폭력 목격 경험 정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5-2. 학대 및 방임	5-2-1. 학대 및 방임 피해 경험	주거빈곤 아동의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6. 아동 청소년 건강	6-1. 신체 건강	6-1-1. 수면방해	집 외부 소음과 빛, 집 구조와 생활환경(함께 사는 사람)으로 인해 아동이 수면방해를 경험한 정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대분류	중분류	지표	조작적 정의 및 자료원
		6-1-2. 아토피, 천식 등	곰팡이, 채광 불량 등에 대해 (매우)그렇다 응답한 것 대비 아토피, 천식 경험 정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② 일반아동·청소년 주거권을 위한 정부 의무 확인용 지표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확인해야 할 지표를 요약한 것이 표 IV-11이다. 대분류(영역)는 크게 세 개로, ①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② 주거비 적절성, ③ 점유의 안정성이다. 중분류는 공공임대주택의 적절성, 민간임대주택의 적절성, 장애아동 주거개량지원, 주거급여의 규모 및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 아동가구 긴급주거지원 정도 등 다섯 개이다. 지표는 총 11개로 제안하였으며, 지표체계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정부 의무 확인용 지표(일반아동·청소년)

대분류	중분류	지표
1.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1-1. 공공임대주택의 적절성	1-1-1.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아동가구에게 보급된 공공임대주택 비율
		1-1-2. 공공임대주택 거주 아동가구의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
	1-2. 민간임대주택의 적절성	1-2-1. 신규주택 건축 혹은 임대주택에 대한 건축법 위반에 대한 제재 (예, 불법 쪼개기 등)
		1-2-2. 구조성능환경기준 충족 제도 정비
	1-3. 장애아동 주거개량 지원 정도	1-3-1. 장애아동을 위한 필요설비 제공 가구 비율
		1-3-2. 장애아동을 위한 필요설비 제공 예산
2. 주거비적절성	2-1. 주거급여의 규모 및 비율	2-1-1. GDP대비 주거급여예산
		2-1-2. 주거급여 아동가구 혜택 비율
	2-2. 에너지 바우처 수급	2-2-1. 에너지 바우처의 아동가구 수급

대분류	중분류	지표
3. 점유의 안정성	3-3. 아동가구 긴급 주거지원 정도	3-3-1. 자연재난, 강제퇴거,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아동가구를 위한 예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3-3-2. 아동가구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

## (2) 시설거주 및 보호종료 아동·퇴소청소년 주거권 지표

### ① 시설거주 및 보호종료 아동·퇴소청소년 주거권 수준 파악 지표

아동학대, 가정해체 등 다양한 사유로 시설에 거주하거나, 보호가 종료되어 시설을 퇴소(예정)한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요약한 것이 표 IV-12이다. 대분류는 7개로, 일반아동·청소년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에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추가하였고 ‘주거지원 결정 시 보호종료아동·청소년의 의견 표명 및 참여 정도(주거지원제공자의 태도)’로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13개 중분류, 19개 지표를 선정하였는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쉼터 등 시설거주 시 방수기준, 면적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거주지 차별경험, 장애배려, 폭력 및 학대 경험, 수면방해, 아토피 등 천식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보호종료 또는 시설 퇴소로 인해 별도의 주거를 마련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청소년의 경우 주거비 부담 정도의 적절성(RIR), 잔여소득 주거비 과부담, 주택점유형태, 의견표명권을 지표에 포함하였다.

표 IV-12.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시설거주아동·청소년)

대분류	중분류	지표 (*는 보호종료아동·청소년 만 해당)	조작적 정의 및 자료원	
1.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1-1. 방수 기준	1-1-1. 침실당 인원 수	침실당 인원 수 / 시설평가조사 활용	
		1-1-2. 조용히 잠자고 공 부할 공간 확보정 도	조용히 잠자고 공부할 공간에 대한 주관 적 응답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1-3. 개인 물건 비치	전용 책걸상 존재여부, 전용 옷장과 서랍장 존재여부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2. 면적 기준	1-2-1. 아동 수 대비 전용 면적 비율	아동 1인당 아동 전용 공간 면적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3. 구조 성능 환경 기준	1-3-1. 자연재해위험, 냉 난방, 곰팡이, 쥐 나 바퀴벌레, 채 광, 환기 기준 미 달	각 항목에 대해 부정적으로 '매우 그렇다' 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3-2. 지하(반지하), 옥 탑 거주 아동*	지하(반지하) 혹은 옥탑에 거주한다고 응 답한 아동의 비율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3-3. 고시원, 여관, 비 닐하우스, 컨테이 너 등 비주택거주 아동*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 거주아동의 비율 / 본 연구의 조사결과, 주거실태조사 활용	
		1-3-4. 장애아동 거주 적 합성 여부	장애아동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환 경에 대한 주관적 응답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1-4. 필수 설비 기준	1-4-1. 최저주거기준상의 필수설비 기준 미 달 아동가구*	전용수세식화장실, 적응목욕실, 전용입식 부엌, 상하수도 중 하나라도 없다고 응 답한 아동의 비율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2. 주거비 적절성	2-1. RIR	2-1-1. 월소득대비 주거 비 부담 30% 이 상인 비율*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2-2. 잔여	2-2-1. 주거비 제외 소득 이 중위소득 50%	각 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 여 기준선 활용

대분류	중분류	지표 (*는 보호종료아동·청소년 만 해당)	조작적 정의 및 자료원
	소득 주거비 과부담	미만인 아동가구 비율*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3. 점유의 안정성	3-1. 주택점 유형태	3-1-1. 아동가구의 주택 점유형태(자가, 전세, 보증금 있 는 월세 등)*	아동가구의 자가비율, 전세비율 등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4.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	4-1. 거주지 차별 경험	4-3-1. 주거위치, 점유형 태, 시설거주에 따 른 차별 경험	각 문항에 대한 아동의 경험 중 차별경험 있음 비율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4-2. 장애 배려	4-4-1. 지역사회(주거지 주변)가 장애아 동이 거주하기에 적합한지 여부	지역사회 환경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지 에 대한 장애아동의 주관적 인식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5. 시민적 권리와 자유	5-1. 의견 표명권	6-1-2. 주거 결정 참여 정도*	주거지원 결정할시 보호종료아동(퇴소청 소년)의 의견 표명 및 참여 정도(주거지원 제공자의 태도)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6. 폭력 및 학대	6-1. 폭력 피해	6-1-1. 폭력 피해 및 목격 경험	시설 거주 아동의 폭력(신체적, 언어적, 성적) 피해 및 폭력 목격 경험 정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6-2. 학대 및 방임	6-2-1. 보호자나 구성원 의 학대 및 방임	시설 보호자 혹은 구성원의 학대 및 방임 정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7. 건강	7-1. 신체 건강	7-1-1. 수면방해	집 외부 소음과 빛, 집 구조와 생활환경 (함께 사는 사람)으로 인한 수면방해 경험 정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7-1-2. 아토피, 천식 등	곰팡이, 채광 불량 등에 대해 '매우 그럴 다' 응답 대비 아토피, 천식 경험 정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활용

② 정부 의무 확인용 지표(시설거주 및 보호종료아동·퇴소청소년)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쉼터 등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보호종료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확인용 지표 체계를 요약한 것이 표 IV-13이다. 대분류는 일반아동·청소년과 동일하게 세 개로, ①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② 주거비 적절성, ③ 점유 안정성을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중분류는 7개, 지표는 총 11개로 최종 선정하였다. 다만 일반아동·청소년과 달리 시설거주 및 보호종료아동·청소년의 경우 주거복지 상담, 보증금 마련 지원제도가 점유 안정성의 중분류로 포함되었고, 원 가정 이탈 아동을 위한 시설 정보 제공의 제도적인 보장 정도, 보호종료·쉼터퇴소(예정)자 주거복지 상담 이용 비율, 보호종료·쉼터퇴소(예정)자에 대한 주거복지 사례관리 비율, 보호종료·쉼터퇴소(예정)자 주거보증금 마련 지원제도(예, 자립정착 지원금의 적정성)가 최종 지표에 포함되었다.

표 IV-13. 정부 의무 확인용 지표(시설거주아동·청소년)

대분류	중분류	지표
1.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1-1. 시설 개선	1-1-1. 침실 당 인원 수를 줄이기 위한 시설 증축 혹은 개량 지원 예산
		1-1-2. 1인당 아동 전용 면적 증가를 위한 예산
		1-1-3. 아동 개인 물건 비치(전용 책걸상, 전용 옷장 및 서랍장)을 위한 예산
	1-2. 공공임대주택 입주	1-2-1. 보호종료아동·퇴소청소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비율
	1-3. 장애아동 주거개량 지원	1-3-1. 장애아동을 위한 필요설비 제공 시설 비율
		1-3-2. 장애아동을 위한 필요설비 제공 예산
2. 주거비적절성	2-1. 주거급여 수급	2-1-1. 주거급여 보호종료아동 수급 비율
	2-2. 에너지바우처 수급	2-2-1. 에너지 바우처의 보호종료아동·퇴소청소년의 수급 비율

대분류	중분류	지표
3. 점유의 안정성	3-1. 주거복지상담	3-1-1. 원가정 이탈 아동을 위한 시설 정보 제공 제도적 보장 정도
		3-1-2. 보호종료·쉼터퇴소(예정) 아동 주거복지상담 이용비율
		3-1-3. 보호종료·쉼터퇴소(예정) 아동 주거복지사례관리 비율
	3-3. 보증금 마련 지원제도	3-3-1. 보호종료·쉼터퇴소(예정) 아동 주거보증금 마련 지원제도(예, 자립정착 지원금의 적정성)

### 3. 소결 및 시사점

#### 1) 아동·청소년 주거권 개념 및 구성 요소 명확화

주거권은 사회권을 넘어 ‘인권’으로 인식되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 온 1991년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의 적절한 주거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 등 고유한 인권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주거권 실현이 요구된다.

아동·청소년에게 주거는 안전·보호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다른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기초적인 전제 요소이자 수단으로 아동의 권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에 대한 보다 우선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UN Habitat(2015)가 “아동의 경우 적절한 주거의 부재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포함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 전체적인 인권의 향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거빈곤으로 고통받는 아동의 경우 특별한 집단으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이나 측정을 다룬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 결국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념과 측정 요소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주거복지정책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은 주거환경을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의 측면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즉,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발달에 적합한 구조적·물리적 조건을 갖추고, 주거비가 다른 기초 수요의 충족을 저해할 정도가 아닌 적정 수준을 유지하며, 점유가 안정적이며,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및 인프라 접근이 용이'한 정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후속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주거권의 주요 요소라 할 수 있는 주거의 구조적·물리적 특성(주거시설과 주거규모), 주거비용, 점유 안정성, 지역사회환경의 세부구성요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 2)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표 개발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개념과 구성요소를 명확히 한다면 국가수준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개입 지점이 분명해진다. 이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수준을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확인해야 할 요소를 중심으로 지표(안)를 제안한 것도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일환이다. 즉, 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의 주거권 보장 상태나 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모든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을 향유하는 권리 주체라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은 부모(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일반아동·청소년과 구분하여, 아동학대·가정해체 등 다양한 사유로 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방안을 검토하였다. 개별 법률을 근거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이들 아동·청소년에게 또 다른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주거환경' 관점에서 시설환경을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시설은 18세에 달하거나 거주 연한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보건복지부, 2020; 여성

가족부, 2020), 별도의 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표 개발 과정에서 인권으로서 주거권 보장의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 구조(structure), 과정(process), 성과(outcome)의 틀을 기반으로 정책 목적의 부합성과 자료 확보의 용이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였다.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 과정과 관련하여, 연구진이 측정 목표와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여 예비지표라 할 수 있는 초안을 개발한 후 전문가 의견조사를 거쳐 최종 지표를 제안하였다. 최종 지표(안)는 일반아동·청소년과 시설거주아동·청소년 각각의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와 정부의 의무 확인용 지표체계로 구성하였다.

일반아동·청소년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이 경우 대분류(영역)로 ①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② 주거비 적절성, ③ 점유의 안정성, ④ 지역사회통합과 참여, ⑤ 폭력 및 학대, ⑥ 건강을 선정하였고, 중분류는 방수기준비율, 면적기준비율, 구조 성능환경기준 정도, 필수설비기준미달 비율, RIR, 주택점유형태, 원하지 않은 이사 경험, 지역사회 접근성 및 안정성, 거주지 차별 경험, 장애배려, 신체건강, 폭력 피해, 학대 및 방임으로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신체)건강은 아동·청소년 주거권의 성과(효과)지표로 볼 수 있는데 수면방해와 아토피, 천식 등의 지표를 포함하였다.

주거빈곤아동의 폭력 피해, 학대 및 방임 경험은 신속하고 집중적인 주거지원이 필요한 위기아동·청소년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일반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무 확인 지표체계는 대분류로 ①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② 주거비 적절성, ③ 점유의 안정성을, 중분류로 공공임대주택의 적절성, 민간임대주택의 적절성, 장애아동 주거개량지원, 주거급여의 규모 및 비율, 에너지 바우처의 혜택 정도, 아동가구 긴급주거지원 정도 등 다섯 개를 제시하였다.

시설거주아동·청소년의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는 일반아동·청소년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의 대분류에서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추가하여 일곱 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시민적 권리와 자유’는 주거 결정 참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결정 시 (보호종료)아동·청소년의 의견 표명 및 참여 정도(주거지원제공자의 태도)에 대한 측정을 제안하였다.

특히 시설거주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는 보호 중인 아동과 보호종료아동·청소년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보호종료아동·청소년에게만 해당하는 지표로 구분하였다. 후자의 경우 대부분 독립적인 주거를 유지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RIR, 잔여소득주거비과부담, 주택점유형태, 주거 결정 참여 정도를 지표에 포함하였다.

시설거주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확인용 지표체계는 점유안정성을 위한 주거복지 상담, 보증금마련지원제도를 포함하였다. 원 가정 이탈 아동을 위한 시설 정보 제공의 제도적인 보장정도, 보호종료·쉼터퇴소(예정)자 대상 주거복지 상담 이용 비율, 보호종료·쉼터퇴소(예정)자 대상 주거복지 사례관리 비율, 보호종료·쉼터퇴소(예정)자 주거보증금 마련 지원제도(예, 자립정착 지원금의 적정성) 수혜율을 지표로 제안하였다. 이에 후속연구를 통해 지표 산출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모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주거복지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관리할 필요가 있다.

### 3) 국가수준의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계획 수립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은 시민(civic child)으로서 차별 없고 균등한 주거복지를 향유하는 것이므로 아동시민권의 핵심 권리로 다루어져야 한다. 지난 해 10월에 발표된 관계부처합동 아동주거권 보장 대책은 분명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에도 주거정책과 지역사회개발정책이 분리되어 있고 대상별 맞춤 지원이 미흡하다는 등 정책수단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아동중심의 주거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분절적인 서비스 확충보다 중·장기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상별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 4) 보호종료청년 주거지원 방안 모색

그간 시설거주아동·청소년과 보호종료아동·청소년은 주거권 보장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된 집단이었다. 이에 ‘비주택거주’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설거주아동·청소년과 보호종료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별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설거주아동·청소년은 일반아동·청소년에 비해 박탈과 배제 경험 정도가 높고, 비적정주거 상태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 보다 우울·불안·박탈 정도가 중(重)하고 신체·정신·행동 관련 지표에서 취약한 상태임을 일부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일반아동·청소년과 달리 주거와 관련하여 어떤 차별과 격차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후속연구와 함께 시설환경이 아닌 주거환경의 관점에서 침실을 포함한 공간 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설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들의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통한 자립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보호종료청년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과 금융지원, 이주권 보장 등 정책수단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 — 제 V 장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 1. 제안배경
- 2. 추진과제



## 1. 제안배경

### 1) 주요 결과 요약

이 연구는 국가수준의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2차 자료 분석, 청소년 대상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의 주거경험과 주거지원 요구조사, 청소년쉼터 실무자 대상 현황조사,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임대주택에 입주한 청소년에 대한 면접조사,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AHP) 등 다각적인 분석을 활용하였다.

먼저 국내·외 선행연구와 자료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아동·청소년 주거권의 의미와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주거권 미보장 상태에 있는 아동가구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과 비교할 때 「주거기본법」 상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집행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 주거권의 개념과 접근관점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청소년 복지 및 통합지원 근거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빈곤예방법(약칭)」에 ‘주거방임’, ‘주거지원을 포함한 통합서비스’를 포함하여 국가의 개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2차 자료 분석은 주거권 미보장 상태에 있는 아동가구의 규모를 추정하

38) 이 장은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김승경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세희 교수(서울사이버대학교),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이 집필하였다.

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승인번호 제116031호)를 활용하였다. 특히 아동이 있는 가구의 과밀, 필수설비미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 최저주거기준미달, 비주택(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규모를 각각 확인하여 정책 목표 설정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세 번째로 청소년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조사는 확률표집방식에 따라 선정된 전국 초·중·고교 학생 약 6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유효표본은 총 5,914명이다. 본 조사 표본에서 초·중·고교생의 약 2.2%(약 8.9만 가구)가 주택의 종류나 집의 위치가 비적정 상태이며, 조사대상의 24.3%가 가족구성 대비 적정 방 수가 미달하였다. 전체의 약 2.3%(약 9.3만명)의 아동·청소년이 8세 이상인 여성의 형제 자매와 같은 방을 사용하였다. 이는 최소한의 침실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활하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최소 9만 명 이상임을 의미한다. 또한 상·하수도를 포함한 필수설비미달은 중·고교생의 2.8%, 약 11.3만 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적정주거집단, 비적정주거집단, 시설거주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주거환경에 따른 발달 정도와 사회배제 간의 유의미한 관계성이 확인되었다. 비적정주거집단의 경우 학대 경험, 집 위치로 인한 차별 경험이 많고, 채광과 곰팡이(습도), 해충, 소방차 진입 문제, 화재대비시설 부족, 화재 위험 측면에서 시설거주집단 보다 취약한 상태였다. 또한 이들은 적정주거집단에 비해 '친구를 집에 데려오기 창피하다'거나 최근 1년 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병원비, 주거비, 공과금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집 구조나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고 BMI가 걱정할 범주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삶의 만족도와 정신적 건강상태는 적정주거집단보다 양호하였다. 무엇보다 비적정주거집단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고 생애 박탈 경험은 유의미하게 높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도모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재차 확인하였다.

네 번째로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주거경험과 주거지원 요구조사에서는

원 가정에서 이탈하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주거권 미보장 상태에 있다고 규정하고, 이들의 주거와 관련된 생애경험과 지원요구를 파악하였다. 특히 그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일반 청소년과 발달 및 배제 상황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본 조사 표본에서 시설 청소년은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 자존감, 신체적 건강, 숙면 정도, 결석 일수, 학교생활 및 학교생활 만족도, 진로성숙도 등 신체·정신·행동 관련 지표에서 적정주거 뿐 아니라 비적정주거 상태에 있는 동년배 보다 더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아동박탈지수 1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결핍을 경험하였고, 아동·청소년의 기본 권리를 향유하는 정도 역시 다른 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거주 및 비적정주거 상태는 아동·청소년의 사회배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 요소이며,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은 인권 보호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쉼터 실무자 현황조사는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 대상 조사의 부가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시설의 주거여건을 평가하고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일시를 제외한 단기 및 중장기 쉼터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쉼터의 침실과 면적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대상에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을 포함하는 등 시설을 기준으로 한 차별을 없애고, 주거 관련 금융지원 범위를 「청소년 기본법」 상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여섯 번째로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후 주거지원을 받은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과정에서의 경험과 생활의 변화, 주거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추가적인 지원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가정 밖 생활기간은 모두 상이하였는데, 임대주택 입주 후 공통적으로 사생활이 보장 되는

개인 공간이 있다는 자체에 매우 만족하였고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을 기반으로 저축 등 각자의 진도에 맞춰 자립준비를 해 나가고 있었다. 특히 쉼터 퇴소 후 3개월 이상 고시원에서 지낸 후 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부여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주거경험을 호소하였고, 주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입주 이후에도 주거와 관련된 소소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를 포함하여 매입·건설 등 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차별 없이 부여하고,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사, 주거복지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e) 같은 관계기반의 주거지원 서비스의 확대 및 제도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는 아동·청소년·주거복지정책 분야 학계·현장 전문가 12인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서면으로 실시하였으며, 관련 현안과 쟁점을 파악하고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3개 정책영역에 따른 7개 정책과제와 14개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중요도를 기준으로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를 제안하였다. 요약하면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주거권의 개념과 접근 관점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주거권 보장 요소를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및 적정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기존의 주거복지제도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고려(침실분리원칙 적용 등)와 국가수준의 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미성년자에 대한 시설보호는 그 자체가 주거권이 미보장된 상태이므로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입지 및 환경 기준 정비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수단과 구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상에서 언급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 자료 및 주요 내용과 정책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요약한 것이 표 V-1이다.

표 V-1. 주요 분석결과 요약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정책추진방향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주거권의 의미와 주거권 보장 요소 고찰, 아동·주거권 지표(안) 구축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li> <li>•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론적 과제 검토</li> <li>• 2차 자료 분석(국토부, 2019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을 통해 주거권 미보장 18세 미만 아동가구 규모 추정(과밀, 필수설비미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 최저주거기준미달, 비주택 거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비주택 거주가구 보호, 강제퇴거 기준 등 입법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li> <li>•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 개정 : 침실분리원칙 집행력 강화, 구조성능환경기준을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고 집행력 강화 필요 ※ 미국 HQS, 영국 HHSRS 참조</li> <li>• 「아동복지법」, 「아동빈곤예방법(약칭)」 개정: 주거빈곤 아동·청소년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근거 마련</li> </ul>
청소년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 5,914명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과 주거권 보장실태 분석</li> <li>• 초·중·고교생의 2.2%(약 8.9만명)가 주택의 종류나 집 위치가 비적정 상태, 조사대상 1/4인 24.3%가 가족구성에 비해 방수 부족, 전체의 2.3%(9.3만명)가 8세 이상 이성 형제자매와 같은 방 사용, 상하수도를 제외한 필수설비 미달가구는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3.1%(12.5만명), 상하수도를 포함한 필수설비미달가구는 전체 초·고등학생의 2.8%</li> <li>• 임대주택공급 시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침실분리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확대 필요</li> <li>• 비적정주거집단은 집 위치로 인한 차별 경험이 많고 채광, 곰팡이(습도), 해충, 소방차 진입 문제, 화재대비시설 부족, 화재 위험 측면에서 시설거주집단보다 취약한 상황</li> <li>• 적정/비적정/시설거주 집단 간 주거환경의 격차와 사회배제 간 유의미한 관련성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가구의 구조성능환경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지원 확대(침실분리기준 적용)</li> <li>• 빈곤할수록 주거비, 공과금, 의료비 등 부담이 크고 아동의 결식 경험도 많아 빈곤아동가구에 대한 통합지원이 일환으로 주거지원 강화 필요</li> <li>• 아동·청소년의 사회배제 예방을 위해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규모 파악 및 감소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li> <li>• 비적정주거 아동이 학대 경험이 높아 주거지원 후 주거상향 노력을 하지 않거나 비위생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보호자에 대해 '주거방임' 개입 및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강화</li> <li>•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국가수준의 지표 개발 및 관리 필요</li> </ul>
청소년쉼터 청소년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시점 현재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 294명(유효표본)의 생애 주거경험과 주거지원 요구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쉼터 청소년에 대한 관점 전환 : 우범소년→우선 주거지원 대상</li> <li>•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 주거</li> </ul>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정책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쉼터의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82.1%가 '사용하는 방식 불편', 70.3%가 '사생활 보장이 되지 않음' 응답</li> <li>• 현 쉼터 입주 전 가정 밖 생활 기간은 평균 35개월(최장 248개월)로, 아동·청소년시설 평균 28.8개월, 노숙 평균 1개월에 달함</li> <li>• 쉼터 퇴소 후 지원요구는 주거지원(임대주택 등), 생활지 지원, 금전관리 순이며, 거주지 선택 시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33.2%)</li> <li>• 본 조사표본에서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은 성별(남), 쉼터에서 숙면 여부, 쉼터에서 사생활 보장 여부, 박탈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을 포함하여 자립지원 명문화,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명칭 변경</li> <li>• 동법 시행령 별표3 개정 :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기준의 '침실' 기준에 최대 정원 명시</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 : 특정 소방대상물 제외 노유자시설에 소숙사 형태의 쉼터 포함(아동·청소년복지시설 간 차별 개선)</li> <li>• 시설 퇴소 청소년 주거지원 시 탈시설화 수단 확보 : '주거우선지원'으로 자립지원 패러다임 전환</li> <li>•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개정 : 보호종료아동 등 포함</li> </ul>
청소년쉼터 실무자 의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중장기)청소년쉼터 60개소 대상</li> <li>• 청소년쉼터 설치기준 및 주거여건 평가,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관련 의견 수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밀 해소, 사생활 보호를 위해 쉼터의 침실 기준(2인 이하) 및 면적 기준 개선(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지자체 책무 규정)</li> <li>•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강화(금융 지원은 24세 이하로 확대)</li> </ul>
쉼터퇴소 후 주거지원 청소년 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임대주택에 입주한 청소년 8인 대상 면접조사</li> <li>• 주거지원 이후 생활변화, 주거지원 과정에서의 경험과 지원 요구에 대한 의견 수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생활 보장이 되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립준비 기반 마련</li> <li>• 주택 선정, 계약 과정, 입주 후 하자 보수 등 관계기반 주거지원 확대</li> <li>• 주거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쉼터 퇴소 후 3개월 이상 고시원에서 지내야 하는 과정 폐지 필요</li> </ul>
전문가 의견조사 (A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주거복지정책 분야 학계·현장 전문가 12인을 대상으로 주제 관련 쟁점과 정책과제의 우선순위 파악(AHP, 총 2회 실시)</li> <li>• 최종 3개 정책영역에 따른 7개 정책과제, 14개 세부추진과제 도출</li> <li>• 14개 과제의 중요도 기준 우선순위는 ① 아동·청소년 주거권 접근관점 확립, ② (보편적·차별적)주거권 개념 정립, ③ 최저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개입 필요성을 전제로, 주거권 보장 요소 구체화 및 실행력 확보 필요</li> <li>• 최저주거기준 상향 조정 및 구체화</li> <li>• 주거권 보장 대상 아동·청소년의 범위에 시설거주 및 보호종료아동까지 포함 필요</li> <li>• 주거빈곤 아동·청소년 발굴을 위</li> </ul>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정책추진방향
	거 및 적정주거 기준 재설정 등의 순임 • 반면, ⑭ 복지시설 입지 및 환경 기준 정비, ⑬ 정부의 의무 확인용 지표 개발·관리, ⑫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 개발·관리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 하위 과제로 파악됨	해 최저주거기준 활용, 공공임대주택 배정 시 소득·재산기준 이외 가구원 수 및 관계 고려(최저주거 기준의 침실분리원칙을 적용, 다자 녀가구 내 자녀의 성별, 연령 고려 등)
* 출처: 저자 작성		

## 2) 정책적 시사점과 추진방향

본 연구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목적에 따라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정책, 그리고 청년층 대상 주거지원 정책을 일부 포함하여 추진과제를 검토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사회배제 예방을 위한 주거권 보장 정책방안(안)을 마련하고(그림 V-1),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과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특히 정책방향의 비전을 ‘모든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 보장’으로 설정하고 목표는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청소년의 가구 비율 감소,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대상 및 공급 규모 확대로 설정하였다. 2019년 기준 아동이 있는 가구 대비 약 8%(약 46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미달에 해당하므로 2년 간 0.5% 감소를 목표로 할 경우 매년 1.5만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를 줄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다자녀가구유형 공공임대주택은 매년 3~4천 가구 수준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정 밖 청소년을 주거 우선지원 정책대상으로 규정하여 차별을 해소하고 지원주택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아동·청소년 주거권 개념 정립과 접근 관점 확립, 정책 집행력 강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기조를 주거우선지원으로의 전환으로 설정하였고, 추진과제는 2절에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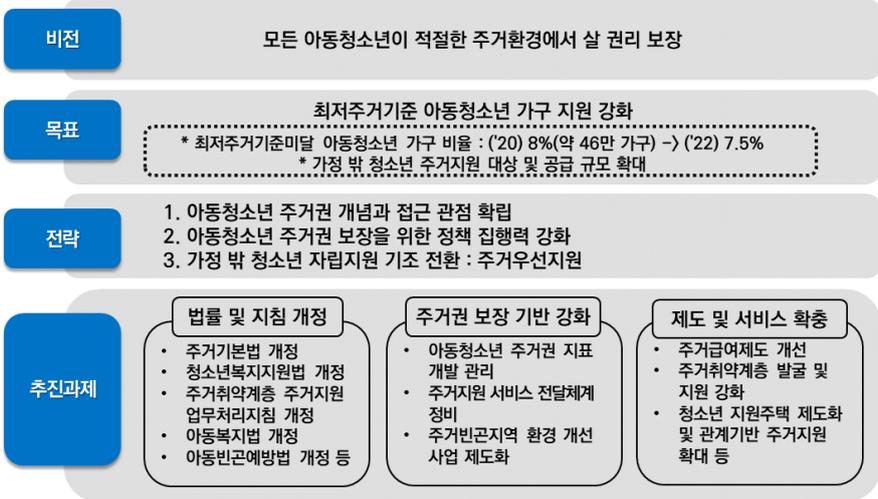


그림 V-1. 아동·청소년의 사회배제 예방을 위한 주거권 보장 정책방향(안)

(1) 아동·청소년 주거권 개념 정립과 접근 관점 확립

먼저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개념을 정립하고 접근관점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청소년이 주거권의 권리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정책대상으로서 주거지원을 제공해야 할 근거를 토대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단 확보가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제35조와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 제16조(주거약자 지원),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에서 모든 국민이 주거권을 지니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지난해에는 관계부처합동 ‘아동 주거권 보장 대책’도 마련되었지만 ‘세대원’의 지위에 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원 가정에서 이탈하여 시설에서 거주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주거환경이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은 ‘주거약자’이며 동시에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는 주거지원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affirmative action)'가 필요하다는 인식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적절한 주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이들이 속한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주거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주거상향을 하지 않는 보호자(친권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주거방임) 사안에 준하여 국가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만성적인 주거빈곤이 사회배제로 귀결되지 않도록 빈곤가정 아동의 주거환경에 제도적 개입이 요구되므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아동의 주거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이 있는 주거빈곤 가구와 주거불안 상황에 있는 위기청소년을 발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최저주거기준에서 비현실적인 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구조성능환경기준을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여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그림 V-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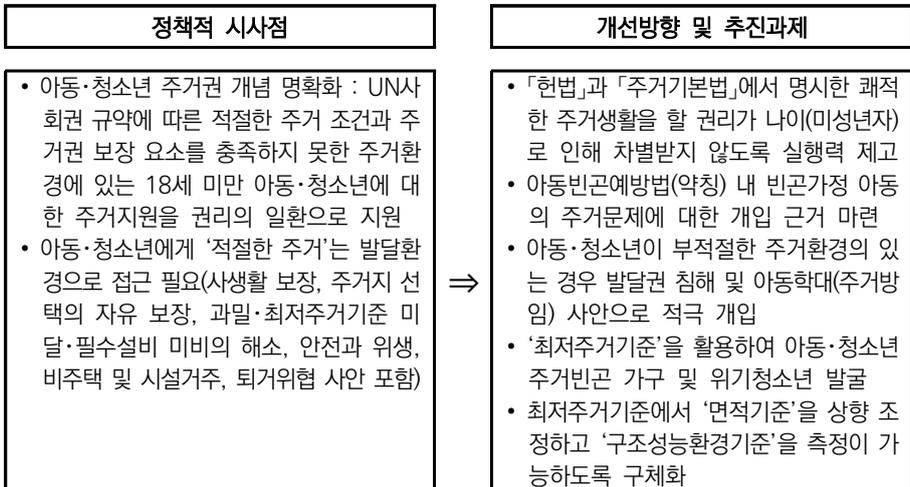


그림 V-2.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1)

## (2)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집행력 강화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주거환경에서 ‘구조성능환경기준’의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측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고 집행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가 주거상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존 주거지원제도의 접근성을 제고하거나 주거급여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 주거상황을 하지 않을 경우 ‘주거방임(아동학대)’ 사안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주거환경은 도시와 농산어촌 등 지역 간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결국 개별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병행하면서 농산어촌 지역의 주거빈곤 아동·청소년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개발 및 주택정책에서 아동의 권리를 반영하고(아동친화도시사업 확대 등),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정보 제공 및 주거상황을 지원하는 ‘맞춤형 밀착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법제 개선과 집행력 강화 방향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그림 V-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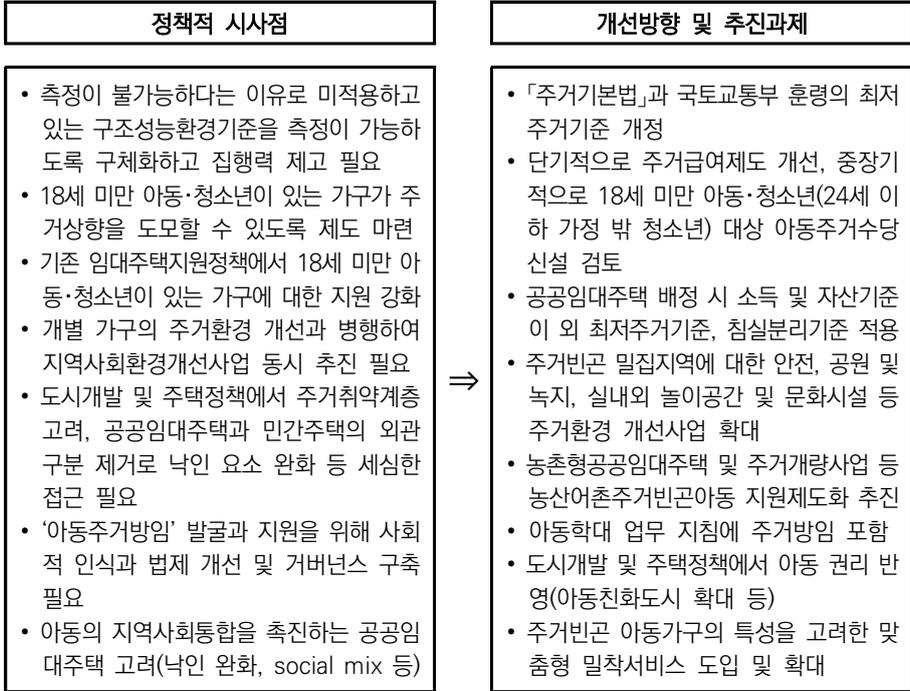


그림 V-3.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2)

(3)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기조 전환 : 주거우선지원(Housing First)

원 가정에서 이탈하여 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대안양육 하에 있거나, 비주택 또는 주거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쉼터에서 생활하거나 가출상황에 있는 청소년은 비행·우범소년이 아니라 주거 우선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이며, 자립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주거우선지원’으로 정책 기조의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먼저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가출청소년과 시설보호 중인 가정 밖 위기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을 포함하여

자립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동법에서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기능과 역할의 일환으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언급하고 있을 뿐 시설 입소 이외의 주거지원과 자립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다. 특히 쉼터에서 몇 년 간 장기간 거주하고 퇴소를 하더라도 ‘주거취약계층’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고시원 등에서 3개월 이상 생활해야 하는 실태를 개선하고, 시설을 포함한 임시 주거를 지양하고, 안정적·연속적인 주거대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다행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해 아동주거권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과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청소년쉼터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우선입주자격이 있다. 다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상 지원대상에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를 포함할 경우 매입, 전세임대 뿐 아니라 건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원도 중복 수혜없이 최적의 지원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시설은 아동·청소년에게 ‘집’이므로 시설기준이 과밀, 사생활보장 등 기본적인 주거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제반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 간 설치기준, 시설 퇴소 즉, ‘보호종료’ 이후 임대주택 지원 신청 자격 부여 등 서비스 간 편차 해소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주거 불안 위기청소년에게 시설 입소를 전제로 한 상담, 학업,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는 ‘All or Nothing’ 방식을 지양하여야 한다. 즉 시설에 입소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포함한 주거지원과 일체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상황과 욕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주거대안을 권리로 제공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시설생활이 적합하지 않거나 입소를 원하지 않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supportive house) 등 실질적인 주거대안을 강구하고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을 요약한 것이 그림 V-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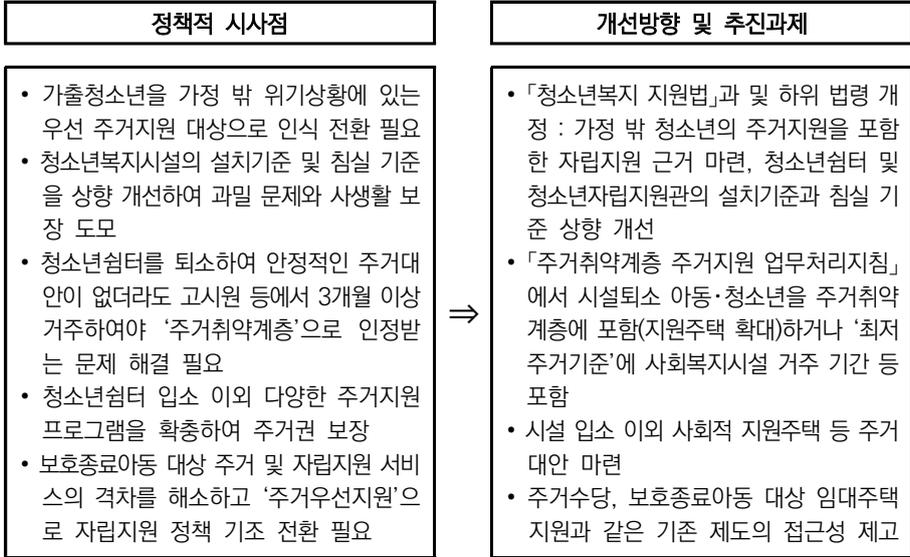


그림 V-4.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3)

## 2. 추진과제

### 1) 법률 및 지침 개정

표 V-2. 법률 및 지침 개정 관련 세부추진과제(안)

세부추진과제	예산 사업	법률 제개정	신규 개선	추진시기		주무부처 (지자체 포 함)
				단기 (2년)	중장기 (5년)	
1-1. 「주거기본법」 개정		○	신규	○		국토교통부
1-2.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	신규	○		여성가족부
1-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		○	신규	○		국토교통부
1-4. 「아동복지법」 개정		○	신규	○		보건복지부
1-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신규	○		보건복지부

(1) 「주거기본법」 개정 : 주거약자 범위 확대 및 주거지원에 따른 집행력 제고

모든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에서 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거기본법」 상 ‘주거약자’의 범위에 아동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률 상 주거약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인데 미성년자의 경우 주거환경을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을 주거 복지정책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주거약자로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환경기준을 구체화하여 집행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쪽방이나 고시원, 지하, 불법 쪼개기 된 원룸 등 최저주거에 미달하는 거처를 단계적으로 폐쇄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각종 주거 지원을 받아도 아동·청소년이 취약한 곳에서 거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주거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을 받은 가구의 주거수준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표 V-3).

표 V-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우선지원 근거 마련(안)

「주거기본법」 현행 (요약) <sup>1)</sup>	「주거기본법」 개정(안)
<p>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6. 생략</p> <p>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p> <p>8.~9. 생략</p>	<p>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좌동</p> <p>1.~6. 생략</p> <p><b>7. 장애인·고령자·아동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b></p> <p>8.~9. 생략</p>
<p>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 건설 인·허가 등 건설사업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예외로 한다.</p> <p>④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우선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18조 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p><b>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을 받은 가구의 주거수준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p>

\* 출처: 1) 법제처 「주거기본법」 <http://www.law.go.kr> 인출일 : 2020.2.6

이에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지원이 필요한 최소 18세 미만 아동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계획 및 주택 공급 등 법률이 정하는 주거지원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다만 ‘주거지원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합당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최저주거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면적 등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고시원이나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포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최소 주거면적을 넓히고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의 과밀(overcrowding)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반드시 4년 이내에 최저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이주해야 하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주거지원을 받은 경우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있는 가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구조성능환경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부가 주택 공급 시 사전에 점검하여 ‘적정주거(decent home standard)’에 부합하는 곳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택에 문제와 하자가 있을 경우 사용을 금지하는 등 긴급조치나 모니터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표 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성능환경기준의 취지에 따라 점검 영역을 크게 쾌적성, 안전성, 접근성으로 구분하고 총 10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는데, 각 영역별 총점과 전체 총점이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평가하여 적정주거의 최소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표 V-4. 구조성능환경기준 점검 항목(안) : 아동·청소년의 안전·위생을 중심으로

기준	점검요소
1.쾌적성	① 사생활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세 이상의 아동이 다른 성별의 구성원과 침실을 공유하는가?</li> <li>• 학령기 아동의 경우 책상(을 놓을 공간)이 있는가?</li> <li>• 개인별 수납공간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가?</li> <li>• 내외·부로부터의 방음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li> <li>• 방의 면적 대비 인원수가 적절한가?</li> </ul>
	② 채광/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간(11시~2시)에 인공조명 없이 적정조도를 유지하는가?</li> <li>• 낮 시간(1시~3시)에 적정조도 이하를 유지하는가? (빛 공해)</li> <li>• 침실, 거실, 부엌, 욕실에 정상 작동하는 조명기구를 갖추었는가?</li> </ul>
	③ 냉방/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난방 설비와 장치(장비)가 마련되어 있고 적정 냉·난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절한 수준인가?</li> <li>• 여름에 실내 온도가 최고 28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는가?</li> <li>• 겨울에 실내 온도가 최저 18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가?</li> </ul>
	④ 습도/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습도와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곰팡이, 해충 등이 없는가?</li> <li>• 부엌과 욕실에 환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li> <li>• 침실에 창문이 있는가?</li> <li>• 곰팡이가 벽면 10% 이상인가?</li> <li>• 쥐 등 설치류가 집안에 들어오는가?</li> <li>• 낮 시간에도 바퀴벌레가 관찰되는가?</li> </ul>
2.안전성	⑤ 침입/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 및 보안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가?</li> <li>•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창문은 잠글 수 있는가?</li> <li>• 외부 현관문은 안전한 잠금장치가 있는가?</li> </ul>
	⑥ 균열/자재/낙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열, 낙상, 붕괴 등의 위험이 없고 납성분 페인트 사용 등 구조와 자재 전반에 문제가 없이 적절한가? • 석면을 사용하였는가?</li> <li>• 천장, 벽, 바닥에 심한 요철, 기울어짐, 큰 구멍, 표면 훼손, 찌그러짐, 유실 등의 손상이 있는가?</li> <li>• 집 내외부의 계단은 낙상의 위험이 있는가?</li> </ul>
	⑦ 화재/감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감전 위험이 없고 화재경보기 등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li> <li>• 건물에 화재를 대비한 비상구를 갖추었는가?</li> </ul>
	⑧ 상수도/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물 공급)와 화장실, 부엌, 욕실 등 가사 및 생활공간의 위생상태(취사·쓰레기·오염 등)가 안전한가?</li> <li>• 집 주변에 쓰레기가 심각하게 적재되어 있는가?</li> </ul>
3.접근성	⑨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기에 적절한 입지조건인가?</li> <li>• 아동·청소년의 보행안전이 보장되었는가?</li> </ul>
	⑩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나 관공서, 의료기관, 문화시설 등 서비스 접근이 용이한가?</li> </ul>

\* 출처: 저자 작성

\* 주: 각 요소별 0점(위험)부터 10점(안전)까지 부여하고 영역별 총점과 함께 총점을 기준으로 판단

## (2)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 위기청소년 주거지원 근거 마련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위기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동법 제31조에서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기능 중 일부로만 포함되어 있을 뿐 주거지원을 포함한 자립지원의 세부 내용이 부재하다. 즉, 현재 원 가정에서 이탈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수단이 ‘시설 입소’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에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선언적인 측면에서부터 정책기조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청소년 보호·복지정책 영역에서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사실상 부재하고 ‘탈출’인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실태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지원, 자립지원, 사후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각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지원대상을 시설 퇴소 이후 청소년 뿐 아니라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자립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대와 폭력 등의 사유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제2항 참조). 다만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을 원하지 않지만 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위기청소년이 주거 불안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주거지원과 연장 보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 지원을 목적으로

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표 V-6, 7, 8).

지원대상의 명칭은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를 모두 포함하고 주거지원 등 지원내용과 지원기관(agency)이나 협의체 설치·운영,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례를 제정·시행하지 않는 대다수 지역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주거지원 등을 보편적인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앞서 법률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현행 청소년쉼터는 아웃리치와 청소년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주택이 아닌 상가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침실 기준은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이외 ‘인실’ 규정이 없다. 따라서 최소 현행 시설 설치 기준에서 상가건물을 단계적으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침실은 ‘2인 이하’를 단계적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및 시설 평가에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쉼터는 이용시설이 아닌 생활시설이며, 생활시설은 입소자에게 제2의 집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청소년쉼터의 시설 설치 및 침실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법률 개정(안)을 요약하면 표 V-5와 같다.

표 V-5. 위기청소년 주거지원 근거 마련(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현행 (요약) <sup>1)</sup>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p>제2조(정의) 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신설〉</p> <p>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p> <p>1.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에 대하여...(생략)</p> <p>2. 청소년자립지원관 :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p> <p>3. ~ 4. (생략)</p> <p>제32조의2(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p> <p>(생략)</p>	<p>제2조(정의) ① 좌동</p> <p>1. ~ 4. (현행과 같음)</p> <p>5. <b>“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b></p> <p>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주거지원, 자립지원, 사후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1. 주거지원 : <b>청소년쉼터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시설에 의한 보호, 임대주택 공급, 임시주거비 지원,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원</b></p> <p>2. 자립지원 : <b>의료·학업·취업지원, 자산형성,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지원</b></p> <p>3. 사후관리 : <b>주거·자립지원 이후 심리·정서 등 지원</b></p> <p>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p> <p>1. 청소년쉼터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p> <p>2. <b>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쉼터 등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거나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청소년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자립지원,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설</b></p> <p>3. 좌동</p> <p>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연장 보호) 가정 밖 청소년이 학대와 폭력 등의 사유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청소년쉼터를 계속 이용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거지원 등 연장 보호하여야 한다.</p>

\* 출처: 1) 법제처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www.law.go.kr> 인출일 : 2020.11.30.

표 V-6. 지자체 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 현황(조례 시행일 기준)(1)

지자체	시행일 (담당부서)	지원대상 명칭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내용
경상 남도	2017.02.09. (여성가족 청년국 여성정책과)	퇴소아동 퇴소 청소년 보호조치 종료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 시책 수립·시행</li> <li>•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사업(금융컨설팅), 인성교육 지원사업, 치료 및 재활 등 건강 프로그램,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후견인 제도 및 후원 등 지원사업</li> <li>• 자립지원센터 설치</li> <li>• 보호기간 연장</li> </ul>
서울 특별시 노원구	2018.01.05. (체육청소년과)	퇴소아동 보호조치 종료아동 퇴소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금융컨설팅 포함), 인성교육지원, 치료 및 재활 등 건강프로그램,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후견인 제도 및 후원)</li> <li>• 자립지원센터 설치</li> <li>• 협의회 설치(자립지원 기본방향, 복지서비스 발굴 등)</li> </ul>
경기도 수원시	2018.04.02. (청년정책관)	퇴소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및 보호조치 종료된 만18세 이상</li> <li>•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금융컨설팅 포함), 인성교육지원, 치료 및 재활 등 건강프로그램,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후견인 제도 및 후원)</li> <li>• 보호기간 연장 / 청년자립지원협의회 설치(자립자활지원 기본방향, 자립정착금지원액, 안정적 주거환경 지원 등에 관한 사항 협의) / 협의회 구성</li> </ul>
전라 북도 군산시	2019.02.15. (아동청소년과)	퇴소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보호조치가 만료된 만18세 이상</li> <li>•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시책과 지원사업 발굴·시행(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금융컨설팅),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 치료 및 재활 등 건강프로그램, 정서·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후견인 제도 및 후원, 그 밖의 지원사업)</li> <li>• 보호기간 연장 / 청년자립지원협의회 설치(상동)</li> </ul>
부산 광역시 동래구	2019.05.24	퇴소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보호조치가 만료된 만18세 이상</li> <li>•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금융컨설팅),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 치료 및 재활 등 건강프로그램, 정서·심리 지지기반 조성·지원, 후견인 제도 및 후원, 그 밖의 지원사업</li> <li>• 청소년자립지원위원회 설치(자립자활지원 기본방향, 자립정착금지원액, 안정적 주거환경 지원, 그 밖의 사항 의결)</li> </ul>

\* 출처: 법제처 자치법규(조례·규칙) <http://www.law.go.kr> 인출일 : 2020.11.30.

표 V-7. 지자체 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 현황(2)

지역	시행일 (담당부서)	지원대상 명칭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9.06.04	퇴소아동 퇴소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책 및 지원사업(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금융컨설팅), 인성교육 지원, 치료 및 재활 등 건강프로그램, 정서·심리 지지기반 조성·지원, 후견인 제도 및 후원, 그 밖의 지원사업)</li> <li>• 보호기간 연장(아동복지법 상 연장보호 아동 대상)</li> <li>• 시행규칙 제정(2019.9.10. 시행)</li> <li>-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시설에 5년 이상 거주, 시설 퇴소 후 1년 미만 대상 규정</li> <li>- 주거지원은 전세보증금 지원, 1인당 최대 1천만원(1회)</li> <li>- 지원금 사용 제한(지원금을 지원받은 청소년은 용도를 2년 동안 전세보증금으로 사용, 단 2년 경과 후 자립정착을 위한 생활자금으로 사용 가능)</li> </ul>
광주광역시	2019.10.15	퇴소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조치 종료 또는 시설(청소년복지시설 포함)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li> <li>• 가출청소년을 7일 범위에서 일시보호하는 청소년쉼터 제외</li> <li>• 지원계획(매년) 수립 및 차년도 지원계획 환류 / 실태조사</li> <li>•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사후관리체계 구축·관리, 자립생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주거비 등 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생활비 등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지원, 문화·예술·체육행사, 치료 및 재활 등 건강증진 사업, 자원 연계, 후견인 제도 및 후원 등</li> <li>• 자립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li> <li>• 자립지원센터 설치(자립지원통합시스템 구축·운영, 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 상담, 주거지원, 생활 및 교육지원, 인권·권리 옹호 및 법률지원, 사례관리 및 자립수준 평가, 시설종사자 자립지원 교육, 기관 간 연계·협력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li> <li>• 수익사업 및 수익금 사용</li> </ul>
서울특별시	2020.07.16. (평생교육과)	퇴소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보호조치 종료 청소년</li> <li>• 퇴소청소년의 자립과 자활 시책 수립·시행(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금융컨설팅 포함), 문화·예술·체육행사지원, 인성교육지원, 치료 및 재활 등 건강프로그램,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후견인 제도 및 후원, 그 밖의 지원사업)</li> <li>• 자립지원센터 설치·운영</li> <li>• 실태조사 실시 / 보호기간 연장 / 협의체 구성·운영</li> </ul>

\* 출처: 법제처 자치법규(조례·규칙) <http://www.law.go.kr> 인출일 : 2020.11.30.

표 V-8. 지자체 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 현황(3)

지역	시행일 (담당부서)	지원대상 명칭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내용
경기도	2020.05.19.	퇴소아동 퇴소 청소년 보호조치 종료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지원 기본계획(매 5년) 수립(자립지원 기본방향, 고용 및 직업훈련,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li> <li>• 지원사업 발굴·시행(자립정착금 지원 및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역량·자질에 맞는 교육·직업을 갖기 위한 지원사업,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인성교육 지원, 치료 및 재활 등 건강프로그램, 정서·심리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후견인 제도 및 후원, 그 밖의 지원사업)</li> <li>• 보호기간 연장</li> <li>•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 설치</li> </ul>
경상 남도 창원시	2020.07.01. (보육청소년과)	퇴소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쉼터청소년의 자립과 자활 지원</li> <li>• 자립정착시책, 주거용전세주택, 취업능력계발시책, 문화예술체육행사, 인성교육시책, 치료 및 재활시책, 쉼터의 관리 운영, 그 밖의 시책 등</li> <li>• 창원시 자립자활 청소년 지원협의회 설치</li> </ul>

\* 출처: 법제처 자치법규(조례·규칙) <http://www.law.go.kr> 인출일 : 2020.11.30.

### (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와 가정위탁아동, 이 외 소년 소녀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은 LH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보호종료아동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전세주택이나 부분전세주택 가운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쉼터 퇴소자는 보호종료아동에 준한 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이 아니다. 다만 청소년쉼터 퇴소자 중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자 할 경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신청이 가능한데, 문제는 청소년쉼터에서 몇 년에 걸쳐 장기 거주하더라도 ‘주거취약계층’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고시원 등에서 3개월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아동 주거권 보장 종합대책’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퇴소자에게도 LH소년소녀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시설 퇴소(예정) 아동·청소년을 ‘주거취약계층’에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다. 다만 지원대상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퇴소(예정) 아동·청소년으로 국한할 경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지자체장(시·군·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 진입 범위를 넓히고, 위원회 등에서 지원대상을 선정·추천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안)을 요약한 것이 표 V-9이다.

표 V-9.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현행 (요약) <sup>1)</sup>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입주대상자) ① 이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사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나,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통보한 범죄피해자에 한한다(이하 입주대상자)</li> <li>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쪽방</li> <li>나. 고시원, 여인숙</li> <li>다. 비닐하우스</li> <li>라. 노숙인시설</li> <li>마. 컨테이너, 움막 등</li> <li>바. PC방, 만화방</li> <li>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li> </ul> </li> <li>2.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자치구단체장, 사회복지법인, 운영기관이 등이 추천한 사람</li> <li>3.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3조(입주대상자) ①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좌동</li> <li>가. ~ 사. 좌동</li> <li>아.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서 규정한 사실을 토소한 아동·청소년(예정자 포함) 가운데 시·군·구청장이 추천한 자</li> <li>2. 좌동</li> <li>3. 좌동</li> <li>4. <b>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24세 이하의 청소년</b></li> </ul> </li> </ul>

\* 출처: 1) 법제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http://www.law.go.kr> 인출일 : 2020.2.10

#### (4) 「아동복지법」 개정 : 주거방임 근거 마련 등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주거 관련 법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법에도 ‘주거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아동복지법」과 하위법령에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제37조(통합서비스)에 주거지원을 명시하여야 한다(표 V-10).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의 개념에 ‘주거방임’을 포함하여 보호자의 일방적인 선택에 따라 주거환경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대다수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적 지원의 집행력과 효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보호자(친권자)의 개인적 욕구와 결함으로 인해 아동을 위한 공적 주거지

원을 거부하거나, 주거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주거상향 의지가 없는 경우 동법 제2조의 기본 이념인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호자의 행위를 제재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책무를 이행하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법률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상 물리적 방임에서 주거방임을 분리하거나 판단기준을 보강하고, ‘주거방임가정 서비스 패키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표 V-11).

표 V-10.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에 주거지원 포함(안)

「아동복지법」 현행(요약) <sup>1)</sup>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li> </ul> <p>②~③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b>치료, 주거 등을</b>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li> </ul> <p>②~③ 생략</p>

\* 출처: 1) 법제처 「아동복지법」 <http://www.law.go.kr> 인출일 : 2020.11.30.

표 V-11. 주거방임에 대한 개입근거 마련(안)

「아동복지법」 현행(요약) <sup>1)</sup>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조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조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b>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이후에도 아동을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방임에 해당한다.</b></li> </ul>

\* 출처: 1) 법제처 「아동복지법」 <http://www.law.go.kr> 인출일 : 2020.11.30.

(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아동주거 문제 규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은 아동의 빈곤과 사회배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개별 법률 가운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주거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수준의 개입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법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빈곤아동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조항 전반에 ‘주거’를 포함하고, 위원회 구성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이 필요하다(표 V-12).

표 V-12. 아동의 주거빈곤 예방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요약) <sup>1)</sup>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i> <li>•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 생략</li> <li>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li> <li>•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교육·문화 등의 지원 등(생략)</li> <li>•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li> <li>•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li> <li>•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li> </ul> </li> <li>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목적) ----- <b>문화·주거 등의</b> 분야에서----</li> <li>• 제3조(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 생략</li> <li>3. 빈곤아동이란---- <b>문화·주거 등의</b> 격차를----</li> <li>•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b>문화·주거 등의</b> 지원 등(생략)</li> <li>• 제5조의2(실태조사) ① --- <b>문화·주거 등의</b> 기본적인 욕구 ----</li> <li>•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b>문화·주거 등</b> 지원----</li> <li>•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li> </ul> </li> <li>1. --- 여성가족부장관, <b>국토교통부장관</b></li> </ul>

\* 출처: 1) 법제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 인출일 : 2020.11.30.

## 2) 주거권 보장 기반 강화

표 V-13. 주거권 보장 기반 강화 관련 세부추진과제(안)

세부추진과제	예산 사업	법률 재개정	신규 개선	추진시기		주무부처 (지자체 포 함)
				단기 (2년)	중장기 (5년)	
2-1.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관리	○		신규	○		국토부 복지부 여가부
2-2. 주거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		개선		○	국토부 복지부 여가부
2-3. 주거빈곤지역 환경 개선 사업 제도화	○		신규		○	국토부

### (1)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관리

앞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표(안)로 ① 아동·청소년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 ② 정부의 의무 확인용 지표로 구분하고, 각각 일반아동·청소년용과 시설거주 및 보호종료아동청소년용으로 구분하여 개발·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일련의 연구 절차를 거쳐 도출한 지표(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① 일반아동·청소년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 영역은 크게 6개로, 18개 세부지표(안)을 제안하였다. 18개 지표 중 9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파악이 가능한 지표이며, 나머지는 본 연구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생산해야 할 지표이다. 일반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에 대한 정의와 자료원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표 V-14이다.

표 V-14.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안)(일반아동·청소년)

영역		지표 정의 및 자료원
대분류	중분류	
1.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1-1. 방수기준미달	1-1-1. 최저주거기준상 침실분리기준 충족 여부 <sup>1)</sup> ※ 아동 연령, 성별, 구성원 관계를 고려한 침실기준 미달 아동 비율
		1-1-2. 조용히 자고 공부할 공간 확보 정도 <sup>1)</sup> ※ 이성 형제자매와 함께 방을 사용하는 아동 비율(초3 이상)
	1-2. 면적기준미달	1-2-1. 최저주거기준 면적 충족 여부(전용면적 미달 아동가구비율 <sup>1)</sup> )
	1-3. 구조성능환경 기준미달	1-3-1. 자연재해위험, 냉난방, 곰팡이, 해충, 채광, 환기 기준 미달 <sup>1)</sup> ※ 해당 문항에 (매우포함)그렇다 응답 아동가구 비율
		1-3-2. (반)지하, 옥탑 거주 아동가구비율 <sup>1)</sup>
1-3-3. 비주택 거주 아동가구 비율 <sup>1)</sup> (고시원, 여관, 미널하우스, 컨테이너 등)		
1-4. 필수설비미달	1-4-1. 최저주거기준 상 필수설비기준 미달 아동가구비율 <sup>1)</sup>	
2. 주거비 적절성	2-1. RIR	2-1-1. 월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30% 이상 아동가구비율 <sup>1)</sup>
3. 점유의 안전성	3-1. 주택점유형태	3-1-1. 아동가구의 자가, 전월세,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 <sup>1)</sup> ※ 각각의 비율 변동 확인
	3-2. 원하지 않는 이사	3-2-1. 소유형태 또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이사 경험 비율
4. 지역 사회 통합과 참여	4-1. 지역사회 접근성 및 안정성	4-1-1. 교통, 의료, 상업시설 등 접근성 만족도
	4-2. 차별 경험	4-2-1. 주거위치, 점유형태로 인한 차별 경험 아동 비율
	4-3. 장애 배려	4-3-1. 장애아동이 거주하기 적합한 지역사회환경 ※ 장애아동의 주관적 인식 평균값
5. 폭력 및 학대피해	5-1. 폭력피해	5-1-1. 주거빈곤 아동의 폭력·학대 피해 및 목격 경험 비율
	5-2. 주거방임	5-2-1.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방임 경험 비율
6. 건강	6-1. 정신건강	6-1-1. 구조·성능·환경으로 인한 수면방해 경험 아동 비율
	6-2. 신체건강	6-1-2. 곰팡이, 채광불량 아동가구의 아토피, 천식 경험 비율

\* 주: 1)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활용 가능 지표

두 번째, ② 정부 확인용 지표는 주거약자인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 주거복지정책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는 지표로 크게 3개 영역, 11개 세부지표(안)을 제안하였다(표 V-15). 다만 세부지표의 정의 및 자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표 V-15. 정부 확인용 지표(안)(일반아동·청소년)

영역		지표 정의
대분류	중분류	
1.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1-1. 공공임대주택 적절성	1-1-1.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아동가구에 보급된 임대주택 비율
		1-1-2. 공공임대주택 거주 아동가구의 최저주거기준 충족 비율
	1-2. 민간임대주택 적절성	1-2-1. 신규주택 건축 혹은 임대주택의 건축법 위반 규제 정비(불법쪼개기 제재 기준 마련 등)
		1-2-2. 구조성능환경기준 충족을 위한 제도 정비
	1-3. 장애아동 주거 개량 지원 정도	1-3-1. 장애아동가구를 위한 필요설비 지원 가구 비율
		1-3-2. 장애아동가구를 위한 필요설비 지원 예산 규모
2. 주거비 적절성	2-1. 주거급여 규모 및 비율	2-1-1. GDP 대비 주거급여 비율
		2-1-2. 주거급여 대상 아동가구 수혜 비율
	2-2. 에너지 바우처 수급	2-2-1. 아동가구의 에너지 바우처 수혜 비율
3. 점유의 안전성	3-1. 아동가구 긴급 주거지원 정도	3-1-1. 자연재해, 강제퇴거,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아동가구를 위한 예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3-1-2. 아동가구 대상 긴급주거지원 예산 규모

\* 주: 아동가구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구성원으로 포함한 가구를 의미함.

세 번째, ③ 시설거주 및 보호종료아동·청소년의 주거권 수준 파악용 지표 영역은 일반아동·청소년 지표 영역에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을 추가한 7개 영역, 19개 세부지표(안)을 제안하였다(표 V-16).

표 V-16. 주거권 보장 수준 파악용 지표(안)(시설거주 및 보호종료청년)

영역		지표 정의 및 자료원
대분류	중분류	
1.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1-1. 방수기준	1-1-1. 침실 당 인원 수 <sup>1)</sup>
		1-1-2. 조용히 자고 공부할 공간 확보 정도 <sup>1)</sup>
		1-1-3. 개인용 비품 비치 <sup>1)</sup>
	1-2. 면적기준	1-2-1. 아동 수 대비 전용 면적 비율 <sup>1)</sup>
	1-3. 구조성능환경 기준	1-3-1. 자연재해위험, 냉난방, 곰팡이, 해충, 채광, 환기 기준 미달 <sup>1)</sup>
1-3-2. (반)지하, 옥탑 거주 청소년*		
1-3-3. 비주택 거주 청소년* (고시원, 여관, 미널하우스, 컨테이너 등)		
1-3-4. 장애아동 거주 적합성 여부		
1-4-1. 필수설비미달	1-4-1. 최저주거기준 상 필수설비기준 미달 가구*	
2. 주거비 적절성	2-1. RIR	2-1-1. 월소득대비 주거비 부담 30% 이상 비율*
	2-2. 잔여소득 주거비 과부담	2-1-2. 주거비 제외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 비율*
3. 점유의 안전성	3-1. 주택점유형태	3-1-1. 아동가구의 주택점유형태*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등)
4. 지역 사회 통합과 참여	4-1. 거주지 차별 경험	4-1-1. 주거위치, 점유형태, 시설거주에 따른 차별 경험
	4-2. 장애 배려	4-2-1. 지역사회가 장애아동이 거주하기에 적합한지 여부
5. 시민적 권리와 자유	5-1. 의견표명권	5-1-1. 주거 결정 참여 정도*
6. 폭력 및 학대	6-1. 폭력피해 및 목격 경험	6-1-1. 가정외보호아동의 폭력 피해 및 목격 경험
	6-2. 학대 및 방임	6-2-1. 대리보호자의 학대 및 방임 정도
7. 건강	7-1. 정신건강	7-1-1. 수면방해 경험 비율
	7-2. 신체건강	7-1-2. 아토피, 천식 등 경험 비율

\* 주: \*는 시설퇴소 및 위탁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아동·청소년만 해당함.  
1)은 시행령(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시설평가 결과 활용 가능 지표임.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④ 시설거주 및 보호종료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기존 주거복지정책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확인·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로 3개 영역, 12개 세부지표(안)을 제안하였다(표 V-17). 장애아동 주거개량 지원 정도, 주거급여 및 에너지 바우처 수급 등은 일반아동·청소년용과 동일한 항목이다.

표 V-17. 정부 확인용 지표(안)(시설거주 및 보호종료아동)

대분류	중분류	지표
1.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1-1. 시설 개선	1-1-1. 침실 당 인원 수를 줄이기 위한 시설 증축 혹은 개량 지원 예산
		1-1-2. 1인당 아동 전용 면적 증가를 위한 예산
		1-1-3. 아동 개인 물건 비치(전용 책걸상, 전용 옷장 및 서랍장)을 위한 예산
	1-2. 공공임대주택 입주	1-2-1. 보호종료아동·퇴소청소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비율
	1-3. 장애아동 주거개량 지원	1-3-1. 장애아동을 위한 필요설비 제공 시설 비율 1-3-2. 장애아동을 위한 필요설비 제공 예산
2. 주거비적절성	2-1. 주거급여 수급	2-1-1. 주거급여 보호종료아동 수급 비율
	2-2. 에너지바우처 수급	2-2-1. 에너지 바우처의 보호종료아동·퇴소청소년의 수급 비율
3. 점유의 안정성	3-1. 주거복지상담	3-1-1. 원가정 이탈 아동을 위한 시설 정보 제공 제도적 보장 정도
		3-1-2. 보호종료·쉼터퇴소(예정)아동 주거복지 상담 이용비율
		3-1-3. 보호종료·쉼터퇴소(예정)아동 주거복지사 레관리 비율
	3-3. 보증금 마련 지원제도	3-3-1. 보호종료·쉼터퇴소(예정)아동 주거보증금 마련 지원제도(예, 자립정책 지원금의 적정성)

## (2) 주거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현재 주거복지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와 LH, 지자체(주거복지업무 부서), 공공 및 민간 주거복지센터, 지역별 주거복지 관련 기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공공 및 민간 기업, 이 외 주거복지 관련 NGO와 사회적 기업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온라인 상의 주거복지 정보 포털은 ‘마이홈포털’이 대표적이다(그림 V-5). 마이홈포털에서는 주거복지 서비스와 자가진단, 공공주택 정보, 임대사업자에 대한 안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세요.**  
2개이상 선택하여 통합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사항이 많아지므로 원치 않으시면 1개씩 선택하여 진행하세요!

<p><b>전월세나 집수리 비용 지원이 필요하세요?</b></p> 	<p><b>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b></p> 	<p><b>집을 사거나 세를 얻을때 대출이 필요하세요?</b></p> 
<input type="checkbox"/> 모두선택		
<b>자가진단 시작하기 &gt;</b>		

※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신청자격 등은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인출일 : 2020.11.13.

그림 V-5. 마이홈포털의 주거복지수준 자가진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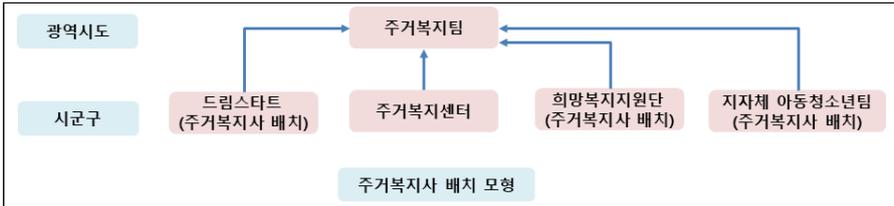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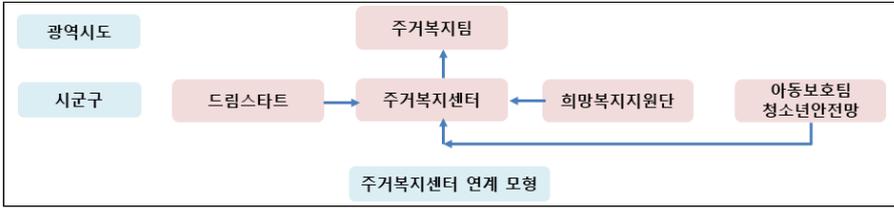
주거지원 서비스 기관(agency)인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를 근거로 LH가 운영하는 마이홈센터가 전국 약 60개소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방비로 중앙주거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총 2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를 제외하면 시·군·구 단위에 주거복지센터가 모두 설치된 상황이 아니므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

한편 동법 제24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근거로 (사)한국주거학회가 「주거복지사 자격검정 운영규정」에 따라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인 '주거복지사'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주거복지사<sup>39)</sup>는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복지적 차원에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며, 주거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실무 경험을 통해 다양한 현장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마이홈포털 홈페이지, 2020.11.13. 인출),

따라서 그림 V-6과 같이, 먼저 시·군·구 단위에 마이홈센터와 같은 주거복지센터를 확충하여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주택금융, 주택개량, 주거비 지원,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한 각종 주거 위기가구 지원 업무의 거점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주거복지센터 연계 모형). 다만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센터 설치가 어려운 경우 기존의 시·군·구 단위 희망복지지원단 등 취약계층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내에 주거복지사를 확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모델을 병행할 수 있다(주거복지사 배치 모형).

---

39) 같은 자료에서 제시한 주거복지사의 직무는 ① 지역의 주거복지실태조사 및 분석, ② 주거복지 대상자 발굴, ③ 주택개조 지원서비스 제공, ④ 주택상태 점검, ⑤ 주생활 상담 및 거주 고충상담, ⑥ 주거복지 프로그램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⑦ 공공임대주택 간 주거이동 지원, ⑧ 지불가능한 임대주택 및 자가주택 탐색지원, ⑨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지원, ⑩ 민·관·공과의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⑪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외부자원 발굴 미치 연계, ⑫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⑬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 ⑭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관리, ⑮ 주거복지사업 기획제안 및 수행·관리 등이다(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WelfareInfoType1View.do#guide=MENU001> 인출일 : 2020.11.13).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V-6. 주거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모형(안)

### (3) 주거빈곤지역 환경개선사업 제도화

주거빈곤가구는 지역적으로 밀집해 있다. 이들 지역은 공공기관, 의료시설, 상업 시설, 대중교통, 교육환경 등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이고 보행안전, 공원 및 녹지접근, 실내외 놀이터,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등 환경 전반이 빈곤지역보다 열악하다. 이로 인해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개별 주택의 취약성과 지역사회 집단의 취약성이 증첩되어 이중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발달이 가중될 수 있다.

반대로 지역사회의 환경은 주거빈곤 아동가구에게 보호요인이 된다. 비록 집에는 공부할 공간이 없어도 낮 시간 동안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도서관과 실내외 놀이공간이 있고 보호자를 대신하여 아동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주민들을 만날 수 있다면 아동은 취약성을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4항에서도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거빈곤층 밀집지역이 있는 지자체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주거빈곤 아동가구 밀집지역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우선적인 재정보조와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책사업으로 중장기계획 하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인 포천시의 경우 주거복지제도 내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빈곤 아동가구를 선정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을 돕거나 주거지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임세희, 송아영, 김승환, 김민재, 2020). 특히 비주택거주아동가구는 상수도 시설이나 화장실 등 필수시설과 전기배선,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도심에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반해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도심으로 이주하기 어려워 주거개량, 농촌형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원 대안이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주택거주 아동가구의 절반이상이 자가와 무상이었다. 그러나 현재 주거급여는 자가 및 임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가구에만 제공된다. 비주택거처는 주택이 아니므로 비주택자가가구를 일반적인 자가가구와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되며, 자가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대도시와 차별화되는 농산어촌형 공공임대주택정책을 통해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재건축부담금, 종합부동산세 등을 재원으로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주거복지 성과가 높은 지자체에 중앙정부의 귀속 부분을 배분하여 주거빈곤지역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징수가 본격화되었고 6월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6.2.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427](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427) 2020년 12월 8일 인출).

지자체 평가기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주거복지센터 설치, 조례에 근거한 주거비·관리비 지원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45%)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30%) 부분에 주거빈곤 아동가구와 주거빈곤지역 환경 개선 여부가 평가지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재건축부담금 지자체 배분 평가기준 개선 내용은 표 V-18과 같다.

**표 V-18. 재건축부담금 지자체 배분 평가기준 개정**

기준	현행	개정	세부 평가지표 및 비교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20%	10%	도로보급률, 주차면수, 도시공원면적, 지역난방 비율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	20%	30%	주거급여 수급 비율, (신)주택보급률,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
주거복지 증진 노력	20%	4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연계시설 공급, 조례에 근거한 주거 관리비 지원 등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 (기준 변경)	30%	15%	부담금 운영계획, 정보체계 관리, 자료 협조 등
재건축부담금의 활용 실적 및 운영계획	10%		〈삭 제〉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6.2.),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0&id=95083962](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0&id=95083962)(인출일: 2020.12.8)

### 3) 제도 및 서비스 확충

표 V-19. 제도 및 서비스 확충 관련 세부추진과제(안)

세부추진과제	예산 사업	법률 재개정	신규 개선	추진시기		주무부처 (지자체 포 함)
				단기 (2년)	중장기 (5년)	
3-1. 주거급여제도 개선	○		개선	○		복지부
3-2.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강화	○		개선	○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3-3. 관계기반 주거지원 확대	○		신규	○		국토부 복지부 여가부

#### (1) 주거급여 개선 : 최저주거기준 연계/2인 이상 다자녀 고려

영국, 미국, 스웨덴 등은 최저주거기준에서 가구원 간의 관계와 연령, 성별, 아동 수 등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가족형 주택수당, 스웨덴은 아동이 있는 가구와 18세 이상 28세 이하 청년을 위한 주거급여제도 등을 통해 아동 주거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2천 년 대 초반에 이미 적정주거기준(decent home standard)과 주거위생안전평가체계(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 HHSRS)를 도입하여 민간임대주택에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미국은 주택 내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원의 성별, 연령, 관계를 고려하고 ‘침실 수’에 따라 주거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 거주지역만 고려하고, 해당 주택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주거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스웨덴의 경우

유럽 내 다른 국가와 달리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초점을 맞춰 주거급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차별화된다. 즉, 기존의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침실분리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침실 수를 고려하고, 아동이 있는 가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가구 내 아동 수에 따라 양육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양질의 주택 확보 여부에 영향을 미쳐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은 최저생활 보장이 아닌, ‘조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 주요국의 주거급여제도 운용의 시사점 ]

#### • 영국의 주거급여제도

- 부부 이외 다른 사람이 침실 공유, 10세 이상 아동이 성별이 다른 사람과 침실 공유, 2명 이상이 한 방 공유를 과밀 상태로 규정하고 침실 수에 따라 주거급여 차등 지급(침실 1개 약 206파운드/월 ~ 침실 4개 약 417파운드/월)

#### • 미국의 주거바우처

- 주택품질기준(HQS)을 충족하는 주택 제공
- 주거지원 코디네이터(support coordinator)가 입주 전 점검, 임대인에게 30일 이내 개선 요구, 재검사 후 주거바우처 지원대상이 입주하도록 지원
- 성별이 다른 아동이 같은 침실을 공유하지 않도록 침실 수를 기준으로 급여 지급
- 미국 시카고주는 침실 0개(950달러/월) ~ 침실 8개(2,974달러/월)까지 차등 지급

#### • 스웨덴의 주거급여

- 아동이 있는 가구, 18~28세 청년이 주거급여(housing allowance) 대상
- 장애연금 등 연금 수령자는 주거보조(housing supplement) 대상
- 자녀의 수에 따라 주거 면적 보장(1자녀 80m<sup>2</sup>, 2자녀 100m<sup>2</sup>, 3자녀 120m<sup>2</sup>, 4자녀 140m<sup>2</sup>, 5자녀 이상 160m<sup>2</sup>)이 가능하도록 주거급여 차등 지급(아동 수 1명 3,400코로나/월, 2명 4,200코로나/월, 3명 5,200코로나/월)
-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 주거비 지출(월세, 모기지 대출 상환금, 냉난방·수도 등 유지·관리비), 주택 크기, 가구 구성(단독 여부, 아동 수) 등 네 가지 요소 고려
- 가구 소득이 낮고 아동 수가 많을수록 주거급여액이 많도록 설계하여 아동 주거권 보장

\* 출처 : 임세희, 송아영(2020, 여름호), pp.116~125를 발췌·요약함.

한편, 국내 사례로 시흥시의 '시흥형 주거비'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표 V-20, 21).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아동주거환경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아동중심 주거복지의 좋은 사례라 판단된다. 시흥시의 성과를 참고할 때 향후 제도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중형주택(전용 60~85㎡) 공급 및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되, 지원 효과를 고려할 때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여야 한다. 동시에 시흥시 사례와 같이 아동 1인당 급여를 가산하거나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V-20. 주거급여와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의 차이

구분	주거급여	시흥형 주거비 지원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자동차	가액의 100%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	1대 인정
아동 가구	-	아동 1인당 급여의 30% 가산
청년 가구	만30세 미만 비혼 청년 가구는 원가구가 기초생활수급가구일 때만 지급	만30세 미만 비혼 청년 가구도 지급
이주민가구	한국인 배우자·자녀·시부모와 거주하는 경우만 지급	

표 V-21.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의 2020년 아동 가구 추가 지원 내용

(단위 : 원)

가구원 수	주거급여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일반가구	아동수에 따른 가산 비율	가산액	아동 가구 지원 금액
1인(아동1)	225,000	112,500	+30%	34,000	225,000
2인(아동1)	252,000	126,000	+30%	38,000	164,000
3인(아동1)	302,000	151,000	+30%	45,000	196,000
3인(아동2)			+60%	91,000	242,000
4인(아동1)	351,000	175,500	+30%	53,000	228,500
4인(아동2)			+60%	110,000	292,500
4인(아동3)			+90%	164,000	346,500

\* 출처: 시흥시, 2019, 내부자료

## (2)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강화

앞에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취약계층 아동가구에 대한 통합서비스에 ‘주거’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청소년안전망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020년 현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라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자격이 있다. 또한 다자녀유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자녀 수와 주거여건(방수, 지하층 거주 등)이 열악한 정도 별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시세의 50% 이하 주택에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다자녀유형 매입임대의 경우 무보증금제도 또는 보증금 50% 할인, 전세임대주택의 자기부담 보증금 인하, 자녀 수에 따른 임대료 인하 등 혜택도 강화하였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5.20., <http://www.molit.go.kr>, 2020년 12월 8일 인출).

이와 같이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거빈곤 아동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발굴 자체가 주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안전망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의 아동청소년주거권 보장여부를 확인하려는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먼저 0~12세 취약계층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의 인적정보관리의 주거사항을 최저주거기준과 연동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욕구사정의 주거관련 항목이 산재해 있는 것을 아동주거권의 관점에서 통합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아동주거권 보장 여부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보완하여야 한다. 특히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 기반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전담인력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두 번째, 위기청소년 스크리닝 척도에도 주거권 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즉, 청소년쉼터에서 보호하는 가정 밖 청소년 이 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포착되는 청소년에 대한 위기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주거 안정’ 여부가 중요한 권리이자 지표로 다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 2020년 현재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여부를 주거위기 정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별 시세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민간임대주택의 체납자 가구는 주거위기 발굴 대상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발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평균 주거비 차이를 반영하고, 시·군·구 단위의 중위주택 전월세 보증금이 일정 비율 이하인 주거 정보 또는 가구원 수 대비 주거면적 정보를 부가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가구를 발굴하여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므로 저출산 원인에 대한 구조적 접근의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다자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아동이 있는 가구의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가산점 부여,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금융 지원을 모니터링과 환류를 통해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sup>40)</sup>

### (3) 관계기반 주거지원 확대 :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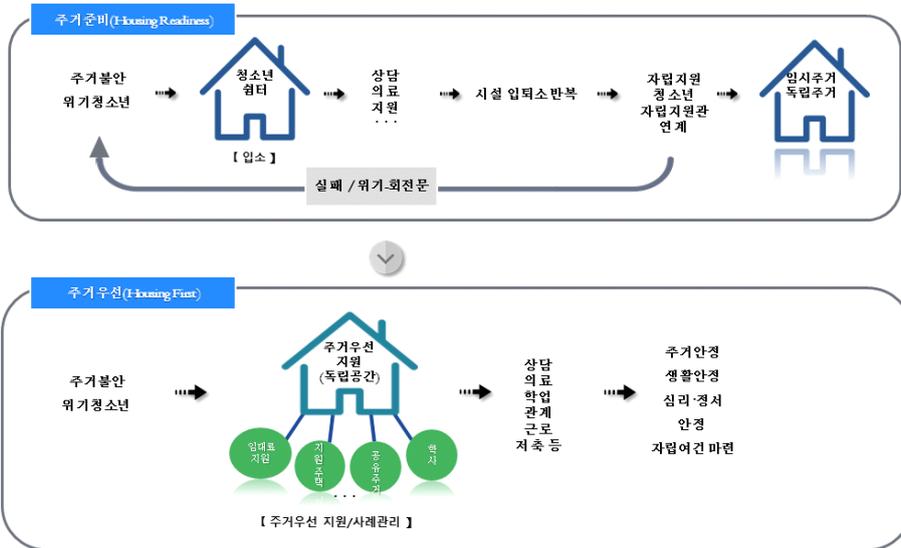
현재 가정 밖 위기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은 청소년쉼터 입소 지원이 거의 유일하

---

40) 현재 2자녀 이상 디딤돌, 버팀목 자금 대출한도 각 2천 만 원 이상, 1자녀는 0.1%p, 2자녀 이상은 0.2%p 금리를 추가 인하함.

며, 지난해 ‘아동 주거권 종합대책’에서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을 ‘보호종료아동’의 범위에 포함하여 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시설의 순기능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시설 중심의 주거지원은 한계가 있다. 일단 시설은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이라 볼 수 없고 임시적인 주거대안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설 입소 기간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의 상황과 욕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주거대안이 권리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 중심의 주거지원은 노숙을 할지언정 시설 입소는 절대 원하지 않거나, 시설에서의 단체 생활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은 결국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청소년쉼터에서의 입·퇴소에 지자체가 관여하지 않고 있고 주거 위기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퇴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설에서의 자립준비 노력이 허사가 되어 결국 자립에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주거환경 개선 노력과 병행하여 그림 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 지원을 통해 주거 마련을 준비하는 방식에서 독립 주거를 기반으로 자립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시설 중심에서 ‘주거 우선지원(Housing First)’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출처: 김지연 외, 2017, p.109; 김지연, 2020a, p.40을 일부 수정함.

그림 V-7. 위기청소년 주거준비 지원과 주거 우선지원 비교

그 일환으로 민간 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지원주택(Supportive House)<sup>41)</sup>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법적 근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24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거나, (가칭)지원주택 공급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가칭)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법 등을 신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지원주택의 제도화 과정에서 주거약자인 아동·청소년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함께 위기아동·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제도 운영을 위해 아동·청소년복지정책 내에서 주택공급과 운영,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임대료에 대한 당사자의 부담 수준, 사례관리자 운영 원칙 등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 등에 대한 부처 간의 별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1) 지원주택은 말 그대로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와 독립 주거공간이 결합된 모델로,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와 (사)희망나무의 청년노숙인 대상 지원주택 운영이 대표적이다.

표 V-22에서 시설과 중간주택, 그리고 지원주택을 간략하게 비교하였는데, 청소년 지원주택은 입주자의 특성 상 중간주택과 지원주택의 중간 지점의 형태로 설계·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청소년 지원주택은 ‘탈 시설화’ 논의와 맥락을 같이하며 선(先) 주거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도구이자 수단이다. 지원주택 운영방식이 시설과 다른 점은 주택과 서비스를 분리하여 지원주택에 입주하면 모든 자립지원이 제공되고, 퇴거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되는 ‘all or nothing’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김지연, 2020b, pp.39-44).

청소년 지원주택 혹은 공유주택(share house)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하고, 이 과정에서 주거지원 대상 청(소)년의 소득세 감면, 전월세 보증금 용차지원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수요에 대응하여 역세권 리모델링형, 기숙사형, 일자리 연계형 등 특화주택을 확충하고, 가전 및 집기 구매 등 주거환경조성에 부담이 큰 만큼 빌트인 가전을 기반으로 주거유형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하거나 다른 주거지원 제도로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표 V-22. 시설과 중간주택, 지원주택 비교

구분	시설	중간주택	지원주택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소기간 제한</li> <li>• 예) 양육시설, 청소년쉼터, 노숙인시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거주</li> <li>• 예) 공동생활가정, 자립체험관, 자립생활주택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구거주</li> <li>• 예) 노숙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인 대상 독립주택(일부는 중간주택으로 제공)</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합숙/단체생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합숙/개인거주</li> <li>• 지원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거주</li> <li>• 지원서비스 제공(선택가능)</li> </ul>
입주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기관이 시설 확보</li> <li>• 입소계약 여부 제각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기관과 주택공급자 간 임대차계약</li> <li>• 이용료 여부 제각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와 주택공급자 간 직접 임대차계약</li> </ul>
독립 생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적 생활X</li> <li>• 자율적 선택권 보장X</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적 생활X, △</li> <li>• 자율적 선택권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적 생활○</li> <li>• 자율적 선택권 보장○</li> </ul>

\* 출처: 서종균, 2020, p.16을 수정한 것임.

한편,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별도로 지급하되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중위소득 45% 이상으로 확대하여 주거취약 청(소)년의 최저주거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노후한 고시원이나 반지하주택을 지원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고시원이나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주거상황이 가능하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보증금 면제 또는 무상대여, 이사비와 생활집기 지원 등 집중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의 적정 면적과 채광, 환기 등 환경기준 준수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주거취약 청소년이 밀집하는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집행력 강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가 청소년 지원주택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정부나 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에게 법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도 16세에 달하면 사회서비스의 이용과 수급 등 일부에 대하여 행위능력 확대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민법상 행위능력을 전면 확장하기보다 청소년이 처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개별적으로 행위능력을 심사하거나, 주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행위능력을 확장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포함)를 상대로 하는 주거 계약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정제형, 2020, pp.10-11). 해외의 청소년 지원주택 사례와 제도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을 아래에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 [ 해외의 청소년 지원주택 사례 및 고려사항 ]

### • 캐나다의 청소년 주거우선(HF4Y, Housing First for Youth) 원칙

- 홈리스 상태를 경험하거나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만13세~24세) 대상
- 안전하고 저렴하며 적절한 주거 환경의 주택에 즉시 입주하도록 우선지원
- 이후 건강, 생활기술, 교육, 직업역량, 복지, 사회통합 등 사회서비스 지원
- 욕구와 연령에 맞는 지원을 통해 권리 기반으로 성인기 이행 지원
- HF4Y의 원칙은 ① 주거권 보장(전제조건 없이 독립 주거 지원), ②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존중, ③ 긍정적 발달과 인간다운 삶 지향, ④ 기간 제한 없는 거주자 중심 지원, ⑤ 포용 및 통합으로 요약됨.

### • 미국의 지원주택 원칙

- 독립성이 보장되는 주거 공간 지원
- 지원주택의 임대료는 개인소득의 30% 미만 원칙
- 입주자와의 계약을 통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 문서화
- 주택제공 및 관리주체와 사회서비스 제공주체 일원화
- 청소년 지원주택은 주거 안정을 위한 영구성, 임대료 부담 최소화(입주자 소득의 30% 수준), 최저주거수준 이상의 안정성, 쾌적성 담보, 개별적이고 유연한 사례관리, 역량강화, 독립성을 핵심요소로 함(김성경 외, 2019, pp.59~88).
- 가정부귀가 어려운 만16세~22세 홈리스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와 심리·정서·사회지원을 제공하는 전환프로그램(TLP, Transitional Living Program), 지원기반 주택(SAL, Supervised Apartment Living) 등 독립된 공간을 기반으로 찾아가는 사례관리 지원

### • 영국, 미국, 호주 등 청년 포이어(Foyer) 모델

- 1992년 영국에서 시작, 보호종료아동(만18세~25세)에게 안정된 주거 공간 우선 제공
- 이후 사례관리, 일상생활훈련, 구직훈련, 사후관리(follow-up) 등 사회적 지원 병행
- 입주청소년은 근로소득의 30% 정도 범위에서 주거비 부담 원칙

### •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 설계 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전국적인 보편적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지원주택의 개념과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주택공급방식, 지원 대상 및 입주자 선정 방식, 지원서비스의 내용, 운영기관 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 우선 마련 필요

### • 청소년 지원주택 운영지침에 반영해야 할 부분

- 지원주택은 주거안정성을 위해 영구적인 주택 제공을 원칙으로 하므로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최소 24세까지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홈리스 기간 최소화 도모
- 미성년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주거계약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방식의 특례 부여 필요
- 외국과 같이 근로소득의 30%를 임대료로 일괄 부담하기보다, 임대료 완화와 독립주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비용 책정 또는 주거급 등으로 임대료 총당하는 방식이 적절함.
- 주택 공급 및 서비스 제공 주체, 주택 형태, 사례관리자 운영 원칙에 대한 논의 마련 필요

\* 출처 : 정제형(2020), pp.7~12를 발췌한 것임.

이상에서 언급한 국정과제에 따른 3개 정책과제에 따른 12개 세부추진과제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표 V-23이다.

표 V-23. 국정과제에 따른 추진과제(안)

[ 국정과제 ] ·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국토부) ·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국토부)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여가부)		예산 사업	법률 재개정	신규 개선	추진시기		주무부처 (지자체 포함)
					단기 (2년)	중장기 (5년)	
1. 법률 및 지침 개정	1-1. 「주거기본법」 개정: 주거약자 범위 확대 및 주거지원에 따른 집행력 제고		○	신규	○		국토부
	1-2.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위기청소년 주거지원 근거 마련		○	신규	○		여가부
	1-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 처리지침」 개정: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		○	신규	○		국토부
	1-4. 「아동복지법」 개정: 주거방임 근거 마련 등		○	신규	○		복지부
	1-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아동주거문제 규정		○	신규	○		복지부
2. 주거권 보장 기반 강화	2-1.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관리	○		신규	○		국토부 복지부 여가부
	2-2. 주거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		개선	○		국토부 복지부 여가부
	2-3. 주거빈곤지역 환경개선사업 제도화	○		신규	○		국토부
3. 제도 및 서비스 확충	3-1. 주거급여제도 개선	○		개선	○		복지부
	3-2.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강화	○		개선	○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3-3. 관계기반 주거지원 확대: 청소년 지원주택 제도화	○		신규	○		국토부 복지부 여가부

\* 출처: 저자 작성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강미나, 김혜승, 김근용, 이수옥, 박미선 (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세종: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 강미나, 차미숙, 김은란, 이재춘, 김정희, 임세희, 함영진 (2020).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연구(기본 20-16). 세종: 국토연구원.
- 강신욱, 김안나, 박능후, 김은희, 유진영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5-10).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영배 (2009).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 및 정책에 관한 고찰. 청소년복지연구, 11(4), 101-127.
- 고주애 (2016). 아동 주거빈곤 정책 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7(2), 77-85.
- 국가인권위원회 (2017.1.24.)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1-19.
- 국가인권위원회 (2018).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7595>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10.24.).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발걸음 내딛다: 정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https://www.molit>.

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959에서 2020년 2월 2일 인출.

\_\_\_\_\_ (2019.12.5.). “내 방이 있는 집” 아동주거권과 청년 주거지원 강화.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202](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202)에서 2020년 2월 2일 인출.

\_\_\_\_\_ (2020.5.20.).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912](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912)에서 2020년 12월 8일 인출.

\_\_\_\_\_ (2020.6.1).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958](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958)에서 2020년 12월 8일 인출.

\_\_\_\_\_ (2020.6.2.).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0&id=95083962](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0&id=95083962)에서 2020년 12월 8일 인출.

국토교통부 (2020a). 2019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_\_\_\_\_ (2020b). 내부자료.

김성경, 정민아, 김희성, 이경혜 (2019).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주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원주택의 구성요소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0(2), 59-88.

김소은, 정익중, 정수정 (2016). 아동의 사회적 배제의 영향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8(3), 1-23.

김승경, 최정원, 강지명 (2016).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16-R2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안나, 노대명, 김미숙, 신호성, 홍인옥, 김태완 외 (2008).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

- 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08-10).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주 (2011).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들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11(2), 239-273.
-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9).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9-R1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용창 (2013).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의 주거권 규정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3), 514-540.
- 김지경, 연보라, 정은진 (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연구보고 2018-17). 서울: 여성가족부.
- 김지연 (2019.11.25.). **아동 주거지원 강화,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파이낸셜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1911251717096300>에서 2020년 2월 2일 인출.
- 김지연, 백혜정 (2017).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지연 (2020a).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 개선방안. **청소년 지원주택 도입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자료집**, 39-44.
- \_\_\_\_\_ (2020b). 청소년쉼터 청소년의 주거경험과 주거권 보장 방안. **세계 주거의 날 맞이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집으로 가는 길**, 25-40.
- 김진석 (2012). 청소년 신체활동과 지역사회요인의 관계. **한국아동복지학**, (37), 165-185.
- 김진희, 이상록 (2012) 빈곤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주거환경, 이웃환경,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4(2), 365-387.
- 김태완, 오미애, 이주미, 신재동, 정희선, 이병재 (2018).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연구보고서 2018-38).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희정 (2019). 적절한 주거권(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 강화된 합리성 심사와

- 최소핵심 의무를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25(1), 161-195.
-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정책 보고서 2019-17).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희 (2019, 겨울호).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통해 본 아동 삶의 질, **통계프 리즘**, 1, 50-58.
- 박금령, 최병호 (2019). 주거취약계층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만족도: 최저주 거기준 미달 가구와 비주택 거주 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2), 500-518.
- 박언하, 백현옥, 조미숙 (2009). **아동복지론**. 경기: 광문각
- 배순석 (2010.3.10). 최저주거기준 개선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특집 서민 주거안 정을 위한 정책과제2**, 16-23.
- 배순석, 김민철, 임이랑, 김진유, 하세정, 최영은 (2013). **주거비부담능력 평가방 식 및 부담기준의 도입과 정책적 활용방안** (국토연 2013-52). 경기: 국토연구 원.
- 배정은 (2016).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 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보고 2017-10). 서울: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2020).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 2**.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3739](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3739)에서 2020년 6월 9일 인출.
- 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연구보고 19-R36). 아동권리협약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 세종 : 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종균 (2020).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 개선방안. **청소년 지원주택 도입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자료집**, 15-25.

- 시흥시 (2019). 내부자료.
- 신근화 (2017).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인식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4(2), 127-155.
-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 세종: 여성가족부.
- 여유진, 김미곤, 류정희, 정은희, 강지원, 정희선 (2017).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경연 (2016). 아동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극복개입방안. **동광**, 111, 84-138.
- 이강훈 (2019). 최저주거기준 현황과 과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주거권 정책 토론회 자료집: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와 개선방안**, 51-69.
- 이민호, 이광희, 윤수재, 류현숙, 윤광석 (2012).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이윤정 (2017).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관계망이 양육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57, 125-157.
- 이중섭, 이용교 (2009).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7), 1-27.
- 이태진 (2019). **2019년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정책 토론회: 소리없는 외침, 아동 주거빈곤 : 아동에게 적절한 주거를(2019.5.23.)** 자료집. 토론문. pp.47~52.
- 이호선, 정지웅, 고아라, 임수경 (2017).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권 지표 개발 및 정책 방안 연구** (정책 17-21).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임덕영, 이경애, 진미윤, 이의중 (2017). **청년 주거 문제와 정책 방안 연구** (연구지원 2017-140).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임세희 (2010).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4), 377-402.
- \_\_\_\_\_ (2013).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동태적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6, 349-375.

- \_\_\_\_\_ (2014).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규모 및 특성의 변화(2005-2011). **사회보장연구**, 30(3), 215-244.
- \_\_\_\_\_ (2015).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결정요인: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2(4), 47-73.
- \_\_\_\_\_ (2019). 주거빈곤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71(4), 7-30.
- 임세희, 김선숙 (2016).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6, 133-164.
- 임세희, 박경하 (2017).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의 차이: 최저주거기준 하위기준 미달, 주거비 과부담, 중복주거빈곤가구. **한국사회정책**, 24(4), 31-62.
- 임세희, 최은영, 김희주, 김기태, 김동민, 김승환 (2018).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 아동주거빈곤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임세희, 김희주, 이창숙, 신진호, 손희경, 임은지 (2019).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효과성 연구-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거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임세희, 송아영 (2020, 여름호).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해외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13, 116-125.
- 임세희, 송아영, 김승환, 김민재 (2020). **경기북부 비주택 거주 아동가구 실태와 주거상향 이동경험**.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임희진, 백혜정, 김동식 (2019).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9-R1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선욱, 강현주, 김진숙, 정익중 (2018).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세종, 서울: 보건복지부,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정제형 (2020). 청소년 지원주택의 필요성, 해외사례 및 법제 개정 방안. **청소년 지원주택 도입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자료집**, 4-12.

- 조윤화, 이소원, 왕영민 (2019). **장애인 사회적 배제의 지수화 및 작동기제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주영선, 정익중 (2019).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6(4), 3-26.
- 천정웅 (201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발동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5(4), 27-54.
- 천현숙 (2010.12.10). 미국의 최저주거기준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 **해외리포트**, 90-97.
- 천현숙, 김민철, 하수정, 김혜승, 김승중, 손학기 (2011). **주택공급제도 선진화방안 연구: 국민주택규모를 중심으로**. 서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2020). **2019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연구보고서: 청소년과 주거권의 만남**. 서울: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8).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 아동주거빈곤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 2018-09). 서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최선미 (2001). **장기실업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임파워먼트 모델개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은영, 정진선, 한지은, 박신영, 이원호, 김기태 (2017). **2017년 전주시 주거실태조사 분석 및 통계보고서**. 전북, 서울: 전주시청, 한국도시연구소.
- 최은영, 정진선, 이원호, 강지영, 김기태, 이채운 외 (2018).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9). **지표 작성 방법론: 정책지표 설계와 활용**.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 통계청 (2015). **2015 인구주택 총조사: 일반조사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웹페이지 [https://www.census.go.kr/dat/srd/srdDetail.do?q\\_menu=5&q\\_sub=5](https://www.census.go.kr/dat/srd/srdDetail.do?q_menu=5&q_sub=5)에서 2020년 4월 6일 인출.

- 하성규 (1999). 적절한 주거와 주거권 보장. *주택연구*, 7(1), 5-35.
-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홍인옥, 이호, 김윤이, 남원석 (2006).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사)한국도시연구소.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 내부자료.
- Giddens, A. (1998). **제3의 길**. 한상진, 박찬욱 (공역). 서울: 생각의 나무.
- AHURI. (2014). What impact does a child's housing have on their development and wellbeing?. *AHURI Research & Policy Bulletin*, 171, 1-4.
- Barnes, M., Butt, S., & Tomaszewski, W. (2008). *The dynamics of bad housing: the impact of bad housing on the living standards of children*. London: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 Center for Child Rights(in india). (2008). *Handbook on children's right to adequate housing*. <https://www.slideshare.net/HAQCRCIndia/handbook-on-childrens-right-to-adequate-housing> 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 Clair, A. (2019). Housing: an Under-Explored Influence on Children's Well-Being and Becoming. *Child Indicators Research*, 12(4), 609-626.
- Coley, R. L., Leventhal, T., Lynch, A. D., & Kull, M. (2013). Relations between housing characteristics and the well-being of low-income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9(9), 1775-1789.
- Cunningham, M., & MacDonald, G. (2012). *Housing as a platform for improving education outcomes among low-income children*.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Eurofound. (2016). *Inadequate housing in Europe: Costs and consequences Eurofound*.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Holupka, S., & Newman, S. J. (2012). The effects of homeownership on Children's outcomes: real effects or self-selection?. *Real Estate Economics*, 40(3), 566-602.
- Houston, A. C. (2011). Children in poverty: Can public policy alleviate the consequences?. *Fam Matters*. 87, 13-26.
- Leventhal, T., & Newman, S. (2010). Hous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9), 1165-1174.
- Levitas, R., Pantazis, C., Fahmy, E., Gordon, D., Lloyd, E. & Patsios, D. (2007). The Multi Dimension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A Research Report for the Social Exclusion Task Force. Retrieved 2020, May 2, from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0A5Z7IBH/multidimensional.pdf.
- Main, G., & Bradshaw, J. (2014). Child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Final report of 2012 PSE study. *Economic & Social Research Council. UK*. 1-29.
- Newman, S. J. (2008). Does housing matter for poor families? A critical summary of research and issues still to be resolved.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7(4), 895-925.
- UN Habitat (2009).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New York Offic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 Habitat (2015).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act Sheet No.21, Rev.1, Retrieved February 2, 2020, from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QZKFNQ7J/fs21\_rev\_1\_housing\_en%20(2).pdf.

## [웹사이트 자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scr.aspx>에서 2020년 2월 4일 인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일반논평 4. 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General comment No.4: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TreatyID=9&DocTypeID=11](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TreatyID=9&DocTypeID=11)에서 2020년 2월 4일 인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일반논평 7. 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 강제퇴거(General comment No.7: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orced evictions)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TreatyID=9&DocTypeID=11](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TreatyID=9&DocTypeID=11)에서 2020년 2월 4일 인출.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WelfareInfoType1View.do#guide=MENU001>에서 2020년 11월 13일 인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https://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0333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0](https://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0333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0)에서 2020년 2월 4일 인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ttps://www.law.go.kr/LSW/trtyMInfoP.do?trtySeq=231dptj> 2020년 2월 4일 인출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https://www.cirp.org/library/ethics/UN-declaration/>에서 2020년 2월 11일 인출.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s://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0343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1](https://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0343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1)에서 2020년 2월 5일 인출.

Stafford borough council 홈페이지. 주거위생 및 안전평가 시스템 참고.

<https://www.staffordbc.gov.uk/housing-health-and-safety-rating-system-the-29-hazards>에서 2020년 12월 16일 인출.

## [ 법령 및 판례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시행 2020. 12.

10.)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EC%8B%9C%ED%96%89%EB%A0%B9#j10540553>에서 2020년 11월 26일 인출.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

6629호, 2020. 5. 19., 일부개정, 시행 2020. 5.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D%87%B4%EC%86%8C>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경기도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수원시조

례 제3775호, 2018. 4. 2., 제정, 시행 2018. 4.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

enuId=139&query=%ED%87%B4%EC%86%8C#AJAX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남도조례 제4275호, 2017. 2. 9., 제정, 시행 2017.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77310&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0>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경상남도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 1344호, 2020. 6. 30., 일부개정, 시행 2020. 7.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D%87%B4%EC%86%8C>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5988호, 2018. 12. 18., 일부개정, 시행 2019. 3.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undefined>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 5288호, 2019. 10. 15., 제정, 시행 2019. 10.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D%87%B4%EC%86%8C>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시행 1988. 2.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c.do?tabMenuId=tab18&section=&eventGubun=060101&query=%ED%97%8C%EB%B2%95#undefined>에서 2020년 4월 6일 인출.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시동래구조례 제1350호, 2019. 5. 24., 제정, 시행 2019. 5.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D%87%B4%EC%86%8C>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276호, 2019. 6. 4., 제정, 시행 2019. 6.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D%87%B4%EC%86%8C>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308호, 2018. 1. 5., 제정, [시행 2018. 1.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D%87%B4%EC%86%8C>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643호, 2020. 7. 16., 제정, 시행 2020. 7.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D%87%B4%EC%86%8C>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아동복지법(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시행 2020. 10.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undefined>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시행 2017. 7.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5%84%EB%8F%99%EB%B9%88%EA%B3%A4#undefined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시행 2020. 1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3919&lsId=010291&chrClsCd=010202&urlMode=lsInfoP&viewCls=lsInfoP&efYd=20201210&vSct=%EC%9E%AC%EA%B1%B4%EC%B6%95%EC%B4%88%EA%B3%BC%EC%9D%B4%EC%9D%B5%20%ED%99%98%EC%88%9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ancYnChk=0#0000>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전라북도 군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612호, 2019. 2. 15., 제정, 시행 2019.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D%87%B4%EC%86%8C>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주거기본법(법률 제16391호, 2019. 4. 23., 일부개정, 시행 2019. 4.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section=&eventGubun=060101&query=%ED%97%8C%EB%B2%95#undefined>에서 2020년 2월 6일 인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09호, 2019. 7. 23., 일부개정, 시행 2019. 7.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0552>에서 2020년 2월 10일 인출.

주택법(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시행 2020. 1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3%BC%ED%83%9D%EB%B2%95#undefined>에서 2020년 4월 6일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시행 2019. 7. 2.) 별표 3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EC%8B%9C%ED%96%89%EB%A0%B9#J8054001>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 5. 27., 일부개정, 시행 2011. 5.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59613>에서 2020년 2월 4일 인출.



○ — 부 록



# 부 록

## 1. 설문지(초등용)

###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일러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조사학교ID(기록하지 마세요)

--	--	--	--	--	--

##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 초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의 인권과 참여, 복지,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 연구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주거 실태와 더불어 주거와 관련한 일상생활 경험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5월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okness@mypl.re.kr  
김승경 선임연구위원 skkim0822@mypl.re.kr

####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 담당자: 황인창 부장, 박종경 과장  
※ 문의전화: 080-674-1000

####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유 목적: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별, 가족구성, 부모의 학력, 키, 몸무게, 출신 지역, 장애 여부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



##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폭력, 절도, 성폭력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자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폭력, 절도, 성폭력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X	②	③	④

### 03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19** 최근 1년 동안 기술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기술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부모(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 하루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유  
 ② 1회  
 ③ 2회 이상

→ 20번 문항으로

---

**19-1** 살던 집의 구조나 환경(공간)이 비좁아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거나 생활하기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음이 기술 행위에 영향을 미쳤나요?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04 응답하기 전 확인사항

질문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질문 아래 당구장 표시(※)가 된 부가설명에 있다면,  
응답하기 전에 꼭 읽어주세요.

**6-2** 누구와 방(공간)을 함께 사용하나요? 모두 골라주세요.

※ 여러명과 함께 사용할 경우, 모두 응답해 주세요.  
 ※ 선택한 보기 중에 "④ 이상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6-2-1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세요.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동생의 형제자매   

→ 6-3번 문항으로



**3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의 점유 형태는 무엇인가요?**

① 자가(부모님 소유) \_\_\_\_\_  
 ② 전세(집주인에게 매달 사용료를 내지 않고 보증금으로 대체함)  
 ③ 월세 및 일세(보증금과 관계없이 집주인에게 매달 또는 매일 사용료를 냄)  
 ④ 우리 집은 아니지만 사용료가 없는 집(관사, 사설 등) \_\_\_\_\_  
 ⑤ 잘 모르겠다 \_\_\_\_\_

→ 4번 문항으로

---

**3-1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공공임대주택인가요?**

※ 공공임대주택이란 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나 주택을 말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

**3-2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점유 형태 때문에 차별(놀림)이나 괴롭힘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4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내부시설은 어떠한가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 방, 거실이 벽이나 문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방으로 응답해주세요.

구분	개수	사용하는 사람		설치 여부		
		우리 가족끼리만 사용	다른 가족과 함께 사용	구분	설치되어 있음	설치되지 않음
1) 부엌	_____개 ⇒	①	②	싱크대(임식 부엌)	①	②
				온수시설(따뜻한 물)	①	②
2) 화장실 및 욕실	_____개 ⇒	①	②	양변기(수세식)	①	②
				욕조나 샤워기	①	②
				온수시설(따뜻한 물)	①	②
3) 방	_____개 ⇒	①	②	보일러 등 난방시설	①	②
				에어컨 등 냉방시설	①	②
4) 거실	_____개 ⇒	①	②	보일러 등 난방시설	①	②
				에어컨 등 냉방시설	①	②

**5**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넓이(면적)는 어떻게 되나요?

- ① 15평 미만(49.5㎡ 미만)
- ② 15평 이상~20평 미만(49.5~66㎡ 미만)
- ③ 20평 이상~25평 미만(66~82.5㎡ 미만)
- ④ 26평 이상~30평 미만(82.5~99㎡ 미만)
- ⑤ 30평 이상~35평 미만(99~115.5㎡ 미만)
- ⑥ 36평 이상~40평 미만(115.5~132㎡ 미만)
- ⑦ 40평 이상(132㎡ 이상)
- ⑧ 모름

**6**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나 혼자 사용하는 내 방이 있나요?

- ① 예 → 6-3번 문항으로
- ② 아니요

**6-1** 내가 주로 사용하는 방은 나를 포함하여 몇 명이 함께 사용하나요?

- ① 2명
  - ② 3명
  - ③ 4명
  - ④ 5명 이상
  - ⑤ 사용하는 방이 없음
- 6-2번 문항으로

**6-1-1** 내가 주로 잠을 자거나 공부를 하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 ① 거실
  - ② 부엌
  - ③ 베란다
  - ④ 기타(내용 : \_\_\_\_\_)
- 6-2번 문항으로

**6-2** 누구와 방(공간)을 함께 사용하나요? 모두 골라주세요.

※ 선택한 보기 중에 "④ 이성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6-2-1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세요.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동성의 형제자매
  - ④ 이성의 형제자매
  - ⑤ 기타(내용 : \_\_\_\_\_)
- 6-3번 문항으로

**6-2-1** 이성의 형제자매와 함께 방(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이성의 형제자매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만 8세) 이상인가요?

- ① 예
- ② 아니요

**6-3** 내가 사용하는 방(공간)은 잠을 자거나 공부하기에 충분히 넓어서 불편함이 없나요?

① 예

② 아니오

**6-4** 내가 사용하는 방(공간)은 내 생활이 보장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7** 다음 중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구가 있나요?

구분	예	아니오
1) 침대(개별침구)	①	②
2) 옷장, 수납장	①	②
3) 책상, 의자, 책꽂이	①	②

**8**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얼마나 살았나요?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⑤ 5년 이상

⑥ 모름

9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반적인 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우리 집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비가 오면 천장이나 벽에 물이 새거나 잠긴다	①	②	③	④
3) 지붕이나 벽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4)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어둡다	①	②	③	④
5)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답답하다	①	②	③	④
6) 옆집이나 층간의 소음이 심하게 들린다	①	②	③	④
7) 집 밖 소음(자동차 경적, 고함 소리 등)이 차단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8) 집 안에 곰팡이가 핀 곳이 있다	①	②	③	④
9) 집 안에 쥐나 개미, 바퀴벌레 등 해충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집 안에 악취(이상하고 심한 냄새)가 난다	①	②	③	④
11) 냉난방이 잘 되지 않아 여름철에 덥고, 겨울철에 춥다	①	②	③	④
12) 우리집 주변은 소방차가 출동하면 드나들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13) 화재에 대비한 시설(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14) 화재가 나면 위험한 재질로 지어졌다	①	②	③	④
15) 모르는 사람이 침입하기 쉬운 구조다	①	②	③	④

10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 ① 넓고 위험한 공간
- ② 비위생적인 공간(곰팡이, 해충 등)
- ③ 비좁은 공간
- ④ 내 방이 없는 것
- ⑤ 냉난방 시설
- ⑥ 기타(내용 : \_\_\_\_\_)
- ⑦ 없음

**II** 다음은 여러분의 동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각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11** 현재 살고 있는 동네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우리 동네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폭력, 절도, 성폭력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3) 자동차가 주차구역에 잘 주차되어 있어 다니기 편하다	①	②	③	④
4) 청소 및 쓰레기 처리가 잘 되어서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5) 대중교통, 시장, 마트, 병원, 공공기관 등의 이용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6) 학교, 학원 등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①	②	③	④
7) 즐겁게 놀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많다	①	②	③	④
8) 어둡고 후미져서 위험해 보이는 곳이 없다	①	②	③	④
9) 반침이 철거되어 방치된 곳이 없다	①	②	③	④
10) 장애를 가진 사람이 생활하기에 편하다	①	②	③	④
11) 우리 동네 사람들은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1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자주 술에 취해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12**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생활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나는...	←----- 보통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집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우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우리 동네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II 다음은 여러분의생애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각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13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사한 적이 있나요?**

※ 이전에 살던 집을 허물고 새로 지어서 계속 사는 것은 이사 경험에 포함합니다.  
 ※ 리모델링한 경우와 집 점유형태가 바뀐 경우(월세-전세 등)는 이사 경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① 예 → 14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4번 문항으로      ③ 모르겠다 → 14번 문항으로

**13-1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번 정도 이사를 했나요?**

약   번

**13-2 집세(월세, 전세금 등) 부담 때문에 이사를 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13-3 이사 때문에 전학을 한 적이 있나요?**

① 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13-4 부모님(보호자)이 이사갈 지역(또는 집)을 결정할 때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셨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4 최근 1년 동안 나와 우리 가족의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나와 우리 가족은...	예	아니오	모르겠다
1)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2)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3) 공과금(건강보험료, 전기·전화·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4) 주거비(월세, 전세금, 주택대출금, 공과금 등)를 걱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15** 부모님과 가족의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것은 (A)칸에, 최근 1년 간 경험한 것은 (B)칸에 표시해주세요.

부모님(보호자)은...	(A) 지금까지 살면서..		(B) 최근 1년간				
	없음	있음	없음	1년에 1-2회	2-3개월 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회 이상
1) 나를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2) 나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않았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3)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4) 내가 살고 있는 지저분하거나 위험한 환경을 개선해주지 않고 내버려두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5) 나에게 육이나 저주하는 말을 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6) 나를 손, 발이나 단단한 물건으로 때렸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7) 서로 큰 소리로 위협하고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16** 부모님(보호자)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7** 우리 집 구조나 환경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 집 구조나 환경 때문에...	예	아니오
1) 공부에 방해가 된다	①	②
2) 친구들 집에 데려오기 창피하다	①	②
3) 가족과 다툼이 잦다	①	②

18

부모님과 가족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것은 (A)칸에, 최근 1년 간 경험한 것은 (B)칸에 표시해주세요.

나는 도래, 선후배, 성인들에게서...	(A) 평생동안		(B) 최근 1년간				
	없음	있음	없음	1년에 1-2회	2-3개월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회 이상
1)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2) 손, 발 또는 물건으로 맞거나 그로 인해 다쳤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3) 돈이나 물건을 빼앗겼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4)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5) 왕따(괴롭힘)를 당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6) 강제 심부름(형, 서투, 게임서투 등)을 당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7)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8) 온라인(인터넷)에서 스토킹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19

최근 1년 동안 가출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가출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부모(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 하루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없다 → 20번 문항으로      ② 1회      ③ 2회 이상

19-1

살던 집의 구조나 환경(공간이 비좁아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거나 생활하기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음)이 가출 행동에 영향을 미쳤나요?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20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가출을 고민한 적이 있나요?

① 없다 → 21번 문항으로      ② 있다

20-1

집의 구조나 환경(환경이 비좁아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거나 생활하기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음)이 가출을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영향을 미쳤나요?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IV** 다음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각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21** 요즘 내 삶(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2** 요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나요?

전혀 느끼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많이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3** 요즘 내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23-1**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전혀 건강하지 않다			← 보통 →				매우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3-2**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전혀 건강하지 않다			← 보통 →				매우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4** 지난 한 학기(2019년도 2학기) 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를 결석한 날은 며칠인가요?

① 0일(없음)	② 1일
③ 2일	④ 3일 이상
⑤ 잘 모르겠음	

**25**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증상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항목	전혀 없었음	약간 있었음	심한 편이었음	매우 심했음
1) 아토피 피부염(태열 혹은 습진)	①	②	③	④
2) 천식	①	②	③	④
3) 알레르기 비염	①	②	③	④

**26** 키와 몸무게는 어느 정도인가요?

26-1 키

약    cm

26-2 몸무게

약    kg

**27** 평소에 집을 충분히 자나요?

① 예 → 28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27-1 집 구조나 집 안팎의 소음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된 적이 있나요?

- ① 없다      ② 가끔 있다      ③ 자주 있다      ④ 항상 있다

**V** 다음은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각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28** 최근 1년 동안 나의 기분과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가치(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 스스로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9** 평소 내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①	②	③	④
2)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0** 하루 중 여러분이 다음의 활동을 하는데 사용한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잘 읽고 응답해주세요.

활동내용	활동시간
1) 숙제나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	약 _____ 시간
2) 스마트폰, TV, 컴퓨터(인터넷, 게임 등) 이용 시간	약 _____ 시간
3) 운동(정기적으로 배우는 운동 포함)이나 야외에서의 신체활동 시간	약 _____ 시간

**31** 최근 1년 동안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32**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33** 다음은 아동청소년의 4가지 권리입니다. 잘 읽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 권리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안전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아픈 곳을 치료받는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없이 맞거나 혼나는 일, 내가 하기에는 지나치게 힘든 일로부터 보호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고, 여가와 문화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4) 국가와 지역의 활동(모임, 동아리, 단체활동 등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34** 나의 생활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항목	예	아니오
1) 나는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	①	②
2) 나는 하루에 적어도 한번은 고기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 (채식을 하는 경우 콩류 및 두부류 포함)	①	②
3) 나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①	②
4) 나는 내 나이와 수준에 맞는 책을 가지고 있다(교과서 제외)	①	②
5) 나는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등)	①	②
6) 나는 정기적으로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수영, 익기, 태권도 등)	①	②
7) 나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내 장난감이나 게임 등을 가지고 있다	①	②
8) 나는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나 현장학습 참가비용을 지불 할 수 있다	①	②
9) 우리 집에는 학교 숙제나 독서를 위한 충분히 넓고 적당한 책상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①	②
10) 우리 집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①	②
11)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①	②
12) 나는 두 컬레 이상의 신발이 있고, 그 중 한 컬레는 모든 계절에 신을 수 있다	①	②
13) 나는 내가 원하면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놀거나 밥을 먹을 수 있다	①	②
14) 나는 내가 원하면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을 할 수 있다	①	②

**VI** 다음은 여러분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잘 읽고 각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35** 나를 제외하고 현재 집에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은 누구인가요?  
잘 읽고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표시하고 인원수를 적어 주세요.

관계	인원 수	관계	인원 수
1) 할아버지(친, 외할아버지)	_____ 명	2) 할머니(친, 외할머니)	_____ 명
3) 아버지	_____ 명	4) 어머니	_____ 명
5) 언니/누나	_____ 명	6) 오빠/형	_____ 명
7) 여동생	_____ 명	8) 남동생	_____ 명
9) 삼촌/외삼촌	_____ 명	10) 이모/고모	_____ 명
11) 기타(내용 : _____)	_____ 명		

**36** 나와 내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요 → 37번 문항으로

**36-1** 우리 집은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시설, 환경을 갖추고 있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37 부모님의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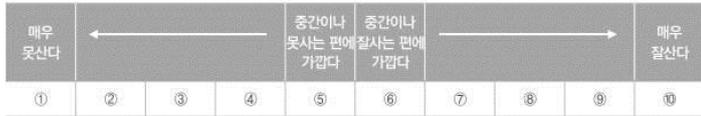
1) 아버지

- ① 모름
- ② 중학교 졸업이하(고교 중퇴 포함)
- ③ 고등학교 졸업(대학/대학교 중퇴 포함)
- ④ 전문대 졸업
- ⑤ 4년제 대학 졸업(대학원 중퇴 포함)
- ⑥ 대학원 졸업

2) 어머니

- ① 모름
- ② 중학교 졸업이하(고교 중퇴 포함)
- ③ 고등학교 졸업(대학/대학교 중퇴 포함)
- ④ 전문대 졸업
- ⑤ 4년제 대학 졸업(대학원 중퇴 포함)
- ⑥ 대학원 졸업

**38 우리 가족의 생활형편(경제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39 나와 부모님은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구분	대한민국	북한	그 외 다른 나라
1) 나	①	②	③
2) 아버지	①	②	③
3) 어머니	①	②	③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설문지(중고교생용)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인라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조사학교ID(기록하지 마세요)

#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신하 국제연구기관으로, 청소년의 인권과 참여, 복지,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 연구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주거 실태와 더불어 주거와 관련한 일상생활 경험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5월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okness@nypi.re.kr  
김승경 선임연구위원 skkim0822@nypi.re.kr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 담당자 : 황인창 부장, 박종경 과장  
※ 문의전화 : 080-674-1000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조사 동의

-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가족구성, 부모의 학력, 키, 몸무게, 출신 지역, 장애 여부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



##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폭력, 절도, 성폭력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input checked="" type="radio"/> ①	<input type="radio"/> ②	<input type="radio"/> ③	<input type="radio"/> ④

###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자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폭력, 절도, 성폭력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input checked="" type="radio"/> X ①	<input checked="" type="radio"/> ②	<input type="radio"/> ③	<input type="radio"/> ④

### 03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19** 최근 1년 동안 가솔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가솔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부모(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 하루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유 → 20번 문항으로      ② 1회      ③ 2회 이상

**19-1** 살던 집의 구조나 환경(공간)이 비좁아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거나 생활하기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음이 가솔 행동에 영향을 미쳤나요?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04 응답하기 전 확인사항

질문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질문 아래 당구장 표시(※)가 된 부가설명에 있다면,  
응답하기 전에 꼭 읽어주세요.

**6-2** 누구와 방(공간)을 함께 사용하나요? 모두 골라주세요.

※ 여러명과 함께 사용할 경우, 모두 응답해 주세요.  
※ 선택한 보기 중에 "④ 이상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6-2-1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세요.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동생의 형제자매       ④ 6-3번 문항으로

다음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각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1**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 ① 단독주택
- ② 다세대주택(빌라 등), 다가구단독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등)
- ③ 아파트
- ④ 주택이 아닌 건물(쪽방, 고시원, 상가, 공장, 여관 등)
- ⑤ 주택이 아닌 임시구조물(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컨테이너 등)
- ⑥ 기타(내용 : \_\_\_\_\_)

**1-1**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종류 때문에 차별(놀림이나 괴롭힘)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 ① 예
- ② 아니오

**2**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 ① 지상
- ② 반지하 또는 지하
- ③ 옥상(옥탑)

**2-1**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위치 때문에 차별(놀림이나 괴롭힘)을 받은 적이 있나요?

- ① 예
- ② 아니오



**5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넓이(면적)는 어떻게 되나요?**

- ① 15평 미만(49.5㎡ 미만)
- ② 15평 이상~20평 미만(49.5~66㎡ 미만)
- ③ 20평 이상~25평 미만(66~82.5㎡ 미만)
- ④ 26평 이상~30평 미만(82.5~99㎡ 미만)
- ⑤ 30평 이상~35평 미만(99~115.5㎡ 미만)
- ⑥ 36평 이상~40평 미만(115.5~132㎡ 미만)
- ⑦ 40평 이상(132㎡ 이상)
- ⑧ 모름

**6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나 혼자 사용하는 내 방이 있나요?**

- ① 예 → 6-3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6-1 내가 주로 사용하는 방은 나를 포함하여 몇 명이 함께 사용하나요?**

- ① 2명
  - ② 3명
  - ③ 4명
  - ④ 5명 이상
  - ⑤ 사용하는 방이 없음
- 6-2번 문항으로

**6-1-1 내가 주로 잠을 자거나 공부를 하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 ① 거실
- ② 부엌
- ③ 베란다
- ④ 기타(내용 : \_\_\_\_\_)

응답 후 6-2번 문항으로

**6-2 누구와 방(공간)을 함께 사용하나요? 모두 골라주세요.**

※ 선택한 보기 중에 "④ 이상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6-2-1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세요.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동성의 형제자매
  - ④ 이상의 형제자매
  - ⑤ 기타(내용 : \_\_\_\_\_)
- 6-3번 문항으로

**6-2-1 이상의 형제자매와 함께 방(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이상의 형제자매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만 8세) 이상인가요?**

- ① 예
- ② 아니오

**6-3** 내가 사용하는 방(공간)은 잠을 자거나 공부하기에 충분히 넓어서 불편함이 없나요?

① 예

② 아니오

**6-4** 내가 사용하는 방(공간)은 내 생활이 보장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7** 다음 중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구가 있나요?

항목	예	아니오
1) 침대(개별침구)	①	②
2) 옷장, 수납장	①	②
3) 책상, 의자, 책꽂이	①	②

**8**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얼마나 살았나요?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⑤ 5년 이상

⑥ 모름

9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반적인 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우리 집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비가 오면 천장이나 벽에 물이 새거나 잠긴다	①	②	③	④
3) 지붕이나 벽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4)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어둡다	①	②	③	④
5)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답답하다	①	②	③	④
6) 옆집이나 층간의 소음이 심하게 들린다	①	②	③	④
7) 집 밖 소음(자동차 경적, 고함 소리 등)이 차단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8) 집 안에 곰팡이가 핀 곳이 있다	①	②	③	④
9) 집 안에 쥐나 개미, 바퀴벌레 등 해충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집 안에 악취(이상하고 심한 냄새)가 난다	①	②	③	④
11) 냉난방이 잘 되지 않아 여름철에 덥고, 겨울철에 춥다	①	②	③	④
12) 우리집 주변은 소방차가 출동하면 드나들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13) 화재에 대비한 시설(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14) 화재가 나면 위험한 재질이 지어졌다	①	②	③	④
15) 모르는 사람이 침입하기 쉬운 구조다	①	②	③	④

10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 ① 넓고 위험한 공간
- ② 비위생적인 공간(곰팡이, 해충 등)
- ③ 비좁은 공간
- ④ 내 방이 없는 것
- ⑤ 냉난방 시설
- ⑥ 기타(내용 : \_\_\_\_\_)
- ⑦ 없음

**II** 다음은 여러분의 동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각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11** 현재 살고 있는 동네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우리 동네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폭력, 절도, 성폭력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3) 자동차가 주차구역에 잘 주차되어 있어 다니기 편하다	①	②	③	④
4) 청소 및 쓰레기 처리가 잘 되어서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5) 대중교통, 시장, 마트, 병원, 공공기관 등의 이용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6) 학교, 학원 등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①	②	③	④
7) 즐겁게 놀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많다	①	②	③	④
8) 어둡고 후미져서 위험해 보이는 곳이 없다	①	②	③	④
9) 반침이 철거되어 방치된 곳이 없다	①	②	③	④
10) 장애를 가진 사람이 생활하기에 편하다	①	②	③	④
11) 우리 동네 사람들은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1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자주 술에 취해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12**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생활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나는...	← 보통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집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우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우리 동네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II 다음은 여러분의생애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각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13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사한 적이 있나요?**

※ 이전에 살던 집을 허물고 새로 지어서 계속 사는 것은 이사 경험에 포함합니다.  
 ※ 리모델링한 경우와 집 점유형태가 바뀐 경우(월세-전세 등)는 이사 경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① 예 → 14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4번 문항으로      ③ 모르겠다 → 14번 문항으로

**13-1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번 정도 이사를 했나요?**

약   번

**13-2 집세(월세, 전세금 등) 부담 때문에 이사를 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13-3 이사 때문에 전학을 한 적이 있나요?**

① 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13-4 부모님(보호자)이 이사할 지역(또는 집)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셨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4 최근 1년 동안 나와 우리 가족의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나와 우리 가족은...	예	아니오	모르겠다
1)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2)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3) 공과금(건강보험료, 전기·전화·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4) 주거비(월세, 전세금, 주택대출금, 공과금 등)를 걱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15** 부모님과 가족의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것은 (A)칸에, 최근 1년 간 경험한 것은 (B)칸에 표시해주세요.

부모님(보호자)은...	(A) 지금까지 살면서..		(B) 최근 1년 간				
	없음	있음	없음	1년에 1-2회	2-3개월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회 이상
1) 나를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2) 나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않았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3)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4)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하거나 위험한 환경을 개선해주지 않고 내버려두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5) 나에게 육이나 저주하는 말을 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6) 나를 손, 발이나 단단한 물건으로 때렸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7) 서로 큰 소리로 위협하고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16** 부모님(보호자)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7** 우리 집 구조나 환경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 집 구조나 환경 때문에...	예	아니오
1) 공부에 방해가 된다	①	②
2) 친구들 집에 데려오기 창피하다	①	②
3) 가족과 다툼이 잦다	①	②

**18** 부모님과 가족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것은 (A)칸에, 최근 1년 간 경험한 것은 (B)칸에 표시해주세요.

나는 또래, 선후배, 성인들에게서...	(A) 평생동안		(B) 최근 1년 간				
	없음	있음	없음	1년에 1-2회	2-3개월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회 이상
1)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2) 손, 발 또는 물건으로 맞거나 그로 인해 다쳤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3) 돈이나 물건을 빼앗겼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4)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5) 왕따(괴롭힘)를 당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6) 강제 심부름(형, 서투, 게임서를 등)을 당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7)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8) 온라인(인터넷에서) 스토킹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19** 최근 1년 동안 가출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가출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부모(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 하루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없다 → 20번 문항으로      ② 1회      ③ 2회 이상

**19-1** 살던 집의 구조나 환경(공간이 비좁아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거나 생활하기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음)이 가출 행동에 영향을 미쳤나요?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20**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가출을 고민한 적이 있나요?

① 없다 → 21번 문항으로      ② 있다

**20-1** 집의 구조나 환경(환경이 비좁아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거나 생활하기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음)이 가출을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영향을 미쳤나요?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IV** 다음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각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21** 요즘 내 삶(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2** 요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나요?

전혀 느끼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많이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3** 요즘 내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23-1**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전혀 건강하지 않다			← 보통 →				매우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3-2**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전혀 건강하지 않다			← 보통 →				매우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4** 지난 한 학기(2019년도 2학기) 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를 결석한 날은 며칠인가요?

① 0일(없음)	② 1일
③ 2일	④ 3일 이상
⑤ 잘 모르겠음	

**25**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증상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항목	전혀 없었음	약간 있었음	심한 편이었음	매우 심했음
1) 아토피 피부염(태열 혹은 습진)	①	②	③	④
2) 천식	①	②	③	④
3) 알레르기 비염	①	②	③	④

**26** 키와 몸무게는 어느 정도인가요?

26-1 키

약    cm

26-2 몸무게

약    kg

**27** 평소에 집을 충분히 자나요?

① 예 → 28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27-1 집 구조나 집 안팎의 소음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된 적이 있나요?

- ① 없다      ② 가끔 있다      ③ 자주 있다      ④ 항상 있다

**V** 다음은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각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28** 최근 1년 동안 나의 기분과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가치(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 스스로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9** 평소 내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①	②	③	④
2)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0** 하루 중 여러분이 다음의 활동을 하는데 사용한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잘 읽고 응답해주세요.

활동내용	활동시간
1) 숙제나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	약 _____ 시간
2) 스마트폰, TV, 컴퓨터(인터넷, 게임 등) 이용 시간	약 _____ 시간
3) 운동(정기적으로 배우는 운동 포함)이나 야외에서의 신체활동 시간	약 _____ 시간

**31** 최근 1년 동안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32**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3** 다음은 아동청소년의 4가지 권리입니다. 잘 읽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 권리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안전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아픈 곳을 치료받는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없이 맞거나 혼나는 일, 내가 하기에는 지나치게 힘든 일로부터 보호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고, 여가와 문화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4) 국가와 지역의 활동(모임, 동아리, 단체활동 등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34

나의 생활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문항	예	아니오
1) 나는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	①	②
2) 나는 하루에 적어도 한번은 고기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 (채식을 하는 경우 콩류 및 두부류 포함)	①	②
3) 나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①	②
4) 나는 내 나이와 수준에 맞는 책을 가지고 있다(교과서 제외)	①	②
5) 나는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등)	①	②
6) 나는 정기적으로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수영, 익기, 태권도 등)	①	②
7) 나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내 장난감이나 게임 등을 가지고 있다	①	②
8) 나는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나 현장학습 참가비용을 지불 할 수 있다	①	②
9) 우리 집에는 학교 숙제나 독서를 위한 충분히 넓고 적당한 책장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①	②
10) 우리 집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①	②
11)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①	②
12) 나는 두 컬레 이상의 신발이 있고, 그 중 한 컬레는 모든 계절에 신을 수 있다	①	②
13) 나는 내가 원하면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놀거나 밥을 먹을 수 있다	①	②
14) 나는 내가 원하면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을 할 수 있다	①	②

**VI** 다음은 여러분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잘 읽고 각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35** 나를 제외하고 현재 집에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은 누구인가요?  
잘 읽고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표시하고 인원수를 적어 주세요.

관계	인원 수	관계	인원 수
1) 할아버지(친, 외할아버지)	_____ 명	2) 할머니(친, 외할머니)	_____ 명
3) 아버지	_____ 명	4) 어머니	_____ 명
5) 언니/누나	_____ 명	6) 오빠/형	_____ 명
7) 여동생	_____ 명	8) 남동생	_____ 명
9) 삼촌/외삼촌	_____ 명	10) 이모/고모	_____ 명
11) 기타(내용 : _____)	_____ 명		

**36** 나와 내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요 → 37번 문항으로

**36-1** 우리 집은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시설, 환경을 갖추고 있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37 부모님의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1) 아버지

- |                         |                      |
|-------------------------|----------------------|
| ① 모름                    | ② 중학교 졸업이하(고교 중퇴 포함) |
| ③ 고등학교 졸업(대학/대학교 중퇴 포함) | ④ 전문대 졸업             |
| ⑤ 4년제 대학 졸업(대학원 중퇴 포함)  | ⑥ 대학원 졸업             |

2) 어머니

- |                         |                      |
|-------------------------|----------------------|
| ① 모름                    | ② 중학교 졸업이하(고교 중퇴 포함) |
| ③ 고등학교 졸업(대학/대학교 중퇴 포함) | ④ 전문대 졸업             |
| ⑤ 4년제 대학 졸업(대학원 중퇴 포함)  | ⑥ 대학원 졸업             |

**38 우리 가족의 생활형편(경제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매우 못신다										매우 잘신다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중간이나  
못하는 편에  
가깝다

중간이나  
잘하는 편에  
가깝다

**39 나와 부모님은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구분	대한민국	북한	그 외 다른 나라
1) 나	①	②	③
2) 아버지	①	②	③
3) 어머니	①	②	③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 설문지(시설거주 아동청소년용)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일러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기관ID(기록하지 마세요)**

--	--	--	--	--	--

##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 청소년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의 인권과 참여, 복지,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 연구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주거 실태와 더불어 주거와 관련한 일상생활 경험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5월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okness@nypi.re.kr  
 김승경 선임연구위원 skkim0822@nypi.re.kr

설터명	설터유형		① 일시	② 단기	③ 중장기
학교재학 여부	① 초등학교 재학	② 중학교 재학	③ 고등학교 재학	④ 학교에 다니지 않음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	------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가족구성, 부모의 학력, 키, 몸무게, 출신 지역, 장애 여부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우리 심터가 있는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폭력, 절도, 성폭력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심터가 있는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폭력, 절도, 성폭력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X	②	③	④

### 03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려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32 퇴소 이후에 어디서 거주할 지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① 없음 → 33번 문항으로      ② 있다

---

32-1 퇴소 이후에 어디서 거주할 계획인가요?

① 자립지원권을 통해 임대주택(원룸/고시원 포함)에 입주  
② 개인적으로 전월세 주택(방)을 임대하여 거주

### 04 응답하기 전 확인사항

질문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질문 아래 당구장 표시(※)가 된 부가설명에 있다면,  
응답하기 전에 꼭 읽어주세요.

33 퇴소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생긴다면 입주할 생각이 있나요?

※ 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민간에서 특정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제공하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일함.

① 있다      ② 없다 → 33-7번 문항으로      ③ 잘 모르겠다 → 34번 문항으로

---

33-1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불러주세요.

**다음은 현재 살고 있는 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각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1** 우리 쉼터의 주택 종류는 무엇인가요?

① 단독주택  
 ② 다세대주택(빌라 등), 다가구단독주택, 연립주택  
 ③ 주택이 아닌 건물(상가 건물 등)  
 ④ 기타내용 : \_\_\_\_\_

**2** 우리 쉼터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방은 총 몇 개 인가요?

총  개

**2-1** 내가 현재 사용하는 방은 몇 인실인가요?

인실

**3** 내가 현재 사용하는 방은 나를 포함하여 몇 명이 함께 사용하나요?

① 같이 사용하는 사람 없이 혼자 사용함      ②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함 →  명

**3-1** 내가 사용하는 방(공간)은 잠을 자거나 공부하기에 충분히 넓어서 불편함이 없나요?

① 예      ② 아니오

**3-2** 내가 사용하는 방(공간)은 내 생활이 보장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3-3** 다음 중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구가 있나요?

항목	예	아니오
1) 침대(개별침구)	①	②
2) 옷장, 수납장, 사물함	①	②
3) 책상, 의자, 책꽂이	①	②



**II** 다음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각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7** 우리 쉼터가 있는 동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우리 쉼터가 있는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폭력, 절도, 성폭력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3) 자동차가 주차구역에 잘 주차되어 있어 다니기 편하다	①	②	③	④
4) 청소 및 쓰레기 처리가 잘 되어서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5) 대중교통, 시장, 마트, 병원, 공공기관 등의 이용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6) 학교, 학원 등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①	②	③	④
7) 즐겁게 놀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많다	①	②	③	④
8) 어둡고 후미져서 위험해 보이는 곳이 없다	①	②	③	④
9) 반침이 철거되어 방치된 곳이 없다	①	②	③	④
10) 장애를 가진 사람이 생활하기에 편하다	①	②	③	④
11) 우리 동네 사람들은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1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자주 술에 취해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8** 우리 쉼터와 생활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나는...	← 보 통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쉼터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우리 쉼터에서 계속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우리 쉼터가 있는 동네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우리 쉼터가 있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부모님과 가족의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것은 (A)칸에, 가출하기 전 마지막 1년 간 경험한 것은 (B)칸에 표시해주세요.

부모님(보호자)은...	(A) 지금까지 살면서..		(B) 가출하기 전 마지막 1년 간				
	없음	있음	없음	1년에 1-2회	2-3개월 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회 이상
1) 나를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2) 나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않았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3)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4)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하거나 위험한 환경을 개선해주지 않고 내버려두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5) 나에게 욕이나 저주하는 말을 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6) 나를 손, 발이나 단단한 물건으로 때렸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7) 서로 큰 소리로 위협하고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12** 부모님(보호자)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 우리 집 구조나 환경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 집 구조나 환경 때문에...	예	아니오
1) 공부에 방해가 된다	①	②
2) 친구를 집에 데려오기 창피하다	①	②
3) 가족과 다툼이 잦다	①	②

14

부모님과 가족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것은 (A)칸에, 가출하기 전 마지막 1년 간 경험한 것은 (B)칸에 표시해주세요.

나는 도래, 선후배, 성인들에게서...	(A) 평생동안		(B) 가출하기 전 마지막 1년 간				
	없음	있음	없음	1년에 1-2회	2-3개월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회 이상
1)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2) 손, 발 또는 물건으로 맞거나 그로 인해 다쳤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3) 돈이나 물건을 빼앗겼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4)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5) 왕따(괴롭힘)를 당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6) 강제 심부름(형, 서둘, 게임서를 등)을 당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7)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8) 온라인(인터넷)에서 스토킹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	①	①	①	①	②	③	④

15

부모님(보호자)이 계신 집이 아닌 다른 곳(쉼터와 다른 시설, 친구나 친척 집, 여관/모텔 등 포함)에서 생활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약  년  개월

15-1

살던 집의 구조나 환경(공간이 비좁아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거나 생활하기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음)이 집을 나오는데 영향을 미쳤나요?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해당 없음(가출 아님)

15-2

우리 쉼터에 입소하지는 어느 정도 되었나요?

-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③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④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⑤ 1년 이상

15-3

마지막으로 가출한 이후 우리 쉼터에 입소하기 전까지 다른 곳에서 얼마나 지냈나요? 해당하는 곳에 모두 응답해 주세요.

항목	기간	항목	기간
1) 노숙(PC방, 찜질방 등)	약 <input type="text"/> 개월	2) 여관, 모텔 등 숙박시설	약 <input type="text"/> 개월
3) 친구 집	약 <input type="text"/> 개월	3) 일시쉼터 포함 청소년쉼터	약 <input type="text"/> 개월
5)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약 <input type="text"/> 개월	6) 노숙인 시설	약 <input type="text"/> 개월
7) 자취(원룸, 고시원 등)	약 <input type="text"/> 개월	8) 기타(내용 : <input type="text"/> )	약 <input type="text"/> 개월

**IV** 다음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각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16** 요즘 내 삶(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7** 요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나요?

전혀 느끼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많이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8** 요즘 내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18-1**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전혀 건강하지 않다			← 보통 →				매우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8-2**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전혀 건강하지 않다			← 보통 →				매우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9** 지난 한 학기(2019년도 2학기) 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를 결석한 날은 며칠인가요?

① 0일(없음)	② 1일	③ 2일
④ 3일 이상	⑤ 잘 모르겠음	⑥ 학교에 다니지 않음

**20**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증상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항목	전혀 없었음	약간 있었음	심한 편이었음	매우 심했음
1) 아토피 피부염(태열 혹은 습진)	①	②	③	④
2) 천식	①	②	③	④
3) 알레르기 비염	①	②	③	④

**21** 키와 몸무게는 어느 정도인가요?

21-1 키

약    cm

21-2 몸무게

약    kg

**22** 평소에 집을 충분히 자나요?

① 예 → 23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22-1 침터의 구조나 침터 안팎의 소음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된 적이 있나요?

- ① 없다      ② 가끔 있다      ③ 자주 있다      ④ 항상 있다

**V** 다음은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각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23** 최근 1년 동안 나의 기분과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가치(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4** 평소 내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①	②	③	④
2)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5** 하루 중 여러분이 다음의 활동을 하는데 사용한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잘 읽고 응답해주세요.

활동내용	활동시간
1) 숙제나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	약 _____시간
2) 스마트폰, TV, 컴퓨터(인터넷, 게임 등) 이용 시간	약 _____시간
3) 운동(정기적으로 배우는 운동 포함)이나 야외에서의 신체활동 시간	약 _____시간
4)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	약 _____시간
5) 친구들과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시간	약 _____시간

**26** 최근 1년 동안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 학교를 다닌 마지막 1년 동안의 학교생활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27**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8** 다음은 아동·청소년의 4가지 권리입니다. 잘 읽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 권리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안전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아픈 곳을 치료받는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없이 맞거나 혼나는 일, 내가 하기에는 지나치게 힘든 일로부터 보호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고, 여가와 문화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4) 국가와 지역의 활동(모임, 동아리, 단체활동 등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29** 나의 생활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문항	예	아니오
1) 나는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	①	②
2) 나는 하루에 적어도 한번은 고기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 (채식을 하는 경우 콩류 및 두부류 포함)	①	②
3) 나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①	②
4) 나는 내 나이와 수준에 맞는 책을 가지고 있다(교과서 제외)	①	②
5) 나는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등)	①	②
6) 나는 정기적으로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수영, 악기, 태권도 등)	①	②
7) 나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내 장난감이나 게임 등을 가지고 있다	①	②
8) 나는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나 현장학습 참가비용을 지불 할 수 있다	①	②
9) 우리 침터에는 학교 숙제나 독서를 위한 충분히 넓고 적당한 책상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①	②
10) 우리 침터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①	②
11)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①	②
12) 나는 두 컬레 이상의 신발이 있고, 그 중 한 컬레는 모든 계절에 신을 수 있다	①	②
13) 나는 내가 원하면 친구를 초대해 놀거나 밥을 먹을 수 있다	①	②
14) 나는 내가 원하면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을 할 수 있다	①	②

**VI** 다음은 퇴소 이후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각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30** 쉼터 퇴소 이후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음 중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① 취업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자격 부족      | ② 학교나 직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                |
| ③ 거주할 집과 관련된 문제(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포함) | ④ 음식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부족 |
| ⑤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역자원과 정보 부족          | ⑥ 아프거나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곳 부족     |
| ⑦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 ⑧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
| ⑨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            | ⑩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                      |
- ⑪ 기타내용 : \_\_\_\_\_ )

**31** 퇴소 이후에 어디서 거주할 지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32번 문항으로

**31-1** 퇴소 이후에 어디서 거주할 계획인가요?

- ① 자립지원관을 통해 임대주택(원룸/고시원 포함)에 입주  
 ② 개인적으로 전월세 주택(방)을 임대하여 거주  
 ③ 친구나 친척집에 거주  
 ④ 원가정으로 복귀  
 ⑤ 잘 모르겠음(결정 사항 없음)  
 ⑥ 기타내용 : \_\_\_\_\_ )

**31-2** 퇴소 이후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 | ② 임대료, 관리비 등 주거비 수준      |
| ③ 의지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         | ④ 자유롭게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지 여부  |
| ⑤ 내부 공간 설비 및 쾌적성         | ⑥ 건물 및 주변 환경의 안정성        |
| ⑦ 학교(혹은 직장)와의 거리         | ⑧ 대중교통, 시장, 병원 등 편의시설 여부 |
- ⑨ 기타내용 : \_\_\_\_\_ )

**32** 퇴소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생긴다면 입주할 생각이 있나?

※ 공공임대주택이란, 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건설회사가 짓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제공하는 아파트나 주택을 말합니다.

- ① 있다      ② 없다 → 34번 문항으로      ③ 잘 모르겠다 → 35번 문항으로

**32-1**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 ① 주거비(임대 보증금이나 임대료, 관리비 등)가 저렴할 것 같아서
- ②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 ③ 시설이나 환경이 현재 살고 있는 곳보다 좋을 것 같아서
- ④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있으면 서로 의지가 될 것 같아서
- ⑤ 기타(내용 : \_\_\_\_\_)

**32-2** 다음 중 어떤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나? 가장 선호하는 두 유형을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① 원룸형: 방, 거실, 주방이 하나로 이어진 형태의 집을 혼자 사용
- ② 그룹모집형: 방이 1개 있는 집을 형제·자매 혹은 친구 2명이 사용. 거실, 화장실, 주방은 공유
- ③ 다가구형: 방이 2-3개 있는 집을 2-3명이 사용. 방은 혼자 사용하고, 거실, 화장실, 주방은 공유
- ④ 가족사형: 건물 내에 2-4인용 방을 여러 개 두고, 화장실, 주방, 휴게실 등을 공동 사용

**32-3** 공공임대주택에서 어느 정도 거주하길 원하나?

- ① 2년 미만      ② 2년 이상 - 5년 미만      ③ 5년 이상 -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33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주거 공간 구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 가능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 불가
1) 방(침실)	①	②
2) 주방	①	②
3) 거실	①	②
4) 화장실 및 욕실	①	②

4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① 사용 가능으로 응답한 경우 33-1 로 가십시오.

4가지 항목에 모두 ② 사용 불가로 응답한 경우만 33-2 로 가십시오.

**33-1**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35번으로

- ① 임대료, 관리비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 ② 청소, 식사 준비 등 가사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 ③ 다양한 사람과 교류할 수 있어서
- ④ 혼자 살 때보다 더 넓은 공용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 ⑤ 필요한 가구나 가전제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서
- ⑥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 ⑦ 기타(내용 : \_\_\_\_\_)

**33-2**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35번으로

- ①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어서
- ② 공용 공간을 함께 나눠 쓰면 불편하니까
- ③ 혼자만의 조용한 독립생활이 어려워서
- ④ 공용실 비품, 관리비 등 공용 비용 부담 원천을 정하기 어려워서
- 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 ⑥ 기타(내용 : \_\_\_\_\_)

**34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생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 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 ② 주거비(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 ③ 내 마음대로 거주지를 옮겨 다니고 싶어서
- ④ 주변에 친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 ⑤ 내 집을 마련할 예정이라서
- ⑥ 기타내용 : \_\_\_\_\_

**35 퇴소 이후 어떤 방법으로 주거에 관한 상담이나 지원을 받길 원하나요? 한 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 ① 주거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 ②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찾아가서
- ③ 상담사가 우리 집이나 직장에 직접 방문해서
- ④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서
- ⑤ 전화를 이용해서
- ⑥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생각이 없음
- ⑦ 기타내용 : \_\_\_\_\_

**36 퇴소 이후 주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세 가지를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① 주거지(공공임대주택 등)
- ② 생활비
- ③ 심리상담
- ④ 취업 관련 교육·훈련
- ⑤ 취업연계
- ⑥ 의료비(병원비)
- ⑦ 생활비, 급여 등 돈 관리
- ⑧ 일상생활(음식하기, 청소하기, 정보기 등) 관리
- ⑨ 쉼터 퇴소자 지지모임
- ⑩ 자립지원서비스 정보
- ⑪ 자립지원담당자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 ⑫ 기타내용 : \_\_\_\_\_

**VII** 다음은 여러분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잘 읽고 각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37** 몇 년에 태어났나요?

--	--	--	--

 년

**38**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39번 문항으로

**38-1** 우리 심터는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시설, 환경을 갖추고 있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39** 부모님의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1) 아버지

① 모름

② 중학교 졸업이하(고교 중퇴 포함)

③ 고등학교 졸업(대학/대학교 중퇴 포함)

④ 전문대 졸업

⑤ 4년제 대학 졸업(대학원 중퇴 포함)

⑥ 대학원 졸업

2) 어머니

① 모름

② 중학교 졸업이하(고교 중퇴 포함)

③ 고등학교 졸업(대학/대학교 중퇴 포함)

④ 전문대 졸업

⑤ 4년제 대학 졸업(대학원 중퇴 포함)

⑥ 대학원 졸업

**40** 우리 가족의 생활형편(경제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매우 못신다	←				중간이나 못사는 편에 가깝다	중간이나 잘사는 편에 가깝다	→				매우 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1** 나와 나의 부모님은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구분	대한민국	북한	그 외 다른 나라
1) 나	①	②	③
2) 아버지	①	②	③
3) 어머니	①	②	③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The survey on adolescents' right to adequate housing and the ways to ensure their housing with the focus on social exclusion

This research assumes that “national effort to secure adequate housing for children and youths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prevention of social exclusion via making multi-faceted, direct and indirect improvement in universal rights.” Thus, we focus on the fact that “every person has the right to live in adequate housing’ among many complicated social exclusions; by understanding the housing realities children and teens face, we formulated the directions for future governmental tasks and policies to ensure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or this, this research performed the following. First, we reviewed the current literature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children and youth’s right to adequate housing; we also examined the case examples from other countries to suggest an appropriate revision of related policies. Secondly, we utilized the 2019 Korea Housing Survey (approval number 116031) to estimate the number of children without adequate housing. We confirmed the number of houses with child residents equipped with inadequate essential facilities, structures below

the standards, and inadequate living standards. We also identified the number of non-residential houses to set the baseline for public policies. Third, we recognize that existing literature on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teen's housing has been limited to the use of secondary data; thus, we secured limited but first empirical data on the children and teen(1-12th grade)'s perception of housing via probability sampling. Fourth, we specifically researched the housing support request and the experience of shelter among non-residential housing. For this, we surveyed the life experience related to housing among 296 adolescents who are living at the shelter for teens, the most well-known public welfare institute for teens at the time of research, and compared the data with the teens and children in the general population to result in the meaningful findings after confirming various social exclusions. Fifth, we also performed an additional survey with direct support staff from 60 shelters for teens and made suggestions to improve the area ratio, and bedroom uses in the shelter. Sixth, we interviewed eight teens who received housing support after they left the youth center to research the experience of moving into public housing, change in life, satisfaction in housing support, and the need for additional support for independence. Lastly, we conducted two analytic hierarchy processes on the opinions of 12 academic and professional experts in the areas of adolescent welfare and housing welfare to deduct the current issue and controversy, as well as the priority of the policy tasks.

Based on these, we proposed 12 specific tasks according to the three policy tasks to guarantee the right to housing for children and youth.

First, in regards to the first task 'Revision of laws and guidelines', we proposed revisions in the following areas 1) Framework Act on Residence, 2) Youth Welfare Support Act, 3) Guidelines for handling residential support for the vulnerable population 4) Child Welfare Act 5) Act on prevention of Child Poverty, support children, etc. and 6) Building act. Second, in regards to the second task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guaranteeing housing rights', we proposed 7)developing and managing indicators for housing right for children and youths, ⑧ improvement of the delivery system for housing support services, and ⑨ institutionalized improvement of the housing environment in poor residential areas. For the third task of 'expansion of system and service, we proposed 10) 'improving housing benefits, 11) identifying the housing-vulnerable population and increasing support, and 12)expanding the related services.

Key words: children and youth,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dequate housing, housing-vulnerable population, children's rights, social exclusion, housing support, disadvantaged groups in housing,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youth welfare facilities

##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20-R0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김영한·이유진·조아미·임성택
- 20-R02 청소년·청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유민상·최정원·이수정·장혜림
- 20-R03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오해섭·문오영
- 20-R04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최용환·성유리·박윤수·김보경
- 20-R05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방안 연구 II : 청소년상담사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이종원·남화성·정지희
- 20-R0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1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연구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2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7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 / 김경준·김정숙·윤철경
- 20-R08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송태민
- 20-R08-1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1\_청소년 비만에 대한 비정형 빅데이터 연구 / 송태민
- 20-R08-2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2\_청소년 행복 결정요인에 대한 정형 빅데이터 연구 / 홍성호
- 20-R09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승경·임세희·최은영
- 20-R1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 김명자·황세영·최홍일·이민희·김진호
- 20-R10-1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심화분석 보고서 / 박환보·주경필
- 20-R10-2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자·황세영·최홍일
- 20-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 / 최인재·강경균·송민경·조윤정·김가희

- 20-R12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0-R12-1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황영식
- 20-R13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20-R13-1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1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20-R13-2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2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장근영·이동훈·윤철경 (자체번호 20-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 오은진·장희영 (자체번호 20-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청년 이직자 - 총괄보고서 / 김기현·신동훈·변금선·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청년 이직자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신동훈·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 / 백혜정·임희진·송미경·김양희 (자체번호 20-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국내·외 주요 법령 및 건강정책 분석 / 류정희·이상정·박선영·전민경 (자체번호 20-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백혜정·임희진 (자체번호 20-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교 / 배상률·이창호·이정림 (자체번호 20-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교 - 해외사례 조사 / 정현선·심우민·윤지원·김광희·최원석 (자체번호 20-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교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0-R17-2)

## 연구개발적립금

- 20-R24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 황여정·이정민
- 20-R24-1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황여정·이정민·김수혜

- 20-R25 10대 청소년 포럼 운영 / 모상현
- 20-R26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 김현철

## 수 시 과 제

- 20-R18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 이정민·이종원
- 20-R19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배정희·김기현
- 20-R20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 황진구·김지연
- 20-R21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지원 방안 연구 / 이창호
- 20-R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편 방안 연구 / 김경준·이종원·박정배
- 20-R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 김희진·백혜정

## 수 탁 과 제

- 20-R27 청소년 비즈쿨 활성화를 위한 고교교육 정책 연계방안 연구 / 강경균·안재영·황은희
- 20-R28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29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 / 김영한
- 20-R29-1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요약본) / 김영한
- 20-R30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양미석
- 20-R3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5종)
- 20-R31-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1~2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2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3~4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3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5~6학년용)/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4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중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고등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2 2019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양미석
- 20-R33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적용방안: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 성윤숙·양미석

- 20-R34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
- 20-R34-1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초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2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중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3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고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5 교육과정 기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성윤숙·이윤소
- 20-R36 어울림 자유학기 프로그램(5종)
- 20-R36-1 어울림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놀러와! 어울림 세상)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선보라·이혜옥·이윤소
- 20-R36-2 자유학기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 성윤숙·배은정·이윤소
- 20-R36-3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사회) / 성윤숙·선보라·이윤소
- 20-R36-4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도덕) / 성윤숙·이혜옥·이윤소
- 20-R36-5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국어)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이윤소
- 20-R37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동향 / 성윤숙
- 20-R38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개선 용역 / 김형주·김혁진·김정주
- 20-R3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40 학교 안·밖 청소년정책 협력체계 구성 및 연계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남화성
- 20-R41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유진
- 20-R41-1 꿈과 친구사이 :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매뉴얼 / 이유진
- 20-R42 청소년 주도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 연구 / 최창욱·문호영
- 20-R4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사례관리사 및 자립업무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 김지연·백해정·이상정
- 20-R44 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 20-R45 청소년 교육·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협력 강화 방안 / 김영지·황세영·손진희·박명선·박종원·조기영
- 20-R46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연구 / 최창욱·좌동훈
- 20-R47 농업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농촌 청소년 실태조사 / 오해섭·최홍일
- 20-R48 성남시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연구 / 황진구·남화성
- 20-R49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연구 / 황진구·좌동훈
- 20-R50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최창욱
- 20-R51 지역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 최용환·곽창규·이성규

- 20-R52 수원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용환·김보경
- 20-R53 20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20-R54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연구 / 최인재·송원일·박지원
- 20-R55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 최인재·송원일·배수인
- 20-R56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의 성장관리 및 성과측정 방안 연구 / 이정민·성유리·김혜원
- 20-R57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2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8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직업계고 혁신 지원 방안 연구 - 특성화고 혁신지원 운영모형 개발 / 강경균·김영만·김용성
- 20-R5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 / 김희진·임희진·정윤미
- 20-R6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 개발 / 연보라·최정원·김성은
- 20-R61 학업중단 현황 및 지원 방안 / 김성은·박하나·김현수
- 20-R62 환경 변화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 발전 방향 연구 / 장근영·김기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0-S01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30)
- 20-S0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성과보고회(1.31)
- 20-S03 2020년 제2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밖 청소년 취업 및 자립지원 방안(1.22)
- 20-S04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1.31)
- 20-S05 제25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강원국 교수의 매력적인 글쓰기 특강(4.23)
- 20-S06 제26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김병완 작가의 권تم 독서법 및 책쓰기 특강 (4.21)
- 20-S07 2020년 제29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방안(6.19)
- 20-S08 2020년 제30회 청소년정책포럼 :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 (7.17)
- 20-S09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실무 역량 강화 연수(초등, 중등, 고등)(7.28)

- 20-S10 2020년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7.28)
- 20-S11 제3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플랫폼 노동의 미래를 묻다 <별점 인생>(8.5)
- 20-S12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1)
- 20-S13 제3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Z세대의 SNS 마케팅에서의 소비자사회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8.26)
- 20-S14 2020년 제32회 청소년정책포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의 방향(8.18)
- 20-S15 청소년 이슈 관련 네트워크 분석(8.25)
- 20-S16 2020년 제33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안팎 청소년 협력체계 구성 연계 방안(9.23)
- 20-S17 제3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10.6)
- 20-S18 2020년 대안학교 관리자 협의회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10.5)
- 20-S19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10.5)
- 20-S20 2020년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10.21)
- 20-S21 2020 유로필로조피 서울 대회(11.12~13)
- 20-S22 2020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11.13)
- 20-S23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11.18)
- 20-S24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 사이버폭력 정책 동향 및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방향 모색)(12.18)
- 20-S25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11.28)
- 20-S26 제9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11.20)
- 20-S27 제36차 청소년정책포럼: 우리나라 한국아동·청소년의 삶은 어떠한가?(12.1)
- 20-S28 제37차 청소년정책포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체계의 과제와 방향(12.8)
- 20-S29 제1차 10대청소년목소리포럼: 코로나로 세겨진 우울의 시대 우리의 꿈과 이상을 쓰다 - 동고동락, 각양각색 청소년의 희망이야기(12.5)
- 20-S30 제38차 청소년정책포럼: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12.17)
- 20-S31 제39차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과제(12.22)
- 20-S32 진로위기학생 유형별 진로교육 실천과제 성과보고회 자료집(11.27)

##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9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9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9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99호)

##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9호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 제고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 예정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1호 :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발전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2호 :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3호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지원방안 모색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4호 :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5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관계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6호 : 「청년기본법」제정 전·후 정책형성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7호 : 청년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8호 : 청년종합실태조사(안) 시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9호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NYPI Bluenote 통계 49호 :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50호 :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Bluenote 통계 51호 :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관련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5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연구보고 20-R09

---

##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

인 쇄 2020년 12월 23일

발 행 2020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현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77-3 93330